

번역자료

10

210,123  
210123

# 일본의 국민계정 이해

2000. 12



통계분석과

B30512

## 알 림

이 자료는 일본 勁草書房출판사에서 발간한 『국민경제계산과  
이의 확장』(武野秀樹,金丸 哲 編著, 1997)을 저자의 승인을 얻어  
번역한 것입니다.

이 책은 국제적으로 채택된 국민경제계산의 기본틀인 국민계정  
체계의 개정판(1993년 SNA)을 중심으로 주변 체계를 해설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여러나라는 개정 SNA로 이행하는 과도기 중이어서  
개정 SNA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책자는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를 연구하고  
비교 검토한 자료로서 국민계정체계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책자는 통계분석과의 업무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번역한 것이므로 내부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료의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지역내총생산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12  
통계분석과장

## 머 리 말

국내총생산이나 국민소득과 같은 거시경제 집계치는 경제순환 안에서 하나의 개념기구와 추계방식에 따라 정합성을 가진 방식으로 규정되어 왔는데 이러한 개념기구와 추계방식이 바로 국민경제계산이다. 따라서 거시경제통계와 거시경제이론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국민경제계산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주된 목적은 국제적으로 채택된 국민경제계산의 기본 틀인 국민계정체계(SNA)의 개정판과 그 주변체계를 해석·검토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를 해석·검토하는 데에는 몇가지 제약이 있다. 첫째, 개정 SNA(1993년 SNA)의 내용이 아주 복잡하여 전체 상(像)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고, 둘째, 국제적으로 채택되었다고는 하지만 각 국(일본포함)이 개정 SNA로 이행하는 과도기 중이어서 개정 SNA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추계방식에 대한 명확한 추계실적치로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이다.

이러한 제약이 있음에도 개정 SNA와 그 주변체계를 해석·검토하는 것은 개정 SNA가 국민경제계산 방식의 변화를 통해 경제순환의 개념기구와 거시경제 집계치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예를 들면, 수년간 경제통계와 경제학 분야에서 뿌리깊게 사용되어 왔던 직·간접세, 해외경상잉여, 상품·비상품과 같은 용어가 개정 SNA에서는 모두 다른 명칭으로 수정되었을 뿐 아니라, GNP와 요소소득이라는 용어는 개념 자체가 부적절하여 사용하지 않고 폐지하여 버렸다. 따라서 이러한 방침의 근본사상을 살펴보는 것도 이 책의 주요한 목적중 하나이다.

제 I 부 「국민경제계산」(제1장~제4장)에서는 현 단계의 국민경제계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하였다. 각 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정 SNA 관점에서 본 시스템을 충실히 해설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수치표시는 일본의 현행 SNA에 기초한 실적치(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계산연보」 1996)를 사용하였다. 제1장 「국민경제계산의 기초」는 예비지식이 없는 사람도 국민경제계산의 큰 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으며, 제2장~제4장에서는

개정 SNA 자체를 설명하고 있어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제Ⅱ부 「국민소득」(제5장~제7장)에서는 「국민소득」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개정 SNA에 의한 국민소득개념을 GDP(국내총생산)로 시작하여 GNI(국민총소득)에 이르기까지의 개념을 설명하고, 종래부터 사용하여 왔고 현재도 유효성을 가진 개념의 이론적 집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제7장은 거시적 모델에 의한 국민경제의 기초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Ⅲ부 「국민경제계산의 확장」(제8장~제11장)에서는 개정SNA의 주요 특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해외계정과 국제수지표」(제8장)는 SNA와 그외 국제통계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SNA 해외계정과 IMF 국제수지표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회회계행렬」(제9장)과 「위성(satellite)계정」(제10장)은 개정 SNA가 가진 탄력적 이용측면을 제시하기 위한 장이다. 사회회계행렬은 경제순환 전체의 '정합적 표시형식'이지만, 본 책에서는 행렬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모든 문제에 적합한 분류법을 도입함으로써 제공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위성계정의 중심체계에서는 내부 비용화 하거나, 분류상의 문제로 인해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특정 사회적 관심영역(보건, 교육, 사회복지, 환경 등)별로 집약하고 그것을 다면적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SNA는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경제 집계치를 제공하는 유일한 국제표준체계로서 「GDP의 국제비교」(제11장)에서는 부가가치, 국민소득 등의 거시경제지표를 국제적인 공통의 척도로써 비교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끝으로 이 책의 기획·구성에 많은 도움을 준 勁草書房의 宮本詳三씨에게 감사 드리는 바이다.

# 목 차

머리말

## 제 1 부 국민경제계산

제 1 장 국민경제계산의 기초 .....	11
1. 경제순환 .....	11
가. 스톡과 플로우 .....	11
나. 자산과 거래 .....	12
다. 경제순환의 개념 .....	14
2. 계정 시스템 .....	15
가. 경제순환의 표시법 — 현행 SNA와 개정 SNA .....	15
나. 생산계정, 소득의 분배·사용계정 및 축적계정 .....	16
다. 3계정시스템의 행렬표시 .....	19
3. 경제활동과 부문 .....	20
가. 제도부문과 활동부문 .....	20
나. 산업 .....	21
다. 국내제도부문 .....	22
라. 해외 .....	23
4. 국민계정의 전개 .....	25
가. 국민계정의 3형태 .....	25
나. 거래의 계정기입 .....	26
다. 계정시스템의 전개와 표시 .....	27
라. 제도부문으로서의 해외부문을 포함한 계정시스템 .....	29
마. 플로우계정시스템의 실적치 표시 .....	30

제 2 장 국민계정시스템의 전개와 표시 ..... 33

1. 플로우계정 전개의 실제 ..... 33

- 가. 개정 SNA의 해외부문과 소득의 분배·사용 ..... 33
- 나. 국민계정시스템의 실제 ..... 34
- 다. 국내생산활동부문 ..... 35
- 라. 플로우 국민계정시스템의 부문별 표시 ..... 38

2. 국민경제의 스톡표시 ..... 38

- 가. 국민대차대조표 ..... 38
- 나. 일본의 국민대차대조표 ..... 42
- 다. 제도부문별 대차대조표 ..... 44

3. 스톡·플로우의 통합 ..... 44

- 가. 스톡계정·플로우계정·조정계정 ..... 44
- 나. 스톡계정과 플로우계정의 통합표시 ..... 47
- 다. 계정연결형식에 의한 스톡·플로우의 통합표시 ..... 50

제 3 장 개정 SNA의 구조 ..... 54

1. 개정 SNA의 기초 ..... 54

- 가. 개정 SNA(1993년 SNA) ..... 54
- 나. 개정 SNA의 기본적 특징 ..... 54
- 다. 계정 시스템의 기본구조 ..... 57
- 라. 플로우계정시스템의 개요 ..... 58
- 마. 플로우계정·스톡계정의 계열 ..... 60

2. 생산물의 평가와 기록 ..... 62

- 가. 재화·서비스계정 ..... 62
- 나. 시장가격을 구성하는 세 ..... 65
- 다. 생산물에 부과되는 세 ..... 66

3. 생산계정의 기록 .....	69
가. 생산계정의 표시 .....	69
나. 생산계정의 기입 예 .....	71
제 4 장 개정 SNA의 계정시스템 .....	75
1. 소득의 분배·사용계정 .....	75
가. 소득의 분배·사용계정의 역할과 특징 .....	75
나. 소득의 제 1차 분배 .....	76
다. 소득의 제 2차 분배·현물소득의 재분배·소득의 사용 .....	81
2. 축적계정 .....	86
가. 축적계정의 기록 .....	86
나. 자본계정·금융계정 .....	89
다. 기타 자산변동계정 .....	94
라. 순자산의 변동 .....	97
3. 플로우계정과 스톡계정 .....	100
가. 플로우계정시스템의 표시 .....	100
나. 대차대조표의 표시방법 .....	101

## 제 II 부 국 민 소 득

제 5 장 생산의 범위 .....	111
1. 「생산의 범위」 문제 .....	111
가. 재화와 서비스 .....	111
나. 「생산의 범위」의 문제점 .....	113
다. 귀속생산활동 .....	114
라. 비시장 생산활동 .....	115

2. 「생산의 범위」 결정방법 .....	116
가. 생산범위 문제와 SNA .....	116
나. 생산적 활동 .....	118
다. SNA에 의한 「생산의 범위」 .....	119
3. 「생산범위」의 변동 .....	121
가. 생산범위의 이동 .....	121
나. 생산범위의 비교 .....	122
다. 「생산의 범위」 비교의 문제점 .....	124
 제 6 장 국민소득개념 .....	 126
1. 국민소득의 측정 .....	126
가. 국민소득의 측정기준 .....	126
나. 국민소득의 3측면 .....	127
다. 「국민」 개념과 「국내」 개념 .....	128
라. 총액표시와 순액표시 .....	130
마. 시장가격평가와 요소비용평가 .....	130
2. 국민소득의 발생과 분배 .....	131
가. 생산국민소득 .....	131
나. 가설생산 활동부문 .....	134
다. 분배국민소득 .....	136
3. 국민소득의 지출 .....	138
가. 지출국민소득 .....	138
나. 시장가격 국내총지출과 시장가격 국민총지출 .....	140
다. 저축투자차액 .....	142
4. 실질국민소득과 디플레이터 .....	144
가. 실질국민소득 .....	144
나. 임플리시트 디플레이터 .....	145
다. 일본의 국내총지출 디플레이터 .....	148



제 7 장 국민경제계산과 거시모델 .....	150
1. 거시경제모델과 국민경제계산 기초 .....	150
가. 국민경제계산과 거시모델분석 .....	150
나. 국민계정행렬과 거시모델 .....	151
다. 거시모델의 구성 .....	152
2. 국민경제의 플로우표시와 그 내용 .....	153
가. 간단한 플로우계정 행렬의 일례 .....	153
나. 일본경제의 플로우 실적치 .....	157
다. 금융적 청구권의 플로우와 화폐·비화폐 .....	157
라. 화폐·비화폐의 수요와 공급 .....	158
3. IS-LM모델의 구성 .....	159
가. 계정행렬의 정리 .....	159
나. 균등조건과 변수·패러미터 .....	160
다. 여러가지 전제의 도입 .....	162
라. IS-LM모델 .....	164
마. IS-LM모델의 성질 .....	165
4. IS-LM모델의 비교학 .....	166
가. 비교학 I (수출의 변동) .....	166
나. 기타 내생변수의 영향 .....	167
다. 비교학 II (화폐공급플로우의 변동) .....	169

### 제 III 부 국민경제계산의 확장

제 8 장 해외계정과 국제수지표 .....	173
1. 개정 SNA 해외계정 .....	173
가. 개념적 틀 .....	173
나. 해외계정의 구조 .....	175

2. 국제수지 메뉴얼의 개정 .....	181
가. 국제수지표와 국제투자 포지션표 .....	181
나. 국내발표형식의 변동 .....	185
3. 국제수지와 SNA균형항목 .....	188

## 제 9 장 사회회계행렬 ..... 192

1. SNA와 사회회계행렬 .....	192
가. 사회회계행렬의 계보 .....	192
나. 사회회계행렬의 구체적인 예 .....	193
다. 사회회계행렬과 계정행렬 .....	195
2. 사회회계행렬의 전개 .....	198
가. 기본적인 사회회계행렬 .....	198
나. 소득의 제1차 분배계정과 제2차 분배계정의 분할 .....	200
다. 잡경상이전 계정의 도입 .....	201
라. 소득의 발생계정과 제1차 소득의 분배계정의 분할 .....	203
마. 전개된 사회회계행렬 .....	205
바. 사회회계행렬의 특성 .....	208
3. 스톡과 플로우의 통합행렬 .....	210
가. 여러가지 스톡과 플로우의 통합행렬 .....	210
나. 스톡·플로우 통합행렬 .....	215

## 제 10 장 위성계정 ..... 217

1. 국민경제계산 시스템의 구축과정 .....	217
2. 위성계정의 의미 .....	219

3. 프랑스형 위성계정 .....	220
4. 개정 SNA의 위성계정 .....	224
제 11 장 GDP의 국제비교 .....	229
1. GDP의 국제비교와 구매력평가 .....	229
2. 국제비교프로그램의 구매력평가 계산방법 .....	232
3. 구매력평가계산을 위한 기초적 자료의 추계 .....	245
4. 국제비교프로그램의 전개에 대하여 .....	251
참고문헌 .....	252

# 제 I 부    국 민 경 제 계 산

# 제 1 장 국민 경제 계산의 기초

## 1. 경제순환

### 가. 스톡과 플로우(Stocks and Flows)

경제순환의 설명을 위해 먼저 경제량의 기본적 성질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경제량은 기본적으로 크게 스톡(stocks) 과 플로우(flows)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가격, 이자율 등과 같은 스톡, 플로우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경제량도 있는데, 이들은 모두 스톡 량과 플로우 량의 어느 한쪽, 또는 양자를 가공하여 나온 수량이다.

모든 경제활동은 주어진 자본 또는 자산을 기초로 행해지는데 이 자산을 스톡이라 한다. 스톡이란 일정한 한 시점을 지정해야 의미가 있다. 이것은 기업의 스톡 표시인 대차대조표와 자산목록이 반드시 한 시점을 정하여 작성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스톡의 수량 또는 구성에 변동을 초래하는 경제량을 플로우라고 한다. 어느 자산이 얼마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는 일정한 기간에 대하여 말하므로 플로우는 시점이 아닌 기간에 대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내용은 기업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변동하는 것이다. 그 자산변동의 원인은 제품의 판매, 임금의 지불, 설비의 구입 등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플로우이다. 이 플로우는 1년 또는 반년의 기간을 정해 측정된 것이다.

스톡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인적스톡(human stocks), 비금융스톡(non-financial stocks, 실물스톡(real stocks))과 금융스톡(financial stocks) 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금융스톡이란 소비자, 기업 등의 각 경제단위(경제주체)가 일정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금융스톡은 다른 스톡처럼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경제주체 상호간의 청구·피청구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채권인 금융스톡은 플러스 자산이고 채무인 금융스톡은 마이너스 자산이다.

또한 인적플로우를 제외한 플로는 비금융플로우(non-financial flows, 실물플로우(real flows)), 금융플로우(financial flows, 자금플로우(money flows)) 와 이전플로우(transfer flows)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비금융플로우란 재화·서비스(goods and service)가 대상이 되는 플로우를 말한다. 즉, 비금융플로우는 재화·서비스의 생성, 가공, 판매 및 소멸을 나타내는 플로우이다. 즉, 생산물의 판매(구입), 임금의 지불(수취)등의 플로우는 비금융플로우의 예이다. 비금융플로우가 재화와 서비스인 「실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반해, 금융플로우는 「돈」의 흐름을 의미한다. 즉, 금융플로우는 금융시장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금융적 청구권의 설정, 매매 및 해소를 의미한다. 예를들면 기업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소비자가 은행예금을 늘리거나 하는 것은 경제주체의 금융시장을 변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플로우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금융플로우, 금융플로우의 어떤 쪽에도 속하지 않는 플로우가 있는데 이를 이전(transfers)이라고 한다. 이전(또는 이전플로우)이란, 일정한 제도와 관습 위에서 경제주체간에 행해지는 일방적인 지불과 수취를 말한다. 예를 들면, 조세의 지불과 각종 사회보장 급부와 같은 것이다. 이전은 비금융플로우와 금융플로우를 보충하는 부차적인 플로우라고 볼 수도 있으나, 그것은 국민경제순환에서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플로우를 비금융플로우, 금융플로우에 대해 제3의 카테고리를 형성하는 플로우라고 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비금융플로우를 보충하는 플로우라고 이해되고 있다.

#### 나. 자산과 거래

스톡과 플로우가 경제활동의 대상으로 명확히 식별되고 평가·기록될 때, 그것을 각각 자산(광의의)과 거래라고 한다. 여기서, 자산(assets)이란 스톡 중에서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의 총칭을 말한다. 즉, 스톡 모두가 자산이 아니라, 스톡 중에 특히 자산의 범위(assets boundary)에 포함되는 것이 자산이다. 예를 들면, 석유 추정매장량 전체가 스톡임에 반해, 그 중 채굴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발견된 석유

매장량의 평가액만이 자산이 된다. 또, 넓은 의미의 자산 개념에는 마이너스 자산인 부채와 순자산(net worth)도 포함된다. 자산의 분류는 표 1-1과 같다.

표 1-1 자산의 분류

자 산	비금융자산	생 산 자 산	유형자산 (예. 건물, 기계)
			무형자산 (예. 컴퓨터 · 소프트웨어)
	비생산자산		유형자산 (예. 토지, 지하자원)
			무형자산 (예. 특허권지분)
금 융 자 산 · 부 채		(예. 통화 · 예금, 대부금 · 차입금)	

플로우 중에서 경제활동의 주체인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양자에게 대조적인 형태로 발생하는 자산변동을 거래라 한다. 하지만 이 정의에 맞지 않는 거래도 있는데 고정자본소모, 보험 가능한 재해 · 사고에 의한 손실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경제순환의 포괄적 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경제계산의 기록대상인 플로우는 거래보다 광범위하다. 즉, 거래 이외의 플로우에는 자원의 신규발견, 대규모재해 · 전쟁에 의한 자산 손괴 등 자산의 수량변동과 인플레이션 등에 의한 자산재평가가 포함된다. 이들은 거래의 범위 외에 있음에도 국민경제계산의 기록대상이다.

이 모든 거래는 플로우의 분류에 대응해서 비금융거래(이전거래 포함)(non-financial transactions)와 금융거래 (financial transactions)로 분류한다. 전자는 재화 · 서비스의 취득을 수반한 거래(일방적인 지불 · 수취를 의미하는 이전 제외)를 말하고, 후자는 금융적 청구권(financial claims)의 취득(상실)을 수반한 거래를 말한다.

## 다. 경제순환의 개념

이러한 자산과 거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어떤 하나의 질서와 방식에 따라 인식·평가하고 기술한 것이 경제순환이다. 다음에는 국민경제계산 체계에 따른 경제순환의 개념을 알아보자.

경제적 거래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획득하고 소비하고 이용하는 대상물인 재화·서비스 또는 금융적 청구에 대하여 경제적 의미의 「변환」(또는 변형)을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변환에는 실행자인 경제주체(또는 경제부문)의 변환은 물론 대상인 재화·서비스나 청구권의 종류 등 기능이 다른 다양한 형태의 변환을 포함한다. 또 변환이란 말보다 과정(프로세스)이나 활동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생산이라는 활동(프로세스)은 재화·서비스의 투입과 산출의 관계로써 파악되며 평가·기록된다. 즉, 개별적인 구입과 판매, 대출과 차입, 지출과 수입 등의 관계로서 취급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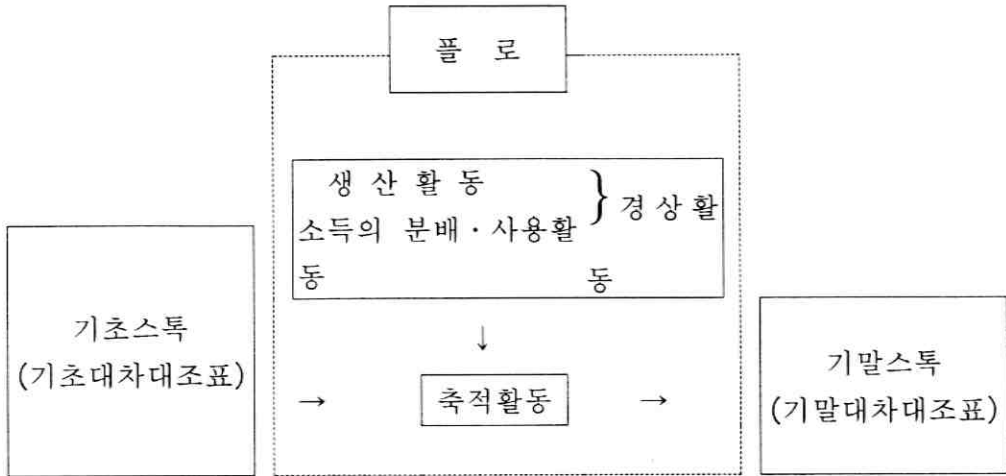
경제순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과정을 거시경제이론의 기초에 유용한 순환표시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적절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모든 경제활동을 생산, 소득의 분배·사용 및 축적이라고 하는 기본적 변환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경제순환도 생산, 소득의 분배·사용 및 축적이라는 과정이 폐쇄적·자기 충족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으로 나타낼수 있다. 이중 생산활동과 소득의 분배·사용활동은 경상적 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국민경제계산에서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경제순환을 개념도 형태로 표시한 것이 도 1-1이다. 여기서는 프로세스란 말 대신 「활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또 기초스톡(기초대차대조표)과 기말스톡(기말대차대조표)이 경제순환의 일부로 기록되고 있다.

이 3개의 활동을 동시에 계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규모와 기능의 정합성이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경제순환의 표시방식은 이들 프로세스의 정합성이 체크될 수 있고, 순환규모의 수량적 표시가 가능해야 한다. 이런 원리에 의해 국민경제계산의 기록방식이 전개되고 있다.



## 도1-1 경제순환



## 2. 계정시스템

### 가. 경제순환의 표시법 - 현행 SNA와 개정 SNA

오늘날 경제순환을 표시하는 방식으로서의 국민경제계산은 기본적으로 UN에서 정한 SNA(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 국민계정체계)의 방법에 따르고 있으며, 경제순환의 표시에 관한 설명도 당연히 SNA방식에 따른다. 현재 각 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SNA는 1968년 UN에서 채택한 시스템을 원형으로 이를 완벽하게 실용화시킨 것이다. 일본의 국민경제계산(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계산년보』에 수록하고 있다)도 현행 SNA에 입각해 설계됐음은 말할 것도 없다.

현행 SNA(1968년 SNA)는 그 자체가 경제통계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방대하고 정밀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각 국가들이 사반세기에 걸쳐 경험과 실적을 쌓음에 따라 현행 SNA의 미비점을 지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UN의 주도로 1986년경에 현행SNA의 전면 개정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이 개정작업은 전문기관에 의해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성과

로서 1993년에 5개 국제기관 (유럽공동체위원회(EC),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세계은행(WB))의 공동편집에 의해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이 공동 출간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을 포함한 주요국가의 통계 당국에서는 이 개정 SNA(1993년 SNA)에 따라 현행 국민경제계산체계를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의 설명은 부분적으로는 현행 SNA에 근거한 자료와 개념을 기초로 하고, 전반적으로 개정 SNA의 방식을 따를 것이다.

#### 나. 생산계정, 소득의 분배·사용계정 및 축적계정

경제순환을 보려면 동시에 진행되는 프로세스들을 모아야 하므로 국민경제계산에서는 개개의 프로세스를 계정이라는 형식으로 기록해야 한다. 따라서 위의 3가지 기본적인 활동(생산활동, 소득의 분배·사용활동과 축적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생산계정, 소득의 분배·사용계정과 축적계정이라는 3가지 계정을 설정하였다.(소득의 분배·사용계정은 개정 SNA에서 나온 명칭으로 그 내용은 현행 SNA의 소비계정(consumption account)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들 계정의 내용은 표 1-2, 표 1-3, 표 1-4와 같다. 표에 나타난 기입항목은 모두 사회적(또는 국민적) 집계치로서 이 계정을 사회계정(또는 국민계정)이라 한다. 각 항목에 붙여진 기호는 기입금액을 표시한다.

생산계정은 한 경제기간 동안의 생산활동을 기록한다. 원천 측에 기록하는 거래는 크게 (a) 중간생산물의 판매, (b) 소비를 위한 재화·서비스의 판매, (c) 총자본 형성의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소비와 총자본 형성은 최종생산물의 판매를 나타내며, 총자본 형성은 고정자본재의 판매와 재고의 증가(또는 감소)로 나뉜다. 생산계정의 사용 측에는 생산을 위한 비용을 기록한다. 비용 중 첫째 항목은 원재료 등 중간생산물의 구입(중간소비지출이라고도 함)으로 동계정 원천 측의 최초 항목과 금액이 반드시 일치한다. 그 외의 비용, 즉 생산총액에서 중간생산물을 공제한 나머지를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라 한다. 이 총부가가치는 발생시점에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생산활동의 외부에 대해 생산비로 지불한다.

표 1-2 생산 계정

사 용		원 천	
P	중간생산물의 구입	P	중간생산물의 판매
Y	총 부가가치	C	소비를 위한 재화·서비스의 판매
		I	총자본형성 고정자본재의 판매 재고증가 또는 감소(-)

표 1-3 소득의 분배·사용계정

사 용		원 천	
T	소득의 분배	Y	총 부가가치
	피용자보수	T	소득의 분배
	간접세		피용자보수
	경상이전(재산소득포함)		간접세
C	소비		경상이전(재산소득포함)
S	저축(순)	-D	고정자본소모(-)

표 1-4 축적 계정

자 산 의 증 감		부 채 및 순자산의 증감	
I	총자본형성	S	저축(순)
	고정자본재의 구입	ΔL	부채증가
	재고증가 또는 감소(-)		통화·예금
-D	고정자본소모		채권·주식
ΔF	금융자산증가		기타 금융적 청구권
	통화·예금		
	채권·주식		
	기타 금융적 청구권		

소득의 분배·사용계정(표 1-3)은 ① 생산계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수용함과 동시에, ② 그것을 몇 개의 거래 항목을 통해 경제주체간에 분배하고 ③ 그 결과로 얻어진 소득을 소비하기 위해 지출하는 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이다. 이 계정의 좌우양측의 합계 금액을 균등하게 하는 잔차(殘差) 항목(균형 항목)은 저축이다. 부가가치를 분배하는 거래 항목은 피용자보수, 간접세, 경상이전의 3가지를 들 수 있다.<sup>1)</sup> 특히, 경상이전은 생산계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여러 제도와 계약에 따라 재분배하는 거래를 말한다. 예를 들면 조세, 사회보장부담금은 가계와 기업에서 정부로 경상이전하는 것이며, 사회보장급부는 역으로 정부에서 가계로 경상이전하는 것을 나타낸다. 재산소득(이자, 임대료 등)에 대해서 개정 SNA는 경상이전에서 분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경상이전에 포함하기로 한다. 표 1-3의 원천측 마지막 항목인 고정자본소모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공제항목이며, 동 계정의 원천측에 있는 총부가가치에 포함된 고정자본소모와 상쇄된다.

축적계정(표 4-4)은 경제전체를 통해 해당 기간 중에 얻을 수 있는 자산을 원천과 사용의 양면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것이다. 자산증가의 원천은 순자산변동(저축), 부채변동의 2가지가 있고 계정의 우측에 기록된다. 자산의 사용도 크게 2가지 항목이 있는데 하나는 비 금융자산(실물자산)의 축적, 즉 총자본형성이고, 다른 하나는 자산인 금융적 청구권의 부가, 즉 금융자산의 증가이다. 경제전체로 보면 금융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는 동일하기 때문에  $\Delta F = \Delta L$ 이 된다. 금융적 청구권은 편의상 3개의 그룹 즉, 통화·예금, 채권·주식과 기타 금융적 청구권으로 나눈다.(축적계정은 이외에도 2, 3개의 거래 항목을 기록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고 있다. 즉 토지 등의 판매, 자본이전 등이 바로 그것이다.)

1) 간접세라는 명칭은 현행 SNA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만, 개정SNA에서는 「생산물 세(taxes on production)」라 개칭되어 있다. 이 개칭의 의의·내용에 관해서는 제3장에서 서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본래의 현행 용어법에 따르기로 한다.

### 다. 3 계정시스템의 행렬표시

위의 3가지 계정을 기본 3계정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통합하여 표시하는 형식을 계정행렬(계정매트릭스) 또는 사회회계행렬이라고 한다. 표 1-2, 표 1-3, 표 1-4와 같은 3개의 계정으로 구성된 경제순환을 통합하여 표시하는 계정행렬이 표 1-5 「3계정행렬」에 나타나 있다. 표 1-5에는 각 계정에 1~3의 번호가 붙어 있다. 이 형식은 각 계정의 원천과 사용항목을 각 계정을 나타내는 행과 열에 기입한 것이다. 예를 들면 생산계정의 수입항목(원천항목)은 표의 제1행에 표기하며, 지출항목(사용항목)은 제1열에 표시한다. 따라서 제1행과 제2열의 교점에 기입된 C(소비)는 생산계정의 원천에서 소득의 분배·사용계정의 사용을 나타낸 것이다. 표의 다른 셀(cells)의 기호도 마찬가지이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행렬에 의한 순환표시를 한 것은 각 계정을 나누어 기입한 것 보다 훨씬 간단하고 편리하다. 어떤 계정에 대해서도 원천항목의 합계가 사용항목의 합계와 일치한다고 하는 수지균등관계가 성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에 따르면 각 계정의 어떤 수입항목에 대해서도 계정의 동일한 지출항목이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5 3계정행렬

		1	2	3
생 산 계 정	1	P	C	I
소득의 분배·사용계정	2	Y	T	-D
축 적 계 정	3		S	$\Delta F(=\Delta L)$

수입항목과 지출항목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대응관계는 국민경제계산에 있어서 완전접합성(full articulation)의 원칙이 있고, 이 원칙이 충족될 때 3가지 계정이 전체로서 하나의 계정시스템(3계정시스템)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3가지 계정의 수지 균등식을 표시하

면 아래와 같다.

$$\text{생 산 계 정 : } P+Y=P+C+I=P+O$$

$$\text{소득의 분배 · 사용계정 : } T+C+S=Y+T+(-D)$$

$$\text{축 적 계 정 : } I+\Delta F+(-D)=S+\Delta L$$

여기서 생산계정에 덧붙인 O는 생산물총액에서 중간생산물 P를 뺀 금액 (C+I)으로 최종생산물을 나타낸다. 이 균등식 중 임의의 2개가 성립하면 다른 하나도 자동적으로 성립한다. 예를 들면 생산계정과 소득의 분배 · 사용계정의 수지 균등식에 변을 첨가하고 양변에서 같은 항목을 삭제하면 순투자 ( I - D ) = 순저축 (S)이 성립하고 저축계정의 수지균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3. 경제활동과 부문

#### 가. 제도부문과 활동부문

이 부분은 경제활동을 자신의 책임으로 실행하는 경제주체를 식별하고,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일정한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그 처분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최소의 경제주체(economic agents)를 경제제도단위, 또는 제도단위(institutional units)라 한다. 그리고 제도상 · 법률상 유사한 성질을 가진 제도단위의 모임을 제도부문(institutional sectors)이라 한다. 주의할 것은, 모든 제도단위는 반드시 어느 1개의 제도 부문에만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전체 경제는 경제주체의 제도적 · 법률적 특징에 따라 제도부문으로 분할될 수 있다.

현행 SNA에서 채용한 제도부문 분류는 해외를 포함해 6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즉, ① 비금융법인기업, ② 금융기관 ③ 일반정부 ④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⑤ 가계(개인기업포함), ⑥ 해외가 그것이다. 특히 국내제도부문인 ①~⑤를 통합한 형태의 부문을 간단히 국내부문 또는 국민경제(일국경제)라 부른다.

제도부문이 경제주체를 제도적 · 법률적인 측면에서 분류한 것인데 비해,

오직 경제주체가 행하는 경제활동의 성질에 주목하고 동질의 경제활동을 그룹화 한 거래의 모임을 활동부문이라 한다. 활동부문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가장 전형적인 것은 산업(또는 산업부문)이다. 산업의 구성에 관해 설명하기로 한다.

## 나. 산업

산업이라는 활동부문의 구성을 알기 위해서는 재화·서비스의 생산에 종사하는 제도단위가 행하는 생산활동의 기술·입지에 관한 조건·특징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한 제도단위가 행하는 생산활동 중에 거의 동일한 지리적 장소에서 거의 동일한 종류로 보이는 재화·서비스의 생산에 종사하는 활동의 모임을 그 제도단위의 사업장(establishments)이라고 한다. 따라서 생산활동을 행하는 제도단위는 보통 한개, 또는 복수 개의 사업장을 갖게 된다. 국민경제에 있어서 생산활동을 행하는 모든 제도단위(이것은 생산단위라 부른다)는 이렇게 사업장으로 분해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생산물의 종류, 투입된 원재료, 사용된 생산기술 등을 기준으로 활동을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 의해 모든 생산단위는 새로운 활동부문으로 재편성된다. 이렇게 정의된 활동부문이 산업(industries)인 것이다. 생산활동 전체를 몇 개의 산업으로 분류할지는 표시, 또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필요에 따라서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산업분류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과 그것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의 종류와 관계는 하나의 산업은 단일 종류의 재화·서비스만을 생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산업을 동질적 생산(homogeneous production)을 행하는 생산단위의 모임으로 정의하는 것이 이론적·통계적으로도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는 그런 산업이 존재하지 않으며, 보통 한 산업은 몇 종류의 재화·서비스를 동시에 생산하게 된다. 결국 현실적인 산업은 주활동의 산출인 주생산물(principal product)·부산물(by-product)뿐만 아니라 부차적 활동의 산출인 부차적 생산물(secondary product)도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 다. 국내제도 부문

(1) 비금융 법인기업부문(non-financial corporations sector)은 소유관계에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고 경제활동을 행하는 국내의 비금융 사업체를 말한다. 이 부문은 크게 민간기업과 공기업으로 분류되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기업은 비금융 사업을 행하는 합명(合名), 합자, 유한, 주식회사가 있다. 공기업은 다음과 같은 4개 종류가 있다. 즉, (a) 기업특별회계(4현업, 2관리회계), (b) 공단·일부의 사업단 등 (c) 지방공영기업 및 (d) 지방공사이다. 현행 일본 SNA는 정부 및 지방단체가 행하는 주택임대활동(구체적으로 공무원주택 및 공영주택의 임대활동을 가리킨다.)을 특히 공적 비금융 법인기업의 활동에 포함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이 제도적으로는 일반정부에 의해 행해짐에도 기업적 성질을 갖는 것을 중시하여 제도부문분류의 단계에서 비금융 공기업에 분류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즉, 주택임대활동은 산업분류에 있어서 부동산업에 들어간다.

(2) 금융기관부문(financial corporations sector)은 금융플로우를 중개하는(구체적으로 말하면 금융적 청구권의 발행·판매를 행한다)것을 주업무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부문은 (a) 중앙은행 (일본은행), (b) 민간금융기관, (c) 공적금융기관 (우편저금, 간이보험, 우편연금, 특수은행, 기금 등)으로 분류한다. 비법인의 대금업자, 전당포 등도 금융기관에 포함된다.

(3) 일반정부부문(general government sector)은 기업적 활동과 금융플로우의 중개에 종사하는 부분을 제외한 정부활동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순정부(pure government)라고도 한다. 일반정부의 활동은 그 경제적 역할에 따라 (a) 중앙정부(일반회계, 비기업 특별회계 등), (b) 지방정부, (c) 사회보장기금의 3부문으로 분할한다.

(4) 대가계 비영리단체부문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sector, NPISHs)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화·서비스는 판매하지 않고 회원으로부터 회비와 그 외 기부금, 보조금, 거출금 등에 의해 비용을 조달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학술문화단체, 종교단체, 사립학교, 사회사업단체, 스포츠단체, 직업단체, 노동조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부문에 속하는 것은 개인에게 교육, 보건, 문화, 레크리에이션, 자선, 종교, 그 외의 사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이다. 비영리단체라도 기업에 봉사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 부문에서 제외하고 비금융 법인기업부문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기술개발·디자인의 연구·기계 기타의 테스트를 하는 기관, 경제·경영의 연구를 하는 단체, 기업단체, 상공회의소등은 비금융 법인기업부문에 포함한다.

(5) 가계부문(households sector)은 일반적인 의미로써 개인(즉, 소비자)과 비금융 개인기업을 포함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계는 경제이론의 추상개념을 뜻하는 가계가 아니다. 개인기업의 업주가 소비자로서 행한 지출을 기업활동에서 분리해 나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가 불가능하다면, 일반가계와 개인기업을 제도상 구별하는 것은 국민경제계산상의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그것들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제도부문으로 하는 것이다.

## 라. 해외

해외(the rest of the world)부문은 해당 국민경제(여기서는 일본경제)내에서 비거주자(non-residents)제도단위로 된 부문이다. 여기서 비거주자란 그 국가의 거주자 경제단위(resident economic units)가 아닌 것을 가리키는데, 판정기준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우선, SNA에 있어서 「국내」의 정의는 한 국가의 정치적 영토에서 그 나라에 소재하는 국제기관(UN 등), 외국정부의 공관과 외국군대를 제외하고, 비정치적 영토에 소재하는 해당국의 공관과 군대를 포함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특정 국민경제의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별해 보자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상관없이 기업활동을 하는 경제주체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경제주체(기업)는 실제로 생산설비, 점포 등을 보유하고 영업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된다. 따라서, 외국의 자회사·지점 등이 자국 내에 공장·사무소를 보유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그 자회사·지점은 관리상의 의사결정을 어디서하고, 출자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상관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해당국의 거주자가 된다. 이 판단기준을 「생산설비 속지주의」라고 하며, 국민경제계산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인정된 기본원칙의 하나이

다. 또 선박과 항공기처럼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설비를 사용하는 영업은 그 설비를 소유한 기업의 일부라 생각하여 그 영업은 기업에 속한 경제의 거주자에 포함한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 설비를 분산해 보유하고 그것을 동시에 사용해서 영업하는 기업(철도, 파이프라인 수송, 전기, 가스 등)의 경우는 조업전체를 점하는 관계국에 분할하여 각 국가의 거주자로 할당해야 한다.

일반정부에 속하는 경제주체에 대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은 앞에서 말한 「국내」의 정의에서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보면 재미일본대사관은 거주자이고, 재일 미군은 비거주자이다. 따라서 재외일본대사관의 건물은 일본의 국내자본형성에 포함된다. 한편, 재외공관의 유지, 관리를 위한 자재조달은 일본 수입의 일부가 된다.

여기서 재외공관과 해당 공관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재외일본공관의 자본조달과 근무하는 일본인 공관원의 소비지출은 모두 일본의 수입이지만 사회 회계적 의미는 다르다. 전자는 「정부의 해외 직접구입」으로 분류되어 일반정부서비스 생산자에 의한 중간소비로 처리되는 것에 반해, 후자는 「거주자가계의 해외 직접구입」으로 국민소비지출에 포함된다(국내소비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재외공관에 있어서 현지피용자의 보수 지불은 물론 수입이 아닌 「해외의 요소지불」의 일부이다.

개인의 경우에, 일본의 입장에서 비거주자가 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 (a) 외국인 여행자, 즉 레크리에이션, 휴가, 의료, 참배, 가족방문, 스포츠 경기, 회의, 연구여행, 연수프로그램 등을 위해 1년 이내 체재하는 외국인.
- (b) 기항한 외국선박과 항공기의 승무원.
- (c)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체재하는 외국인 업무여행자, 또는 외국기업의 피용자로서 그 기업이 판매하는 기계와 장치의 설치·운전을 지도할 목적으로 1년 이내 체재하는 외국인.
- (d) 계절노동자로서 체재하는 외국인.
- (e) 외교관, 영사관원, 또는 외국군대의 대원으로서 체재하는 외국인
- (f) 국제기관의 외국인피용자로서 1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일본의 거주자가 되는 개인은 이것과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

## 4. 국민계정의 전개

### 가. 국민계정의 3가지 형태

국민계정을 성격에 따라 분류할 경우, 가장 간단한 방법은 플로우의 거래 금액을 기록하는 플로우계정과 스톡의 금액을 기록하는 스톡계정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 구분은 계정분류로써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나, 여기서는 국민계정이 가진 기술적인 성격에 주목하여 국민계정을 구별해보자.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 (a) 제도부문계정(institutional sector accounts)
- (b) 활동계정(activity accounts)
- (c) 거래항목계정(transaction accounts)(거래 카테고리 계정, 스크린 계정(screen account), 더미계정(dummy account)이라고도 한다)

모든 국민계정은 이 3종의 유형 어딘가에 속하며, 이들 어디에도 분류되지 않는 국민계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a)제도부문계정은 특정거래의 주체나 제도부문을 식별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계정이다. 따라서, 이 계정은 거래자계정(transactor accounts)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b)활동계정은 경제순환에 있어서 특정 기능을 하는 1조의 경제활동을 식별하고, 그것을 집약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설정한 계정이다. 앞서 설명한 생산계정, 소득의 분배·사용계정과 축적계정은 전형적인 예이다. 마찬가지로 투입산출표에 나타나는 「산업부문」도 동질적인 생산계정의 모임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도부문이 아닌 「활동(activity)」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산업부문계정은 성질상 활동계정의 일종이다

(c)거래항목 계정이란 국민계정에 기입된 거래 중 특정 대상이나 내용에 관한 거래를 분리해서 나타낸 계정이다. 거래항목 계정은 제도부문계정과 활동계정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제도부문계정과 활동계정은 경제주체의 수입과 지출의 기록형식으로 어떤 종류의 기술적·기능적인 수지의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계정의 수지를 그때마다 균등하게 하기 위해 잔고항목이나 균형항목(balancing items)을 항상 수반한다. 이에 반해 거래항목계정은 특정 대상에 관한 거래를 그 대상의

원천(회수)과 사용(처분)의 두 가지 면에서 기록하는 것으로 정의상 잔고항목을 수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자·배당금이란 거래대상에 대해 기록하는 거래항목계정인 이자·배당금계정은 원천측(우측)에 이자·배당금의 타 계정에서 생긴 수입을, 사용측(좌측)에 타 계정에 지불한 이자·배당금을 기입한다. 동일한 이자·배당금에 관한 수입과 지출의 합계는 당연히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정에는 정의상 잔고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래항목계정(거래카테고리계정이나 단순히 거래계정이라 부르기도 한다)은 제도부문계정과 활동계정처럼 거래주체와 활동패턴을 기초로 구성하는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명목적인 계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계정은 스크린계정이나 더미 계정이라 불린다.

#### 나. 거래의 계정기입

거래와 같은 개념의 플로우와 거래의 시작이자 그 결과인 스톡을 국민계정에 기록하는 기본원칙은 기본적으로 개별기업 회계에 입각해서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국민경제계산, 특히 개정 SNA는 아래와 같이 독특한 계정기록원칙이 정해져 있다. 국민경제계산에 정해진 계정기입 원칙을 정리해 보면 표 1-6 「SNA에 있어서 거래의 계정기입」과 같다. 이 표는 현행 SNA라기 보다 개정 SNA의 계정시스템을 상정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모든 계정은 플로우계정과 스톡계정으로 분류한다. 계정이 다수의 소계정으로 구성된 계정계열로 전개된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기술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각 계정의 우측(행렬표시의 경우는 행의 성분)과 좌측(행렬표시의 경우는 열의 성분)에 어떤 거래가 기록되는지를 3항목으로 나누어 나타낸다. 표 1-6에서 「거래주체의」라는 것은 사실상 「거래주체인 제도부문의」라는 의미이다.

(a) 균형항목은 플로우계정의 좌측에 기입되는 것에 반해 스톡계정의 우측에 나타난다.

(b) 모든 계정이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듯이 모든 거래(균형 항목 포함)는 위에 기술한 3가지 형태의 계정(제도부문계정, 활동계정, 거래항목

계정)상호간의 그것으로 기록한다.

(c) 거래항목계정의 우측과 좌측의 기입은 위의 (b)의 원칙에서 그 거래에 관해서 상대계정의 각각 좌측과 우측(반대측)의 기입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계정은 원리상 제도부문계정이나 활동계정인 것이다. 따라서, 거래항목 계정의 기입방법은 상대계정의 기입에 근거하여 자연히 정한다.

표 1-6 SNA에 의한 거래의 계정기입

		좌측 : 행렬표시에 의한 열성분	우측 : 행렬표시에 의한 행성분
플로우계 정	경상계정	사용(uses):거래주체의 순자산감소 균형 항목	원천(resources):거래주체의 순자산증가
	축적계정	거래주체의 자산증가(+)/감소(-) 균형 항목	거래주체의 부채·순자산 증가(+)/감소(-)
(기초대차대조표) 스톡계정 (기말대차대조표)		거래주체의 자산잔고(기초/기말)	거래주체의 부채·순자산 잔고(기초/기말) 균형 항목(기초/기말)

#### 다. 계정시스템의 전개와 표시-계정행렬형식과 계정연결형식

##### (1) 계정시스템의 전개

공적기관 및 연구자에 의해 제시된 국민계정시스템은 개정 SNA를 포함해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들의 구조는 모두 상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 계정시스템을 모두 축약·통합하면 앞 장 제2절에서 설명한 기본 3계정에 귀착시킬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용 가능한 모든 계정시스템은 이 기본 3계정을 적당한 방법으로 전개하여 얻을 수 있다.

계정시스템의 구체적 전개에 대해서는 제2장 이하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전개 시에 유의해야할 구체적 사항을 알아보기로 하자.

① 활동계정의 전개 : 생산계정, 소득의 분배·사용계정과 축적계정은 통계상·분석상의 목적에 따라 각각 몇 개의 소계정(subaccount)으로 전개된다. 예를 들어 소득의 분배·사용계정은 소득의 발생계정, 소득의 제1차 분배계정, 소득의 제2차 분배계정, 현물소득의 재분배계정 및 소득의 사용계정으로 전개된다.

② 제도부문계정의 도입 : 계정시스템이 단순히 이론상뿐만 아니라 현실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제도부문계정을 도입해야 한다. 가장 간단히 표시하더라도 국내제도부문과 해외 계정이 없으면 안 된다.

③ 거래항목계정의 설정 : 실제로 작성한 계정시스템에는 몇 가지 거래항목계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생산계정에 관련한 거래항목을 예로 들면, 국내산출,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금, 중간소비, 재화·서비스의 수입 등이다.

## (2) 계정시스템의 표시

### (a) 계정행렬형식

계정시스템을 행렬형식에 의해 표시하는 방법은 앞 장 제2절에서 설명했다. 이 표시형식이 가진 이점은 ①각 국민계정 내용의 상호관계가 포괄적·정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②시각적으로 명확한 형태로 계정의 양변 균등을 확보하고 있어 거시경제분석(특히 거시경제모델 분석)과의 관련성이 뛰어나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이 표시형식의 약점은 계정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상 전개되는 경우에는 계정행렬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를 넘어 스페이스(space)를 잃어버리는 점이다.

### (b) 계정연결형식

이것은 개정SNA가 계정시스템의 표시형식으로 계정행렬 대신 채용하고 있는 연결형 계정이라 부르는 방식이다. 「계정연결형식」의 간단한 실례는 표 1-9 「해외부문을 포함한 3계정시스템의 계정연결방식에 의한 표시(1994년)」에 나타나 있다. 이 표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요점 2가지를 서술한다.

① 균형항목에 의한 계정의 연결 : 생산계정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 생산계정은 표 1-9의 선두에 오는 계정이지만 원천측과 사용측의 기입란이 표

의 중앙에 있는 거래항목란을 사이에 두고, 각각 우측과 좌측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계정의 균형 항목인 순부가가치(402조9765억엔)는 좌측의 점선 아래에 나타난다. 균형 항목의 숫자는 그대로 다음 계정인 소득의 분배·사용계정의 원천측의 최초 항목에 이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방식을 반복함에 따라 모든 계정이 계열화된다.

② 생산물(재화·서비스)계정의 열배치 : 계정연결형식에 의한 계정시스템 표시의 최대 특징은 생산물(재화·서비스)의 원천과 사용을 나타내는 계정에서 표의 좌우에 한 쌍의 열로서 배치하는 것이다. 개정 SNA는 한 쌍의 생산물 칸 중, 우측에는 생산물의 사용을 표시하고, 좌측에는 원천을 나타낸 숫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 1-9에 있어서 이 계정의 원천과 사용의 각각 합계액(945조4425억엔)이 일치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 라. 제도부문으로서의 해외부문을 포함한 계정시스템

이미 본 표 1-5의 3계정행렬을 공통기점으로 하여 이것과 다른 유형의 국민계정을 도입하여 계정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전개해보자. 경제순환의 개념기구를 이론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일본의 국민경제계산 실적치를 사용하기로 하고 표 1-5의 3계정행렬에 제도부문계정을 도입하기로 한다. 제도부문은 크게 국내제도부문과 해외부문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국내제도부문(domestic sectors)」은 경우에 따라 「국내부문」, 「국민경제(the national economy)」 또는 「일국경제(the total economy)」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제도부문을 도입한 간단한 계정시스템을 계정행렬 방식으로 나타내면 표 1-7 「해외부문을 포함한 3계정행렬」과 같다.

여기서 사용되는 기호 중에는 종전의 기호도 포함되어 있는데, 모든 기호는 새롭게 정의한다. (해외부문의 계정은 현행 SNA에서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분할되어 있다. 이 「자본계정」의 명칭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장은 물론 이하의 장에서 개정 SNA의 방침에 따라 모두 「축적계정」으로 대체하였다.)





점에서 행해졌다. 이제 이 계정 시스템의 실적치(1994년)표시를, 계정행렬 형식(표 1-8)과 계정연결형식(표 1-9)에 따라 행하기로 한다. 우선 표 1-8 「해외를 포함한 3계정행렬(1994년)」은 이전의 표 1-7과 완전히 같은 구조이다. 또, 표 1-9 「해외부문을 포함한 계정시스템의 계정연결형식에 의한 표시(1994년)」는 내용은 표 1-8과 거의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표 1-8보다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 표 1-9의 기록을 읽는데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 3가지이다.

(a) 여기서는 국내산출에서 중간투입과 고정자본소모의 합계를 빼는 것에 의해 순부가가치를 산출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b) 해외부문은 표 1-8에서 국민경상잉여(B)만 균형항목으로 보여지는데 표 1-9의 경우는 균형항목이 2개(수출입균형을 포함)가 나타나 있다.

(c) 표 1-8에서 표기하고 있는 2개의 집계치, 즉 「국내부문간의 소득분배 총액(T)」과 「국내부문간의 금융적 청구권플로우( $\Delta F_{11}$ )」가 표 1-9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표 1-9에 표기하고 있는 숫자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국내 부문간의 소득분배총액(764조 6052억엔)  
 =국민경제의 소득분배수취총액(781조 5235억엔)  
 -해외의 소득분배지불총액(16조 9183억엔)  
 국내 부문간의 금융적 청구권플로우(107조 9407억엔)  
 =국민경제의 금융자산증가(121조 8506억엔)  
 -해외의 부채증가(13조 9099억엔)

표 1-8 해외부문을 포함한 3계정행렬(1994년)

		(단위 : 10억엔)				
		1	2	3	4	5
경상계정	국민경제	1	431,944.4	331,597.7	44,449.2	137,451.2
	소득의 분배·사용계정	2	478,556.3	764,605.2	3,943.6	-75,579.8
	해외부문	3	34,426.3	535.9		
축적계정	국민경제	4	515.5	74,786.5	-13,430.6	107,940.7
	해외부문	5				13,909.7

(주) 본 표 및 이하의 표의 집계기간 불인치는, 원자료에 포함된 사사오입의 오차에서 기인한 것이다.  
(자료)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계산년보(平成 8년판)』, 1996.

표 1-9 해외부문을 포함한 3계정시스템의 계정연결형식에 의한 표시(1994년)

		(단위 : 10억엔)						
		사 용 (자산의 변동)		원 천 (부채·순자산의 변동)				
계 정	생 산 물	해 외	국 민 경 제	거 래 항 목 및 균 형 항 목	국 민 경 제	해 외	생 산 물	계 정
생 산 계 정	910,500.6		431,944.4	국내산출	910,500.6		431,944.4	생 산 계 정
	34,426.3	44,449.2	75,579.8	중간투입 고정자본 소모 제화·서비스의 수입 제화·서비스의 수출		34,426.3	75,579.8	
소득의 분배· 사용계정		-10,022.9	402,976.5	총 부가가치 수출임균형	402,976.5	-10,022.9	44,449.2	소득의 분배· 사용계정
		16,766.7	580,726.6	요소소득, 순간집세	584,670.0	12,823.1		
		151.6	197,389.4	경상이전	196,853.5	687.5		
		-13,430.6	331,597.7	취종소비				
			74,786.5	순저축, 국민경상잉여	74,786.5	-13,430.6		
축 적 계 정		710.4	137,451.2	국내총자본형성			137,451.2	축 적 계 정
	515.5		-75,579.8	고정자본소모(-) 자본이전(순수취) 통계상의 불일치	-231.1	231.1	-75,579.8	
			121,850.6	금융자산·부채(전종류)	108,651.1	13,909.9		

(자료)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계산년보(平成 8년판)』, 1996

## 제 2 장 국민계정 시스템의 전개와 표시

### 1. 플로우계정 전개의 실제

#### 가. 개정 SNA의 해외부문과 소득의 분배·사용

국민계정 시스템을 계속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SNA방식인 일본의 국민경제계산 방식에 개정 SNA 방식을 부분 도입하는 형태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장에서는 개정 SNA 계정구조의 특징인 해외부문과 소득의 분배·사용활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해외부문은 국내제도부문을 보완하는 하나의 제도부문이라고 보는 것이 현행 SNA가 지금까지 채용하고 있는 기본적 입장이다. 해외부문에 있어서 수입은 경상계정의 원천항목이며 수출은 그 사용이 된다. 개정 SNA에서는 해외부문을 국내제도부문과 대치되는 제도부문으로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부문과 병렬적 관계로 취급하는 사고방식이 예전 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의 해외부문 계정은 경상적 거래를 기록하는 해외 경상계정과 비경상적 거래를 기록하는 해외 자본계정의 두 계정을 조합하여, 전체로서 국내부문의 계정기록을 보완해 왔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개정 SNA에서는 해외부문의 거래기록이 전체적 의미로 국내부문의 계정기록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부문의 경상적 거래와 비경상적 거래는 각각 국내부문의 경상적 계정 기록과 국내부문의 축적계정 기록을 개별적으로 보완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로 해외부문의 비경상적 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의 명칭이 「자본계정」이 아닌 「축적계정」이 된 것이다.

(2) 현행 SNA의 소비계정에 해당하는 것을 개정 SNA는 「소득의 분배·사용계정(distribution and use of income account)」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명칭의 변경뿐만 아니라, 소득의 발생·분배·사용의 프로세스에 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제

4장 제1절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생산계정에서 산출한 부가가치를 소비와 축적이라는 최종 용도에 할당하기까지는 여러가지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는 분배 과정(활동)이 존재한다. 이 분배 과정을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a) 부가가치 총액이 피용자보수, 간접세(생산에 부과하는 세)등으로 분할 지불하는 과정.

(b) 그와 같은 형태를 갖고 발생한 분배 항목에 이자, 배당금, 임대료와 같은 재산소득 항목을 포함한 소득(이 단계의 소득을 제1차 소득이라 한다)으로 분배하는 과정.

(c) 그것을 조세, 사회보장급부 등의 경상이전으로 재분배하는 과정.

(d)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서술한 분배 과정을 거쳐 각 제도부문이 획득한 가치분 소득의 일부를 최종비용에 할당하고 나머지를 저축하는 과정.

#### 나. 국민계정시스템의 실제

개정 SNA는 위에서 살펴본 (a)에서 (d)까지의 4단계로 표시되는 각 과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어떤 계정을 설정해야 할까? (a)와 (b)를 기록하는 계정은 「소득의 제1차 분배계정(primary distribution of income accounts)」이라 하고, (c)의 과정은 「소득의 제2차 분배계정(secondary distribution of income accounts)」,

표 2-1 계정 시스템의 전개

국민경제, 해외부문	경상계정	생 산 계 정	
		소득의 분배· 사용 계정	소득의 제1차 분배계정
			소득의 제2차 분배계정
	소득의 사용계정		
	축적계정	축 적 계 정	자 본 계 정
금 융 계 정			

끝으로 (d)의 과정을 기록하는 계정은 「소득의 사용계정(use of income accounts)」이라 한다. 소득의 제1차 분배결과 각 제도부분이 얻은 소득, 다시 말해 소득의 제1차 분배계정의 균형항목이 되는 소득은 「제1차 소득(primary income)균형」이라고 명시한다.

이상 서술한 것을 고려해 살펴본다면, 국민계정 시스템은 표 1-7 ~ 표 1-9에 나타난 것을 기초로 전개해야 하고, 이렇게 전개한 계정 시스템은 표 2-1 「계정시스템의 전개」와 같이 된다.

일본의 현행 국민경제계산을 표 2-1의 계정시스템을 이용해 표시한 것이 표 2-2 「일본경제의 플로우계정(I)(1994년)」이다. 표 2-2는 계정연결형식에 따른 표시이다.

#### 다. 국내 생산활동 부문

지금까지 국민계정시스템의 전개는 국민경제를 하나의 부문으로 보고 설명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국민경제의 부문을 분할한 플로우 계정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자. 국민경제의 부문 분할은 현재 활동부문 분할과 국내 제도부문 분할의 2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전자는 생산계정에 적용하고, 후자는 나머지 계정, 즉 소득의 분배·사용계정과 축적계정에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국내 제도부문의 분할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편, 국내 활동부문의 분할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경제계산에서 채용하고 있는 방식을 따르기로 한다. 이 활동부문 분할은 표 2-3과 같으나,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첫째, 전기·가스·수도업과 서비스업은 산업에도 포함되고, 동시에 정부서비스 생산자의 활동에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정부서비스 생산자인 전기·가스·수도업과 서비스업의 경우는 본래 의미의 시장생산자가 아니므로 영업잉여를 계상하지 않고, 실제 비용의 합계로 평가한 재화·서비스(전기·가스·수도업 및 서비스업의 산출물로서)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유료로 판매한 나머지를 일반정부에 의해 귀속적으로 소비한다.

표 2-2 일본경제의 플로우계정 ( I ) (1994년도)

(단위:10억엔)

계 정	사 용 (자산의 변동)			원 천 (부채·순자산의 변동)			계 정
	생 산 물	해 외	국민경제	국민경제	해 외	생 산 물	
생산계정	910,500.6		431,944.4	910,500.6		431,944.4	생산계정
	34,426.3	44,449.2	75,579.8		34,426.3	75,579.8	
소득의제1차 분 배 계 정		-10,022.9	402,976.5	402,976.5	-10,022.9		소득의제1차 분 배 계 정
		442.9	268,043.2	268,164.9	321.2		
			34,534.2	34,534.2			
		16,323.8	177,750.1	181,571.9	12,501.9		
		-13,966.5	406,920.1	406,920.1	-13,966.5		
소득의제2차 분 배 계 정		151.6	197,389.4	196,853.5	687.5		소득의제2차 분 배 계 정
		-13,430.6	406,384.2	406,384.2	-13,430.6		
소득의사용 계 정			331,597.7			331,597.7	소득의사용계정
자본계정		-13,430.6	74,786.5	74,786.5	-13,430.6		자본계정
			137,451.2			137,451.2	
			137,401.9			137,401.9	
			49.3			49.3	
			-75,579.8			-75,579.8	
금융계정	515.5						금융계정
		-13,199.5	13,199.5	13,199.5	-13,199.5		
		710.4	121,850.6	108,651.1	13,909.9		

(자료)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계산연보(平成 8년판)』, 1996

표 2-3 국내 생산활동부문과 산출액(1994년)

(단위 : 10억엔)

생 산 활 동 의 종 류	생산자가격 표시의 산출액
산 업	838,427.2
농림수산업	17,530.5
광업	1,951.4
제조업	314,202.2
건설업	100,286.2
전기·가스·수도업	21,602.4
도·소매업	91,376.7
금융·보험업	35,974.6
부동산업	67,843.7
운수·통신업	46,572.8
서비스업	141,086.8
정부서비스업	54,856.0
전기·가스·수도업	3,146.4
서비스업	19,892.5
공 무	31,817.2
대가계면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	16,282.4
서비스업	16,282.4
가설산업	935.0
수입세	2,675.9
기 타	-1,740.9
귀속이자	0.0
합 계(국내생산)	910,500.7

(자료)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계산년보(平成 8년판)』, 1996, 156p.

둘째, 표 2-3에서는 국내 생산활동을 행하는 주체로서 가설산업이 포함되어 있다. 가설산업을 구성하는 것은 수입세, 기타, 귀속이자이다. 이들이 국내생산활동의 기록·평가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제3장 제3절에 설명되어 있다. 가설산업의 활동을 어떻게 기록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표 2-4부터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수

입세, 기타, 귀속이자)을 가설산업의 일종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시장가격의 국내최종 생산물(국내 부가가치)의 집계치를 산출해 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라. 플로우 국민계정시스템의 부문별 표시

지금까지 나타난 국민계정시스템의 표시에 실제 생산활동부문 분할과 제도부문 분할을 도입해 보자. 그 결과를 일본 국민경제계산에서 얻은 실적을 활용하여 나타내면 그것은 표 2-4 「일본경제의 플로우계정 (II)(1994년)」과 같다. 표 2-4에서 명확한 점은 생산계정에 있어서는 생산활동부문 분할을 채용하고, 소득의 분배·사용계정에서는 「주요」 제도부문 분할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요」라고 한 것은, 소득의 제1차 분배계정의 원천·사용의 양측에 일부 생산부문 분할을 삽입하는 형태로 계정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2가지 종류의 부문분할을 병용하는 계정시스템을 표 2-4와 같은 계정연결 형식이 아닌 계정행렬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이 책은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이와 같은 형식의 이용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 2. 국민경제의 스톡 표시

### 가. 국민대차대조표

지금까지는 경제순환을 구성하는 스톡과 플로우 중에서 플로우만을 살펴 보았고 그 표시방법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경제순환 표시를 얻기 위해서는 플로우를 구성하는 계정 이외에 스톡을 기록하는 계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스톡계정의 기본이 되는 것이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이다. 그러면 일본의 SNA에 따른 국민대차대조표 구성을 설명해 보도록 하자.(SNA의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스톡표시에 대한 내용, 용어 등이 변경되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제4장 제3절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현행 SNA의 스톡 표시법을 채용한다.)



표2-4 인본경제의 출몰부계정(II) (1994년)

(단위 : 10억 원)

계정	합계	생산품	해외	사 용 (자산의 변동)							원							해외	생산품	합계	계정
				국민경제	금융기관	기업	정부	가계	비영기업	금융기관	기업	정부	가계	비영기업	금융기관	기업	정부				
생산계정	44182	344383	44182	4024955	-213820	9350	91630	348991	3794814	3294814	348991	91630	9350	-213820	422065	100229	44182	44182	44182	44182	
소통의제자본배정	381981	345342	4429	388032	00	00	90251	347594	224287	224287	347594	224287	00	00	345342	381981	381981	345342	381981	381981	
소통의제자본배정	1975410	1975410	1316	1973894	169666	25118	623867	87952	17181	17181	87952	17181	623867	87952	17181	1975410	1975410	1975410	1975410	1975410	
소통의제자본배정	3929536	3929536	-13406	4063842	323094	47655	704489	-1737	81341	81341	704489	-1737	81341	4063842	3929536	3929536	3929536	3929536	3929536	3929536	
소통의제자본배정	3315977	3315977	-134906	3450883	2818815	39042	458120	00	00	00	458120	00	39042	3315977	3315977	3315977	3315977	3315977	3315977	3315977	
자본계정	-755998	-755998	00	-755998	-206224	-12156	-29738	-16956	-48723	-81383	-81383	-29738	-16956	-48723	-81383	-755998	-755998	-755998	-755998	-755998	
금융계정	1225610	1225610	00	1218506	754076	17744	231972	486826	77888	77888	486826	77888	231972	486826	77888	1225610	1225610	1225610	1225610	1225610	

(자료) 경제기획원 「국민경제계산연보(年報 8년 권)」, 1996.

국민대차대조표는 한 경제주체의 대차대조표를 모아서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제도부문으로 확장해 작성하고 그것들을 통합한 것이다. 그 중 가장 간단한 형태는 표 2-5 「국민대차대조표」와 같다. 표 2-5의 우측(대변)은 국내부문이 보유하는 자산의 조달상태를 나타내고, 좌측(차변)은 각 부문의 자산보유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보유자산은 유형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성되고 그것의 합계가 국민자산을 형성한다. 이 항목 이외에 이론적으로는 비금융 무형자산(non-financial intangible assets) (영업권, 특허권등)이 국민자산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객관적 평가가 곤란한 이유로 여기서는 제외하고 있다. 유형자산(R)은 재생산가능 유형자산과 재생산불가능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재생산가능 유형자산에서의 재고는 제품, 반제품, 제작중인 물건 등의 기말재고 잔고로 구성한다. 또, 순고정자산은 1 경제기간(1년)이상의 내구기간을 갖는 자산(건물, 기계 등)이고, 자본소모분을 제외한 순액(구체적으로는 표 2-5 국민대차대조표 자산의 재취득가격)으로 평가한다. 재생산불가능 유형자산은 토지, 삼림, 지하자원 및 어장(漁場)으로 구성한다. [주의. 가계가 보유하는 가재(영구소비재라 한다)는 일단 개인 최종소비지출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여기서 말하는 유형자산에서 제외한다]

표 2-5 국민대차대조표

차 변	대 변
유형자산(R) 재생산 가능 유형자산 재고 순고정자산 재생산 불가능 유형자산 금융자산(F)	부 채(L) 순자산(N)
국민자산의 사용	국민자산의 원천

금융자산(F)과 부채(L)는 국내부문이 보유하는 채권과 채무의 총액으로 주요분류는 아래와 같다. (경제기획청 경제연구소편 [1996], 제2부 스톡편을 참조). (1) 현금통화, (2) 통화성예금, (3) 기타 예금, (4) 단기 채권, (5) 장기 채권, (6) 주식, (7) 일은(日銀) 대출금, (8) 콜·매입어음·매도어음, (9)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10) 시중대출금·차입금, (11) 정부대출금·차입금, (12) 생명보험, (13) 일반정부 예산 (14) 채권·채무, (15) 기타 금융자산·부채.

#### 나. 일본의 국민대차대조표

국민대차대조표의 차변(또는 대변) 합계를 국민자산이라 하지만 여기에는 실물스톡과 금융스톡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국민경제가 보유하는 「실물」의 축적을 알기 위해서는 국민경제에서 「돈」의 부분을 제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얻은 집계치를 국부(national wealth)라 하며 그것은 유형자산과 대외순채권의 합으로 정의된다. 대외순채권은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공제한 것이지만, 국내부문의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공제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즉 국부(N) = 유형자산(R) + 대외순채권(F-L) 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실제 국민대차대조표와 국부(순자산)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일본의 국민대차대조표를 보자. 표 2-6 「일본의 국민대차대조표(1993년 말, 1994년 말)」가 바로 그것이다. 표 2-6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a) 일본의 총 자산을 실물자산(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으로 이등분 할 때, 후자의 평가액은 전자의 그것을 다소 상회한다. 그 차이는 1993년 말에는 1대 1.222 이었으며, 1994년 말에는 1대 1.278까지 확대되었다.

(b) 유형자산 전체의 평가액 중에서 과반(약60%)을 점하는 것은 재생산 불가능 자산이지만, 대부분(96%)은 토지(표 2-6에 직접 표시하고 있지 않지만)이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유형자산을 재생산가능 자산만으로 한정한다면 유형자산 총액은 금융자산 총액의 31%정도가 된다.

(c) 금융자산 총액은 부채총액을 초과하는데 이 차액은 대외순자산을 나타내고 있다.(72조 0764억엔 (1993년 말), 73조 7202억엔 (1994년 말)) 그

표 2-6 일본의 국민대차대조표(1993년말, 1994년말)

(단위 : 10억 엔)

차	변			대			변	
	1993년(a)	1994년(b)	전년대비 (b)/(a)	항 목	1993년(a)	1994년(b)	전년대비 (b)/(a)	
유형 자산	3,151,583.4	3,141,129.7	0.997	부채 (주식용 포함)	3,779,913.3	3,941,828.9	1.043	
채 고	75,689.8	74,504.7	0.984	현금 통화	39,586.0	40,633.0	1.029	
순 고정자산	1,144,429.1	1,175,086.1	1.027	통화성 예금	124,028.5	129,269.8	1.042	
재생산물가능유형자산	1,931,464.5	1,891,538.9	0.979	기타 예금	783,645.2	810,021.1	1.034	
금융 자산	3,851,989.7	4,015,549.1	1.042	단기 예금	23,772.0	24,845.0	1.045	
현금 통화	39,506.0	40,633.0	1.029	장기 예금	479,012.6	498,105.7	1.040	
통화성 예금	124,028.5	129,269.8	1.042	일은차입금	6,070.1	5,991.7	0.987	
기타 예금	781,644.7	808,482.7	1.034	콜·매도어음	63,186.8	57,951.7	0.917	
단기 채권	23,671.0	24,776.2	1.047	상업어음	10,952.6	9,876.7	0.902	
장기 채권	436,207.9	454,227.8	1.041	시중차입금	720,282.3	720,611.6	1.000	
주식	407,626.8	458,444.7	1.125	정부차입금	289,877.7	313,518.9	1.082	
일은 대출금	6,070.1	5,991.7	0.987	생명보험	248,747.4	268,852.7	1.081	
콜·매입어음	63,186.8	57,951.7	0.917	일반정부	5,565.4	3,536.7	0.635	
상업어음	10,952.6	9,876.7	0.902	매입채무	255,383.6	265,403.1	1.039	
시중대출금	720,282.3	720,611.6	1.000	기타부채	304,153.8	310,588.5	1.021	
정부대출금	289,877.7	313,518.9	1.082	주식	425,729.3	482,622.7	1.134	
생명보험	248,747.4	268,852.7	1.081	순자산(固富)	3,223,656.8	3,214,849.9	0.997	
일반정부	5,565.4	3,536.7	0.635					
매상채권	255,383.6	265,403.1	1.039					
기타 금융자산	439,238.9	453,971.8	1.034					
국민자산의 사용	7,003,573.1	7,153,678.8	1.022	국민자산의 원천	7,003,573.1	7,156,678.8	1.022	

(자료) 경제기획원 「국민경제계산년보(平成 8년판)」, 1996, 331p.

크기는 표 2-6에서 1년 동안 2.3%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d) 1993년 말과 1994년 말을 비교하면 순고정자산이 크게(2.7%)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유형자산과 순자산은 함께 0.3%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재생산불가능 자산(토지 등)의 평가가 크게 (2.1%) 하락했기 때문이다.

#### 다. 제도부문별 대차대조표

여기에서 제도부문별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보자. 이와 같이 제도부문별의 대차대조표를 정리하여 표시한 것이 표 2-7 「일본의 제도부문별 대차대조표(1994년 말)」이다. 이 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① 해외부문을 독립된 제도부문으로 보아 대차대조표에 포함한다는 것과 ② 금융자산·부채차액이라는 칸을 표시한다는 것이다. 해외부문의 금융자산(1994년 말 : 185조 6724억엔)은 일본의 입장에서 본 대외부채 잔고이다. 그것은 외국인에 의한 일본에의 증권투자잔고, 일본의 경제주체가 외국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수입연체지불신용, 차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해외부문의 부채(259조 3926억엔)는 일본의 입장에서 본 대외금융자산 잔고이고, 이를 구성하는 것은 외화준비, 대외증권투자, 수출연체지불신용, 대외차관(일본에서 제공한), 국제기관으로 향한 출자금 등의 잔고이다.

표 2-7의 아래쪽에 표시된 제도부문별 금융자산·부채차액은 해당 시점(1994년 말)에 대여부문(자금잉여부문)인지, 또는 차입부문(자금부족부문)인지를 나타낸다. 이 표를 통해 해외를 포함한 6개 제도부문 중에서 자금잉여부문은 가계(개인 기업포함)와 대 가계민간 비영리단체 뿐이고, 나머지 4부문(해외포함)은 모두 자금부족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금잉여 합계와 자금부족 합계는 736조 7125억 엔으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스톡·플로우의 통합

#### 가. 스톡계정·플로우계정·조정계정

표 2-7 일본의 제도부문별 대차대조표 (1994년말)

(단위 : 10억엔)

제도부문 자산항목	비금융법인기업		금융기관		일반정부		대가계민간 비영리단체		가계(개인기업포함)		해 외	
	차 변	대 변	차 변	대 변	차 변	대 변	차 변	대 변	차 변	대 변	차 변	대 변
(1) 유형자산	1,097,669.5		77,625.7		461,674.5		51,394.2		1,452,765.9			
재생신가능자산	588,499.5		20,819.8		342,459.7		33,532.2		264,279.7			
채 고	65,437.6		0.0		0.0		0.0		9,067.2			
순고성자산	523,061.9		20,819.8		342,459.7		33,532.2		255,212.5			
재생신불가능자산	509,170.0		56,805.9		119,214.8		17,862.0		1,188,486.2			
(2) 금융자산	728,163.2		1,804,061.8		356,490.0		38,491.8		1,088,342.3		185,672.4	
(3) 부채(주식포함)		1,330,867.6		1,827,063.4		393,776.3		28,500.3		361,621.3		259,392.6
(4) 순자산		494,966.1		54,624.1		424,388.2		61,385.7		2,179,486.9		-73,720.2
계	1,825,832.7	1,825,832.7	1,881,687.5	1,881,687.5	818,164.5	818,164.5	89,886.0	89,886.0	2,541,108.2	2,541,108.2	185,672.4	185,672.4
금융자산·부채차액 (2)-(3)-(4)-(1))	-602,704.4		-23,001.6		-37,286.3		9,991.5		726,721.0		-73,720.2	

(자료)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 계산년도(평성 8년판)』, 1996.

스톡과 플로우의 일반적 관계는 제1장 제1절의 개념도(도 1-1)에서 명확히 설명한 바 있지만, 간단히 생각하면, 기초스톡(기초대차대조표)과 기말스톡(기말대차대조표)은 국내부문과 해외부문의 축적계정 기록에 의하여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국민대차대조표의 각 항목은 본래 경제활동의 성과를 축적한 경우에 변동하지만, 자산과 부채의 단순한 재평가, 새로운 자원의 발견, 전쟁·재해에 의한 파괴 등에 의해서도 변동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표 2-8 다른 시점의 대차대조표

(단위:10억엔)

	(1) 1993년 말	(2) 순 플 로	(3) 조 정	(4) 1994년 말 (=(1)+(2)+(3))
유형자산	$R^0$ 3,151,583.4	$\Delta R$ 61,871.6	$r$ -72,325.3	$R^1$ 3,141,129.7
금융자산	$F^0$ 3,851,989.7	$\Delta F$ 121,850.6	$f$ 41,708.8	$F^1$ 4,015,549.1
계	7,003,573.1	183,722.2	-30,616.5	7,156,678.8
부채	$L^0$ 3,779,913.3	$\Delta L$ 108,651.1	$l$ 53,264.5	$L^1$ 3,941,828.9
순자산	$N^0$ 3,223,659.8	$\Delta N$ 75,071.1	$n$ -83,881.0	$N^1$ 3,214,849.9
계	7,003,573.1	183,722.2	-30,616.5	7,153,678.8

(자료)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계산연보(平成 8년판)』, 1996.

표 2-9 다른 시점의 해외부문 대차대조표

(단위:10억엔)

	(1) 1993년말	(2) 순 플 로	(3) 조 정	(4)1994년 말 (=(1)+(2)+(3))
유형자산	$R_r^0$	$\Delta R_r$	$r_r$	$R_r^1$
금융자산	$F_r^0$ 185,267.4	$\Delta F_r$ 710.4	$f_r$ -305.4	$F_r^1$ 185,672.4
계	185,267.4	710.4	-305.4	185,672.4
부 채	$L_r^0$ 257,343.8	$\Delta L_r$ 13,909.9	$l_r$ -11,861.1	$L_r^1$ 259,392.6
순자산	$N_r^0$ -72,076.4	$\Delta N_r$ -13,199.5	$n_r$ 11,555.7	$N_r^1$ -73,720.2
계	185,267.4	710.4	-305.4	185,672.4

(자료)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계산연보(平成 8년판)』, 1996.

이들 조정항목은 정확히 플로우의 한 종류로서 다루어야 하지만 (제4장 제2절 참조) 편의상 스톡과 플로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조정계정에 기록한다.

기초 스톡과 기말 스톡 사이에서 보이는 관계를 실제의 계수를 사용해 나타낸 것이 표 2-8 「다른 시점의 국민대차대조표」와 표 2-9 「다른 시점의 해외부문 대차대조표」이다. 이 표들은 국민대차대조표와 해외부문의 일본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1993년 말과 1994년 말을 비교해서 나타낸 것이다. 표 왼쪽은 1993년 말의 대차대조표를 기재하고 있고, 오른쪽은 1994년 말의 대차대조표를 기재하고 있다. 두 번째 칸은 1994년 중에 발생한 플로우를 기입하고, 세 번째 칸은 자산의 재평가 등에 따라 발생하는 조정항목을 표시하고 있다. 표의 기호를 정리해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R : 유형자산	r : 유형자산 조정액	F : 금융자산
f : 금융자산 조정액	L : 부채	l : 부채 조정액
N : 순자산	n : 순자산 조정액	

아래 첨자 r을 붙인 기호(  $R_r$  등)는 해외부문의 자산·부채항목을 나타내고, 위 첨자 0, 1은 각각 전기 말과 금기 말의 잔고를 나타낸다.  $\Delta$ 를 붙인 기호(  $\Delta R$  등)는 그 기간 중에 축적활동에 의해 발생한 증가분을 의미한다. 해외부문의 대차대조표는 표 2-9에 나타나 있는데, 해외가 일본을 상대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표시이며 유형자산(  $R_r$ )은 기재하지 않았다. 일본이 해외에 대해 채권국이기 때문에 해외의 순자산은(  $N_r$ ) 마이너스 값을 취하고 있다. 해외는 일본에 대해 금융자산이 1994년 중에 증가하였지만(4050억엔) 부채는 더 증가해서(2조 0488억엔) 1994년 말의 해외부문의 일본에 대한 채무는 73조 7202억 엔이 되었다.

#### 나. 스톡계정과 플로우계정의 통합표시

1994년의 일본 경제순환을 스톡과 플로우 양면을 통합적으로 표시한 것을 계정행렬표시와 계정연결표시의 2가지 표기법으로 나타내 보자. 우선, 표 2-10 「스톡·플로우 통합계정행렬(I)」은 표 1-7 「해외부문을 포함한



표 2 - 10 스탁·플로우 통합계정행렬(I)

		1	2	3	4	5	6	7	8	9	10	11
스톡계정	기초대차대조표	1					$R^0$					
	유형자산·순자산	2					$F^0$	$F_r^0$				
플로계정	경상계정	3			P	C	E	I				
		4			Y	T	$Y_1$	-D				
	5											
	6											
	7											
축적계정	국 민 경 제	6	$N^0$	$L^0$	$S_D$	S	$\Delta F_{11}$	$\Delta F_{12} + T$	n	i	$N^1$	$L^1$
	해 외 부 문	7	$N_r^0$	$L_r^0$			$\Delta F_{21}$		$n_r$	$I_r$	$N_r^1$	$L_r^1$
조 정 계 정	유형자산·순자산	8					r					
	금융자산·부채	9					f	$f_r$				
스톡계정	기말대차대조표	10					$R^1$					
	유형자산·순자산	11					$F^1$	$F_r^1$				

(자료)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 계산년도(평정 8년판)』, 1996.

표 2-11 일본의 스독·플로우 통합계정행렬(1993년 말 ~ 1994년 말)

(단위 : 10억엔)

		1	2	3	4	5	6	7	8	9	10	11	
스독 계정	기초 대차대조표	1					3,151,583.4						
		2					3,851,989.7	185,267.4					
플로 계정	국민 경제	3		431,944.4	331,597.7	44,449.2	137,451.2						
		4		478,556.3	764,605.2	3,943.6	-75,579.8						
	해 외 부 문	5			34,426.3	535.9							
		6	3,223,659.8	3,779,913.3	515.5	74,786.5		107,940.7	710.4+(-231.1)	-83,881.0	53,264.5	3,214,849.9	3,941,828.9
	조 정 계 정	해 외 부 문	7	-72,076.4	257,343.8			13,909.7		11,555.7	-11,861.1	-73,720.2	259,392.6
		유형자산·순자산	8					-72,325.3					
스독 계정	기말 대차대조표	9					41,708.8	-305.4					
		10					3,141,129.7						
	11					41,129,549	185,672.4						

(자료)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계산년도(명성 8년판)』, 1996.

3계정행렬」과 표 2-8 「다른 시점의 국민대차대조표」 및 표 2-9 「다른 시점의 해외부문 대차대조표」를 행렬형식을 사용하여 통합한 것이다. 또 표 2-11은 표 2-10의 통합표시를 1993년 말~1994년 말의 일본경제 실적치(명목치)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는 표 1-8 「해외부문을 포함한 계정행렬(1994년)」의 숫자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표 2-10과 표 2-11의 제3계정부터 제9계정까지는 플로우계정이고, 모든 플로우량은 굵은 선 안에 표시하였다. 단, 전항에서 설명한 조정항목과 그것을 기록하는 조정계정을 모두 플로우로서 취급하였다. 한편, 기초와 기말 스톡량은 굵은 선 밖에 나타내었다. 11개 계정 각각에 대해 수지균등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특히 기초와 기말 스톡량 사이에 성립하는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것들의 관계는 표 2-11의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begin{aligned}
 R^1 &= R^0 + \Delta R + r = R^0 + (I - D) + r \\
 F^1 &= F^0 + \Delta F + f = F^0 + \Delta F_{11} + \Delta F_{21} + f \\
 L^1 &= L^0 + \Delta L + l = L^0 + \Delta F_{11} + \Delta F_{12} + l \\
 N^1 &= N^0 + \Delta N + n = N^0 + S_D + S + T_1^c + n \\
 F_r^1 &= F_r^0 + \Delta F_r + f_r = F_r^0 + \Delta F_{12} + f_r \\
 L_r^1 &= L_r^0 + \Delta L_r + l_r = L_r^0 + \Delta F_{21} + l_r \\
 N_r^1 &= N_r^0 + \Delta N + n_r = N_r^0 + (B - T_1^c) + n_r
 \end{aligned}$$

#### 다. 계정연결형식에 의한 스톡·플로우의 통합표시

표 2-10과 표 2-11은 스톡계정과 플로우계정의 통합을 계정행렬의 형식으로 표시한 것인데, 이것을 더욱 상세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초와 기말의 대차대조표를 각각 제도부문별로 작성하고, 개별적인 대차대조표 기간중의 변동을 항목별·원인별로 알수 있도록 작성한 것이 표 2-12 「일본의 스톡·플로우 통합계정(1993년 말~1994년 말)」이다. 이 표에는 상단과 하단에 각각 제도부문별의 기초대차대조표와 기말대차대조표를 배치하고 있다. 표 가운데 부분은 기간 중에 발생한 대차대조표의 항목별 변동을

나타내는 계정을 표시하고 있다.

표 2-12는 현행 일본 국민경제계산에 따라 표시한 자료를 개정 SNA의 계정연결형식에 맞추어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축적계정의 표기법이 지금까지 것(예를 들면 표 2-2 등)과는 다르지만 그 내용에는 전혀 변경이 없다. 기초대차대조표와 기말대차대조표가 항목별로 어떻게 정확히 대응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비금융법인기업의 유형자산과 순자산을 예로 알아보자. 나머지 부문, 항목에 대해서도 모두 동일한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

(예) 비금융 법인 기업

기초유형자산(1105조 6825억엔)
+ 축적계정 유형자산 변동(12조 1870억엔)
+ 조정계정 유형자산(-20조 2000억엔)
= 기말 유형자산(1097조 6695억엔)
기초순자산(530조 5766억엔)
+ 축적계정 순자산 변동(10조 2924억엔)
+ 조정계정 순자산(-45조 9039억엔)
= 기말순자산(494조 9651억엔)

표 2-12 일본의 스톡

자산의 잔고 및 변동							
계 정	해 외	국민경제	가 계 (개인기업 포함)	대가계 비영리 단 체	일반정부	금융기관	비 금융 법인기업
기초대차 대 조 표	185,267.4	3,151,583.4	1,471,267.2	51,071.4	444,982.0	78,580.3	1,105,682.5
		75,689.8	9,280.0	0.0	0.0	0.0	66,409.8
		1,144,429.1	250,647.9	32,675.9	322,981.9	20,054.7	518,068.7
		1,931,464.5	1,211,339.3	18,395.5	122,000.1	58,525.6	521,204.0
		3,851,989.7	1,032,652.8	36,736.0	334,298.5	1,753,616.3	694,686.1
대차 대 조 표 의 변 동	축적계정    710.4	61,871.6	14,035.3	557.5	34,086.2	1,005.6	12,187.0
		49.3	23.5	0.0	0.0	0.0	25.8
		61,822.3	11,897.5	390.5	28,408.9	825.9	20,299.5
		0.0	2,114.3	167.0	5,677.3	179.7	- 8,138.3
		121,850.6	39,407.6	1,774.4	23,197.2	49,682.6	7,788.8
	조정계정    -305.4	-72,325.3	-32,536.6	-234.7	-17,393.7	-1,960.2	-20,200.0
		-1,234.4	-236.3	0.0	0.0	0.0	-998.0
		-31,165.3	-7,332.9	465.8	-8,931.1	-60.8	-15,306.3
		-39,925.6	-24,967.4	-700.5	-8,462.6	-1,899.4	-3,895.7
		41,708.8	16,281.9	-18.6	-1,005.7	762.9	25,688.3
기말대차 대 조 표	185,672.4	3,141,129.7	1,452,765.9	51,394.2	461,674.5	77,625.7	1,097,669.5
		74,504.7	9,067.2	0.0	0.0	0.0	65,437.6
		1,175,086.1	255,212.5	33,532.2	342,459.7	20,819.8	523,061.9
		1,891,538.9	1,188,486.2	17,862.0	119,214.8	56,805.9	509,170.0
		4,015,549.1	1,088,342.3	38,491.8	356,490.0	1,804,061.8	728,163.2

(자료) 경제기획청 「국민경제계산년보(平成 8년판)」, 1996.

플로우 통합계정(1993년 말~1994년 말)

(단위 : 10억엔)

부채·순자산의 잔고 및 변동								
자산·부채 및 균형항목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기관	일반정부	대가계 비영리 단체	가 계 (개인기업 포함)	국민경제	해 외	계 정
유형 자산 재 고 순 고정자산 재생산불가능유형자산 금융 자산 부 채	1,269,792.0	1,776,961.7	356,928.1	27,446.2	348,785.3	3,779,913.3	257,343.8	기초대차 대 조 표
순 자산	530,576.6	55,234.9	422,352.4	60,361.2	2,155,134.7	3,223,659.8	-72,076.4	
유형자산변동 재 고 순 고정자산 재생산불가능유형자산 금융자산변동 부 채 변 동	9,683.4	55,187.8	36,512.9	1,054.1	6,212.9	108,651.1	13,909.9	축적 계정 대차 대 조 표 의 변 동
순자산변동	10,292.4	-4,499.6	20,770.5	1,277.8	47,230.0	75,071.1	-13,199.5	
순저축, 국민경상잉여	8,134.1	-173.7	24,636.9	861.3	41,327.9	74,786.5	-13,430.6	
자본이전 순거래 통계상의 불일치	3,342.4 -1,184.2	0.0 -4,325.9	-514.7 -3,351.7	807.5 -391.0	-3,866.4 9,768.5	-231.1 515.5	231.1	
유형 자산 재 고 순고정자산 재생산불가능유형자산 금융 자산 부 채	51,392.2	-5,086.1	335.3	0.0	6,623.1	53,264.5	-11,861.1	조정 계정
순 자산	-45,903.9	3,888.8	-18,734.7	-253.3	-22,877.8	-83,881.0	11,555.7	
유형 자산 순 고정자산 재생산불가능유형자산 금융 자산 부 채	1,330,867.6	1,827,063.4	393,776.3	28,500.4	361,621.3	3,941,828.9	259,392.6	기말대차 대 조 표
순 자산	494,965.1	54,624.1	424,388.2	61,385.7	2,179,486.9	3,214,849.9	-73,720.2	

## 제 3 장 개정 SNA의 구조

### 1. 개정 SNA의 기초

#### 가. 개정 SNA(1993년 SNA)

개정 SNA는 현행 SNA와 비교할 때 외관과 내용이 모두 큰 폭으로 수정되었다. 즉, 새로운 명칭의 계정이 다수 도입되었으며, 중요한 내용을 가진 개념·용어에도 많은 변경이 있었다. 새로운 계정의 등장과 집계개념의 명칭변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① SNA중 지금까지는 식별되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았던 거래와 활동이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것을 기록하는 계정과 집계개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예를 들면, 개정SNA는 소득의 분배·사용계정의 소계정으로, 소득의 「사회적 현물이전」을 표기하는 계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 계정은 현행 SNA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가처분소득을 제도부문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② 계정의 기록대상인 프로세스와 집계개념의 변경은 없으나, 그들의 명칭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 용어를 보다 적절한 명칭으로 바꾸었다.(예를 들면, 개정 SNA에서는 「직·간접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간접세를 「생산 및 수입품에 대한 세(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라는 용어로 대체하였으며, 직접세는 「소득, 부 등에 부과되는 경상세(current taxes on income, wealth, etc.)」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개선되거나 변경된 것은 「개정SNA」 전체에서 보면 파생적인 항목에 불과하다. 개정 SNA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해 개정 SNA 중심체계(central framework)의 기본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4개의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다.

#### 나. 개정SNA의 기본적 특징

### (1) 통합계정계열의 명확한 방향성

개정 SNA의 계정시스템을 통합한 활동계정의 계열로 볼 때 생산계정에서 축적계정으로, 플로우계정에서 스톡계정으로, 라는 명확한 방향성이 보인다. 이 시스템은 계정계열에 있어서 균형항목을 통해 모든 활동계정을 서열화 하여 「일방통행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 현행 SNA와 달리, 소득의 발생(generation)과 소득의 분배(allocation) 두 가지 전후관계를 가진 활동으로 식별하는 것은 이 「원칙」에서 얻어지는 최대의 이점이다. 현행 SNA의 「표2.1 완전체계의 예시(An illustration of complete system)」에서 「소비계정」이 가지고 있던 최대의 난점 또는 약점이라 생각되던 것을 개정 SNA는 상기와 같은 소득의 발생·분배 프로세스의 「다단계화」를 통해 일거에 해결하였다 해도 좋을 것이다.

### (2) 구입자가격(시장가격)표시의 원칙

구입자가격(purchaser's price)표시와 시장가격(market price)표시는 물론 동의어가 아니다. 구입자가격은 본래 기초가격(basic price)과 생산자가격(producers' price)에 대응되는 것으로, 재화·서비스의 구입자가 그 유통경비 등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가격이다. 이에 대해 시장가격은 시장에 있어서 재화·서비스의 최종적인 평가를 의미하고 재화·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요소비용(영업잉여 등을 포함)에 순간접세(=생산 및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 - 경상보조금)를 더한 것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개별 재화·서비스를 보면 구입자가격과 시장가격은 동일하지 않을지도 모르나 전체적으로 국내생산물에 대한 양자의 집계치는 동일해야만 한다. 구입자가격표시와 시장가격표시는 그런 의미에서 정합성을 갖는 것이라 생각한다.

개정 SNA는 시스템 전체에 구입자가격(또는 시장가격)표시의 원칙을 채용하였다. 이것은 생산계정에 있어서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의 취급과 구입자가격을 구성하는 항목으로써 상업·운송마진의 기록방법을 보면 알 수 있다.

### (3) 제도부문병렬화의 원칙

이미 제1장 제3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내제도부문, 또는 국민경제는 5



가지 제도부문(비금융법인, 금융기관, 일반정부, 대가계비영리단체, 가계)으로 구성되어 있고, 5가지 제도부문은 모든 종류의 경제활동 기록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경제계 산상 해외(the rest of the world, ROW 라고도 한다)의 위치부여를 어떻게 하는가 이다. 여기서 해외란 해당 국민경제에서 비거주자 경제단위의 집합을 말하며, 국민경제계산상의 위치부여는 현행 SNA와 개정 SNA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본다. 즉 해외를 원칙적으로 하나의 제도부문으로 해석하고 이 해석에 입각하여 그 경제활동을 분류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이처럼 해외를 하나의 제도부문으로 간주하는 입장은 개정 SNA가 현행 SNA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sup>1)</sup> 국내의 5가지 제도부문에 더하여 해외를 제6번째의 제도부문으로 병렬화하는 것에 의해 국민계정시스템이 완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계정시스템에서 해외를 포함하지 않으면 완결된 체계가 되지 못한다. 계정시스템을 완결된 체계, 즉 폐쇄체제로 하기 위해서는 해외를 국내제도부문과 동격의 것으로 병렬화해야만 한다.

#### (4) 경제적 거래 이외의 원인에 근거한 자산변동의 중시

현행 SNA의 주요 기록대상은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상적 경제활동이고 그 이외의 원인에 의한 재산·부채의 변동은 「조정(調整)계정」에 일괄적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이 조정계정의 역할은 축적계정의 기록을 보완하고 기초·기말의 양 대차대조표의 정합성을 보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개정 SNA는 경제활동 이외의 원인에 의한 자산변동을 자체 독립의 플로우로서 위치를 부여하고, 경제활동에 의한 자산변동에 뒤떨어지지 않는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기록방법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경제활동 이외의 원인에 의한 자산변동을 중요시하는 배경은 현실세계의 정치·경제·사회에는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1) (Commission of EC, et al.) [1993], p.19, par.2.23., p.40, par.2.164.참조)

자연재해·국지적 전쟁·인플레이션·정치체제의 변혁 등이 어떤 형태로 생산변동을 초래하는지를 직관하고 기록하는 것이 개정 SNA의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 다. 계정시스템의 기본구조

개정 SNA의 기본적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현행 시스템과 비교하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이를 위해 양자의 가장 높은 통합레벨에서 비교하고자 한다. 표 3-1 과 표 3-2는 각각 현행 SNA의 기본구조와 개정 SNA의 기본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 계정시스템의 기본구조(현행 SNA)

플 로 우 계 정	국 내	생 산 계 정
		소 비 계 정
		축 적 계 정
	해 외	경 상 계 정
		자 본 계 정
	조 정 계 정	
스 톡 계 정	기 초 자 산 계 정	
	기 말 자 산 계 정	

표 3-2 개정 SNA의 계정 시스템

국민경제	플 로 우 계 정	0. 재화·서비스계정
		I. 생산계정
		II. 소득의 분배·사용계정
		III. 축적계정
	스 톡 계 정	IV. 대차대조표
해 외 (계정 V.)	플 로 우 계 정	V. I. 재화·서비스의 대외계정
		V. II. 제1차 소득·경상이전의 대외계정
		V. III. 대외저축계정
	스 톡 계 정	V. IV. 대외자산·부채계정

두 개의 표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상이점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보이는 상이점이 개정 SNA를 기본적으로 특징짓는 것이고 이들을 아래에 4가지로 정리하였다.

(1) 개정 SNA(표 3-2)에서는 재화·서비스라는 거래항목계정이 생산계정의 외부에 있다. 「재화·서비스계정」을 「생산계정」에서 독립시키고, 그것을 코드 0의 계정으로 한 의도에 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것이다.

(2) 현행 SNA(표 3-1)의 「소비계정」에 대응하는 것은 표 3-2에서 「Ⅱ.소득의 분배·사용계정」이다. 개정 SNA에서의 이 계정은 현행의 소비계정을 단순히 개칭한 것이 아니라 소득의 발생, 분배, 사용을 다단계적으로 자연적인 흐름으로서 파악하고자 의도한 것이다.

(3)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SNA에서는 조정계정(재평가 계정이라 해도 좋다)은 플로우계정에 포함되어 있지만, 축적계정의 외부에 두었다. 이에 대해 개정 SNA는 이것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계정을 축적계정의 내부에 위치 시켰을 뿐 아니라, 현행시스템과 비교해 훨씬 많은 내용을 가진 소계정들로 전개하고 있다. 단 이것은 표 3-2에서 직접 알 수는 없다.

(4) 표 3-1에서는 국내제도부문과 해외부문이 각각 다른 활동계정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개정시스템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국민경제계산의 이론에 따르면 해외부문도 본래 국내제도부문과 병렬된 일종의 제도부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활동계정을 공유해도 좋다. 이와 같은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개정 SNA에 보인다. 사실, 표 3-2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는 국민경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그것은 그 자신이 하나의 계정을 보유한 것이다.

#### 라. 플로우 계정시스템의 개요

개정 SNA의 전체상을 알기 위해서는 표 3-2에 나타난 기본구조를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세한 부분적 고찰에 앞서 표 3-2 「개정 SNA의 계정시스템」에서 주요부분인 플로우 계정시스템을 찾아내고, 이것에 대해 표 3-3처럼 간단히 계정행렬식으로 표시하였다. 이것은

표 3 - 3 플로우계정 행렬의 개요

		0		1		2		3		4	
경상 계정	재화·서비스계정			중간 소비 출				최종소비지출 (현실최종소비)		자 본 형 성	
	생산계정	생 산									
	소득의 분배계정	생산물에 부과되는 세금, 수입		부가가치(GDP) 재화·서비스의대외수지		(소득의 제1차분배)→GINI (소득의 제2차분배) (현물소득의 제분배) 가 치 분 소 득 (조정가처분소득)					
	소득의 사용계정										
	축적계정							저 축 경 상 대 외 수 지		(비금융자산의 변동) (금융자산·부채의 변동) (자산·부채의 재평가)	

표 3 - 4 계정 SNA의 플로우계정 구조

		0. 재화·서비스계정	
		I. 생산계정	
경상계정	II. 소득의 분배· 사용계정	II.1.1. 소득의 생산계정	
		II.1.2. 제1차 소득의 분배계정	
		II.2. 소득의 제2차 분배계정	
		II.3. 현물소득의 재분배계정	
		II.4.1. 가처분소득의 사용계정 II.4.2. 조정가처분소득의 사용계정	
축적계정	III. 축적계정	III.1. 자본계정	
		III.2. 금융계정	
		III.3.1. 기타 자산량 변동계정	
		III.3.2. 채평가계정	
		III.3.2.1. 증립보유 이득계정 III.3.2.2. 실질보유 이득계정	

개정 SNA의 윤곽을 보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계정행렬은 아니다. 이 행렬의 각 칸의 내용에는 모호하고 불명료한 점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표 3-3이 어떤 의도·약속하에 작성되었는지를 다음 3가지로 나누어 서술하기로 한다.

(1) 2행 2열에서 보는 것(소득의 제1차 분배)처럼, ( )에 의해 표시한 것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계정을 사용하여 표시해야만 하는 활동을 나타내고 있다.

(2) {조정가처분소득}과 {실제최종소비}가 { }로 표시한 것은 그것이(가처분소득 → 최종소비)로 택일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수입 - 수출 = 재화·서비스의 대외수지 라는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

모든 집계치에 대해 「총액(gross)」과 「순액(net)」의 구별은 나타나 있지 않다. 표 3-3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2행 2열에 있는(소득의 제1차 분배), (소득의 제2차 분배) 및 (현물소득의 재분배)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4행 4열에 나타나 있는(비금융 자산의 변동), (금융자산·부채의 변동) 및 (자산·부채의 재평가)등에 대해서도 각각 몇 가지 소계정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개정 SNA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소계정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전개된 계정시스템이 표 3-4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표 3-4를 보면 구상은 이해할 수 있어도 내용·기입방법까지 이해하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표 3-4에 나타나 있는 활동계정계열의 내용·기록은 제도부문계정의 도입을 처음으로 구체화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계정기록의 구체적 설명은 본 장 제3절 이하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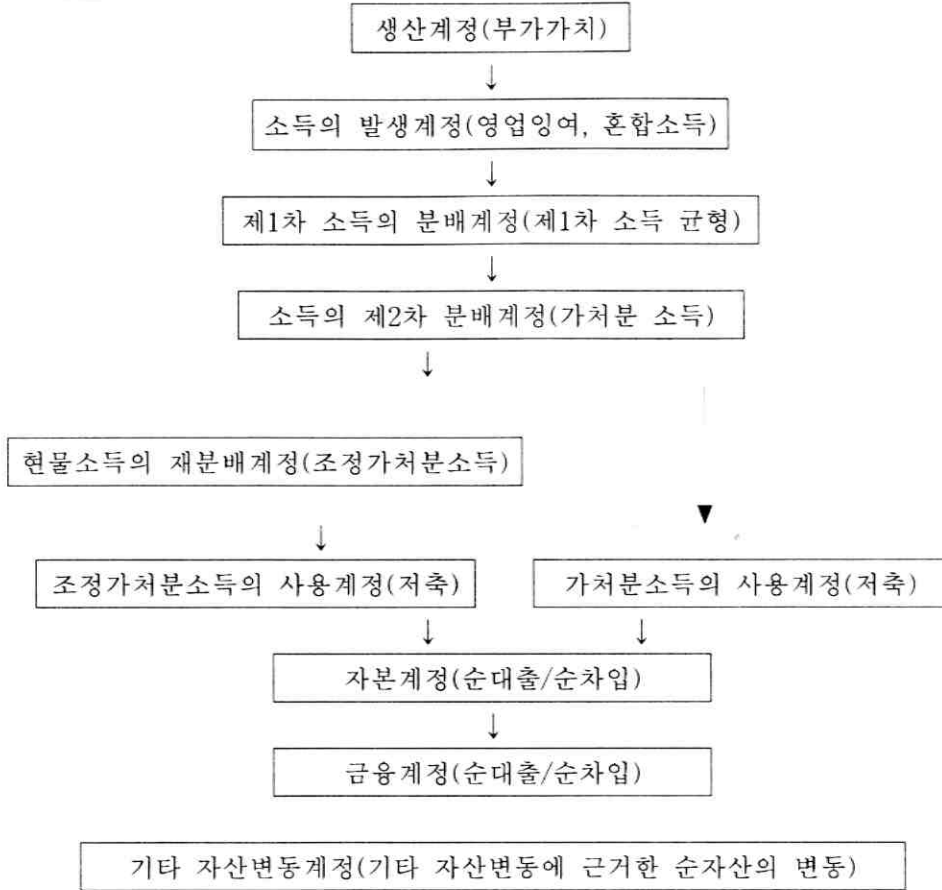
#### 마. 플로우계정·스톡계정의 계열

플로우계정의 시스템은 표 3-4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개정 SNA 계정구조의 전체상을 보여주기에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표3-4는 플로우계정 전체에서 소계정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나타나 있지만, 이 계정이 어떤 균형항목에 의해 어떻게 계열화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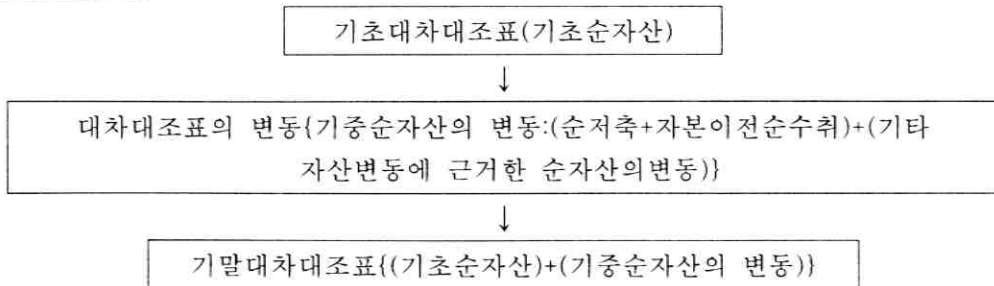
또 이 표에는 스톡계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불완전하다 할 수 있겠다. 불완전함을 다소 보충하기 위해 플로우계정과 스톡계정의 전체

도 3-1 개정SNA의 계정계열 (( )안은 균형항목이다)

플 로 우



스 톱



계열을 도표로 나타내보자. 도 3-1 「개정SNA의 계정계열」은 그런 의미에서 계정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그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도 3-1의 계정계열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모두 활동계정이며, 제도부문으로서의 역할은 도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은 제도부문의 관점에서서는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도 3-1을 국내부문과 해외부문을 모두 통합한 개념도로 보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도 3-1을 어느 특정 제도부문의 구체적인 계정계열로서 보는 방법이다.

(2) 플로우계정시스템, 스톡계정시스템 모두 계정의 전후관계를 화살표(↓)로 표시하였고, 앞 계정과 뒤 계정은 균형항목(괄호 안에 표시하고 있다)으로 관련되어 있다. 단 플로우계정 중 「기타 자산변동계정」만은 그것에 선행하는 계정을 갖지 않는다.

(3) 소득의 제2차 분배계정에서 자본계정에 이르는 흐름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이것은 어느 쪽의 경로를 선택할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4)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의 균형항목은 공통적으로 「순대출/순차입」이다.

(5) 대차대조표의 변동을 나타내는 계정의 균형항목인 기중 순자산변동은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순저축, 자본이전순수취와 기타 자산변동에 기초한 순자산의 변동인데, 순저축, 자본이전순수취는 생산계정이 시작하는 계정계열의 끝에 위치한 항목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 계열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자산변동계정의 균형항목이다.

## 2. 생산물의 평가와 기록

### 가. 재화·서비스계정

전항의 도 3-1에서 보듯이 개정 SNA의 계정계열은 앞 계정의 균형항목이 뒷 계정의 「원천」으로 계속되는 계정간의 전후관계가 정해져있다. 계정계열의 선두에 오는 것은 국내부문(국민경제)의 생산활동을 기록하는 생산계정이다. 그리고 생산계정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내생산물의

평가와 기록인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국내생산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5장의 「생산의 범위 문제」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개정 SNA는 국내생산물을 「재화·서비스(goods and service)」라 부르며 양자는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재화·서비스의 출처와 사용에 대한 기록이 개정 SNA의 생산계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개의 계정을 사용해 나타낸다. 그 표시는 표 3-5 「재화·서비스계정」과 같이 계정 0으로 생산계정의 앞에 오는(표 3-4에서 알 수 있듯이)점이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 재화·서비스계정을 포함한 모든 계정의 내용을 설명할 때에는 『1993SNA(UN)』 책자에 나타나는 가상숫자를 그대로 이용하기로 한다.

표 3-5는 해당경제가 국내부문 생산활동의 성과로서 어느 만큼 「시장가격평가」의 재화·서비스(=생산물)를 제공했는지 그 「원천」과 「사용」의 양면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3-5 재화·서비스계정

원 천Ⅱ		원 천Ⅰ		사 용	
생산자가격		기초가격국내산출	3604	중간소비	1883
국내산출	3598(=3604+(-6))	생산물에 부과되는		실제최종소비	1399
생산물에 부과되는		세 - 보조금	133	총고정자본형성	376
세 - 보조금		생산자가격에 포함		재고증감(귀중품의	
(생산자가격포함	139(=133-(-6))	되는 세	-6	취득 - 처분을	
하지 않음)		생산자가격에 포함		포함)	38
VAT	121	되지 않는 세	139	수    출	540
수입품에 부과되		VAT	121		
는 세금	18	수입품에 부과되는			
수    입	499	세(순)	18		
		수입	499		
시장가격재화·서		시장가격재화·서		시장가격재화·서	
비스의 원천	4236	비스의 원천	4236	비스의 사용	4236



우선 이 계정은 일종의 더미계정이기 때문에 그 정의상 균형항목을 포함하지 않는다.<sup>2)</sup>

이 계정의 우측(사용)에는 국내부문이 1기간에 제공한 용도별 재화·서비스의 처분을 시장가격으로 기록한다. 용도별은 5가지로서 중간소비(1883), 실제최종소비(1399), 총고정자본형성(376), 재고증감(귀중품의 취득-처분을 포함)(38)과 수출(540)의 순서로 기록한다. 실제최종소비(actual final consumption)는 일반적인 최종소비와는 다른 것으로 개정 SNA에서 도입한 집계치이다. 양자는 총액으로는 일치하지만 실제최종소비는 일반적인 최종소비를 제도부문별로 조정한 것을 말한다.(실제최종소비에 대해서는 제4장 제1절을 참조)

다음, 표 3-5의 좌측(원천)에 기입하는 것은 제공한 재화·서비스의 시장가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나타낸다. 표 좌측의 기록법은 택일적인 평가법 원천 I, 원천 II의 2가지중 한쪽을 선택 한다. 원천 I 과 원천 II의 내용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양자의 표기법의 공통점인  $\{(국내생산) + (생산물에 부과되는 세 - 보조금) + (수입) = (재화·서비스의 시장가격에 의한 제공액)\}$ 이라는 관계에 주목하자. 개정 SNA에서는 여기서 사용하는 2가지 표시법이 아닌 3가지 표시법을 일관되게 표시하고 있다.<sup>3)</sup> 그러나 개정 SNA가 취하는 3가지 형식 중 두 번째 형식 즉, VAT가 존재하지 않는 형식은 제 3의 형식의 특별한 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제3형식에 포함하기로 했다.

2) 생산계정에서 독립한 0번째의 계정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재화·서비스계정의 성질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계정은 재화·서비스의 제공과 그 처분을 기록하기 위한 집중적 배분기구(pool)로서 일종의 더미계정이다. 즉 이 풀(pool)은 국내부문(국민경제)에서 재화·서비스를 독점으로 사들여 그것을 필요에 의해 중간소비, 또는 최종적 사용을 위해 수시로 파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생각하면 재화·서비스의 처분 즉, 팔아 넘긴다는 거래야말로 이 재화·서비스의 집중적 배분기구에 있어서 재원조달의 「원천」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 계정에는 국민경제에서의(수입의 경우는 해외로부터의)재화·서비스의 매입인 「사용」항목에 없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개정SNA에서는 재화·서비스계정의 판매측(우측)의 기입을 「원천」이 아닌 「사용」이라 부르고 있고, 그 지출측(좌측)의 기입을 「원천」이라 이름짓고 있다. 개정 SNA에서 이처럼 부자연스럽게 처리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제도부문측의 습관적 호칭을 반영(「1993 SNA(UN)」, p.38,par.2.159. 참조) 「원천」과 「사용」의 역전(逆轉)문제는 여전히 개정 SNA의 의문점의 하나이다.

3) 「1993SNA(UN)」, p.24, par.2.72., p25, par.2.74. 참조

## 나. 시장가격을 구성하는 세(稅)

현행 SNA나 개정 SNA에는 재화·서비스의 평가기준으로 기초가격평가, 생산자가격평가, 구입자가격평가 3가지가 있다. 기초가격평가란 상품세(commodity taxes) (이 용어는 개정 SNA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도 3-2를 참조))를 포함하지 않는 단계에서 재화·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자가격평가는 기초가격에 상품세를 더한 실제 판매가격에 의한 재화·서비스의 평가를 의미한다. 구입자가격평가는 생산자가격이 생산자의 손을 떠날 때의 가격인 것에 반해, 이것은 구입자가 재화·서비스를 손에 넣을 때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으로 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재화·서비스의 구입자가격에는 판매수수료와 운송비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 3가지 종류의 평가기준을 국내부문간 산출물 전체에 적용해 얻을 수 있는 집계치는 각각 기초가격국내산출, 생산자가격 국내산출과 구입자가격 국내산출이다. 특히 구입자가격 평가는 재화·서비스를 구입자가 부담하는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계치로 볼 때는 시장가격평가와 같다. 이런 의미에서 구입자가격 평가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시장가격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개정 SNA에서는 주요 집계치가 거의 모두 시장가격으로 평가되고 있음은 이미 알고 있고, 시장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특히 조세부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생산물의 평가에 있어서 조세의 역할은 현행 SNA와 개정 SNA의 사이에 상당한 해석상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시장가격을 구성하는 세」에 대해서 양 시스템이 각각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는 도 3-2에 나타나 있는데, 우선 현행 SNA에 있어서 순간접세의 성질과 역할을 설명해 보기로 한다.

간접세는 그것이 생산자의 직접적 부담이라고 하는 이유에서 생산자에게 산입되는 조세이다. 경상보조금은 마이너스 간접세로 생각하고, 국민경제계산은 통상 이것을 간접세의 공제항목으로 취급한다. 간접세에서 경상보조금을 뺀 액을 순간접세 또는 간접세(순)라 한다. 정부 전매사업의 영업이익 중 경상 이익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간접세로 취급한다. 또 산업에 의한 생산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국가에 수수료 등을 지불해야만 하는 경우, 이

도 3 - 2 순간접세와 「생산 및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의  
가격형성에 있어서의 역할

현행 SNA		개정 SNA					
상품세	간접세(순) 191	생산 및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순) 191	생산물에 부과되는 세(순)① 133	VAT 121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순) 18	생산자가격을 구성하지 않는 세(생산물에 부과되는 세(순)③) 139		시장가격 재화·서비스 (구입자가격 재화·서비스) 3737
			생산에 부과되는 기타세(순) 58	생산물에 부과되는 세(순)② -6	생산자가격을 구성하는 세 -6	생산자가격 재화·서비스 3598	
기타 간접세		기본가격을 구성하는 세 58		기초가격 재화·서비스 3604	요소비용 재화·서비스 3546		

수수료도 간접세에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예를 들면, 영업허가세, 기업이 부담하는 고정자본세 등). 그리고 간접세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은 세도 존재하는데, 자동차중량세, 자동차취득세 등의 자동차관계세로서 이 세금은 소비자인 개인이 부담하면 직접세가 되고, 생산자인 산업과 일반정부가 부담하면 간접세로 분류한다.

현행 SNA에서 순간접세는 시장가격을 구성하는 조세와 기타 강제적 부담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상품세와 기타 간접세 2가지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기타 간접세란 생산활동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조세와 같은 수수료 등의 부담을 말한다. 이러한 현행 SNA 방식이 특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개정 SNA는 간접세에 대한 이와 같은 분류와 호칭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고 대폭적으로 수정하였다.

#### 다. 생산물에 부과되는 세

시장가격에 포함된 순간접세 개념의 의문점은 다음의 2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① 현행 SNA는 간접세에 포함된 상품세의 부분이 재화·서비스의 시장 가격평가와 기초가격평가 사이의 차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 2가지 평가의 중간에 위치한 평가 즉, 생산자가격평가와 상품세와의 관계는 지극히 모호하다.

② 이와 같은 모호함은 어디서 연유하는가 하면, 그것은 국내부문 생산물의 생산자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2종의 조세가 존재하는 것이 원인이라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2종의 세금이란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taxes on imports)와 부가가치형세(value added type taxes)를 지칭한다.

간접세에 이들 2종류의 생산자가격평가의 외부에 있는 세 즉,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통상 마이너스인 수입품의 세인 보조금을 뺀 순액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수입세(순)라 한다.)와 부가가치형세 (이것은 VAT라 약칭한다)를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익숙해져 있던 조세의 분류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본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순)와 수출세(순)라 칭해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수출세(순)란 수출세 - 보조금을 의미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1993 SNA (UN)』 책자에서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는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a) 부가가치형세 (b)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taxes on imports)(VAT를 제외), (c) 수출세(export taxes) (d)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VAT, 수입세 및 수출세를 제외)」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개정 SNA에서는 조세에 관련된 용어가 수정되었는데 즉, 도 3-2의 좌측에 나타난 간접세(순)(이것은 상품세와 기타 간접세의 합계이다)라는 용어는 이 표의 우측에 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새로운 명칭으로 대체되어 있다. 「간접세(순)」는 「생산과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라 하게 되었으며, 「상품세」와 「기타 간접세」와의 구별은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taxes of products)」와 「생산에 부과하는 기타의 세(other taxes on production)」로 대체하였다.<sup>4)</sup> 단, 여기서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순)」는 순간접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응하는 보조금을 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 간략하게 하기 위해 「생산물에 부과

4) 「1993SNA(UN)」, p.529, par. 46을 참조

하는 세(稅)를 단순히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 또는 「생산물세」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개정 SNA에 있어서 생산물세의 역할은 도 3-2의 우측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극히 복잡하고 난해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 3-2를 참조하면서 설명해 보자. 단, 이 그림에 기입하고 있는 숫자는 모두 「1993SNA(UN)」 책자에서 인용한 것이다.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를 한 마디로 말하면 「생산에 부과하는 기타의 세」처럼 생산활동에 수반하는 세(사업세, 고정자본세 등)가 아닌 생산활동의 성과인 생산물에 대해 부과하는 세로서 시장가격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의 역할 중 국내부문의 산출을 (1) 기초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와 (2) 생산자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더욱 그림에서는 「생산에 부과하는 세」등을 일절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요소비용(factor cost)가격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명칭은 정의상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sup>5)</sup>

(1) 국내부문 생산물을 기초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

이 경우는 도3-2에서 명확히 보듯이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는 「시장가격재화·서비스 - 기초가격재화·서비스」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생산물세는 도3-2에서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稅)①」이라 쓴 것을 가리키는데, 「1993SNA(UN)」 책자의 숫자를 인용하면 이것은 133(=3737-3604)이다.

(2) 국내부문 생산물을 생산자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

이 경우는 생산물세의 거의 대부분(생산물에 부과되는 세(稅)②로 표시된 것)을 재화·서비스의 평가액에 흡수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시장가격과 같게 하려면 생산물세(도 3-2에서는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稅)③」)를 가산해야만 한다. 생산물세란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와 VAT이다.

이들 2가지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개정 SNA의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는 결코 고정적으로 정의된 세가 아닌 재화·서비스의 평가가 어떤 기준으로 행해지는지에 대해 신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생

5) 1993SNA(UN), p.25, par.2. 74. 참조

산물에 부과하는 세(稅)① =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稅)② +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稅)③(133 = (-6) + 139)라는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것도 도 3-2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3. 생산계정의 기록

#### 가. 생산계정의 표시

국내부문을 통합한 국민경제에 대하여 개정 SNA는 「국민경제」라고 하였으므로, 이제부터 국내부문, 국민경제 용어를 구별 없이 사용하기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국민경제의 생산계정이 표 3-6에 나타나 있다. 표 3-6의 원천측이 I 과 II로 나뉘어 있는 것은 재화·서비스계정(표 3-5)의 원천이 두가지 방법으로 나타나 있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다. 원천II의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稅)③」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와 VAT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서술하였지만 이들에 대해 부연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표 3-6 국민경제의 생산계정

사 용		원 천 I		원 천 II	
중간소비	1883	기본가격국내산출	3604	생산자가격 국내산출	3598(=3604+(-6))
총부가가치(국내 총생산 GDP)	1854	생산물에 부과되는 세(稅)①	133	생산물에 부과되는 세(稅)③	139(=133-(-6))
시장가격국내생 산물총계	3737	시장가격국내생산 물총계	3737	시장가격국내생산물 총계	3737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란 재화·서비스가 국내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서 수입될 때 이들 재화·서비스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이 조세는 국내·외의 시장가격차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국민경제계산의 처리방법에서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를 아래의 이유로 일종의 가설산업이라고 보는 견해도 유력하다. 표 3-6에서는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순)③」는 생산자 국내산출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국내총생산(총 부가가치)을 형성한다. 그리고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순) ③」가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순)」와 VAT의 합 인것은 도 3-2에서 보는바와 같다. 결국 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순)」는 국내제도부문(국내생산)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부가가치를 나타내고, 이것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를 가설산업으로서 설정하는 근거이다.

국내·외의 시장가격차가 반대일 경우 즉, 해외의 시장가격이 국내시장 가격보다 높은 재화·서비스를 수입하려고 한다면 마이너스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 즉, 보조금의 지불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보조금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에서 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 이미 설명한 수출세와 관련된 보조금에 대해서도 같다.

VAT는 오늘날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개정 SNA는 특히 그 취급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VAT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나라에서는 이 항목이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여기서 국민경제계산에서는(즉, 개정 SNA에서는) VAT의 성격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자. VAT는 그 호칭(부가가치세, 매상세, 소비세 등)에서 보듯이, 재화·서비스의 실제 구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장가격에는 포함하지만, 생산자가 가격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생산자는 그 생산물을 판매할 때 반드시 자기가 부담한 조세를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처럼 일체의 생산 활동에 대한 조세를 가리키고 있다. 즉, 재화·서비스의 생산자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비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재화·서비스의 최종생산물에 대한 평가에는 확실히 포함되는 생산물세가 VAT인 것이다. VAT는 생산자가 가격 국내산출의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와 공통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VAT도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와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일종의 가설산업으로써 취급할

수 있다.

표 3-6과 같이 총 부가가치는 시장가격 국내생산물 총계에서 중간소비(중간생산자)를 공제한 균형항목으로 정의한다. 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국내 각 제도부문이 부담하는 고정자본소모의 합계치(222)를 국내총생산에서 공제하면 순 부가가치(국내 순생산(net domestic product, NDP)) 1632(=1854-222))를 얻는다.

## 나. 생산계정의 기입예

계정시스템의 기록방식에는 계정행렬형식과 계정연결형식 2가지가 있다는 것은 이미 제1장 제4절에서 설명했다. 여기서는 개정 SNA의 생산계정에 대해서만 이들 2가지의 기입 예를 나타내기로 한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1993SNA(UN)」 책자에 기입되어 있는 가상숫자를 그대로 이용하기로 한다.

표 3-7은 계정행렬형식에 의한 표시로서 「재화·서비스계정과 생산계정을 중심으로 한 국민계정행렬」을 표시하고 있다. 이 표의 기입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설명 할 것은 다음 3가지이다.

① 이것은 재화·서비스계정과 생산계정을 주로 해서 전개한 계정행렬이고, 그 외 계정은 고정자본소모, 총부가가치(또는 순부가가치), 재화·서비스의 대외수지를 각각 나타낸 계정을 제외하고 모두 통합하고 있다.

② 생산계정은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순)」, 국민경제, 해외의 3개 계정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 재화·서비스계정에 대해서 일정액을 판매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순)」는 133을 판매하는 일종의 가설산업으로 생각한다. 이 가설산업은 중간생산물의 투입을 일체 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액으로 간주되는 133은 그대로 부가가치를 산출하고 있다. (표3-7의 5행 1열 참조).

③ 국민경제는 4개의 제도부문으로 분할되고 그 부문을 그대로 생산자로 생각한다. 또 가계부문은 개인기업과 대가계비영리단체를 포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주의. 「1993SNA(UN)」에서는 최종적으로 가계와 대가계비영리단체(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NPISHs)는 2개의



표 3-7 재화·서비스계정과 생산계정을 중심으로 한 국민계정행렬

		0	1	2.1	2.2	2.3	2.4	3	4	5	6	7		
경 상 계 정	0. 재화·서비스계정	0		899	29	252	703	540			1399	414		
	I. 생산계정	생산물에 부과되는세(純)	1	133										
		국민경제	비금융법인	2.1	1753									
			금융기관	2.2	102									
			일반정부	2.3	440									
		가 계	2.4	1309										
	해 외	3	499											
	II. 소득의분배 · 사용계정	고정자본소모	4		(137)	(10)	(30)	(45)					(-222)	
		총부가가치(純), 재화·서비스의 대외수지	5		133 (133)	854 (717)	73 (63)	188 (158)	606 (561)	-41				
		기타 소득의 분배·사용계정	6								1813 (1591)	*		
		III. 축적계정	7									414 (192)	*	

(注) 괄호 안은 고정자본소모, 순부가가치, 및 순저축을 나타낸다. ※는 통합된 계정내의 거래를 나타낸다.

제도부문으로서 취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편의상 양자는 가계로 통합하고 있다.)

표 3-8은 계정연결형식에 의한 계정시스템의 표시로 생산계정의 부분을 끄집어낸 것이다. 표기하고 있는 숫자는 표 3-7의 것과 동일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표 3-8에서 국민경제의 국내제도부문에 대한 분할은 나타나 있지 않다.(주의, 여기서는 국민경제의 제도부문에 대한 분할만을 상정하고 있는데 생산자인 국민경제는 보다 적절한 방법으로 분할해야 할 것이다. 즉, 국민경제는 생산계정을 기록할 때 제도부문간으로 분할하는 것보다 재화·서비스의 생산자인 산업으로 분할해야 할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생산자인 국민경제는 우선 시장생산자(market producers)와 비시장생산자(non-market producers)로 분류하고 전자를 다수의 산업으로 분류한다.)

표 3-8 생 산 계 정

사 용				원 천		
재화·서비스	해외	국민경제	거래항목 및 균형항목	국민경제	해외	재화·서비스
3604			국내생산	3604		
133			생산물에 부과되는 세(純)	133		
		1883	중간소비			1883
(-222)		(222)	고정자본소모			
499			재화·서비스의 수입		499	
	540		재화·서비스의 수출			540
		1854	총부가가치, GDP	1854		
		(1632)	순부가가치, NDP	(1632)		
	-41		재화·서비스의 대외수지		-41	

표 3-7의 고정자본소모의 기록방법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현행 SNA의 계정행렬에 의한 고정자본소모의 표시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즉, 고정자본소모계정은 부가가치계정과 동격의 것으로서 이 계정에 대해서는 원천측(행렬로 말하자면 행)에만 기입항목이 있다. 이 계정은 각 제도부문(각 산업)의 생산계정에서 플러스금

액을 수취하고 동시에 각 제도부문의 축적계정에서 동일한 마이너스금액을 수취하는 것이다.

# 제 4 장 개정 SNA의 계정시스템

## 1. 소득의 분배·사용계정

### 가. 소득의 분배·사용계정의 역할과 특징

소득의 분배·사용계정(distribution and use of income accounts)의 기본적인 역할은 해당국의 국내생산활동을 통해 산출된 부가가치(총액이나 순액 즉, 국내총생산이나 국내순생산)를 국내부문과 해외부문이 소득이라는 형태로 획득하고, 그것을 부문간에 재분배한 결과로 얻은 가처분소득을 경상적 사용에 할당하는 과정을 국민계정의 기록으로 표시한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 과정은 부가가치의 획득과 경상적 지출이라는 활동만으로 축약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 통합하면, 소득의 분배·사용계정을 각 제도 부문마다 단일 계정으로 나타내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SNA는 이 과정 전체를 4가지 단계로 나누어 나타내고 있다. 이 4 가지 단계는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Ⅱ.1. 소득의 제1차 분배」, 「Ⅱ.2. 소득의 제2차 분배」, 「Ⅱ.3. 현물소득의 재분배」 및 「Ⅱ.4. 소득의 사용」 등 각 계정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들 4가지 계정을 통해서 개정 SNA가 제시하고 있는 「소득관」은 어떤 특징을 갖는 것일까. 이러한 계정전개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독특한 방식을 2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1) 소득의 분배과정은 기본적으로 소득의 제1차 분배, 제2차 분배라고 부르는 2개의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들 2가지 소득분배과정의 상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전자는 부가가치의 발생부터 재산소득(property income)수지에 의한 소득의 재분배까지 과정을 표시하는 것이다. 더욱 특징적인 것은, 제1차 분배의 균형항목으로서 제1차 소득균형을 정의하고, 집계치로서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또는 국민순소득(net national income, NNI)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2) 후자 즉, 소득의 제2차 분배는 경상이전항목(current transfers)을 통한 소득의 부문간 재분배를 나타내고 있다. 이 재분배를 나타내는 계정의 균형항목이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이다. 그러나, 개정 SNA는 추가적인 과정으로서 현물소득의 재분배를 도입한다. 이 재분배과정을 거침에 따라 가처분소득을 조정하고, 그 결과 「조정가처분소득(adjusted disposable income)」을 도출한다.

## 나. 소득의 제1차 분배

소득의 제1차 분배계정(primary distribution of income accounts)의 구체적인 표시는 표 4-1, 표 4-2 및 표 4-3과 같다. 표시된 숫자는 「93SNA(UN)」 책자에서 인용된 것이고, 표 4-1과 표 4-2가 계정행렬형식의 표시인 것에 반해, 표 4-3은 계정연결형식에 의한 표시이다. 또, 3가지 표를 통해서 「총액(gross)」(고정자본감소를 포함한 금액)에 의한 표시를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의 제1차 분배는 크게 소득의 발생계정(generation of income accounts)과 제1차 소득의 분배계정(allocation of primary income accounts)의 2개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표 4-1과 표 4-2는 완전히 동일한 구조를 가진 시스템이지만, 후자는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4개의 제도부문(비금융법인기업, 금융기관, 일반정부와 가계(개인기업포함))으로 분할되어 있다. 단, 이 책에서는 간략히 하기 위해 대가계 비영리단체를 가계에 포함하고 있다.

### (1) 소득의 발생계정

이 계정의 역할은 표 4-1과 같이 생산계정에서 발생하는 총 부가가치(국내 4 부문 : 1854 (=1721+133), 해외 : -41)를 각 부문간의 수취소득이라는 형태로 재편성하는 것이다.

이 재편성은 피용자보수, 생산과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 총 영업잉여 및 총 혼합소득의 모든 항목에 대해 행하는 것이다. 이 재편성의 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표 4-1과 같이 국민경제는 발생한 총 부가가치(1854)를 부문별로 받아들이지만, 각 제도부문간의 수입은 다음 2 종류의 수지항목을 통해 조정한다. 그것은

표 4-1 소득의 제 1차 분배계정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계정행렬(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경 상 계 정	0. 재화·서비스계정, I. 생산계정	1 ※												1399	414	
		2 1813														
		3					762	6								
	II. 1.1. 소득의 발생계정	생산및 수입품에 부과되는세(순)	4					133	0							
		생산에 부과되는기타세(순)	5					58	0							
		국민경제	6	1854												
	II. 1.2. 제1차 소득의 분배계정	해외외	7	-41												
		총영업잉여·총혼합소득	8					901	-47							
		재산소득	9									391	63			
	II. 2. II. 3. II. 4. 기타 소득의 분배·사용계정	국민경제	10		766	133	58			901	416					
		해외외	11		2	0	0			-47	38					
		제1차 소득균형(총)(GNI)	12									1883	-70			
	III. 축적계정	기타 소득의 분배·사용계정	13											1813	※	
			14												414	※

「생산 및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순)」와 피용자 보수이다. 특히 전자에 관해 보면, 이것은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순)」와 「생산에 부과하는 기타 세(순)」로 분할하는 것을 표 4-1 및 표 4-2에서 알 수 있다. 같은 생산에 부과하는 세라 하더라도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순)」(133)는 이 계정을 통해 일반정부에 직접 지불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어쨌든 각 제도 부문에 분배한 부가가치는 이들 2 항목(「생산과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순)」와 피용자보수)의 지불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 얻은 균형항목이 총 영업잉여·총 혼합소득(901)이다. 혼합소득(총 또는 순)(mixed income, gross/net)은 개정 SNA에 있어서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혼합물로 보는 소득으로 정의되는 개념이다.<sup>1)</sup>

혼합소득은 개인기업에 있어 영업잉여의 대응물이기 때문에 균형항목의 일종이다. 총 영업잉여와 혼합소득은 표 4-1에서는 분리하고 있지 않다. 표 4-2에 있어 혼합소득은 10.4행 8열(또는 8행 6.4열)의 숫자 542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이 가상 예에서 542중 442만이 총 혼합소득이다. (표 4-3 또는 「93SNA(UN)」 p.60참조). 해외에 대해서도 국내제도 부문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면 이 단계에서 해외의 잉여(-47, 8행 7열)를 계산 할 수 있다. 이렇게 소득의 발생계정을 통해서 「지불한」 비용을 「수취한 소득이나 잉여」로 재편성하는 것이다.

## (2) 제 1차 소득의 분배계정

이 계정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과 해외가 「소득의 발생계정」에서 소득으로 재편성된 피용자보수,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순)」와 「생산에 부과하는 기타 세」를 수취하고, 우선 각 부문간에 총 영업잉여·총 혼합소득으로 수취되는 것을 기록한다. (주의. 개정 SNA는 「II.1.2 제1차 소득의 분배계정」을 2가지 소계정 즉, 「II.1.2.1 기업소득계정(entrepreneurial income account)」과 「기타 제1차 소득의 배분계정(allocation of other primary income account)」으로 분할하고 있다. 전자의 계정은 영업잉여와 혼합소득에 관련된 거래항목의 침식을 통해 균형항목인 기업소득을 구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여기서는 이 계정들의 분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sup>2)</sup> 다음으로 이 계정에는 한 종류의 거

1) 「93SNA(UN)」, par. 7. 85. -7. 86. 참조

표 4-2 소득의 제1차 분배계정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경제행렬(Ⅱ)

		1	2	3	4	5	6	6.1	6.2	6.3	6.4	7	8	9	10.1	10.2	10.3	10.4	11	12	13	14				
0. 재화·서비스계정, I. 생산계정	1 ※																									
	총 부가가치, 재화·서비스의대외수지	2	1813																							
		3							545	15	140	62	6													
	생산물에 부과되는세 (순)	4								133			0													
		5							51	3	2	2	0													
	II.1. 소득의 발생계정	국민경제	6.1		854																					
			6.2		73																					
			6.3		321																					
			6.4		606																					
	II. 소득의 분배·사용계정	해 외	7		-41																					
			총영업잉여·총순회소득	8					238	55	46	542	-47					135	167	42	47	63				
				9																						
			II.1.2. 제1차 소득의 분배계정	국민경제	10.1											258	86									
					10.2												55	141								
10.3								133	58							46	32									
10.4							766									542	157									
기타 소득의 분배·사용계정			해 외	11											-47	38										
				12														209	29	227	1418	-70				
				13																			1813	*		
III. 총 계			계	14																				414	*	
																									414	*



표 4-3 소득의 제 1 차분 배 계 정

계 정	사 용			인 천			
	제화·서비스	해외	국민경제	거래항목 및 균형항목	국민경제	해외	제화·서비스
I. 생산 계 정		-41	1854	총 부가가치(GDP) 제화·서비스의 대외수지	1854	-41	II.1.1. 소득의 발생계정
II. I. 1. 소득의 발생계정		6	762	피 용 자 보 수	766	2	II.1.2. 제1차소득의 분 배 계 정
		0	191	생산및수입품에부과되는세 (순)	191	0	
		0	133	생산물에 부과되는세 (순)	133	0	
		0	58	생산에부과되는 기타 세 (순)	58	0	
II. I. 2. 제 1 차 소득의 분 배 계 정		-47	459	총 영업잉여	459	-47	
			442	총 혼합소득	442		
		63	391	소득의 발생의 대외균형	416	38	
		-70	1883	제 1 차 소득	1883	-70	
				제1차 소득균형(총)(GNI)			

래항목 즉, 재산소득(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으로 각 부문간의 소득재분배를 기록한다. 각 부문은 이렇게 조정된 소득을 순소득 즉, 균형항목으로 표 4-2의 계정 12(제 1차 균형)에 대해 지불한다. 국내 각 부문간의 제1차 소득균형(순)의 집계치가 국민총소득(GNI) (1883)이다. 여기서 고정자본소모를 공제하면 제1차 소득균형(순) 즉, 국민순소득(NNI) (1661)이 정의된다.

여기서 제1차 소득균형은 오로지 각 제도부문별로 정의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국민집계치로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표 4-1 및 표 4-2와 같이 국민총소득(GNI) (1883)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4개 제도부문의 제1차 소득균형(순)의 합계(비금융법인 209, 금융기관 29, 일반정부 227, 가계 1418의 합)로 얻을 수 있다. 또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해외의 제1차 소득이라는 개념도 자동적으로 정의된다. (표 4-2의 12행 11열의 기록이 이것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70이다.)

마지막으로, 이미 정의하고 있는 GDP(1854)와 GNI(1883)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GDP부터 GNI까지에 이르는 재분배과정에 양자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것은 해외의 순수취(순지불)뿐이다. 따라서 표 4-1에서도 알 수 있듯이

$$\begin{aligned} \text{GNI (1883)} &= \text{GDP (1854)} + \text{해외의 피용자보수 순수취(4)} \\ &\quad + \text{해외의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 (순) 순수취 (0)} \\ &\quad + \text{해외의 생산에 부과하는 기타 세 순수취(0)} \\ &\quad + \text{해외의 재산소득 순수취 (25)} \end{aligned}$$

라는 관계가 일반적으로 성립하고 있다. 또 이 관계는 NNI(국민순소득)(1661)와 NDP (국민순생산) 사이의 관계에서도 동일하다.

#### 다. 소득의 제2차 분배 · 현물소득의 재분배 · 소득의 사용

2) 여기서 표 4-1에 있어서 「생산물에 부과되는 세(순)」(133)의 처리에 관해 설명한다. 이 「생산물에 부과되는 세」 133은, 당초부터 국내산출(3604) (표 3-6)에 포함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가설산업」이라는 생산물세가 별도로 산출한 부가가치이다. 그러나 부가가치를 구성한 이상 그것은 분배되어야만 한다. 여기에서 이 133은 소득의 발생계정을 통해 직접 일반정부에 의해 수취되고, 그 제 1차 소득을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처리법은 개정 SNA의 방식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소득의 분배·사용계정 중 소득의 제1차 분배계정에 계속 이어지는 나머지 3계정 즉, 소득의 제2차 분배계정, 현물소득의 재분배계정, 그리고 소득의 사용계정의 기록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 계정들의 구체적인 구조는 표 4-4, 표 4-5, 또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4와 표 4-5는 계정행렬형식에 의한 표시이며 표 4-6은 계정연결형식을 채택한 표시이다. 또 사용하고 있는 숫자는 모두 「93SNA(UN)」 책자에 있는 「총액」만을 나타내며 "※"표시는 계정통합의 생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두 지금까지의 설명과 같다. 이하 이들 3 가지 계정의 기록에 관해서는 주로 표 4-4와 그 국내제도부문의 전개인 표 4-5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 (1) 소득의 제2차 분배계정

이 계정은 표 4-4와 같이 제1차 소득을 얻어 그것을 이전항목의 부문간 수지로 재분배하고 균형항목인 총가처분소득을 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이전항목으로는 「소득·부 등에 부과되는 경상세」(현행 SNA의 직접세에 해당), 사회부담(social contributions), 「사회적 현물이전을 제외한 사회수혜금」(social benefits other than social transfers in kind), 및 기타 경상이전(other current transfers)을 들 수 있다. 이 재분배 과정의 결과 얻을 수 있는 총가처분소득은 표 4-4, 표 4-5에 의하면 1854이고, 이것을 제도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법인 186, 금융기관 33, 일반정부 386, 가계 1249이다

#### (2) 현물소득의 재분배계정

이 계정은 총가처분소득을 수용하고 「사회적 현물이전(social transfer in kind)」을 거쳐 부문간 소득재분배수지를 기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계정의 균형항목은 「조정가처분소득(adjusted gross disposable income)」이라 하는데, 이 항목은 표 4-4, 표 4-5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구체적으로 사회보험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와 학교급식 등에 관한 귀속거래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재분배는 주로 일반정부와 가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총가처분소득과 조정총가처분소득의 총액은 같다(표 4-6 참조). 표 4-5와 같이 「사회적 현물이전」의 가계는 228을 수취하는데, 그것을 지불하는 것은 정부(212)와 가계(16)이다(이 지불은 가계를 포함한 대가계 비영리단체에 의해 행해짐). 부문별로 본

표 4-4 소득의 제 2차 분배계정·현물소득의 재분배계정·소득의 사용계정을 중심으로 하는 계정행렬(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II. 소득의 분배·사용계정	0. 재화·서비스개정 I. 생산개정	1 ※											1399				414	
	II. 1. 소득의 제1차 분배 개정	2	1813 ※															
		3		1813														
	II. 2. 소득의 제2차 분배 개정	4								212 1								
		5								322 0								
		6								332 0								
		7								269 9								
		8			1883	213	322	332	239									
		9			-70	0	0	0	39									
		10								1854	-41							
	II. 3. 현물소득의 재분배개정	11														228		
		12														1399		
	II. 4. 소득의 사용개정	13														11		
		14										1854	288	11				
		15										-41						
		16														455	-41	※
III. 축적계정																		

표 4-5 소득의 제2차 분배과정·현물소득의 재분배과정·소득의 사용계정을 중심으로 하는 계정행렬(Ⅱ)

		1	2	3	4	5	6	7	8.1	8.2	8.3	8.4	9	10	11	12	13	14.1	14.2	14.3	14.4	15	16		
Ⅱ. 소득의 분배·사용계정	0. 재화·서비스 계정 I. 생산계정	1	*																						
	Ⅱ.1. 소득의 제1차 분배과정	2	1813	*													1399							414	
		3		1813																					
		4								24	10	0	178	1											
		5								0	0	0	322	0											
		6								13	29	289	1	0											
		7								10	45	141	73	9											
	Ⅱ.2. 소득의 제2차 분배과정	국민경제	8.1				209	14	10																
			8.2				29	39	49																
		8.3				227	213	268	108																
		8.4				1418	1	332	72																
		9				-70	0	0	39																
		10								186	33	386	1249	-41											
		11																			212	16			
		12																			156	1243			
		13																		11					
Ⅱ.4. 소득의 사용계정		국민경제	14.1																						
	14.2																								
	14.3																								
	14.4																					11			
Ⅲ. 총 계 정	15																								
	16																								
									186										186	22	18	229	-41	*	

표 4-6 소득의 2차 분배 · 현물소득의 재분배 · 소득의 사용

사		용			인			천	
계 정	재화 · 서비스	해 외	국민경제	거래항목 및 균형항목	국민경제	해외	재화 · 서비스	계 정	
Ⅱ. 2. 소득의 제2차 분 배 계 정		1	212	제1차 소득균형(총) (GNI) 소득 · 부 등에 부과되는 경상세 사회부담	1883	-70	1399 1399	Ⅱ. 4. 소 득 의 사 용 계 정	
		0	322		213	0			
		0	332	사회적현물이전제외사회수혜금	322	0			
		9	269	기타 경상이전	332	0			
					239	39			
Ⅱ. 3. 현물소득의 재분배계정		-41	1854	총 가 처 분 소 득	1854	-41		Ⅱ. 3. 현물소득의 재분배계정	
			228	사 회 적 현 물 이 전	228				
Ⅱ. 4. 소 득 의 사 용 계 정		-41	1854	조 정 총 가 처 분 소 득	1854	-41		Ⅱ. 4. 소 득 의 사 용 계 정	
			1399	실 제 최 종 소 비					
			1399	최 종 소 비 지 출					
			11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 조 정	11				
		-41	455	총저축, 경상대외수지	455	-41			

조정가처분소득은 어떤 표에도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기서는 비금융법인 186, 금융기관 33, 일반정부 174(=386-212), 가계 1461(=1249+212)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순액표시의 부문별조정가처분소득은 표 4-13에 나타나 있다.)

### (3) 소득의 사용계정

이 계정의 역할은 다음 2가지 경우의 한쪽을 기록·표시하는 것이다.

(a) 원천측(우측)에 조정 추가처분소득을 사용측(좌측)에 실제최종소비(actual final consumption)와 균형항목인 총저축을 각각 기록한다.

(b) 원천측(우측)에 추가처분소득(조정이전의)을, 사용측(좌측)에 최종소비지출(실제가 아닌 명목상의)과 균형항목인 총저축을 각각 기록한다.

표 4-4와 표 4-5는 (a)의 경우가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와 (b) 어느 쪽을 채용하든 균형항목인 총저축은 각 부문에 대해 동일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경상적 경제활동의 말미에 새로운 항목으로서 「연금기금에 관한 가계지분의 변동을 위한 조정(adjustment for the change in net equity of household on pension funds)」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각 부문간 저축을 계산하기에 앞서, 연금기금의 지분과 금융기관에서 가계로 이전하기 위한 계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예에서 총저축은 455이고 이것은 비금융법인 186, 금융기관 22, 일반정부 18, 가계 229의 합이다. 해외부문에 있어서 총저축(순저축)에 대응하는 것은 경상대외수지이고 그것은 -41이다.

## 2. 축적계정

### 가. 축적계정의 기록

축적계정의 역할과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 이 계정이 3 가지 소계정 즉, 자본계정(capital account),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 및 기타 자산변동계정(other change in assets account)으로 전개됨에 주의하자. 이 소계정들의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축적계정이 가진 공통의 기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능은 이 3가지 소계정에 의해 어떻게 분담되는가 하는

표 4-7 축적계정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계정행렬

계정명	0. 재화·서비스계정 1. 생산계정 II. 소득의 분배·사용계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III.1. 자본계정	총저축, 경상대의수지	2	414																									
	총 자본 형성	3			414																							
III.2. 금융계정	비생산 비금융자산의 순취득	4				0	0																					
	자본이건	5				65	1																					
III.3. 기타 자산량 변동계정	국민경제	6	455		62																							
	해외	7	-41		4																							
III.2. 금융계정	순대출(+) / 순차입(-)	8				38	-38																					
	외채	9																										
III.2. 금융계정	현금통화및예금	10																										
	주식 이외의 증권	11																										
III.2. 금융계정	대부	12																										
	주식 및 기타 자본	13																										
III.2. 금융계정	보험기술통계	14																										
	기타 수취채권 또는 지불채무	15																										
III.2. 금융계정	국민경제	16					38	0	132	123	217	43	36	52														
	해외	17					-38	0	-2	20	37	3	0	30														
III.2. 금융계정	비금융자산의 경제적 출현(+) / 소멸(-)	18																										
	비유성 생물자원의 자연성장	19																										
III.3. 기타 자산량 변동계정	계해 등에 의한 괴멸적 손실	20																										
	보상되지 않는 물수, 분류 및 구조의 변경	21																										
III.3. 기타 자산량 변동계정	기타 자산량 변동	22																										
	기타 자산량 변동에 따른 순자산의 변동	23																										
III.3.2. 채평가계	명목보유이득 (+) / 손실(-) (실제가격의 변동에 의한 것)	24																										
	금융자산·부채	25																										
III.3.2. 채평가계	명목보유이득 또는 손실에 의한 순자산의 변동	26																										
	국민경제	27																										
III.3.2. 채평가계	해외	28																										



문제를 생각해보자.

축적계정이 기록대상으로 하는 것은 해당기간 내에 각 부문간의 대차대조표 항목에 어떤 변동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이다. 대차대조표 항목의 변동(순증감액)에는 많은 종류와 성질이 있지만 여기서는 4가지로 분류하기로 한다. 그 것은,

- (1) 비금융 자산(non-financial assets)(이것은 생산자산(produced assets)과 비생산자산(non-produced assets)으로 구성)항목의 순변동,
- (2) 채권으로서 금융자산항목의 순변동,
- (3) 부채(채무로서 금융자산)항목의 순변동,
- (4) 순자산의 순변동이다.

다음으로 이들 대차대조표 항목의 변동은 어떤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하는지 즉, 대차대조표항목의 변동을 초래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SNA는(특히 개정SNA는) 이 발생원인을 크게 3종류로 나누고 있다. 그 것은

- (a) 전 절까지 설명한 경상계정(생산계정과 소득의 분배·사용계정)의 기록에서 직접 파생하는 거래(재화·서비스의 판매에 동반 발생하는 자금플로우 등)
- (b) 경상계정에 기록하는 일은 없지만 해당기간의 상행위로 여기는 거래(토지의 판매, 사채의 발행·판매·상환, 중고자산의 판매 등)
- (c) 경상계정의 기록대상과 무관하고, 상행위로 보지 않는 경제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플로우(예기치 못한 재해에 의한 자산의 손괴, 신자원의 발견, 인플레이션에 의한 자산평가의 변동에서 생기는 손실·이득 등) 이다.

위의 설명에서 축적계정에 어떤 거래를 기록하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그 거래를 기록하는 규칙에 대해 알아보면 일반적인 형태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축적계정의 우측(경상계정은 「원천」 측)에는 위와 같이 4가지 대차대조표 항목변동 중, (3) 부채항목의 순변동과, (4) 순자산의 순변동을 기입한다. 한편, 좌측(경상계정은 「사용」 측)에는, (1) 비금융자산항목의 순변동과, (2) 금융자산항목의 순변동을 기록한다.

축적계정은 각부문의 대차대조표항목에 어떠한 변동이 어떤 원인으로 발

생하는가를 기록하는 플로우계정이고, 이 기록을 통하여 기초대차대조표와 기말대차대조표를 관련짓는 역할을 하고 있다. 축적계정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계정행렬을 「93SNA(UN)」 책자의 계정구조와 숫자 예를 사용해 나타내면 표 4-7과 같다. 이 표가 어떤 내용의 것인지를 알기 위하여 이하 3가지 소계정의 구조를 순서대로 설명한다.

#### 나. 자본계정 · 금융계정

축적계정에 기록되는 국민 대차대조표항목중 해당기간에 변동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항에서 설명한 (a)와 (b)의 발생원인에 의한 것만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에 기록한다. 이러한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의 기록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이 표 4-8과 표 4-9이다. 전자가 계정행렬형식에 의한 기록이고 후자가 계정연결형식에 의한 표시이다. 특히, 전자(표 4-8)는 표 4-7의 자본계정과 금융계정 부분을 제도부문별로 전개한 것이다. 다음은 주로 표 4-8을 이용해서 설명할 것이다.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의 기록대상인 대차대조표 항목의 변동은 전항의 (a)와 (b)의 발생원인은 포함하고 (c)는 포함하지 않는다. 즉, 대차대조표 항목의 변동 중 우연적 재해, 제도의 변경, 자산재평가 등의 원인에 의한 극히 불규칙적인 것은 모두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의 기록대상에서 제외한다.

##### (A) 자본계정

이 계정의 좌측(계정행렬표시에서는, 보유부문 열의 기입항목)에는 전항에서 설명한 (1) 비금융자산의 순증감을 기록한다. 여기에는 2종류가 포함되는데, 하나는 고정자본형성(총액 또는 순액)과 재고증감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의 비금융자산(토지, 중고기계·설비, 소장하고 있는 서화·골동품 등)의 순취득이다. 전자가 해당기간의 생산물인 자산을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 후자는 비생산자산과 과거 생산물인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주의. 표 4-8의 「재고증감」(38)은 개정 SNA에서 2가지 항목 : 「재고변동」(28)과 「귀중품의 취득-처분(acquisitions less disposals of valuables)」(10)을 분리하고 있다. 후자의 항목에는 생산용도의 중고자산·귀금속의 판매·취득을 포함한다고 생각해도 좋다.) 한편, 이 계정의 우측(계정행

표 4-8 자본계정 · 금융계정을

		1	2	3	4	5	6	7.1					
경상 계정	0. 재화 · 서비스계정 I. 생산계정	1	※		376	38							
	II. 소득의분배 · 사용계정												
축적 계정	III.	자본 계정	순 저축 · 경상대외수지	2	414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3					250			
				재 고 증 감	4					28			
			비생산및비금융자산의순취득	5						-7			
			자 본 이 전	6						16			
			국민경제	비 금융법인	7.1		186				33		
				금 융 기 관	7.2		22				0		
				일 반 정 부	7.3		18				6		
				가 계	7.4		229				23		
			해 의	8		-41				4			
			III. 2.	금융 계정	순대출(+) / 순차입(-)	9					-68		
					화폐용 금 · SDR	10							
					현금통화 · 예금	11							
					주식이외의 증권	12							
					대 부	13							
					주식 및 기타 지분	14							
					보 험 기 술 준 비 금	15							
					기타수취채권또는지불채무	16							
					국민경제	비 금융법인	17.1						
						금 융 기 관	17.2						
			일 반 정 부	17.3									
			가 계	17.4									
			해 의	18									
			III. 3. 기타 자산변동계정	19									



표 4-9 자본계정·금융계정

자 산 의 변 동		부 채 · 순 자 산 의 변 동						
계 정	재 화 · 서 비 스	해 외	국 민 계 정	기 래 항 목 및 균 형 항 목	국 민 계 정	해 외	재 화 · 서 비 스	계 정
		-41	455	순 저축, 경상대외수지	455	-41		
Ⅲ. 1. 자본계정			414	총 자본 형성			414	Ⅲ. 1. 자본계정
			376	총 고정자본형성			376	
		0	38	채 고 증 감			38	
		1	65	비생산및비금융자산의순취득 자 본 이 전	62	4		
		-38	38	순대출(+)/순차입(-)	38	-38		
Ⅲ. 2. 금융계정		1	-1	화폐용금·SDR		0	0	Ⅲ. 2. 금융계정
		11	119	현금통화 및 예금	132	-2		
		5	138	주식 이외의 증권	123	20		
		10	244	대 부	217	37		
		2	44	주식 및 기타 지분	43	3		
		0	36	보험기술회비금	36	0		
	21	61	기타 수취채권또는지불채무	52	30			

렬표시에 있어서는 보유부문 행의 기입항목)에도 2가지 항목의 거래를 기록한다. 2가지 항목 중 중요한 것은 기간중 경상적 활동의 결과로서 각 부문에 대해서(국민경제에 대해서)발생하는 잉여 즉, 저축이다. 그 잉여가 자본소모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것은 총저축(gross saving)이며, 자본소모를 공제하고 있는 경우 순저축(net saving)이 된다. 다른 항목은 자본이전(capital transfers)의 순수취를 나타낸다. 여기에는 재해 구원금(특별한 조치로 행해지는 것)과 배상금의 순수취를 포함한다.

이상 설명한 기록의 결과로서 이 계정의 균형항목이 정의되지만 이것은 좌측에 기입되고, 부문별(또는 국민경제의) 순대출 (net lending ; 플러스인 경우) 이거나 순차입 (net borrowing ; 마이너스인 경우)으로 불린다.

#### (B) 금융계정

이 계정의 좌측에는 전항에서 설명한 (2) 「채권으로서의 금융자산의 순증감」을 기록한다. 한편, 이 계정의 우측에는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전항의 (3) 「부채(채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순증감」을 기록한다. 이 계정의 균형항목은 정의상 자본계정의 그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명칭도 같은 「순대출/순차입」이 된다. 여기서 개정 SNA는 어떤 금융적 청구권 즉, 금융적 수단(financial instruments)을 열거하고 있는지 표 4-8(또는 4-9)을 통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그것은, 화폐용 금·SDR (monetary gold and SDRs), 현금통화와 예금(currency and deposits), 주식이외의 증권(securities other than shares), 대부(loans), 주식 및 기타 지분(shares and other equity), 보험기술준비금(insurance technical reserves), 기타 수취채권 이나 지불채무(other accounts receivable/ payable)이다.

마지막으로, 부문별로 본 이들 2가지 계정의 균형항목에 대해서 「93SNA(UN)」 책자의 숫자 예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부문별의 순대출, 순차입은 표 4-8에서 비금융법인 -68, 금융기관 6, 일반정부 -52, 가계 152, 해외 -38임을 알 수 있다. 이 숫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비금융법인, 일반정부와 해외에 대해서 각각 68, 52 및 38의 채무 순증가가 발생하고, 금융기관과 가계에서, 각각 6과 152의 채권이 순증가 한다는 것이다. 이것의 합계가 0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 다. 기타 자산변동계정

축적계정에 포함된 계정 중 「기타 자산변동계정(other changes in assets accounts)」은 이미 설명한 자본계정이나 금융계정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크게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 이 계정의 기록대상은 해당 국민계정의 경상적 경제활동이 아닌 「축적계정의 기록」항에서 설명한 (c)의 정상 거래를 포함하지 않는 플로우로서 처리해야 할 자산변동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불규칙한 자산변동에는 크게 나누어 두 종류가 있는데 그 것은 「기타 자산량 변동(other changes in volume of assets)」과 「자산의 재평가(revaluation)」이다. 여기서 자산이라 할 때 비금융 자산, 금융자산만이 아닌 부채도 포함됨은 물론이다.

### (1) 기타 자산량 변동

이것은 자산에 대한 장부가격의 불가피적·불규칙적 사정에 의한 변동 중 순수하게 수량의 변동에 귀착시킬 수 있는 것을 가리키며 표 4-10 또는 표 4-11과 같이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가) 비금융 자산의 경제적 출현(+) 또는 감소 (-) (채굴 가능한 지하자원의 신규발견 등),

(나) 비유성 생물자원의 자연성장(예측할 수 없는 지진과 전쟁에 의한 자산의 손괴 등),

(다) 보상되지 않는 몰수 (자국 정부와 타국에 의한 영토·재산의 일방적 몰수·합병 등),

(라) 분류 및 구조의 변경(지금까지 가계에 분류되어 있던 개인기업이 법인화 함에 따라 비금융 법인 부문에 포함하는 것 등).

### (2) 자산의 재평가

이것은 기타 자산변동 중 오로지 해당 기간 중 자산가격의 변동에 귀착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및 부채는 이미 가격변동에 나타나 있지만, 개정 SNA는 이 가격변동을 2개의 부분으로 분할해서 취급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실제로 해당기간에 발생하는 가격변동(이것을 명목적 또는 현실적 가격변동이라 한다)은 일반적 가격 수준의 변동에 비례하는 부분과 괴리되는 부분 즉, 상대적 가격변동과의 합성물이다.

표 4-10 기타 자산변동계정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계정행렬

계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1	13.2	13.3	13.4	14
0. 재화·서비스 계정																	
II. 소득의 분배·사용 계정		※ 414															
III. 1. 자본 계정		414 ※															
비금융자산의 경상적출현(+)/소멸(-)													17	0	1	0	0
III. 3. 1. 기타 자산량													0	0	4	0	0
채해 등에 의한 괴멸적 손실													-5	0	-6	0	0
보상되지 않는 몰수(+)/(-), 분류 및 구조의 변경													1	-3	2	0	0
기타 자산량 변동													1	1	0	2	0
기타 자산량 변동에 의한 순자산의 변동			18	4	-11	0	6										
III. 3. 2. 채평가계정													63	2	21	40	0
명목보유이익(+)/손실(-) (현실가격의 변동에 의한 것)													81	2	23	48	0
명목보유이익(+)/손실(-)에 의한 순자산의 변동													8	57	2	17	7
III. 3. 3. 기타 자산 변동계정										126	154	12					
비금융법인	13.1											18	134				
금융기관	13.2											51	10				
일반정부	13.3											7	39				
가계	13.4											0	105				
해	14											3	4				



표 4-11 기타 자산 변동 계정

계 정	자 산 의 변 동			부 채 와 순 자 산 의 변 동				계 정
	재 화 · 서 비 스	해 외	국 민 경 제	거 래 이 외 의 플 로, 균 형 항 목	국 민 경 제	해 외	재 화 · 서 비 스	
Ⅲ. 3. 1.		0	18	비금융자산의경제적출현(+)/소멸(-)	0	0		Ⅲ. 3. 1. 기타 자산량 변동계정
기타 자산량		0	4	비육성 생물자원의 자연성장	0	0		
변 동 계 정		0	-11	재해 등에 의한 괴멸적 손실	0	0		
		0	0	보상되지않는물수,분류·구조의 변동	0	0		
		0	4	기타 자산량 변동	-2	0		
				기타 자산량의 변동에 의한 순자산의 변동	17	0		
Ⅲ. 3. 2.		0	280	명목 보유이득(+)/손실(-)	0	0		Ⅲ. 3. 2. 재평가계정
재 평가 계 정		0	126	(현실가격의 변동에 의한 것)	0	0		
		0	154	비 금융 자 산	0	0		
		7	84	생 산 자 산	0	0		
				비 생 산 자 산	0	0		
			금 융 자 산 · 부 채	76	3			
			명목 보유이득(+)/손실(-)에 의한 순 자산의 변동	288	4			

따라서 전자만을 반영하는 자산재평가계정과 후자를 기록하는 재평가계정을 각각 설정해야 한다. 그것은 중립보유이득계정(neutral holding gains account)과 실질보유이득계정(real holding gains account)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의 재평가계정과 후자의 재평가계정에 각각 균형항목으로서 순자산변동을 산출한다. 전자는 중립적 재평가에 따른 순자산변동(changes in net worth due to neutral revaluation)이라 하고, 후자는 상호적 가격변동에 따른 순자산변동(changes in net worth due to changes in relative prices)또는 가격변동에 따른 실질적 순자산변동이라 한다. 그리고 이 양자의 합계가 명목 보유이득 또는 손실(nominal holding gains or losses)을 나타내고, 이것이 현실가격의 변동에 따른 순자산변동(changes in net worth due to changes in actual prices)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단, 표 4-10 및 표 4-11에서는 재평가계정을 나누지 않은 채 나타나 있다. 이러한 자산변동을 축적계정의 내용에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위와 같이 상세한 기록방식으로 전개하려는 것이 개정 SNA의 새로운 시도이다. 그리고, 이 시도는 현재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세계의 사회·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국지적 전쟁, 영토문제, 자원·환경문제, 인플레이션, 채무불이행, 대외원조, 자연재해 등)를 객관적·통일적 기준에서 기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 라. 순자산의 변동

개정 SNA에서 플로우계정의 기록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기 위해 순자산의 변동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우선 특정 제도부문의 순자산변동에 주목하고 다음으로 집계한 국민경제의 순자산변동을 생각하면 된다. 기중 순자산변동이 그것을 초래하는 원인별로 어떻게 분류되고 표시되는지도 4-1 「개정 SNA의 순자산변동」에 나타내었다. 이후에는 이 그림에 근거하여 순자산변동을 설명하기로 한다.<sup>3)</sup> 특정 제도부문 뿐만 아니라 그 집합인 국민경제에 대해서도 순자산변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2

3) 「93SNA(UN)」, p.22. Table 10. 1., p. 264, Table 12. 1. 및 pp. 274-275, Table 12. 2. 참조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1)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의해 자산이 변동될 수 있는 순자산의 변동과 (2) 그 외의 (정상이 아닌) 경제활동 등에 의해 자산이 변동되는 순자산변동이다.

(1)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의해 자산이 변동되는 순자산변동은 2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순저축과 「자본이전 순수취」로 국민경제로 보면 233(455-222)과 -3(62-65)이 된다.

(2) 그 이외의 원인에 의해 자산이 변동되는 순자산변동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눈다.

① 기타 자산량 변동에 의한 순자산변동으로 국민경제로 보면 이것은 17이다.

② 자산의 재평가에 의한 명목 순자산변동(명목 보유이득(+)/손실(-)에 의한 순자산변동)은 2가지로 분할한다.

a. 자산의 재평가에 의한 중립순자산변동(중립보유이득(+)/손실(-)에 의한 순자산변동(changes in net worth due to neutral holding gains/ losses)).

b. 자산의 재평가에 의한 실질순자산변동(실질보유이득(+)/손실(-)에 의한 순자산변동(changes in net worth due to real holding gains/ losses)).

도 4-1 개정 SNA의 순자산변동(괄호 안 숫자는 국민경제의 집계치)

기중 순자산 변동 (535)	순 저 축 (233)		기중 순자산 실질변동(327)	
	자 본 이 전 순 수 취 (-3)			
	기타 자산변 동에 의한 순 자 산 변 동 (305)	기타 자산량 변동에 의한 순자산변동 (17)		실질보유이득(+) /손실(-)에 의한 순자산변동(80)
		명목보유이득(+) /손실(-)에 의한 순자산변동(288)		
		중립보유이득(+) /손실(-)에 의한 순자산변동(208)		



「93SNA(UN)」 책자의 숫자 예에서는 국민경제에 대해서 a는 208, b는 80인 것이 나타나 있다.

도 4-1은 국민경제의 기중 순자산변동(535)이 플로우 계계정의 균형항목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기 쉽게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기중 순자산실질변동(327)이 순저축(233)+자본이전순수취(-3)+기타 자산량 변동에 의한 순자산변동(17)+실질보유이득/손실에 의한 순자산변동(80)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4)</sup>

### 3. 플로우계정과 스톱계정

#### 가. 플로우계정시스템의 표시

지금까지는 개별 플로우계정의 내용을 검토해 왔지만, 여기서 이들 플로우계정을 하나의 전체시스템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자. 여기에서도 「93SNA(UN)」의 수치 예에 따라서 계정행렬형식과 계정연결형식을 병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상술한 플로우계정을 모두 포함하는 시스템과 그에 따른 계정을 통합하여 간단화 시킬수 있다. 계정행렬형식에 의한 표시는 경제순환의 표시방식으로서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개정 SNA 본래 플로우계정체계를 이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정행렬형식에 의한 플로우·시스템의 표시를 정해진 방침·해석에 따라 대담히 계정 통합해야만 한다.

플로우계정행렬의 축약은 이것을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행하는 것이 알기 쉽다. 처음 단계로 플로우계정행렬의 축약은 다음의 (1) ~ (3)의 방침에 따라 하고,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계정행렬은 표 4-12와 같다.

(1) 고정자본소모를 기록하기 위한 계정(표 4-12의 계정4가 이것에 해당한다)은 여기에서 소득 발생계정의 소계정으로 처리하며 그것은 행에만 가입한다. 고정자본소모를 이 방식으로 처리한 결과 부가가치와 기타 집계치

4) 「93SNA(UN)」, pp. 37-38, par. 2. 150. 참조

는 당연히 모두 「순액」으로 표시된다.

(2) 표 4-12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국민경제」, 「해외」라고 하는 제도부문계정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일반적으로 국민경제계산의 주요 집계치(부가가치, 가처분소득, 저축 등)는 모두 하나의 계정계열에 포함한 관계계정의 균형항목(잔고항목)으로 정의한다. 이런 의미에서 계정구조는 개정 SNA는 현행 SNA에 비교해 균형항목으로 정의하는 주요 집계치가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 SNA의 플로우 계정행렬에서는 이러한 균형항목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보다 많은 곳에 제도부문계정을 설정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이상의 원칙에 따라 표 4-12에서는 거래계정을 다음과 같이 통합하고 있다.

① 소득의 발생계정은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순)」와 「기타 생산에 부과되는 세」를 통합하여, 「생산과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순)」로 한다.

② 소득의 제 2차 분배계정은 「사회부담」, 「사회적 현물이전 제외 사회수혜금급부」 및 「기타 경상이전」을 통합하여 「기타 경상이전」으로 한다.

③ 자본계정은 「순고정자본형성」과 「재고증감」을 통합하여 「순자본형성」으로 한다.

④ 금융계정은 표 4-8과 표 4-9에 나타나 있는 금융자산·부채의 형태별 분류를 하지 않기로 하고 그것을 통합해 단순히 「금융자산·부채의 순증감」으로 한다.

⑤ 재평가계정은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을 구별하지 않고 「비금융자산」으로 한다.

표 4-13은 계정연결형식에 의한 플로우계정시스템의 표시이다. 이 표시형식을 사용할 때는 위에서 설명한 계정통합은 모두 불필요하다.

#### 나. 대차대조표의 표시방법

지금까지는 개정 SNA의 플로우계정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번엔 스톡의 기록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국민경제계산에서 스톡의 기



III. 1. 차부계정	414	총자본형성	278	9	40	87	414	0	0	278	33	0	6	23	62	4	III. 1. 차부계정
	376	총고정자본 형성	250	9	37	80	376	1	0	250	-68	6	-52	152	38	-38	
III. 2. 금융계정	28	재고증감	26	0	0	2	28	0	0	26	0	0	0	0	0	0	III. 2. 금융계정
	10	중고품의 취득-처분	2	0	3	5	10	11	0	7	0	130	2	0	132	-2	
III. 3. 1. 자산량 변동계정	-222	고정자산소모(-)	-137	-10	-30	-45	-222	5	2	5	6	53	64	0	123	20	III. 3. 1. 자산량 변동계정
	65	비생산, 미금융자산의 순취득 자본 이전	7	0	2	8	65	2	34	8	26	13	0	4	43	3	
III. 3. 2. 재평가계정	-38	순대출·순차입	-68	6	-52	152	38	21	61	48	37	0	10	5	52	30	III. 3. 2. 재평가계정
	-1	화폐유금·SDR	0	-1	0	0	-1	0	0	0	0	0	0	0	0	0	
III. 3. 1. 자산량 변동계정	119	현금통화 및 예금	17	15	7	80	119	0	4	4	0	0	0	0	0	0	III. 3. 1. 자산량 변동계정
	138	주식 이외의 증권	18	53	26	41	138	5	3	3	0	0	0	0	0	0	
III. 3. 2. 재평가계정	244	대부	27	167	45	5	244	2	36	0	0	0	0	0	0	0	III. 3. 2. 재평가계정
	44	주식 및 기타 지분	2	3	36	3	44	0	0	0	0	0	0	0	0	0	
III. 3. 1. 자산량 변동계정	36	보험기출준비금	0	0	0	36	36	0	0	0	0	0	0	0	0	0	III. 3. 1. 자산량 변동계정
	61	기타 수취채권 또는 지불채무	7	0	6	48	61	0	0	2	17	-4	2	2	17	0	
III. 3. 2. 재평가계정	18	비금융자산의 경제저출현(+)/소 멸(-)	17	0	1	0	18	0	1	0	0	0	0	0	0	0	III. 3. 2. 재평가계정
	4	비유성 생물자원의 자연성장 재해 등에 의한 괴멸적 손실 보상되지 않는 물수(+/-) 분류 및 구조의 변경 기타 자산량의 변동 기타 자산량 변동에 의한 순자산의 변동	0	0	-6	0	-11	0	0	0	0	0	0	0	0	0	
III. 3. 2. 재평가계정	364	명목 보유이익(+)/손실(-) (현실가치의 변동에 의한 것)	152	61	46	105	364	7	44	21	48	51	7	0	76	3	III. 3. 2. 재평가계정
	280	비금융자산	144	4	44	88	280	0	23	23	18	10	39	105	288	4	
III. 3. 2. 재평가계정	126	생산자산	63	2	21	40	126	0	2	2	134	10	105	288	4	III. 3. 2. 재평가계정	
	154	비생산자산	81	2	23	48	154	0	2	2	134	10	105	288	4		
III. 3. 2. 재평가계정	84	금융자산·부채	8	57	2	17	84	7	2	2	134	10	105	288	4	III. 3. 2. 재평가계정	
	222	명목 보유이익(+)/손실(-)에 의 한 순자산의 변동	152	61	46	105	222	7	2	2	134	10	105	288	4		



표 4-14 스투계정 ( 개정 SNA )

계정	자 산						부 채 · 순 자 산						계정
	해외	국민경제	가계	일반정부	금융기관	비금융법인	자산, 부채 및 균형항목	비금융법인	금융기관	일반정부	가계	국민경제	
IV. 1. 기초대차대 조표		9922	3146	1591	144	5041	비금융자산						
	573	6047	1941	100	104	3001	생산자산	1817	3384	687	410	6298	297
		3875	1205	590	40	2040	비생산자산						
		6792	1991	396	3508	897	금융자산	4121	268	1300	4727	10416	276
							부 채						
							순자산						
IV. 2. 대차대조표 에서의 변동		1212	367	179	295	371	자산변동합계						
	57	482	135	56	1	290	비금융자산	155	285	176	61	677	91
	0	289	82	25	-1	182	생산자산						
	0	193	53	30	2	108	비생산자산						
	57	730	232	123	294	81	금융자산						
							부채변동합계						
							순자산변동합계	216	10	2	306	535	-34
							지속 및 자본이전 순수취	66	5	-40	199	230	-38
							기타 자산량의 변동	17	-4	2	2	17	0
							명목보유이득(+)/손실(-)	134	10	39	105	288	4
							실질보유이득(+)/손실(-)	51	5	12	11	80	-1
							증립보유이득(+)/손실(-)	82	5	26	95	208	6
IV. 3. 기말대차대 조표		10404	3281	1647	145	5331	비금융자산						
	630	6336	2023	1026	103	3183	생산자산	1972	3669	863	471	6975	388
		4068	1258	620	42	2148	비생산자산						
		7522	2223	519	3802	978	금융자산	4337	278	1302	5034	10951	242
							부 채						
							순자산						

록이란 국민경제, 해외의 기초와 기말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스톡의 기록과 지금까지 검토한 플로우의 기록 관계를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와 기말의 대차대조표를 비교할 때 거기에 포함된 모든 항목의 변동을 기록하는 대차대조표형식의 플로우계정이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플로우계정의 기록은 지금까지 설명한 플로우의 모든 계정 중 축적계정의 기록과 기본적으로 일치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플로우계정과 스톡계정의 관련성이나 통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SNA에서는 대차대조표 계정이 각 부문에 대해서 작성됨은 말할 것도 없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기초와 기말의 대차대조표가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그 시스템이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이미 플로우계정시스템의 표시에 대해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스톡의 계정에 대해서도 2가지 표시형식이 존재한다. 하나는 계정행렬형식에 의한 표시이고, 다른 하나는 계정연결형식에 의한 표시이다. 이 표시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93SNA(UN)」 책자의 숫자를 이용하여 표시한 것이 표 4-14, 표 4-15, 그리고 표 4-16이다. 이 표의 구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표 4-14 「스톡계정」은 기초대차대조표와 기말대차대조표를 제도부문별로 나타내고, 동시에 그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부문별·항목별 차이를 「대차대조표의 변동」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 표시가 개정 SNA에서 채용하고 있는 계정연결형식에 의한 것이다. 또 대차대조표에 있어서 변동으로 나타나는 숫자는 당연히 모든 축적계정(표 4-8~표 4-11)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일례로 여기서 표 4-14의 비금융법인의 대차대조표 숫자에 대해 확인해 보자. 이 부문은 기초에 비금융자산 5,041을 보유했는데 이것이 해당기간중 290을 증가하여 기말에는 5,331(5,041+290)이 되었다. 증감분 290의 내역은 순자본형성 141(총자본형성 278-고정자본소모 137), 비생산 비금융 자산 순취득 -7, 비금융 생산자산의 출현/소멸 12(이것은 표 4-13에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와 명목보유이득/손실 144이다.

비금융법인의 금융자산은 81(명목 보유이득(+)/손실(-) 8을 포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의 잔고 897에 더하면 기말의 금융자산잔고

978을 얻을 수 있다. 부채잔고에 대해서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관계가 성립된다. 이 부문의 기초순자산은 4,121이었지만 이것이 해당기간중 216이 증가하고 있다. 이 내역은 순저축 49, 자본이전순수취 17, 기타 자산량 변동에 의한 순자산 증/감 17, 그리고 명목보유이득(+)/손실(-)에 의한 순자산 증/감 134로 되어 있다.(주의. 이들의 숫자는, 사사오입의 오차를 포함한다. 5)

표 4-15 스투크계정행렬

			1	2	3	4	5	6	7.1	7.2	7.3	7.4	8	
기초대차 대조표	비금융자산·순자산	1							5041	144	1591	3146		
	금융자산·부채	2							897	3508	396	1991	573	
대차대조표 의변동	비금융자산·순자산	3							290	1	56	135		
	금융자산·부채	4							81	294	123	232	57	
기말대차 대조표	비금융자산·순자산	5							5331	145	1647	3281		
	금융자산·부채	6							978	3802	519	2223	630	
제도 부문	국 민 경 제	비금융법인	7.1	4121	1817	216	155	4337	1972					
		금 융 기 관	7.2	268	3384	10	285	278	3669					
		일 반 정 부	7.3	1300	687	2	176	1302	863					
		가        계	7.4	4727	410	306	61	5034	471					
	해        외	8	276	297	-34	91	242	388						

표 4-15는 표 4-14에 나타나 있는 내용과 거의 같은 것을 스투크계정행렬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자. 우선 제1행에는 기초의 비금융자산이 제도부문마다 어떻게 보유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1열에는 기초의 부문별순자산을 기입하고 있다. 이 행의 합과 열의 합은 이론상 모두 일치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이것이 해외를 포함한 집계치 임을 고려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7.1 에서 7.4 까지의 계정은 각 제도부문의 대차대조표를 기록하고 있다. 그 행에는 대차대조표 우측의 숫

5) 「93SNA(UN)」, PP. 62-65 참조

표 4 16 스탁·플로우 통합계정행렬(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플 로 우 계 정	0. I. II. 경 상 계 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순저축, 경상대의수지	192																									
	III.1. 자본계정 III.2. 금융계정	순자본형성(순고정자본형성, 재고품변동)	2	192																							
		비생산 및 비금융자산 순수취	3																			141	-1	10	42		
		자본이진 순수취	4																			-7	0	2	5		
		금융자산·부채순증가	5																								
		비금융자산의 경제적 출원 (+) / 소멸(-)	6																			71	237	120	213	50	
		비유성 생물자원의 자연성장	7																			17	0	1	0	0	
	III.3.1. 기타 자산량 변동	재해 등에 의한 괴멸적 손실	8																			0	0	4	0	0	
		보상되지 않는 물수, 분류 및 구조의 변경	9																			-5	0	-6	0	0	
		기타 자산량 변동	10																			1	-3	2	0	0	
		기타 자산량 변동	11																			1	1	0	2	0	
	III.3.2. 채평가계정	기타 자산량변동에 의한 순자산의 변동	12						18	4	-11	0	6														
		비금융자산	13																			144	0	44	88		
		금융자산·부채	14																			8	57	2	17	7	
		명목보유이익(+)/손실(-) / 실재가격변동에 의한 것	15											280	12												
		명목보유이익(+)/손실(-)에 의한 순자산의 변동	16																			5041	144	1581	3146		
	IV.1. 기초대차대조표	비금융자산·순자산	17																			887	3508	396	1991	573	
		금융자산·부채	18																			5331	145	1647	3281		
		비금융자산·순자산	19																			978	3802	519	2223	630	
	IV.3. 기말대차대조표	비금융자산·순자산	20	49					17	140	0	0	0	1	-4	17		18	134	4121	1817	4337	1972				
		금융자산·부채	21	12					-7	232	0	0	0	2	-4		51	10	268	3384	278	3669					
		국민경제	22	-12					-28	170	0	0	0	-1	0	2	7	39	1300	687	1302	863					
		일반정부	23	184					15	61	0	0	0	0	0	2	0	105	4727	410	5034	471					
가 계		24	-41					3	88	0	0	0	0	0	0	3	4	276	297	242	388						
해 외																											

자(부채와 순자산)를, 열에는 좌측의 숫자(자산)를 기입한다. (주의. 그러나 실제로는 표 4-15의 제1~제6 계정의 행의 합과 열의 합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 숫자가 개정 SNA와 같기 때문이다. 1968년 SNA와 1990년 SNA개정안 초안(United Nations SECRETARIAT [1990])의 숫자 예에서는 이 정합성은 지켜지고 있다. 표 4-15에서의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조정계정의 도입이 필요하게 된다.)

표 4-15의 3번째와 4번째의 계정은 축적계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플로우계정 기록과 스톡계정 기록의 양쪽을 포함한 통합형의 계정행렬은 이미 표 4-14에 의해 나타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형식의 계정행렬은 이미 나타낸 플로우계정(생산계정 등의 경상계정과 축적계정)과 스톡계정을 동시에 포함하도록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스톡·플로우통합계정행렬은 어느 정도 축약한 형태로 표 4-16에 나타나 있다. 표 4-16의 구조상 요점을 다음과 같이 들어보자.

① 경상계정은 모두 통합되어 있고, 이것은 순저축 + 경상대외수지 192와 순자본형성 192의 2항목을 통해서 축적계정과 연결되어 있다.

② 그 외 자산항목, 부채항목 및 순자산항목의 변동은 축적계정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표 4-16에는 그것을 원인별로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③ 20번째 이하 계정의 행과 열의 기입은 표 4-15와 마찬가지로 대차대조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④ 표 4-16에는 표 4-14의 「IV.2. 대차대조표의 변동」이나 표 4-15의 제3, 제4의 계정은 이미 필요 없어 삭제하고 있다.

## 제Ⅱ부 국 민 소 득

## 제 5 장 생산의 범위

### 1. 「생산의 범위」 문제

#### 가. 재화와 서비스

국민생산물, 국민소득을 비롯한 모든 유용한 국민경제 집계치는 국민경제 계산 방법에 의한 국민경제의 순환표시에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국민경제 계산의 기록 대상이 되는 플로우와 스톡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록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생산활동과 그 성과로 분류되는 생산물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생산물을 개정 SNA에서는 「재화·서비스(goods and service)」라 한다. 즉, 「재화·서비스」라는 용어는 생산활동의 성과라고 인정되는 생산물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화·서비스의 범위에 관한 고찰은 생산물의 범위(즉, 생산활동의 범위)를 규정짓는 것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생산물(또는 생산활동)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통상 「생산의 범위」 문제거나 간단히 생산범위문제(production boundary problem)라 알려져 왔다. 이 장에서 생산범위문제를 직접 거론하기에 앞서, 예비적 고찰로써 우선 재화와 서비스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라는 약간 기초적인 문제부터 접근해보도록 하자.

재화와 서비스의 구별을 설명하기 전에, 양자가 갖는 공통적인 특징을 알아보자. 그 공통점은 이를 생산하는 경제주체와 소비하는 경제주체가 원칙적으로 다르다는 것, 또 양자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화·서비스는 판매와 구입이라는 거래의 대상으로서 파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비스라 지칭하는 생산물의 개념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단, 다음의 정의는 일반적·보편적 개념이 아닌 개정 SNA의 이론을 비교적 충실히 따른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편의상 도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서비스란 그 제공(판매)과 소비(구입)가 원칙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동일한 장소에서 분리 불가능

한 동일의 시점에 행해지는 것으로 객관적인 식별이 가능한 생산물의 「변화(change)」를 가리킨다. 단, 여기에서 「동일의 장소에서」 라는 표현은 엄격히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서비스의 제공이 음성, 문자나 영상을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송신자와 수신자는 지리적으로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도 거래는 가능한 것이다.

이 정의에서 명확히 규정한다면, 서비스 생산자와 소비자 (그것이 동일인 이여도 무방)는 같은 장소에서(또는 동일한 매체를 이용해서) 같은 시간에 직접 거래하는 것이며 양자 사이에 제삼자가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서비스를 「변화」라고 규정지을 때 그 변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개정 SNA는 이러한 변화를 4종류로 나누고 있다.<sup>1)</sup>(생산물인 서비스를 「변화」라고 특징지어 나 타낸 것은 Hill 「1977」이다.)

① 재화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예: 운송, 청소, 수리 등)

② 개인의 신체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예: 숙박, 식사, 의료, 미용 등)

③ 개인의 정신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예: 교육, 정보제공, 오락 등)

④ 경제주체나 그 집단의 일반적 생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예: 보험, 자금중개, 경비, 기상예보 등)

한눈에 보아도 이 「변화의 분류」는 엄밀한 분류가 아니다. 예를 들면, 미용성형 서비스는 상기의 분류에서 ②에 포함되고 있지만 이것은 개인의 정신상태 변화(③)와 생활조건의 변화(④)에도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의 설명으로 서비스가 갖고 있는 특징과 재화와 서비스의 구별에 관해 대략적인 이해는 되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예1) 제조하여 판매하는 차량은 재화에 포함되고 이미 판매한 차량의 간단한 수리·점검·보수는 서비스로 분류된다. 그러나, 일단 판매된 차량

---

1) 「93SNA(UN)」, p.123, par.6.10. 참조



의 대규모 개조는 재화의 생산인가? 서비스의 생산인가? 이런 경우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판매한 차량의 개조가 그 차량 소유자의 의뢰에 따라 개조 후에도 소유권에 변동이 없다면 개조는 정의상 서비스의 생산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 차량을 수리업자가 매입해서 독자적으로 개조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의 개조는 재화의 생산임에 틀림없다.

(예2) 음악 애호가 취미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생산물에 관한 서비스 제공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분류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에, 전문가가 연주하는 음악은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은 거론의 여지도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음악의 저작권, 악보, 음악을 수록한 자기 테이프 등은 서비스가 아닌 재화인 것이다.

#### 나. 「생산의 범위」 문제점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생산물인 재화·서비스의 범위, 바꿔 말해 재화·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생산활동의 범위를 고찰하는 문제(「생산의 범위」 문제)는 국민경제 계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과제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는 경제학의 역사와 함께 아주 오래된 과제임에 틀림없다. 생산활동이나 생산물의 판별기준을 둘러싸고 오래 전부터 여러 견해가 있어 왔다. 우선, 가장 소박한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복지나 개인적 만족을 가져온 재화·서비스를 식별하고, 그것들을 비용이나 시장가격에 의하여 평가하고 집계하여 국내 생산물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재화·서비스의 유용성에 의한 판단이 본래 철저히 주관적·자의적이기 때문에 실행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생산활동이나 생산물이 무엇인가?를 실제 추계작업이 가능한 방법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3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생산활동은 그것에 의해 재화·서비스의 산출이 객관적으로 식별되는 활동이어야 한다.

(2) 산출된 재화·서비스는 시장가격이나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척도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3) 생산활동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희소요소(scarce factors) (예를 들면 노동과 자본 서비스)의 투입이 필요 불가결하다.

이 3가지 조건은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판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그 중에서 무엇 하나라도 제외된다면 생산활동이라 인정할 수 없다. 역으로,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활동은 생산활동이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활동의 범위를 규정하는 문제는 이 기준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석하는가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생산의 범위에 관한 고찰은 통상 상식적 판단과 제도상의 틀을 넘어서는 것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비합법적인 행위에 의해 제조된 재화·서비스 (마약의 제조와 판매 등)도 생산물에 포함된다. 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이 국민전체의 생산활동의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설명으로는 얻기 어려운 생산활동을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그것들이 바로 귀속생산활동과 비시장 생산활동이다.

#### 다. 귀속생산활동

국민경제계산은 현실에서 실행하지 않는 거래를 마치 실행하는 것처럼 설정하고 평가·기록하는 것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방법을 「귀속」이나 「귀속처리(imputation)」라고 부른다. 생산활동과 생산물의 기록·평가는 과연 어떠한 형태로 귀속처리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자. 자가소유주택의 귀속임대 서비스를 예로 들면, 개인이 비영업용으로 소유하는 자가소유주택(owner-occupied dwellings)에 자기 자신이 거주하는 경우 그 집이 제공하는 임대 서비스는 거주자의 입장에서 볼 때 무료로 소비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임대 서비스는 만약 그 집 소유자가 부동산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 산업의 생산물에 포함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처럼 집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무료로 소비하고 있는 경우, 이 임대서비스를 귀속처리에 따라서 생산물에 적용하고 그것을 생산활동으로 귀속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자가소유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일종의 생산활동인 것이고 그것이 「산업」을 구

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유·공유의 고정자산(청사 등)이 가져오는 임대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 위에서 서술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런 종류의 자산에 대해서 귀속생산활동과 귀속생산물(귀속 임대서비스)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고정자산의 소유자인 어느 한 일반정부가 본래 공공서비스의 생산자로서 귀속 임대서비스의 생산활동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일본의 경우, 국유·공유의 고정자산에 대해 귀속 임대서비스를 산출하고 국민생산물에 부여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

#### 라. 비시장생산활동

일반적으로 생산활동은 시장을 통해 자기 생산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생산자(market producers)에 의한 생산활동과 자기의 생산물을 판매하거나 평가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비시장 생산자(non-market producers)에 의한 활동으로 분류한다. 전자에 의한 생산물이 시장생산물 또는 시장산출(market output)이고, 후자에 의한 생산물은 비시장 생산물 또는 비시장 산출(non-market output)이다. 여기서 비시장 생산자에 의한 산출에 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비시장 생산활동의 주요한 예로 일반정부가 행하는 생산활동을 들 수 있다. 현행 국민소득 이론과 추계에서 일반 정부는 훌륭한 생산자로서 자리매김 되었고 비시장 생산자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 비시장 생산자는 일반정부로 한정하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일반정부의 생산활동에 특히 주목하자. 일반정부는 자신이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생산물(비시장 생산물)을 사회에 제공한다. 생산물은 많은 종류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일괄하여 정부 서비스, 또는 공공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는 사회생활에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국방, 치안·안전의 유지, 교육, 위생, 자료정리, 계획편성 등 다수 분야에 분포하고 있다. 일본의 국민경제계산은 일반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생산물에 포함되는 서비스를 다음 9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1. 일반정부 서비스, 2. 방위, 3. 교육, 4. 보건, 5. 사회보장·복지 서비스,
6. 주택·지역개발, 7. 그 외의 지역사회 서비스, 8. 경제 서비스, 9. 기타

다시 말해, 열거한 서비스는 사회생활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생산물이지만 성질상 사적부문에 의해서는 제공받기가 어려운 것들이다. 정부서비스는 특정 수요자에 대해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제공되고 대중에 의해 공공적으로 소비되는(예를 들면, 기상청이 발표하는 기상예보와 같은) 것이다. 또, 정부서비스는 시장을 통해 매매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격도 시장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정부서비스를 비시장 생산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위에서 서술한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서비스가 갖는 일반적 성질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모든 정부서비스가 예외 없이 사적부문에 의해 시장생산물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교육서비스는 일부가 예비학교, 학원 등 「수험산업」으로써 시장생산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방범서비스의 일부가 시장생산물으로써 생산하고 있는 것은 경비보안회사의 존재를 생각한다면 더욱 더 명확해 질 것이다.

정부서비스는 사회에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서비스가 어느 경제주체에 의해 얼마만큼 소비되었는지(이용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정부서비스는 대부분(각종 수수료의 징수 등, 상품·비상품의 판매라 간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이 일반정부 자체에게 판매된 것처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서비스의 평가액은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평가하여, 대중을 대신하여 정부자신이 이 서비스를 구입하여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다.(이렇게 설정된 일련의 가공된 거래는 앞에서 설명한 귀속거래의 한 종류이다.)

## 2. 「생산의 범위」 결정방법

### 가. 생산범위 문제와 SNA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생산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

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국민경제계산에서 이 문제를 어떠한 입장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생산의 범위에 대해 현재의 이론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도 5-1 「생산의 범위」이다. 이제부터 이 그림을 이용하여 개정 SNA의 이론에 따라 생산의 범위 문제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자.

도 5-1 「생산의 범위」

재화·서비스의 제공을 동반한 경제활동	기본적 인간활동		
	일반적인 생산의 범위		
	생 산 활 동	가정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생산활동	
		SNA에 의한 생산의 범위	
	SNA에 의한 생 산 활 동	비시장생산활동 시장생산활동	

우선, 이 문제에 관한 고찰 대상을 가장 광범위하게 본다면 「재화·서비스의 제공을 동반한 경제활동」 전체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그림 5-1이 잘 나타내고 있다. 전체의 크기는 특정 국민경제를 통해 본다면 거의 모두 제공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의미에 의한 재화·서비스 제공활동 전부가 생산(적)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활동 전체에는 개인이 순수하게 자신의 만족감과 쾌감을 얻기 위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행 할 수 없는 활동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은 수면, 목욕, 식사, 독서, 산책 등을 매일 매일 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만족감을 얻고 있지만 이 행동을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이라 인정할 수는 없다. 또, 분재를 키우고 낚시를 가는 등의 여가를 이용한 취미생활도 생산활동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행위들은 일개인의 기본적 인간활동(basic human activities)으로 보고 그림 5-1과 같이 생산범위의 외부에 위치하고 있다.

## 나. 생산적 활동

기본적 인간활동이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은 비생산적 활동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생산적 활동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기본적 인간활동과 생산적 활동의 범위(또는 생산적 활동의 내부)를 「일반적인 생산의 범위(the general production boundary)」라 칭하고 그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기본적 인간활동의 성질에 대해 살펴본 다음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을 정의한다면 그와 같은 활동이 생산적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 인간활동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점을 들 수 있다. 그것은

(a) 「동일한 개인이 재화·서비스의 제공과 소비를 하고 타인이 그것을 대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이고,

(b) 「재화·서비스의 제공에 즈음하여 희소자원인 요소 서비스(노동과 자본 서비스)가 투입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 (a)와 (b)중에 적어도 그중 하나가 성립하고 있다면 그 활동은 기본적 인간활동이고 일반적 생산범위의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본적 인간활동의 조건인 「(a)와(b)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성립」이라는 명제의 부정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바꾸어 말해 이것은 명확히 「(a)와 (b)가 함께 성립하지 않는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조건(부정형조건)이 성립할 수 있는 활동을 생산적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위에서 설명한 개인의 수면, 목욕, 식사, 독서, 산보 등의 행위는 모두 (a)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 분재를 키우고 낚시를 가는 등의 취미 행위는 (b)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 확실한 확인을 위해 생산적 활동을 위 설명에 맞추어 변경하여 정의해 보자. 위 2가지 조건(a), (b)의 부정명제를 각각 ( a' ), ( b' )라 한다면 (a' )는 「재화·서비스의 제공과 소비가 반드시 동일한 경제주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짓지 않는다」라 할 수 있고 (b' )는 「재화·

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희소자원인 요소 서비스(노동 등)의 투입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a')와 (b')의 성질을 함께 겸비한 인간 활동이 생산적 활동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정의를 설정해 놓고 현실의 인간 활동 전부에 대해 그것이 일반적 생산 범위의 안에 있다든지, 아니면 밖에 있다든지 를 판단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행하는 독서라는 행위에 관해 생각해 보자. 독서가 개인자체의 즐거움이라 한다면 그것은 생산적 활동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독서는 생산적 활동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직업상의 필요에 의해 전문서, 자료, 매뉴얼의 종류를 읽는 것과 같은 경우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 독서는 위에서 서술한 (a')와 (b')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다. SNA에 의한 「생산의 범위」

도 5-1 「생산의 범위」를 보면 일반적인 생산의 범위 안쪽에 그것보다 작은 범위의 생산범위가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SNA가 정하고 있는 실제 생산 활동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SNA에 의한 생산의 범위」라 칭하고 있다. 즉, 생산의 범위에는 두 종류의 것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생산의 범위이고, 다른 하나는 SNA에 의한 생산의 범위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 차이는 생산의 범위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차이이고 개정 SNA자신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이론상의 생산의 범위에 비하여 개정 SNA는 현실적 관점에서 그것보다 매우 작은 생산의 범위를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양자의 차이는 그림에서 보듯이 「자가 소비되는 가정 내 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개정 SNA는 밑에 표기하고 있는 6항목을 기본적인 의미에서 생산활동이라 인정하면서 생산범위의 외부에 있다고 정하고 있다.<sup>2)</sup>

① 가계가 거주하는 집의 청소, 장식과 보수(소유자와 임차인에 의해 통상 이루어지는 간단한 수리를 포함)

2) 「93SNA(UN)」, p124, par.6.20참조

② 가계가 보유하는 내구재·기타재의 청소 (가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운송기계를 포함), 보수서비스 및 수리

③ 식사의 준비, 시중

④ 아이의 보살핌, 훈련과 교육

⑤ 병자, 장애인이나 노인의 간병

⑥ 가계구성원이나 그 재화의 수송

개정 SNA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가계내 서비스의 제공활동을 생산적인 활동이라 한다. 또 그 질과 양이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활동이 실제상으로는 모두 생산의 범위 외부에 존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개정 SNA는 그 이유를 서술하고 있는데 대략 다음 3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 자가소비를 위해 가계내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화와는 달리 보존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계량하고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이와 같은 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형태와는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b) 이와 같은 서비스는 만약 그 수량·금액을 추계한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거액의 서비스가 될 것이다. 그와 같은 거액의 서비스를 적절한 방법으로 귀속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c) 이와 같은 거액의 서비스를 귀속적으로 계상하고, GDP(국내총생산)와 GNP(국민총생산)에 포함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SNA의 기본적인 목적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거액을 귀속적으로 처리한다면 그 결과 뒤에 일어나는 사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가계의 수입과 지출이 비약적으로 증대 할 수도 있고 게다가 그 증대에 의해 가계의 수지구성은 자유 선택성 없이 경직될 것이다. 가계의 수지에 발생하는 이런 비시장성·비선택성·비화폐적 경직성 등은 거시경제통계치에 대해서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영향은 SNA가 거시경제의 분석과 계획을 위한 다목적 중심시스템임을 고려한다면 그것과는 전혀 반대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의문은 사회에서 종종 문제점으로 지적 받고 있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정의 주부가 매일매일 행하고 있는 가사노동이 창출하는 서비스는 왜 GNP(또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가」라는 소박한 의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주부가 제공하는 가사 서비스는 이론적으로 생산물이지만, SNA의 생산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의할 수 있다.

### 3. 「생산범위」의 변동

#### 가. 생산범위의 이동

여기에서는 생산범위가 하나의 사회 한 국민경제로서 절대적인 객관성을 가진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변동하고 변화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자. 도 5-1이 표시하고 있는 재화·서비스의 제공활동 전체의 크기는 당연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된다.

그것이 신기술의 개발·도입, 신규수요의 개척 등의 결과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 그것과 동시에 일반적인 생산의 범위와 SNA에 의한 생산의 범위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확대되고 변화한다. 이와 같은 확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장경제의 침투 및 통계제도 정비의 결과 어떤 시점까지 SNA의 기준에서 생산활동으로 식별하고 평가하지 않던 경제활동이 새로운 시점에서 생산활동이라 인정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의 주부가 다른 가정에서 급료를 받으며 가정부로 일하고, 대신 자신의 가족을 위해 외식 산업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이것의 적절한 예일 것이다. 여기에서 SNA에 의한 생산의 범위가 이동(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산범위의 이동(확대)이 경제발전과 더불어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시켰는데 그것은 어떠한 원인에서일까? 그 원인을 편의상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도록 하자. 그것은 (1) 생활 양식의 변화 (2) 가치관·기호의 변화 (3) 생활환경의 변화이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1) 시간의 추이와 함께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생활양식의 변화가 모든 면에 걸쳐 일어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일

예로 복수세대가 동거하는 생활형태는 감소하고 소수 세대가 동거하는 생활형태가 증가하는 이른바 핵가족화가 진행된다면, 전체로 본 생활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하는 재화·서비스의 수요(공급)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2) 주로 생활수준 상승의 배경이 되는 가치관과 기호의 변화가 재화·서비스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여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것은 가속화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단체여행과 각종 스포츠·클럽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건강유지를 위해 시설을 빈번히 이용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까지 거의 무시되었던 행동들이 새로운 취미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다면(야생조류 관찰, 수석감상 등) 그것과 관련된 재화·서비스의 제공이 확대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3) 생활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의 정비(공원의 개설, 향만의 건설 등)는 그것 자체가 생산활동이지만, 동시에 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도 생산물인 것이다. 그러나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일단 악화된 환경을 복구하려는 노력이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과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려는 활동 모두를 SNA는 같은 생산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범죄, 교통사고 등의 방지와 처리를 위한 비용의 지출은 전부 생산활동에 포함하고 이것이 생산범위 확대의 한 원인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 나. 생산범위의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한 국가경제에서 생산의 범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닌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이동한다는(확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생산범위 즉 시간적 비교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 생산의 범위의 공간적 비교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이 문제는 생산범위의 국제 비교라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생산물의 국제비교를 하려는 경우, 비교하는 두 국가의 생산범위가 많은 차이가 있을 때 이는 정당한 비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두 국가의 생산범위가 많은 차이가 있으면 양국의 국민생산물은 각각

상당한 차이의 재화·서비스를 나타낸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상 국민생산물(국민소득)의 국제비교라는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각 국 통화의 구매력 차이를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 하는 문제로 나타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큰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 두 국가의 경제가 서로 다른 발전단계를 거쳤다면, 국가들 간의 생산범위의 차이는 통화의 구매력의 산출법 등과 비교해 매우 기본적이고 곤란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자.

경제발전의 단계가 다른 두 국가를 지정해 편의상 A국가, B국가라 부르도록 하자. A, B의 두 국가가 각각 소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 가정한다면 A국가의 일인당 국민생산물이나 국민소득은 명목상 비교에서 B국가보다 매우 (몇 십 배라도) 클지도 모른다. 하지만 양국간 생산범위의 불일치라는 문제를 고려해 본다면, 명목상 일인당 국민소득의 차이는 그것이 어떠한 통화환산율로써 계산되었든 간에 양국의 경제활동 수준의 차를 충실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A국가와 B국가의 생산범위는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일까 하는 점을 조금 과장해서 서술한다면 다음과 같다.

A국가는 . . . . , 시장경제가 깊숙이 침투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차장, 화장실은 유료이고 유료도로도 적지 않다. 또 가사의 분업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진 주부도 다수 등장하고 그를 위해 가족이 외식을 하는 기회도 증가하고 있다. 교통기관이 발달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교통사고도 빈번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수리, 치료, 보험, 조정, 재판이라는 서비스에 거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 A국가는 공업화, 도시화로 인해 자연환경이 매우 파괴되었고, 이것을 수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거액의 비용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새, 화초, 정원석에서 곤충에 이르기까지, 아주 고가로 판매하는 기현상이 나타난다. A국가는 이러한 유료적인 재화·서비스가 거의 전부 국민생산물(정확히는 국내생산물)에 산입되고 있다.

B국가는 . . . . , 경제발전은 큰 차이로 뒤쳐져 있지만, 도시화가 초래한 공해가 적고, 자연환경도 잘 보존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기술한 A국가

에서의 유료화 된 재화·서비스의 대부분의 것이 B국가에서는 아직 생산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무료화 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B국가는 자연에서 생산되는 동식물을 이용하는 등, 자급자족의 물자조달 방식이 매우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재화·서비스는 많은 부분이 생산물에 산입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A국가의 생산활동 영역은, B국가와 비교해서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국 국민생산물의 차는 실제 생활수준의 차를 매우 상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국가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B국가의 50배가 넘는다 할지라도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양국의 실제 차이는 10~20배 정도라 상상해도 무난할 것이다.

#### 다. 「생산의 범위」 비교의 문제점

위에서 서술한 바에 의하면 A국가의 국민생산물은 B국가의 그것에 비교해서 과대하게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단정을 해도 좋은 것인가? 그렇다면 그러한 단정에 의문을 던져보고 어떠한 반론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경제활동 수준이 상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동시에 시장 외의 생산활동과 생활활동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펼쳐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시장 외의 활동에서 산출되는 재화·서비스가 개인과 사회에 필요한 부분으로 충족되고 있다. 그럼에도 비시장 활동이 가져다준 재화·서비스(개정 SNA의 용어법을 뛰어 넘는 광의의 재화·서비스를 가리킴)중에서, 원칙적으로 국민생산물에 산입되는 것은 정부 서비스와 민간 비영리단체 서비스뿐이다. 다시 말해, 그것 이외의 광의의 비시장 서비스는 모두 생산물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것을 A, B 두 국가의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보자.

A국가는 . . . , 정보산업이 매우 발달하였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대중 매체가 널리 보급되어 있고 많은 정보 서비스를 무료로 얻을 수 있다(일기예보, 이벤트 정보, 도로교통 정보 등). 문화, 예능, 스포츠 등의 수준도 높고, 아마추어 음악가에 의한 콘서트, 무료로 공개되는 전람회·강연회

등도 빈번히 열리고 있다. 많은 가정은 자녀의 교육에 무엇보다도 열심이고, 아이들에게 가정교사를 두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한편 주부 가운데 사회봉사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는 실정이다. 또 임금이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가정의 간단한 수리작업은 가족이 여가를 이용하여 직접 고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범위의 외부에서 제공되는 것은 서비스뿐만이 아니다. 휴일에 하는 집안일이나 정원의 작물 등은 모두 실제 선진국에서는 생산물에 산입하지 않는 재화이다.

B국가는 . . . . , 위에서 예를 든 A국가의 서비스는 B국가에서는 비교적 조금밖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 만약 서비스의 일부가 획득 가능하다 할지라도 무료가 아닌 유료일 것이고, 비교적 상류층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는 형태일 것이다. 왜냐하면 B국가에서 A국가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와 문화적 서비스를 구하려고 한다면 외국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야 하고 고액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A국가의 국민생산물은 대량의 무료 서비스를 제외한 것이고, B국가의 그것에 비교해 과소평가한 경향이 있다 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에서 경제활동의 형태가 명확히 다른 두 국가(위에서는 A국가, B국가)간의 생산의 범위의 비교는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비교가 얼마나 곤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함에 있어 생산의 범위는 급속하게 확대되는데 바로 그것이 선진국가들의 GDP(또는 GNP)를 과대 평가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종종 주장되고 있는데 이는 상식적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식은 선진국들의 「생산범위」의 확대에는 불분명한 점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제 6 장 국민소득 개념

### 1. 국민소득의 측정

#### 가. 국민소득의 측정기준

일정 기간의 국민경제 플로우를 나타내는 순환구조는 제2장에서 국민경제계산 방식을 이용하여 포괄적으로 서술한 바 있다. 그리고 포괄적인 서술(예를 들면 표 2-4)에서 국민경제의 플로우 구조 안에 유용한 국민경제 집계치(national economic aggregates)를 포함하고 있다. 이 국민경제 집계치 중에서 국민소득은 국민경제 활동의 규모를 나타내는 특별히 중요한 측정치이다.

국민경제가 일정한 기간(통상 1년)에 최종적으로 산출한 생산물과 소득의 플로우 전체를 금액으로 표시한 측정치를 국민소득이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소득은 생산물과 소득을 포괄적으로 나타낸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이하 서술할 다면적 개념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한 가지 집계치가 아닌 몇 가지 이상 집계치의 총칭인 것이다. 이런 국민경제 집계치는 서로 관계없는 수치를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순환을 통해 상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국민소득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제순환을 국민소득의 측정이 용이한 국민경제계산방식을 통해 기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경제계산 방식은 원리적으로 제2장에서 전개한 국민계정시스템에서 이끌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장에서 국민소득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표시는 모두 제2장에서 전개하고 서술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표 2-4 「일본 경제의 플로우계정(Ⅱ)(1994년)」에 서술한 플로우, 특히 경상적 비금융 플로우의 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다의적인 국민소득의 개념을 통일적인 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국민소득의 공통 평가기준이나 측정기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이 같은 측정기준을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1) 국민소득의 3측면, 다시 말해 국민소득의 생산측면, 분배측면 및 지출측면

(2) 「국민」 개념과 「국내」 개념

(3) 총액 표시와 순액 표시

(4) 시장가격 평가와 요소비용 평가이다.

이하 이 기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자.

## 나. 국민소득의 3측면

국민소득은 생산, 분배(또는 소득), 지출의 3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3 가지 측면을 「국민소득의 3면」이라 한다. 국민소득의 생산면이란 일정기간 동안 국민경제가 생산한 최종생산물을 가리킨다. 이처럼 최종생산물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국민소득을 생산국민소득이라 한다. 다음으로 분배면에서 측정하는 국민소득을 분배국민소득이라 한다. 최종생산물의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배의 과정을 거쳐 생산에 기여한 요소서비스 제공자의 수입이 된다. 따라서 분배국민소득은 피용자 소득(피용자 보수, 임금·봉급 등), 재산소득(이자, 배당, 임대료)과 기업소득(법인 및 개인기업의 제 1차 소득)으로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소득을 지출면에서 본 추계치를 지출국민소득이라 한다. 이것은 국민생산물을 구입 측면에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각 경제주체는 목적에 상응되도록 최종생산물을 구입한다. 소비자는 소비할 물자를 사고, 기업은 생산을 위해 건물과 기계를 구입한다. 전자는 개인소비이고, 후자는 고정자본형성이다. 이것들이 지출국민소득의 주요한 부분이다. 기업이 구입한 원재료 중에서 해당기간 중에 중간생산물로 이용하지 못한 부분과 생산자로서 기업 자체가 보유하는 제품은 재고증가를 형성하지만, 이것도 지출국민소득에 포함된다. 최종생산물의 구입자는 일반적인 소비자와 기업만이 아니다. 일반정부와 민간비영리단체도 재화와 서비스의 유력한 최종 구입자라 할 수 있다. 또, 생산물의 일부는 비거주자에 의해 소비될 수 있다.

일정기간 동안에 구입된 이 생산물의 총액이 지출국민소득이다. 따라서 지출국민소득의 구성을 살펴보면 최종생산물이 어떠한 용도로 쓰여졌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이상 서술한 3가지 집계치, 즉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두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국민소득의 3면 등가의 원칙」이라 한다.

국민소득을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생산」, 「분배 또는 소득」, 「지출」의 3면에서 정의 내리는 방법을 전문가들이 폭넓게 승인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국민 소득의 3면」을 설명한 것은 국민적, 국내적 생산물 집계치의 다면성을 강조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sup>1)</sup>.

#### 다. 「국민」 개념과 「국내」 개념

한 국민경제의 거주자가 실행하는 국민경제 활동의 범위는 지리적, 법률적 의미로 국내에서 실행하는 국내경제 활동의 범위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국민경제 활동의 범위 즉, 국내제도 부문(거주자에 의해)에 의한 경제 활동의 성과로써 산출되는 생산물과 소득을 「국민」 개념(“national” concept)에 의한 국민소득 집계치라 한다. 이에 비해, 거주자(국내 제도부문)와 비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국내에서 산출한 생산물과 소득을 「국내」 개념(“domestic” concept)에 의한 집계치라 하고 있다.

생산, 분배 및 지출의 3면에 관한 모든 기본적인 국민경제 집계치에 대해,

---

1) 개정 SNA에서 「3면」이라는 표현은 물론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광의의 국민 소득 개념의 다면성에 유의하고 있는 것은 개정 SNA에서 공급·사용표(supply and use table)가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생산측면과 소득측면의 구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시장가격표시 GNI(국민총소득)은 1953년 SNA에서는 국민총생산이라 불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일상적으로 GNP라고 호칭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GDP와는 대조적으로 GNI(국민총소득)은 부가가치 개념이 아닌, 소득(제1차 소득)의 개념이다.」 (「93SNA(UN)」, p.41, par. 2. 181.) 「전 부문에 관한 제 1차 소득 균형의 합계가 GNI(국민총생산)이고, 이것은 1953년 SNA에서 국민총생산(GNP)라 불린 것에 대한 새로운 용어이다.」 (ibid., p.525, par. 12.)



국민(적) 기준과 국내(적) 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집계치에 대해 이 구별이 완전해지고 숫자가 대비되기 위해서는 국민소득계정시스템이 당초부터 그 목적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통계상의 제약 등의 이유로 현실에서는 「국민」 개념, 「국내」 개념 중 한쪽을 일관되게 채용하는 국민계정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지 않다. 즉, 하나의 완전한 계정시스템이 국민집계치와 국내집계치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스템 전체가 「국민」 개념이나 「국내」 개념 중 하나의 선택에 의해 통일적으로 설계한다는 기본적인 문제는 굳이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국민」 개념과 「국내」 개념의 상이점을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a) 국민소비와 국내소비 : 이들 2가지 소비지출의 차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 괄호 안의 숫자는 일본의 1994년 실적치(명목)(단위:10억엔)이다. 이것을 보면 일본의 경우 국민소비가 국내소비를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소비(331,597.7)		
거주자의 해외에서의 소비 (3,182.8)	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 (328,414.9)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 (366.7)
국내소비(328,781.6)		

(b) 국민소득과 국내소득 : 국민소득은 해당국의 거주자가 생산활동에 기여한(국내, 해외에 있어서)것에 대한 보수의 총액이다. 한편 국내소득은 국내에 있어서 생산과정에서 지불한 요소소득 합계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국기업이 해외에서 거주자에게 지불하는 임금, 이자, 배당금 등의 수입은 국민소득에는 계산되지만, 국내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피용자의 임금과 해외에 송금하는 이자, 배당금, 이윤은 국내소득의 일부이지만 국민소득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 라. 총액표시와 순액표시

국민생산물은 해당기간 중에 소비되는 부분과 비금융자산(실물자산)의 형태로 축적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자는 자본형성(투자)이며 이것은 총자본형성(총투자)과 순자본형성(순투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총자본형성이 해당기간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내구자본재의 감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반해, 후자는 이것을 공제한 금액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감가부분은 이미 국민계정에서 고정자본소모로 살펴본 바 있다. 국민생산물과 국민소득이 자본소모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들은 총 개념이나 총액(gross)으로 표시하고 고정자본소모를 공제한 경우, 순 개념이나 순액(net)으로 표시할 수 있다.

고정자본소모는 생산활동 주체의 부담이 되는 감가상각비와 화재 등으로 인한 자본우발손의 합이라 할 수 있다. 후자의 부분은 화재 등에 의한 비금융자산의 우발적 감가이고, 그것은 생산활동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사회적으로 예측 가능한 부담으로써 비용화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상으로 손해보상금의 지불액과 손해보험 준비금의 증가분 등을 기초로 해서 추계한다. 그러나 고정자본소모의 정확한 평가는 이론적, 실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다. 자본설비의 감소부분 또는 그것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당기 생산물의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새롭게 생산한 설비는 과거의 생산물로서 구 설비와 비교해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성질이나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이다. 또 그것과 동시에 감가를 평가하는 기초자료인 감가상각비의 산정이 불완전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게다가 기업이 행하는 감가상각비의 산출은 많은 법적 규제를 안고 있고 산출방식 또한 국제적으로도 일률적이지 않다. 따라서 순액표시의 국민생산물은 총액표시의 국민생산물과 비교하는데 적합하고, 국제비교에는 적합하지 않다.

## 마. 시장가격평가와 요소비용평가

국민생산물은 시장가격(판매가격)에 의해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국민생산물을 주어진 물가수준과 물가체계의 근거로써 평가하는 것이

틀림없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국민생산물의 가치는 생산에 기여한 본원적 요소(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노동서비스와 자본서비스)에 대한 보수로 분해하고, 요소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요소의 단가(예를 들면, 임금수준)와 구입량(예를 들면, 고용량)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국민생산물은 생산요소에 지불하는 비용(요소비용이라 한다)의 합계로써 표시할 수 있다. 요소서비스의 보수에 의해 국민생산물을 평가하는 것을 요소비용 평가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요소비용은 영업잉여와 혼합소득(개정 SNA)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요소비용으로 측정하는 국민생산물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국민생산물과 일치하지 않는다. 양자의 금액상 차이는 간접세(개정 SNA에서 「생산 및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나 「생산에 부과하는 세」라고 개칭되었다.) 마이너스 경상보조금(=순간접세)이라 할 수 있다. 간접세는 국민생산물의 시장 가격을 구성하는 비용의 일부이긴 하지만, 요소서비스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상보조금은 이것과 정반대로 생산물의 시장가격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윤, 임금, 이자 등과 같은 형태로 분배하고, 생산요소의 보수의 일부분으로 하고 있다.

## 2. 국민소득의 발생과 분배

### 가. 생산국민소득

국민소득을 생산측면에서 산출할 때는, 해당 국민경제의 거주자인 생산자가 산출하는 부가가치의 총액을 국내생산물로 정의하는 것이 첫 번째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국내생산물이나 이것에 직접 관련 있는 개념과 그것의 상호관계를 이론적, 계수적으로 정리하여 기술할 것이다. 실제로 이것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일본경제의 실적치로서 표시한 것이 표 6-1 「생산국민소득의 집계치(1994년)」이다. 다음은 이 표 6-1의 표시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우선, 각 집계치를 표시하는 머리글자에 관해 살펴보자. 각 기호는 편의상 3가지 대문자와 1가지 소문자의 혼합으로 구성하고 있다. 최초 문자는 「총액(gross; G) 표시」나 「순액(net; N) 표시」를, 제2의 문자는 「국내

(domestic; D)」나 「국민(national; N)」을, 제3의 문자는 생산측면(P)」, 「분배측면 또는 소득측면(I)」, 또는 「지출측면(E)」을, 마지막 소문자는 「시장가격 평가(valued at market price; m)」이거나 「요소비용 평가(valued at factor cost; f)」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이 약속에 의하면 GDPm은 시장가격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at market price)을 지칭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표 6-1에서 (5) 시장가격 국민총생산(GNPm), (6) 시장가격 국민순생산(NNPm), (10) 요소비용 국민총생산(GNPf) 및 (11) 요소비용 국민순생산(NNPf)에 관한 생산부문별 구성은 표시하고 있지 않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4) 해외에서의 요소소득 총수취(3,943.6)」는 일본경제의 거주자가 해외 부문의 생산활동에 대해 요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기여한 결과로 얻은 수입이므로 그것은 일본의 「국민」 생산물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이 「해외에서의 요소소득 순수취」를 국내의 생산활동 부문으로 분할해서 표시하는 것은 통계자료 상의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 6-1의 「국민」 집계치에서 부문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sup>2)</sup>

다음으로 표 6-1의 「통계상의 불일치」(515.5)에 관하여 알아보자. 이것은 이론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항목이고 따라서 본래 이 표에서 집계치 I 과 집계치 II는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의 추계에서 이 「통계상의 불일치」를 계상하여 이것을 고려한 것과 무시한 것으로 2가지의 추계치로 표시한다. 공식통계(경제기획청편 「1996」)에서는 밑줄 그은 숫자를 채용하고 있다.

2) 여기서는 통계상의 제약으로 「해외에서의 요소소득 순수취」가 「국민」 시장가격 집계치와 「국내」 시장가격 집계치의 차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설명을 진전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옳바르지 않다. 양집계치의 차를 구성하는 것은 「해외에서의 요소소득 순수취」가 아니고, 「해외에서의 요소소득(생산 및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의 순수취」이어야 한다.(「93SNA(UN)」, p. 55, Table 2. 4.참조). 또 개정 SNA의 요소소득이라는 용어는 오래 전부터 사용하지 않았고 대신 더 넓은 의미로 소득 분배 항목을 가리키는 「제 1차 소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왔다.

표 6-1 생산국민소득의 집계치(1994년)

(단위:10억엔)

개 념 과 정 의	구							집 계 치 I	통 계 상 의 불일치	집 계 치 II
	산 업	정 부 서비스 생산자	대가계 비영리 서비스 생산자	수입세 기 타	취 속 이 자	해 외	정			
(1) 시장가격국내총생산 GDPm (국내부문총부가가치)	450,851.7	37,782.9	10,378.7	935.0	-21,392.0			478,556.3	515.5	479,071.9
(2) 고정자본소모	71,390.3	2,973.8	1,215.6	0.0	0.0			75,579.8		
(3) 시장가격국내총생산 NDPm (1) - (2)	379,461.4	34,809.1	9,163.1	935.0	-21,392.0			402,976.6	515.5	403,492.1
(4) 해외에서의요소소득순취						3,943.6		3,943.6		
(5) 시장가격국민총생산 GNPm (1) + (4)	-	-	-	-	-			482,499.9	515.5	483,015.4
(6) 시장가격국민순생산 NNPm (5) - (2)	-	-	-	-	-			406,920.1		
(7) 순간접세 (간접세-경상보조금)	33,411.6	49.6	138.0	935.0	0.0			34,534.2		
(8) 요소비용국내총생산 GDPf (1) - (7)	417,440.1	37,733.3	10,240.7	0.0	-21,392.0			444,022.1		
(9) 요소비용국내순생산 NDPf (8) - (2)	346,049.8	34,759.5	9,025.1	0.0	-21,392.0			368,442.4		
(10) 요소비용국민총생산 GNPf (8) + (4)	-	-	-	-	-			447,965.7		
(11) 요소비용국민순생산 NNPF (10) - (2)	-	-	-	-	-			372,385.9		

(자료) 경제기획원 『국민경제계산연보(平成 8년판)』, 1996.

## 나. 가설생산 활동부문

여기에서 국민경제의 거주자로서 생산자를 어떤 부문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표 6-1에서는 국민경제의 생산자를 5가지 부문으로 나눈다. 그것은 산업, 정부서비스 생산자, 대(對)가계 비영리서비스 생산자, 수입세 기타, 귀속이자이다. 마지막 2가지 부문, 즉 수입세 기타, 귀속이자는 가설부문으로 특별히 설계된 생산자이므로 2부문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 (a) 수입세 기타

이것에 포함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관세, 수입과징금, 수출장려금(보조금(-)) 등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조세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공통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해당국에서 국내생산물의 시장가격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국민경제의 생산자에 의해 설정되는 생산자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조세이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은 조세는 해당경제의 생산물(재화·서비스)로 생산하는 부가가치의 합계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려 한다면 다시 가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수입세 등을 가설산업으로 설정하는 이유이다.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의 국민경제 계산상의 처리에 대해서도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이론적으로 성립한다. 덧붙여서 개정 SNA에서 이와 같은 조세는 일괄적으로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로 정의하고 있다(제3장 제2절을 참조).

### (b) 귀속이자.

금융기관은 제도부문(또는 생산부문)으로서 금융중개 서비스(간단히 금융서비스라고 불러도 무관함)를 생산하고 있다. 이 금융서비스는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수수료에 상당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고, 생산총액을 (수취이자·배당금총액)-(지불이자·배당금총액)으로 귀속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귀속금융 서비스의 판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처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제를 채용하였다. 그것은 「모든 귀속금융 서비스는 해당경제 거주자에 의해 생산활동 부문으로써 중간생산물로 소비된다」라는 것이다(경제기획청편 「1996」, 549p 참

표6-2 분배 국민소득의 집계치 (1994년)

(단위 : 10억엔)

개 념 과 정 의	구 상					집 계 치 I	통 계 상 의 불일치	집 계 치 II
	비 금 용 법인기업	금 용 기 관	일 반 정 부	대 가 계 민 간 비 영 리 단 체	가 계 (개 인 기 업 포 함)			
(1) 시장가격국민순소득 NNIm (국내부문순제1차소득)	23,883.4	3,912.8	35,184.9	-273.5	344,212.3	406,920.1		
(2) 고정자본소모	48,772.3	1,665.6	2,973.8	1,215.6	20,952.4	75,579.8		
(3) 시장가격국민총소득 GNIm (1) + (2)	72,655.7	5,578.4	38,158.7	942.1	365,164.7	482,499.9	515.5	483,015.4
(4) 순간접세 (간접세 - 경상보조금)			34,534.2			34,534.2		
(5) 요소비용국민총소득 GNIf (3) - (5)	72,655.7	5,578.4	3,624.5	942.1	365,164.7	447,965.4		
(6) 요소비용국민순소득 NNIf (5) - (2)	23,883.4	3,912.8	650.7	-273.5	344,212.3	372,385.9		
(7) 해외에서의 요소소득순수입	-	-	-	-	-	3,943.6		
(8) 시장가격국내총소득 GDIm (3) - (7)	-	-	-	-	-	478,556.3	515.5	479,071.8
(9) 시장가격국내순소득 NDIm (8) - (2)	-	-	-	-	-	402,976.5		
(10) 요소비용국민총소득 GDIf (8) - (4)	-	-	-	-	-	444,022.1		
(11) 요소비용국민순소득 NDIf (10) - (2)	-	-	-	-	-	368,442.3		

(자료) 경제기획원 『국민경제계산연보(平成 8년판)』, 1996.

조). 이 전제에 따라 귀속금융서비스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 총액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분할된 후에 그것이 모든 생산활동 부문에 의해 중간생산물로써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귀속금융 서비스를 이처럼 분할하여, 판매·구입 추계하는 것은 근거와 적절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고 사실상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여기에서 귀속금융 서비스는 분할하지 않고 전 부문 공통의 중간투입으로 계산하는 처리가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이 귀속이자를 가설산업으로써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이 가설산업은 무엇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을 대신하여 귀속이자 서비스를 중간생산물(21조 3920억엔 (1994년))로서 투입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이 산업은 이것과 같은 액수의 마이너스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다.

#### 다. 분배국민소득

생산활동 부문에 의해 생산된 부가가치(총액이나 순액 표시의)는 국내 각 제도부문이 생산활동에 기여한 공헌 정도에 따라 분배된다. 이와 같이 분배된 부가가치가 바로 일반적인 의미의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이 분배과정은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제4장 제1절) 몇 단계에 걸쳐 분해된다. 즉,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우선 요소서비스에 대한 직접 대가로써 피용자보수·영업잉여의 형태로 각 제도부문에 분배된다. 그때 순간접세가 일반정부에 대해 지불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이자·배당금·임대료와 같은 재산소득의 형태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가 해외를 포함한 제도부문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2단계의 분배 과정을 합하여 소득의 제1차 분배과정이라 부른다. 그리고 소득의 제1차 분배과정의 결과로써 각 제도부문이 각각 얻어내는 소득의 합계액을 제1차 소득균형이라 한다.

제1차 소득이 갖고 있는 중요한 성질은 그것이 본래 「국민」 개념으로 정의되고, 추계치도 직접적으로 「국민」 소득으로만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소득의 제1차 분배에 있어서 해외부문이 당사자가 되는 거래를 포함함은 물론이며 그와 같은 대외 거래를 각 제도부문이 수취하는 제1차 소득에서 직접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이다.



표 6-3 지출국민소득의 집계치 (1994년)

(단위 : 10억엔)

개 념 과 정 의	구 성						집계치 I	통계상의 불 일 치	집계치 II
	비 금 용 법인기업	금용기관	일반정부	대가계민간 비영리단체	가 계 (개인기업포함)	해 외			
(1) 시장가격국내총지출 GDEM	69,097.5	2,491.5	77,194.7	5,510.3	311,908.8	12,869.0	479,071.8	-515.5	478,556.3
(2) 고정자본소모	48,772.3	1,665.6	2,973.8	1,215.6	20,952.4	0.0	75,579.7		
(3) 시장가격국내순지출 NDEM (1) - (2)	20,325.2	825.9	74,220.9	4,294.7	293,802.5	12,869.0	403,492.1		
(4) 해외에서의 요소소득순수취 해외에서의 순지출					2,846.1	1,097.5	3,943.6		
(5) 시장가격국민총지출 GNEM (1) + (4)	69,097.5	2,491.5	77,194.7	5,510.3	314,754.9	13,966.5	483,015.4		
(6) 시장가격국민순지출 NNEM (5) - (2)	20,325.2	825.9	74,220.9	4,294.7	293,802.5	13,966.5	407,435.7	-515.5	406,920.1
(7) 순간집세 (간집세 - 경상보조금)							34,534.2		
(8) 요소비용국내총지출 GDEF (1) - (7)	-	-	-	-	-	-	444,537.6		
(9) 요소비용국내순지출 NDEF (8) - (2)	-	-	-	-	-	-	368,957.9		
(10) 요소비용국민총지출 GNEF (8) + (4)	-	-	-	-	-	-	448,481.2		
(11) 요소비용국민순지출 NNEF (10) - (2)	-	-	-	-	-	-	372,901.5	-515.5	372,385.9

(자료)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계산연보(平成 8년판)』, 1996.

분배측면의 국민소득 집계치는 표 6-2 「분배국민소득의 집계치(1994년)」에 정리되어 있다. 이 표의 구성에 관해서는 다음 3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① 이 표는 8가지 국민소득 집계치를 표시하고 있고, 이것은 NNIm과 같은 기호가 붙어 있다. 생산국민소득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기호 P가 여기서는 소득을 나타내는 I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

② 생산국민소득은 부가가치로 정의되기 때문에 표 6-1은 「국내」 집계치인 GDPm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에 비해,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분배국민소득은 제1차 소득균형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에 「국민」 집계치인 NNIm(시장가격 국민순소득)에서 시작하고 있다.

③ NNIm의 집계치와 그 제도부문별 구성은 모두 표 2-4 「일본경제의 플로우 계정(Ⅱ)(1994년)」의 숫자와 일치하고 있다. 표 6-2에 있는 그 밖의 국민소득 집계치는 정의에 충실하게 차례로 산출한 것이다. 단지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GDIm, NDIIm, GDIf, NDIIf의 4가지 개념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도부문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국민소득통계로 통상 폭넓게 이용하고 있는 분배측면의 표시(경제기획청편 「1996」, 112~113p 참조)는 표 6-2의 집계치 I에 밑줄 그은 숫자로 내역을 표시하고 있다.

### 3. 국민소득의 지출

#### 가. 지출국민소득

국민소득의 지출측면에 의한 측정치가 지출국민소득이라 한다는 것은 이미 서술한 바 있지만, 여기서는 지출국민소득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지출국민소득도 생산국민소득이나 분배국민소득과 마찬가지로 다의적인 개념으로써 표 6-3에서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표 6-3은 8가지 지출국민소득을 표시하고 있지만, 그 중 4가지 요소비용평가의 측정치는 집계치만 계산 가능하고 지출제도부문에 대한 분할은 불분명하다.

표 6-4 시장가격 국내총지출(GDEm)과 시장가격 국민총지출(GNEm) (1994년도)

(단위 : 10억 원)

지출항목	지출제도부문	비금용 법인기업	금융 기관	일반 정부	대가계민 간비영리 단체	가 계 (개인기업포함)	해 외	집계치
시장가격 국내총지출 GDEm	국내생산물에서의 최종소비지출			45,812.0	3,904.2	279,035.4 (최종소비지출 281,881.5) -(거주자의해외에서의소비 3,182.8) +(비거주자의국내에서의소비 336.7)		328,751.6
	국내총자본형성	69,097.5	2,491.5	31,382.7	1,606.1	32,873.4		137,451.2
	순 수출 (해외에의한 국내 생산물의 지출)						12,869.0 (수출 44,449.2) -(수입 34,426.3) +(거주자의해외에서의소비 3,182.8) -(비거주자의국내에서의소비 336.7)	12,869.0
	합계	69,097.5	2,491.5	77,194.7	5,510.3	311,908.8	12,869.0	479,071.8
시장가격 국민총지출 GNEm	국민생산물에서의 최종소비지출			45,812.0	3,904.2	281,881.5		331,597.7
	국내총자본형성	69,097.5	2,491.5	31,382.7	1,606.1	32,873.4		137,451.2
	순 수출 (해외에의한 국민 생산물의 지출)						13,966.5 (수출 44,449.2) -(수입 34,426.3) +(해외에서의 요소소득순취 3,943.6)	13,966.5
	합계	69,097.5	2,491.5	77,194.7	5,510.3	314,754.9	13,966.5	483,015.4

(자료) 경제기획원 『국민경제계산연보(平成 8년판)』, 1996.

여기에서 지출국민소득을 대표하는 집계치로써 시장가격 국내총지출(GDEm)과 시장가격 국민총지출(GNEm)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의 내용을 비교해 보자. 이 비교는 표 6-4에서 나타내고 있다.

## 나. 시장가격 국내총지출과 시장가격 국민총지출

### (1) 시장가격 국내총지출(GDEm)

이것은 국내생산활동 부문에 의해 산출된 재화·서비스 가운데 중간투입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최종생산물(수출을 포함)의 지출총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이다. GDEm의 구성을 1994년의 실적치로 표시한 것이 표 6-4의 상반 부분으로, 이것은 각 제도부문(해외도 포함)이 국내생산물, 소비, 총자본형성 및 순수출의 형태로 각각 어느 정도 구입했는지를 표시하고 있다. 이 표시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a) 시장가격 국내총지출의 한 항목인 「가계(개인 기업을 포함)에 의한 최종소비지출」은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국민」 개념이 아닌 「국내」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거주자가계의 해외 직접구입」 즉, 거주자가계(이 경우는 일본인)가 해외여행에서 지출한 소비목적의 구입 등과 같은 해외의 소비지출은 국내생산물에 대한 지출은 아니다. 따라서 가계에 의한 국내생산물의 최종소비지출은 통상 표시하고 있는 최종소비액에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것을 공제하고 산출해야만 한다. 그것과 동시에 공제부분은 국내생산활동과 관계없으므로 수입액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

(b) 또, 그것과 대조적인 거래 「비거주자가계의 국내의 직접구입」에 관해서 살펴보자. 이것은 국내에서 행한 소비지출(외국인 여행자에 의한 숙박료의 직접지불 등)이기 때문에 국내소비에 참가해야 하는 한편, 「국내」 개념에 의한 수출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표 6-4의 상반부에서 볼 수 있듯이 가계의 소비지출과 해외의 순수출(순구입)은 각각 다음과 같이 산출하고 있다.

$$\begin{aligned} & \text{가계에 의한 국내생산물의 최종소비지출(279,035.4)} \\ & = (\text{가계에 의한 최종소비지출 : 281,881.5}) \\ & \quad - (\text{거주자의 해외에서의 소비 : 3,182.8}) \end{aligned}$$

$$\begin{aligned}
& + (\text{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 : 336.7) \\
& \text{해외에 의한 국내생산물의 지출 (순수출) (12,869.0)} \\
& = (\text{수출} : 44,449.2) - (\text{수입} : 34,426.3) \\
& \quad + (\text{거주자의 해외에서의 소비} : 3,182.8) \\
& \quad - (\text{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 : 336.7)
\end{aligned}$$

(c) 다음으로 지금까지 살펴보지 못한 최종소비에 관련된 2가지 항목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것은 「정부의 해외 직접구입(41.4)」과 「외국 정부기관의 국내 직접구입(301.7)」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해외 직접구입」은 「국내」개념에서 수입이라 할 수 있고, 동시에 국내생산물의 소비지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고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예를 들면 일본이 UN의 PKO(평화유지군)에 참가해 해외에서 재화·서비스를 직접 구입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일반정부 서비스 생산물에 의한 일종의 중간투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정부는 중간투입을 근거로 국내 생산물로서의 정부서비스(이런 경우, 방위서비스)를 산출한다. 그리고 소비자인 일반정부는 정부서비스를 최종적으로 귀속구입하고 있다고 처리한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외국 정부기관의 국내 직접구입」은 「국내」개념으로 수출에 포함한다.

## (2) 시장가격 국민총지출(GNEm)

이것은 국민경제에서 거주자가 요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 산출하는 재화·서비스 가운데, 거주자 자신에 의해 중간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을 제외한 최종생산물의 지출총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GNEm은, GDEm과 같은 방법으로 표 6-4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 표시법에 관해 주의를 요하는 것은 다음 2가지이다.

(a) 각 제도부문에 의한 소비지출이 모두 「국민」집계치로 표시되고 있는 것에 반해, 자본형성만은 「국내」실적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형성이 항상 설비와 재고품의 주소지만으로 측정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b) 해외의 지출에 「해외에서의 요소소득 순수취(3,943.6)」를 가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해외의 생산활동에 의해 산출되는 재화·

표 6-5 저축투자차액과

비금용자산의변동							
해 외	국민경제	가계 (개인 기업을포함)	대가계민간 비영리단체	일반 정부	금융 기관	비금용 법인기업	거래항목 및
							순저축, 국민
	137,451.2	32,873.4	1,606.1	31,382.7	2,491.5	69,097.5	국내총자본형
	137,401.9	32,849.9	1,606.1	31,382.7	2,491.5	69,071.7	총고정자본
	49.3	23.5	0.0	0.0	0.0	25.8	재고증가
	-75,579.8	-20,952.4	-1,215.6	-2,973.8	-1,665.6	-48,772.3	고정자본소모
	0.0	2,114.3	167.0	5677.3	179.7	-8,138.3	토 지 구 입 자본이전(순)
-13,199.5	12,684.0	23,426.3	1,111.4	-9,963.9	-1,179.3	-710.5	저축투자차액
							통계상의불일치
-13,199.5	13,199.5	33,194.7	720.3	-13,315.7	-5,505.2	-1,894.6	자금과부족

(자료)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계산연보(平成 8년판)』, 1996.

서비스 가운데 이 금액에 상당하는 것은 해당국(일본)의 거주자가 요소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공헌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 집계치는 「국민」 생산물의 일부로 간주하고 동시에 해외에서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저축투자차액

여기서는 플로우에서 발생하는 생산물(= 재화·서비스)이 해당 기말의 스톡에 대해 비금용자산(실물자산)의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문제를 살펴보자. 생산활동과 소득의 분배·사용활동이 기말 스톡에 끼치는 영향은 해당 경제 또는 그것을 구성하는 제도부문에 의한 순저축(순자산의 증가)과 자본형성(투자)인 비금용자산의 증가이다. 양자는 국민경제나 각 제도부문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의 양측 항목이 동시 변동하지만 그 차액

## 자금과부족(1994년)

(단위;10억엔)

순 자산의 변동							
균형항목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기관	일반정부	대가계민간 비영리단체	가계(개인 기업을포함)	국민경제	해 외
경제잉여 형성	8,134.1	-173.7	24,636.9	861.3	41,327.9	74,786.5	-13,430.6
(-) (순) 수취)	3,342.4	0.0	-514.7	807.5	-3,866.4	-231.1	231.1
	-710.5	-1,179.3	-9,963.9	1,111.4	23,426.3	12,684.0	-13,199.5
합	-1,184.2	-4,325.9	-3,351.7	-391.0	9,768.5	515.5	0.0

을 「저축투자차액」이라 한다. 한편, 국민경제나 각 제도부문이 보유하는 금융자산과 부채 증가분의 차액을 그 국민경제나 부문의 「자금과부족」이라 한다.(제 2장의 표 2-4에서 「순대출(+)/순차입(-)」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자금과부족이라 할 수 있다)

저축투자차액과 자금과부족의 정의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통계상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문제에 관해 다음 표 6-5 「저축투자총액과 자금과부족(1994년)」을 이용하여 알아보자.

(1) 표 6-5는 현행 SNA에서 채용하고 있는 표시형식에 기초하여 이미 언급했던 표 2-4의 자본계정을 다시 살펴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각 국내제도 부문 또는 그것들을 통합한 국민경제에 대한 정의식으로는,

$$\begin{aligned} \text{저축투자차액} &= \text{순저축} + \text{자본이전순수취} - \text{순자본형성} - \text{토지 등의 순구입} \\ &= \text{자금과부족} = \text{금융자산 순증가} - \text{부채 순증가} \end{aligned}$$

가 성립한다. 해외에 대해서는 순저축을 국민경제잉여(개정 SNA의 용어로는 「경상대외수지(current external balance)」)로 바꾸어 이 정의식이 그

대로 성립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해외부문도 하나의 제도부문이라고 볼 경우 전 제도부문의 저축투자차액의 합계(자금과부족의 합계)는 0 이 되는 것이다.

(2) 앞에서 설명한 이론적 관계가 실제의 통계숫자에 의해 어떻게 검증되는지는 표 6-5를 보면 알 수 있다. 저축투자차액(1994년)은 비금융법인 기업, 금융기관, 일반정부, 해외의 4개 부문에서는 마이너스이고 그 밖의 부문에서는 플러스라는 것을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각 부문의 저축투자차액과 자금과부족의 숫자는 일치하지 않지만, 이것은 표 6-5의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통계상의 불일치 때문이다. 상기 4개 부문에 대하여 1994년 실적치를 보면 저축투자차액란과 자금부족란의 기호는 모두 마이너스인데, 이 부문들은 차입부문이다. 또 그 외의 부문인 가계와 민간비영리 단체가 대여부문이다.

## 4. 실질국민소득과 디플레이터

### 가. 실질국민소득

국민소득은 생산, 분배, 그리고 지출의 어느 측면에서 측정한다 하더라도, 최종생산물로서의 재화·서비스를 그 기간의 가격수준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이것을 가장 단적으로 표시한 것이 지출국민소득(예를 들면 시장가격 국내총지출)이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지출국민소득만을 대상으로 이것을 국민소득이라 부르기로 한다. 그런데, 서로 다른 기간의 2가지 국민소득의 숫자는 다소 다른 종류의 재화·서비스의 집합을 나타내어, 그것을 평가하는 가격체계도 동일하지 않다.

이처럼 서로 다른 기간에 대한 국민소득을 비교하고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면 이들의 명목적 금액에 의해 비교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소득의 기간 비교를 「실질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재화·서비스의 범위, 종류, 품질의 변동과 가격수준의 변화를 고려해야만 하고, 이것의 변동 영향을 가능한 한 제거하려는 국민소득의 평가법을 생각해야 한다. 단지 여기서는 이것이 제거된 영향 중에서 가격변동만을



살펴보자.

국민소득의 서로 다른 기간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의 내용을 이루는 재화·서비스를 불변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불변가격은 기준기간의 가격 수준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가격으로 평가한 국민소득을 불변가격표시 국민소득(national income at constant price), 또는 간단히 실질국민소득(real national income)이라 한다.

국민소득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 국민 집계치가 화폐액(명목액)으로 표시 될 때 이것을 불변가격 표시가액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명목 추계치에 대응되는 가격지수로 나눠야 한다. 이처럼 명목치를 불변가격치로 바꾸는 것을 디플레이트(deflate)라 하고 그때 사용하는 가격지수를 디플레이터(deflator)라 한다. 어느 국민 집계치를 가격(p)과 수량(q)의 적화에 의해 표기하기로 하고 그것의 기호를,

$p^0$ : 기준기간의 상품 i의 가격을 제i성분으로 하는 n차원열 벡터

$p^1$ : 비교기간의 상품 i의 가격을 제i성분으로 하는 n차원열 벡터

$q^0$ : 기준기간의 상품 i의 수량을 제i성분으로 하는 n차원열 벡터

$q^1$ : 비교기간의 상품 i의 수량을 제i성분으로 하는 n차원열 벡터

라고 한다. 또 이 때

$$p^1 q^1 / \frac{p^1 q^1}{p^0 q^1} = p^0 q^1$$

라는 관계에서 보여 주듯이, 비교기간의 명목액이  $p^1 q^1$ 일때 불변가격 표시가액  $p^0 q^1$ 을 얻기 위해서 디플레이터는  $(p^1 q^1 / p^0 q^1)(\times 100)$ 으로 표시한다. (단, 프라임 기호(')는 벡터의 전치를 가리킴). 이것은 디플레이터가 파쉐형 가격지수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나. 임플리시트·디플레이터

국민경제 계산에 의해 표시하는 집계치의 대부분은 다수의 재화·서비스의 가액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불변가격 표시로 바꾸려면(실질화) 파쉐 가격지수를 처음부터 작성해야 하고, 신상품의 출현과 상품·서비스의 질

의 변화 등 제반 문제를 무시해서는 통계자료 상의 제약이 있으므로 곤란하다. 이와 같은 경우, 이 국민 집계치 전체의 디플레이터를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실질화의 방법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그 집계치를 가능한 한 소항목으로 분할하고 소항목의 재화·서비스에 실질치를 구해 합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국민 집계치의 디플레이터를 산출하기 전에 실질집계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실질 집계치가 불변가격 표시가액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소항목이 정확한 불변가격 표시로 되어 있으면 용이하다. 국민 집계치의 디플레이터는 이렇게 해서 얻은 실질치에서 명목치를 나눈 것에 의해 사후적으로 산출되어 진다. 이런 순서로 사후에 계산되는 디플레이터를 임플리시트·디플레이터(implicit deflator)라 한다. 그러나 임플리시트·디플레이터와 통상 명시적(explicit)디플레이터의 구별은 오로지 추계순서의 문제이고, 이론상으로 양자는 동일한 것이다.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분 집계치의 디플레이터와 전체 집계치의 디플레이터의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를 국내 총지출을 예를 들어 표시해 보자.

국내총지출은 민간 최종소비지출, 정부 최종소비지출, 국내 총자본형성 및 재화·서비스의 순 수출로 이루어진다. 지금 국내총지출의  $i$ 번째의 항목에는  $m_i$ 개의 다른 재화·서비스를 포함한 것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기호를 정의하여 보자.

$\Delta$  : 국내총지출 디플레이터

$\Delta_i(i=1,2,\dots,n)$ : 국내총지출의 제 $i$ 항목의 디플레이터

$p_{ij}^0(i=1,2,\dots,n), (j=1,2,\dots, m_i)$ : 국내총지출의 제 $i$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제 $i$ 재의 기준 기간 가격

$p_{ij}^1(i=1,2,\dots,n), (j=1,2,\dots, m_i)$ : 국내총지출의 제 $i$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제 $i$ 재의 비교기간 가격

$q_{ij}^0(i=1,2,\dots,n), (j=1,2,\dots, m_i)$ : 국내총지출의 제 $i$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제 $i$ 재의 기준 기간 수량

$q_{ij}^1(i=1,2,\dots,n), (j=1,2,\dots, m_i)$ : 국내총지출의 제 $i$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제*i*재의 비교기간 수량

가격, 수량의 벡터를  $p_i^{k'} = (p_{i1}^k, p_{i2}^k, \dots, p_{imi}^k), q_i^{k'} = (q_{i1}^k, q_{i2}^k, \dots, q_{imi}^k)$   
 ( $k=0,1$ ), ( $i=1,2,\dots,n$ )라고 쓰기로 한다면 디플레이터의 이론적 정의와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Delta = \frac{\text{명목국내총지출}}{\text{실질국내총지출}} = \frac{\sum_{i=1}^n p_i^{1'} q_i^1}{\sum_{i=1}^n p_i^{0'} q_i^1} (\times 100)$$

$$\Delta_i = \frac{\text{국내총지출제}i\text{항목의명목치}}{\text{국내총지출제}i\text{항목의실질치}} = \frac{p_i^{1'} q_i^1}{p_i^{0'} q_i^1} (\times 100)$$

$$= \frac{p_i^{1'} q_i^1}{r_{m_i} (\hat{p}_i^0 \hat{p}_i^{1-1}) p_i^1 q_i^1} (\times 100) \quad (i = 1, 2, \dots, n).$$

(여기에서 (^)기호는 벡터의 성분에서 만든 대각행렬을 나타내고 있다. 또,  $1_{m_i}$ 은  $m_i$ 개의 1을 성분으로 하는 열의 벡터이다)

지금까지 알 수 있듯이 제 *i*항목의 디플레이터  $\Delta_i$ 는 그 항목을 구성하는 각 품목의 기준기간과 비교기간의 가격 비, 즉  $p_{ij}^1/p_{ij}^0$  ( $j=1,2,\dots,m_i$ )를 알 수 있다면 이것은 비교기간 거래액  $p_{ij}^1 q_{ij}^1$ 을 측정하여 조화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또,  $\Delta$ 와  $\Delta_i$ 의 관계는 위의 2가지 정의식에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어낼 수 있다.

$$\Delta = \frac{\sum_{i=1}^n p_i^{1'} q_i^1}{\sum_{i=1}^n (1/\Delta_i) p_i^{1'} q_i^1} (\times 100)$$

이 관계식은 국내총지출의 총합디플레이터  $\Delta$ 가 항목별 디플레이터  $\Delta_i$ 의 거래액(비교기간의)  $p_i^{1'} q_i^1$  ( $i=1,2,\dots,n$ )을 측정하는 조화평균에 지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 알아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전체집계치의 디플레이터는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집계치의 디플레이터의 비교기간 거래액을 측정하여 조화평균한 것이다. 이 방법으로 디플레이터를 통합하는 것은 간단히 파쇄 통합이라 하기도 한다.

### 다. 일본의 국내총지출 디플레이터

일본의 국내총지출 디플레이터는 표 6-6에 잘 나타나 있지만, 1990년을 기준으로 산출된 파쉐지수( $\times 100$ )로 나타나고 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94년의 국내총지출 디플레이터는 105.4이고, 이것은 1990년에서 1994년 사이에 물가가 일반적으로 볼 때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6-6 국내총지출디플레이터 (1990년 기준)

항목	년도	1991	1992	1993	1994
1. 국민최종소비지출		102.5	104.4	105.7	106.4
(1) 가계최종소비지출		102.5	104.4	105.7	106.4
국내가계최종소비지출		102.5	104.5	105.9	106.7
거주자가계의 해외직접구입		99.1	97.6	89.3	85.8
(공제) 비거주자가계의 국내직접구입		103.3	105.0	106.1	106.7
(2) 대가계국민비영리단체최종소비지출		107.3	108.9	106.9	109.4
2. 정부최종소비지출		104.8	107.6	108.7	108.9
3. 국내총자본형성		101.9	103.2	102.9	101.8
(1) 총고정자본형성		102.0	103.3	103.1	101.8
민간		101.7	102.9	102.7	101.3
주택		102.2	104.7	106.5	106.5
기업설비		101.6	102.4	101.5	99.5
공적		103.2	104.5	104.0	103.0
주택		103.5	104.8	105.8	105.2
기업설비		103.3	104.9	104.5	103.9
일반정부		103.1	104.4	103.8	102.7
(2) 재고증가					
민간기업		99.1	97.5	93.9	92.3
공적기업		98.2	96.1	90.2	87.1
4. 재화·서비스의 순수출					
(1) 재화·서비스의 수출		96.5	93.2	85.8	82.5
(2) (공제) 재화·서비스의 수입		94.1	96.1	80.9	76.6
5. 국내총지출		102.7	104.4	105.1	105.4

(자료)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계산년도(평성8년판)』, 1996, 106~107p

명목치와 실질치의 비교라는 점에서 전자가 후자를 가장 크게 뛰어 넘고 있는 것은 대가계 민간비영리단체 최종소비지출(109.4)과 정부 최종소비지출(108.9)이며, 역으로 전자가 후자를 가장 크게 밀돌고 있는 것은 재화·서비스의 수입(76.6)과 수출(82.5)이다. 그 밖의 지출항목의 디플레이터는 이 양극단의 중간에 자리잡고 있다.

대가계민간비영리단체 최종소비지출과 정부최종소비지출의 디플레이터가 큰 것은 주로 임금수준의 상승에 기인한다고 해석한다. 한편, 재화·서비스의 수출·수입 디플레이터는 환율이 엔고 경향을 계속 나타낸 것이 원인으로 낮은 수치를 얻고 있다. 수출과 수입의 디플레이터의 사이에 많은 차가 생겨나는 것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 제 7 장 국민경제계산과 거시모델

### 1. 거시경제모델과 국민경제계산 기초

#### 가. 국민경제계산과 거시모델분석

이 장의 목적은 거시경제 이론분석에 보통 사용되고 있는 거시경제모델이 어떤 특정한 국민계정시스템에 기초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있다.

거시모델분석에 있어서 고찰의 대상은 당연히 거시경제량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거시경제량은 국민계정체계의 기록대상이기 때문에 정의·내용·상호관계 등 국민경제계산의 방식을 통해서만 정확히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민경제계산은 모든 거시분석의 대상인 경제량을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거시분석에 근거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거시모델에 대해서도 그 기초에는 그것에 대응하는 국민계정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거시모델은 불명확한 경제량과 계측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제량을 포함할 것이다.( Hicks [1971] (역서250~253p)는 국민경제계산(사회회계(social accounting))이 가진 기술분석으로서 독자적 역할을 모델분석의 특징과 대비를 지적한 최초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경제계산의 본래 목적은 국민경제활동의 거시적 규모나 실적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사후적으로 표시하고, 각종 경제집계치를 추계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SNA를 제안한 전후에 국민계정체계의 기술적 측면과 더불어 분석적 이용의 측면을 주목하기 시작했다.(예를 들면 Stone [1996]은 그와 같은 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위대한 선구자이다.)

또 개정 SNA는 이 체계의 분석적 이용측면에서 거시경제분석과 경제정책결정·의사결정(economic policy-making and decision-taking)을 중요과제로 포함하고 명기하고 있다.<sup>1)</sup>

---

1) 「93SNA(UN)」, pp. 6-7

## 나. 국민계정행렬과 거시모델

국민경제계산 방식을 기초로 거시모델을 구성하는데는 우선, 당면한 분석목적에 대한 기록내용을 가진 특정 국민계정시스템의 채용이 필요하다. 그 경우 분석목적으로 여러가지 영역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플로우분석만 보더라도 산업관련, 소득분배, 공공경제, 금융경제, 국제경제 등의 분야에서 어떤 분석테마를 선택한다. 그리고 분석상의 테마에 대해 그것에 적합한 국민계정시스템을 채용할 것이다.

그 경우 채용한 국민계정시스템을 행렬 즉, 국민계정행렬의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특정의 국민계정시스템이 모두 몇 가지 집계치를 포함하고, 그 사이에 몇개의 방정식이 성립되도록 설계되었는가 하는 것에 따라 계정행렬의 작성이 일목요연해 지기 때문이다.

지금, 거시모델을 기초로 채용한 국민계정행렬이 실질적으로  $N$ 개의 계정을 포함한다고 하자. 실제로 기록을 가진 칸의 수가  $K$ 개라고 하면,  $N < K < N^2$  는 확실하다. 동일 계정의 거래 즉 계정행렬에 있어 대각선 칸의 기입은 계정의 좌우균등관계에 관한한 일정치 않은 집계치이기 때문에 변수나 패러미터(parameter)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부여한 계정행렬에서 대각성분의 기록을 말소하려면, 변수·패러미터로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집계치의 수는  $N^2 - N (= N(N - 1))$  이고, 이것에 의해 앞서 기록한  $K$  범위는  $N < K < N(N - 1)$  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집계치를 무차별로 변수·패러미터의 실현치로서 해석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N$  개의 계정균등식 중 임의의 1개는, 다른  $(N - 1)$ 개의 균등식에서 도출한 것으로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Stone [1996], P. 19 참조). 따라서, 이 국민계정행렬에는 기껏해야  $(N - 1)$  개의 독립적인 집계치 간의 관계식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K$ 개의 집계치 중  $(N - 1)$  개를 적당히 택해서 그것을 미지수(또는 변수)로 하고 나머지  $\{K - (N - 1)\}$  개를 패러미터로 보지 않으며,  $(N - 1)$ 개의 독립적인 관계식은 그대로 연립 1차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연립 1차 방정식은  $(N - 1)$

) 개로 적당히 선택한 변수에 대해 풀면, 이 변수는  $\{K - (N - I)\}$ 개의 패러미터의 관계로 나타난다.

#### 다. 거시모델의 구성

상술한 것과 같이 부여된 국민계정행렬은 특정한 조건이나 전제를 도입하지 않고도 그대로 거시모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거시모델 구성의 기본방침을 제시하는 의도인 것이다. 실제로 유용성을 가진 거시모델의 구성에는 국민계정행렬에 몇 가지 전제를 새로이 추가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시적 전제에는 많은 것이 채용되고 있는데, 그 성질에 주목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a. 추세적·자연적 전제 ; 인구증가율, 기후조건 등 경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상정하는 것이다.

b. 제도적 전제 ; 조세부담율, 공정보합(公定歩合)을 포함한 각종이자율, 고정환율제에 있어서의 환율 등에 대한 전제이다.

c. 기술적 전제 ; 생산기술, 생산효율 및 생산에 있어서 기타 각종 기술적 조건에 대한 전제이다.

d. 행동적 전제 ; 소비성향과 세대교체에 의한 기호·생활양식의 변화에 대한 전제이다.

어떤 전제를 얼마나 도입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떠한 전제도 그 자체가 1가지 관계식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비지출( $C$ )은 소득( $Y$ )의 어느 특정화 한 함수이다」라는 전제는  $C=C(Y)$ 로 나타나며, 이는 하나의 관계식이다. 반대로 이와 같은 전제를  $M$ 개 도입한다고 하면, 이  $M$ 개의 전제를 나타내는  $M$ 개의 관계식은 상호 독립적인 것이어야만 한다.

여기서 다시  $M$ 개의 전제를 포함한 형태의 거시모델이 어떤 것이 될지를 생각해 보자. 우선 관계식의 수는  $(N-1)+M$ 이 된다. 이것은 모두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M$ 개의 관계식을 더하는 것에 의해 새롭게 추가하는 변수·패러미터의 수를  $L$ 이라 하면 전체의 변수·패러미터의 총 수는  $(K+L)$ 이 된다. 이  $(K+L)$ 개의 변수·패러미터 중 모델의 변수로



할 수 있는 것은  $(N-1)+M$  개이지만, 이것은  $(K+L)$  개의 변수·패러미터에서 선택해야만 한다. 과잉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K+L) \geq (N-1)+M$  이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만일 등호가 성립한다고 하면 새로운 모델에서 패러미터는 모두 변수로써 풀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모델, 즉 패러미터를 사실상 포함하지 않는 거시모델은 비교의 여지도 없는 것이고 유용성을 갖지 않는다.

이하 이 장은 좀 더 간단한 계정 시스템의 1가지를 이용해서 위에서 설명한 모델형성의 예를 나타내 보기로 한다.

## 2. 국민경제의 플로우표시와 그 내용

### 가. 간단한 플로우계정 행렬의 일례

실용성 있는 가장 간단한 국민계정시스템은 이미 제1장 제4절에 나타나 있는 표 1-7 「해외부문을 포함한 3계정행렬」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 가장 간단한 시스템을 다소 확장한 것으로 하여, 그것을 표 7-1 「간단한 플로우계정행렬」로 표시한다. 이 표에 나타난 계정시스템이 표 1-7과 다른 것은 다음 두 가지 점이다.

① 축적계정을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에 분할해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계정의 균형항목(이것은 금융계정의 균형항목과 일치하는 것이지만)은 「순대출(+)/순차입(-)」이라 한다.

② 「금융자산·부채」라 하는 거래항목계정(더미계정)을 도입하고 있고, 이것은 「통화·예금」과 「기타 금융적 청구권」이라는 2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통상, 「통화·예금」, 「채권·주식」, 「기타 금융적 청구권」의 3종류로 분류하였는데, 여기서는 뒤의 2종류를 합제한 것을 「기타 금융적 청구권」이라 한다.)

표 7-1에 기입되어 있는 기호는 각각 표의 아래에 표시한 집계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7-1 간단화된 플로우계정행렬

		1	2	3	4	5	6	7	8	9	10
경상계정	국민계정	1	P	C	E	I					
	소득의 분배·사용계정	2	Y	T	Y <sub>1</sub>	-D					
	해	3	M	T <sub>1</sub>							
자본계정	국민경제	4	S <sub>D</sub>	S		T <sub>1</sub> <sup>c</sup>					
	해	5		B							
축적계정	순대출(+)/순차입(-)	6			L <sub>n</sub>	L <sub>r</sub>				ΔF <sup>c</sup> fn	ΔF <sup>c</sup> fr
	금융자산·부채	7								ΔF <sup>b</sup> fn	ΔF <sup>b</sup> fr
	금융자산·부채 기타 금융적청구권	8									
	국민계정	9						L <sub>n</sub>	ΔF <sup>c</sup> rf	ΔF <sup>b</sup> nf	
	해	10						L <sub>r</sub>	ΔF <sup>c</sup> rf	ΔF <sup>b</sup> rf	

P 중간투입

C 국내부문에 의한 최종소비

E 재화·서비스의 수출

I 국내총자본형성

Y 총부가가치

M 재화·서비스의 수입

T 소득의 분배에 관한 국내부문간의 수지총액

(여기에는, 피용자보수, 간접세, 영업이익, 재산소득,

및 각종의 이권이 모두 포함)

Y<sub>1</sub> 해외에서의 요소소득 순수취

D 고정자산소득

B 국민경상이익(경상대의수지)

T<sub>1</sub> 해외로의 경상이전 순지불

S 저축(순)

T<sub>1</sub><sup>c</sup> 해외에서의 자본이전 순수취

L<sub>n</sub> 국민경제에 의한, 해외의 순대출(+)/순차입(-)

L<sub>r</sub> 해외에 의한 국민경제의 순대출(+)/순차입(-)

ΔF<sup>c</sup>nf 국민경제의 채무로서의 통화·예금순증가

ΔF<sup>c</sup>rf 해외의 채무로서의 통화·예금순증가

ΔF<sup>b</sup>nf 국민경제의 채무로서의 「기타 금융적 청구권」의 순증가

ΔF<sup>b</sup>rf 국민경제의 채무로서의 「기타 금융적 청구권」의 순증가

ΔF<sup>c</sup>fn 국민경제의 채권으로서의 통화·예금순증가

ΔF<sup>c</sup>fr 해외의 채권으로서의 통화·예금순증가

ΔF<sup>b</sup>fn 국민경제의 채권으로서의 「기타 금융적 청구권」의 순증가

ΔF<sup>b</sup>fr 해외의 채권으로서의 「기타 금융적 청구권」의 순증가

S<sub>D</sub> 통계상의 불일치(이것은 이론상은 존재하지 않는 항목이다.)

표 7-2 일본경제의 플로우계정행렬(Ⅰ) (1994년)

(단위 ; 10억 엔)

		1	2	3	4	5	6	7	8	9	10	
경상계정	국민경제	1	431,944.4	331,597.7	44,449.2	137,451.2						
	소득의 분배·사용계정	2	478,556.3	764,605.2	3,943.6	-75,579.8						
	해 외	3	34,426.3	535.9								
자본계정	국민경제	4	515.5	74,786.5			-231.1					
	해 외	5			-13,430.6							
축적계정	순대출(+)/순차입(-)	6				13,199.5	-13,199.5					
	금융자산 · 부채	통 화 · 예 금	7							33,206.3	2,318.4	
		기타금융적청구권	8								88,644.3	-1,608.0
	국민경제		9					13,199.5	32,744.2	75,906.9		
		해 외	10					-13,199.5	2,780.5	11,129.4		

(주) 밑줄 친 숫자는, 계정의 좌우균등의 조건을 사용해 계출된 것이다.  
(자료)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계산연보 (평성 8년판)』, 1996.

표 7-3 일본경제의 플로우계정 (1994년)

(단위 : 10억엔)

계 정	사 용 (자산의 변동)			원 인 (부채 · 순자산의 변동)			계 정	
	생산물	해 외	국민경제	거래 및 균형항목	국민경제	해 외		생산물
생산계정	910,500.6		431,944.4	국내생산 중간투입 고정자산소모 수입 수출	910,500.6	34,426.3	431,944.4 75,579.8 44,449.2	생산계정
	34,426.3	44,449.2	402,976.5	총부가가치 수출입균형	402,976.5	-10,022.9		
소득의 분배 · 사용계정		16,766.7 151.6	34,534.2 546,192.4 197,389.4 331,597.7	순간접세 요소소득(재산소득포함) 경상이전 최종소비	34,534.2 550,135.8 196,853.5	12,823.1 687.5		소득의 분배 · 사용계정
		-13,430.6	74,786.5	순저축, 국민경상잉여	74,786.5	-13,430.6	331,597.7	
자본계정	515.5		137,451.2 -75,579.8 0.0	국내총자본형성 고정자산소모(-) 토지의 구입(순) 자본이전(순수취) 통계상의불일치	-231.1 515.5	231.1	137,451.2 -75,579.8	자본계정
		-13,199.5	13,199.5	순대출(+)/순차입(-)	13,199.5	-13,199.5		
금융계정		710.4 2,318.4 -1,608.0	121,850.6 33,206.3 88,644.3	금융자산 · 부채 통화 · 예금 기타 금융적청구권	108,651.1 32,744.2 75,906.9	13,909.9 2,780.5 11,129.4		금융계정

(주) 밑줄 친 숫자는, 계정기입의 좌우관등조건을 사용해 제출된 것이다.  
(자료) 경제기획청편 『국민경제계산연보 (평정 8년 판)』, 1996.

## 나. 일본경제의 플로우 실적치

앞에서 본 간단한 플로우계정 행렬의 내용은 일본경제의 경우, 어떻게 통계상의 숫자로 표시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표 7-2 「일본경제의 플로우계정 행렬(I)(1994년)」이다. 이 표에 나타난 계정행렬의 구조는 표 7-1과 완전히 동일하다.

다음으로 이 계정시스템과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의 것을 계정행렬 형식이 아닌 계정연결 형식으로 나타내면 표 7-3 「일본경제의 플로우계정(1994년)」과 같다. 이 형식의 계정시스템 표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점차적으로 보급되고 있어서 계정행렬 표시와 대비를 위해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 다. 금융적청구권의 플로우와 화폐·비화폐

표 7-1의 제7, 8계정은 금융적 청구권의 플로우를 기록하는 것으로, 거기에 기록하는 집계치의 내용은 이미 나타난 대로이지만, 이 기록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하겠다. 금융자산·부채 중 「통화·예금」과 「기타 금융적 청구권」의 주된 차이는 그것이 갖는 유동성에 있다. 전자가 유동적 금융자산·부채인 것에 대해, 후자는 비교적 비유동적(유동성을 갖지 않는다)금융자산·부채라 해도 좋다. 후자에 포함되는 것을 예시해보면 주식이외의 유가증권, 대출금·차입금, 주식·기타 지분 등이다.

또, 금융자산·부채라고 하는 개념은 본래 미결제 금융적청구권의 잔고로 즉, 스톡의 크기로서 규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표 7-1 ~ 표 7-3의 기록은 어디까지나 기말 스톡에서 기초 스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한 플로우량인 것임을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화폐·비화폐 및 화폐플로우·비화폐플로우라는 개념은 통념에 따르는 형태로 도입하자. 국내금융기관과 해외금융기관이 해당국가경제(국민경제)의 각 부문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유동적 채무의 미결제잔고를 화폐로, 그 이외 채무에 대한 금융자산·부채잔고를 비화폐로 칭하기로 한다. 화폐와 비화폐가 스톡량인 것에 반해, 화폐플로우와 비화폐플로우는 그에

대응하는 플로우개념이다. 따라서 표 7-1의 기록 중,  $\Delta F^{cfn}$ ,  $\Delta F^{cfr}$ ,  $\Delta F^{cfn}$  및  $\Delta F^{cfr}$  은 화폐플로우이고,  $\Delta F^{bnf}$ ,  $\Delta F^{brf}$ ,  $\Delta F^{bfn}$  및  $\Delta F^{bfr}$  은 모두 비화폐플로우로 나타내고 있다.<sup>2)</sup>

### 라. 화폐·비화폐의 수요와 공급

여기서 화폐·비화폐의 수요란 경제주체(여기서는 국민경제와 해외)에 의한 자산(채권)으로서의 화폐·비화폐잔고 보유력을 가리키는 한편, 공급이란 경제주체에 의한 부채(채무)로서의 화폐·비화폐잔고 보유력을 가리키고 있다. 우선 기초와 기말에 있어 화폐·비화폐의 수요와 공급을 다음 기호로 나타낸다.

화폐의 수요와 공급

		국민경제에 의함	해외에 의함
기 초	수요	$(F^{c dn})^0$	$(F^{c dr})^0$
	공급	$(F^{c sn})^0$	$(F^{c sr})^0$
기 말	수요	$(F^{c dn})^1$	$(F^{c dr})^1$
	공급	$(F^{c sn})^1$	$(F^{c sr})^1$

비화폐의 수요와 공급

		국민경제에 의함	해외에 의함
기 초	수요	$(F^{b dn})^0$	$(F^{b dr})^0$
	공급	$(F^{b sn})^0$	$(F^{b sr})^0$
기 말	수요	$(F^{b dn})^1$	$(F^{b dr})^1$
	공급	$(F^{b sn})^1$	$(F^{b sr})^1$

위의 스톡량과 표 7-1에 나타나 있는 플로우량의 사이에는 항등적관계 또는 정의적관계가 성립하고,

$$(F^{c dn})^1 = (F^{c dn})^0 + \Delta F^{cfn}, \quad (7.1)$$

$$(F^{c dr})^1 = (F^{c dr})^0 + \Delta F^{cfr}, \quad (7.2)$$

2) 여기서는 화폐, 비화폐를 모두 어떤 형태의 금융적청구권(또는 금융적수단이라 불러도 좋다)에 관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외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그 예외란, 화폐용금과 SDR이고, 이들은 화폐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1993SNA(UN)』, p. 252, par. 11. 63. 을 참조)

$$(F^{c\text{sn}})^1 = (F^{c\text{sn}})^0 + \Delta F^{c\text{nf}} \quad (7.3)$$

$$(F^{c\text{sr}})^1 = (F^{c\text{sr}})^0 + \Delta F^{c\text{rf}} \quad (7.4)$$

$$(F^{b\text{dn}})^1 = (F^{b\text{dn}})^0 + \Delta F^{b\text{fn}} \quad (7.5)$$

$$(F^{b\text{dr}})^1 = (F^{b\text{dr}})^0 + \Delta F^{b\text{fr}} \quad (7.6)$$

$$(F^{b\text{sn}})^1 = (F^{b\text{sn}})^0 + \Delta F^{b\text{nf}} \quad (7.7)$$

$$(F^{b\text{sr}})^1 = (F^{b\text{sr}})^0 + \Delta F^{b\text{rf}} \quad (7.8)$$

과 같이 된다.

그리고 화폐와 비화폐의 수급균등식은 기초와 기말에 대해서 각각 2가지씩 성립하고,

화폐의 수급균등;

$$(F^{c\text{dn}})^0 + (F^{c\text{dr}})^0 = (F^{c\text{sn}})^0 + (F^{c\text{sr}})^0, \quad (7.9)$$

$$(F^{c\text{dn}})^1 + (F^{c\text{dr}})^1 = (F^{c\text{sn}})^1 + (F^{c\text{sr}})^1 \quad (7.10)$$

비화폐의 수급균등;

$$(F^{b\text{dn}})^0 + (F^{b\text{dr}})^0 = (F^{b\text{sn}})^0 + (F^{b\text{sr}})^0 \quad (7.11)$$

$$(F^{b\text{dn}})^1 + (F^{b\text{dr}})^1 = (F^{b\text{sn}})^1 + (F^{b\text{sr}})^1 \quad (7.12)$$

으로 한다.

### 3. IS-LM 모델의 구성

#### 가. 계정행렬의 정리

표 7-1은 화폐플로우와 비화폐플로우를 각각 4항목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단순화하기 위해 그 일부를 순액표시(상쇄표시)의 방법으로 소거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자. 단,  $\Delta F^{c\text{nf}}$  (국내부문에 의한 화폐공급의 순증가)와  $\Delta F^{c\text{fn}}$  (국내부문에 의한 화폐보유의 순증가)에 대해서는 상쇄표시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상쇄표시나 순액표시란 계정행렬에 있어서 대조의 위치에 있는 기입항목의 숫자를 대각소거(対角消去)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Delta F^c_r$  해외에 의한 화폐의 순공급 플로우

$\Delta F^b_n$  국내부문에 의한 비화폐의 순공급플로우

$\Delta F^b_r$  해외에 의한 비화폐의 순공급플로우 를

$$\Delta F^c_r = \Delta F^c_{rf} - \Delta F^c_{fr}, \quad (7.13)$$

$$\Delta F^b_n = \Delta F^b_{nf} - \Delta F^b_{fn}, \quad (7.14)$$

$$\Delta F^b_r = \Delta F^b_{rf} - \Delta F^b_{fr} \quad (7.15)$$

로 기록하는 것이다.

표 7-4 「간단한 플로우계정행렬(수정후)」는 표 7-1의 자금플로우를 상술한 것과 같이 정리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표 7-4에서는 표 7-1의 기록이 다음 두 가지로 수정되고 있다.

① 계정의 행과 열의 균등조건에 정해지지 않은 집계치인 대각성분을 제거한다.

② 통계상의 불일치( $S_D$ )는 이론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한다. 자연스러운 방법은 이것을 총부가가치(Y)와 순저축(S)에 각각 더하는 방법이다.

상기 수단에 의해 표 7-1을 정리한 것이 표 7-4이고, 그것을 실적치로 나타낸 계정행렬이 표 7-5 「일본의 플로우계정행렬(II)(1994년)」이다.

## 나. 균등조건과 변수·패러미터

표 7-4에 포함된 독립적이고 회계적인 항등관계는 8가지이고, 그것의 예를 들어보면,

$$C + E + I - Y - M = 0 \quad (7.16)$$

$$Y + Y_1 - D - C - T_1 - S = 0 \quad (7.17)$$

$$M + T_1 - E - Y_1 - B = 0 \quad (7.18)$$

$$S + T_1^c - I + D - L_n = 0 \quad (7.19)$$

$$B - T_1^c - L_r = 0 \quad (7.20)$$



표 7-4 간단화된 플로우계정행렬 (수정후)

		1	2	3	4	5	6	7	8	9	10	
경상계정	국민경제	1. 생산계정	I	C	E	I						
		2. 소득의분배·사용계정	Y		Y <sub>1</sub>	-D						
자본계정	국민경제	3. 해외	M	T <sub>1</sub>								
		4. 국민경제		S			T <sub>1</sub> <sup>c</sup>					
축적계정	자본계정	5. 해외			B							
		6. 순대출(+)/ 순차입(-)				L <sub>n</sub>	L <sub>r</sub>					
	금융계정	7. 금융자산 · 부채										
		8. 기타 금융적청구권										
		9. 국민경제						L <sub>n</sub>	$\Delta F^{c, nf}$	$\Delta F^{b, n}$		
		10. 해외						L <sub>r</sub>	$\Delta F^{c, r}$	$\Delta F^{b, r}$	$\Delta F^{c, fn}$	

표 7-5 일본경제의 플로우계정행렬(II) (1994년)

(단위 : 10억엔)

		1	2	3	4	5	6	7	8	9	10	
경상계정	국민경제	1. 생산계정	331,597.7	44,449.2	137,451.2							
		2. 소득의 분배·사용계정	479,071.8		3,943.6	-75,579.8						
자본계정	국민경제	3. 해외	34,426.3	535.9								
		4. 국민경제		75,302.0								
축적계정	자본계정	5. 해외			-13,430.6							
		6. 순대출(+)/ 순차입(-)				13,199.5	-13,199.5					
	금융계정	7. 금융자산 · 부채										
		8. 기타 금융적청구권										
		9. 국민경제						13,199.5	32,744.2	-12,737.4		
		10. 해외						-13,199.5	462.1	12,737.4		

$$\Delta F^{cfn} - \Delta F^{cnf} - \Delta F^{cr} = 0 \quad (7.21)$$

$$\Delta F^{bn} + \Delta F^{br} = 0 \quad (7.22)$$

$$L_n + \Delta F^{cnf} + \Delta F^{bn} - \Delta F^{cfn} = 0 \quad (7.23)$$

와 같이 한다.

(7.16) ~ (7.23)의 균등조건은 18가지의 변수·패러미터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8가지 항등관계를 그대로 한 종류의 거시모델로서 해석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18가지의 변수·패러미터 중 몇 개를 외생변수로서 선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여기서 18가지의 변수·패러미터 중 거시모델이 내생변수로 하는 것은 8가지이고, 나머지 10(= 18 - 8)가지가 외생변수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내생변수와 외생변수의 분할은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외생변수 선택방법의 기준으로서, 그것들이

① 해당 국민경제에 있어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집계치(수출(E), 자본이전순수취( T<sub>f</sub>) 등)인 것,

② 정책적으로 변동시키는, 또는 결정할 여지가 많은 집계치(화폐공급플로우( ΔF<sup>cnf</sup>) 등)인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7.16) ~ (7.23)을 그대로 거시모델로 해석하는 것은 1개의 가능성에 불과하다. 본래의 거시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여기서는 어떤 전제를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 다. 여러가지 전제의 도입

I. 소비함수 : 최종소비지출(C)은, 총부가가치(Y)의 특정 함수로서 나타내면

$$C=C(Y)$$

로 쓸 수 있다. 이 소비함수는 통상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상정한다. 그들의 성질은,

$$C = C(0) = C_0 > 0,$$

$$1 > C' \equiv dC / dY > 0,$$

$$C''(Y) \equiv d^2 C / dY^2 < 0$$

로 설명할 수 있다.

II. 투자함수 : 국내총자본형성(I)은 이자율(특히 국내이자율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r로 나타낸다)의 함수이다. 이 함수는 투자함수라 하는 것으로 I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인 것을 전제로 한다. 즉,

$$I = I(r),$$

$$I' \equiv dI / dr < 0$$

로 한다.

III. 고정자본 소모함수 : 고정자본소모(D)는 총부가가치(Y)의 증가함수라는 전제를 채용한다. 이 전제는,

$$D = D(Y),$$

$$D' \equiv dD / dY > 0$$

로 나타낼 수 있다.

IV. 수입함수 : 수입(M)은 총부가가치(Y)의 증가함수임을 전제로 한다. 즉,

$$M = M(Y),$$

$$M' \equiv dM / dY > 0$$

이다.

V. 화폐보유플로우( $\Delta F^{cfn}$ )와  $\alpha$  함수 : 국내부문의 기말화폐수요(또는 화폐의 적정보유고)  $(F^{cfn})^1$ 은 총부가가치 Y와 국내이자율 r의 함수이다. 더구나 그것은 Y의 증가함수이고, r의 감소함수임을 전제로 한다. 이 함수를

$$(F^{cfn})^1 = F^{cfn}(Y, r)$$

로 나타낼 수 있고, (7.1)에서

$$\Delta F^{cfn} = F^{cfn}(Y, r) - (F^{cfn})^0$$

로 한다. 여기서 국내부문의 기초화폐보유고를 부여한다면,  $\Delta F^{cfn}$ 은, Y와

r의 함수로 하는데, 이 함수를

$$\Delta F^{cfn} = \alpha(Y, r)$$

이라 쓰고  $\alpha$  함수라 지칭한다. 물론,

$$\alpha_y \equiv \partial \alpha / \partial Y > 0, \quad \alpha_r \equiv \partial \alpha / \partial r < 0$$

이다.

VI. 비화폐채무순플로우( $\Delta F^{bn}$ )와  $\beta$  함수 : 비화폐채무순플로우(또는 비화폐의 순공급플로우)  $\Delta F^{bn}$ 은 (7.5), (7.7) 및 (7.14)에서

$$\Delta F^{bn} = \{ (F^{bsn})^1 - (F^{bdn})^1 \} - \{ (F^{bsn})^0 - (F^{bdn})^0 \} \quad (7.24)$$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7.24)의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기말과 기초에 있어서 비화폐의 순공급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원칙적으로 수익을 동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비화폐의 국내부문에 의한 순공급은 국내이자율 r의 감소관계임을 전제하자.(이것은 채권의 신규발행은 이자율이 상승하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7.24)의 제2항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제1항은 r의 감소함수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 함수관계를  $\beta$  함수라 하면,

$$\Delta F^{bn} = \beta(r), \quad \beta' \equiv d\beta/dr < 0$$

로 한다.

VII. 화폐의 한계보유성향과 비화폐의 한계공급성향 : 상기의  $\alpha_r$ 을 「이자율의 변동에 관한 화폐의 한계보유성향」이라 하고,  $\beta'$ 를 「이자율의 변동에 관한 비화폐의 한계공급성향」으로 한다. 화폐의 보유와 비화폐의 보유가 경제주체에 있어서 양자택일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정의적인 의미에서

$$\alpha_r = \beta' < 0$$

이 성립한다.

## 라. IS-LM모델

이 단계에서 어떠한 모델을 구성하는지를 확인해 두자. 우선, 독립적인 관계식의 수는 도입한 전제의 수 6이 증가하여 8개에서 14(=8+6)개로 되어

있다. 그에 대해 변수·패러미터의 수는 당초의 18 개에서 1이 증가해 19 개로 되었다. 그 하나는  $r$ (국내이자율)이다. 정리해보면, 외생변수의 수는  $5(=19-14)$ 가지이고, 나머지 14가지는 모델의 내생변수로 한다.

여기서, 이 모델의 5가지 외생변수를,

$$\{E, Y_1, T_1, T_1^i, \Delta F^{cnf}\}$$

로 하고 14가지 관계식을 적당히 정리하면, 그들은 결국

$$\left. \begin{aligned} Y - C(Y) + M(Y) - I(r) &= E \\ C(Y) - Y + I(r) + \alpha(Y, r) - \beta(r) &= \Delta F^{cnf} + Y_1 - T_1 + T_1^i \end{aligned} \right\} (7.25)$$

의 2개의 식으로 축약된다. 이 연립방정식은  $Y$  와  $r$ 을 미지수로하고 다른 수량을 외생변수로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 연립방정식(7.25)을 IS-LM 모델 또는 단순히 IS-LM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 IS-LM모델 또는 단순히 IS-LM에 의해  $Y$  와  $r$ 이 정해진다면 표 7-4의 계정행렬에 있어서 모든 플로우를 결정하는 것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IS-LM의 제1식은  $Y + M(Y) = C(Y) + I(r) + E$  로 나타내면 알 수 있듯이 국민경제에 의한 재화·서비스의 수요(우변)와 공급(좌변)의 일치조건인 것이다. 제2식의 직접적인 의미부여는 간단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재화·서비스의 수급에 동반하는 소득과 저축의 플로우와 화폐·비화폐의 플로우를 일체화한 균등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IS-LM의 제 2식을, (7.17)과 (7.19)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L_n + \alpha(Y, r) = \Delta F^{cnf} + \beta(r) \quad (7.26)$$

이 된다. (7.26)의 우변은 국내부문에 의한 화폐·비화폐의 공급을, 그리고 좌변은 수요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마. IS-LM모델의 성질

그런데 이 IS-LM모델은 형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통상의 교과서에 있는 IS-LM모델과는 LM함수(제2식)의 부분이 다르다. 기본적인 상이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 통상의 IS-LM모델에 있어서는 국민계정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시경제

분석의 기본적 개념기구는 거의 의식하지 않거나 극히 불완전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IS 함수와 LM 함수 사이에 국민경제계산과의 관련을 전혀 볼 수 없고 양자를 접속하는 플로우의 존재·역할은 거의 무시하고 있다.

② (7.25) 에서 표시한 IS-LM에서는 재화·서비스의 플로우를 의미하는 비금융플로우만이 아닌 관련있는 금융플로우(화폐플로우와 비화폐플로우)의 모든 것으로 결정한다. 또, 이 모델에서는 비금융플로우와 금융플로우를 접속하는 국내부문과 해외의 순대출(+)/순차입(-)의 플로우( $L_n$ 과  $L_f$ )가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극히 중요하다.

③ 지금까지 LM 함수는 IS 함수와 관계없이 화폐의 수급균등식으로서 나타내는 일이 많았던 것에 대해 (7.25)의 제2식은 비금융플로우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다시 쓴(7.26)은 원래 형태의 LM 함수와는 다르다. 그러나 굳이 양자를 형식적으로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7.26)에서  $L_n$ 이 항등적으로 0 이었다고 하자. 그 때 화폐의 수급균등( $\Delta F^{cf} = \alpha(Y, r)$ )이 성립되면 비화폐의 초과공급도 존재하지( $\beta(r)=0$ )않는다. 그리고  $L_n + \beta(r)$ 이 항등적으로 0 인 특수한 경우에만 (7.26)은 원래의 LM함수( $\alpha(Y, r) = \Delta F^{cf}$ )와 일치한다.

## 4. IS-LM모델의 비교학

### 가. 비교학 I (수출의 변동)

이 IS-LM모델의 비교학을 2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그것은 수출(E)과 화폐공급플로우( $\Delta F^{cf}$ )의 변동이 끼치는 내생변수로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우선, 수출(E)의 변동이 초래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한다. (7.25)를 외생변수 E에 대해 편미분하면,

$$\begin{pmatrix} 1 - C' + M' & -I' \\ C' - 1 + \alpha_Y & I' + \alpha_r - \beta' \end{pmatrix} \begin{pmatrix} Y_E \\ r_E \end{pmatrix} = \begin{pmatrix} 1 \\ 0 \end{pmatrix} \quad (7.27)$$

을 얻을 수 있다. 단,  $Y_E \equiv \partial Y / \partial E$ ,  $r_E \equiv \partial r / \partial E$  이다. 위의 I ~ VI 의 여러가지 전제에서, 우선

$$\text{Det} \equiv \begin{vmatrix} 1 - C' + M' & -I' \\ C' - 1 + \alpha_Y & I' + \alpha_r - \beta' \end{vmatrix} = I'(M' + \alpha_Y) + (1 + M' - C')( \alpha_r - \beta' )$$

$$= I'(M' + \alpha_Y) < 0 \quad ( \alpha_r = \beta' \text{에서} )$$

임을 알 수 있다.

거기서,  $Y_E$ 와  $r_E$ 를 구하면,

$$Y_E = (I' + \alpha_r - \beta') / (\text{Det}) = I' / (\text{Det}) > 0$$

$$r_E = (1 - C' - \alpha_Y) / (\text{Det}) \quad ( 7.28 )$$

로 하고,  $Y_E$ 의 부호는 정해졌지만,  $r_E$ 의 부호는 확정적이지 않다. 지금,  $\alpha_Y (\equiv \partial \alpha / \partial Y)$ 를 「거래동기에 근거한 한계화폐수요」로 하자. (7.28)에서 이 한계화폐수요  $\alpha_Y$ 가 한계저축성향  $(1 - C')$ 보다 크면 즉,  $\alpha_Y > (1 - C') > 0$  이면,  $r_E > 0$  이 된다. 역으로 한계화폐수요  $\alpha_Y$ 가 적고,  $(1 - C') > \alpha_Y > 0$  이라면  $r_E < 0$  이다.  $\alpha_Y > (1 - C')$ 인 경우 즉,  $r_E > 0$  인 경우가 종래의 IS-LM분석에 나타나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것이 통상 일어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1 - C') > \alpha_Y > 0$  인 경우도 드물기는 하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 LM곡선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통상의 것과는 달리, 음수의 구배(勾配) ( $dr/dY < 0$ ) 을 갖는 것이다.

#### 나. 기타 내생변수의 영향

다음으로 기타 내생변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생각해 보자. 우선,  $S_E (\equiv \partial S / \partial E)$ 를 계산하면, (7.17)에서

$$S_E = I'(1 - D' - C') / (\text{Det})$$

이다. 따라서,  $1 \geq (D' + C')$ 에 의해,  $S_E \geq 0$  이 됨을 알 수 있다. 즉, 수출(E)의 증가에 따라 총저축(S+D)은 확실히 증대하지만 순저축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국민경상잉여(B)에 미치는 영향  $B_E (\equiv \partial B / \partial E)$ 는 (7.18)에서

$$B_E = M' Y_E - 1 = -I' \alpha_Y / (\text{Det}) < 0$$

으로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국민경상잉여(이것은 개정 SNA에서 경상대외수지(current external balance)라 부르게 되었다)는 어디까지나 해외의 입장에서 정의한 잉여라는 것이다. 표 7-4참조). 즉, 국민경제의 입장에서의 국민경상잉여는  $-B$ 이어야만 한다. 거기서 수출(E)의 증가는 국민경상잉여를 증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국민경제와 해외의 순대출(+)/순차입(-) ( $L_n$ 과  $L_r$ )의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자. (7.16) ~ (7.20)에서 밝혀진 것은  $L_n + L_r = 0$  이라는 관계이다. 그러나 이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7.20)과 (7.23)에서

$$L_{nE} = -L_{rE} = I' \alpha_Y / (\text{Det}) > 0$$

이 도출된다. 여기서  $L_{nE} \equiv \partial L_n / \partial E$ ,  $L_{rE} \equiv \partial L_r / \partial E$  이다. 즉, 국민경제에서 본 대외순대출은 수출의 증가와 함께 증가한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성질상  $L_{nE} = -B_E$ 일 것, 또 그 편도함수의 절대치가 1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면, 해외에 의한 화폐와 비화폐의 순공급 :  $\Delta F^c_r$  과  $\Delta F^b_r$  은 수출(E)의 변동과 함께 어떻게 변화하는가

$$\begin{aligned} \frac{\partial}{\partial E} (\Delta F^c_r) &= \frac{1}{\text{Det}} \{ \alpha_Y (I' + \alpha_r - \beta') + \alpha_r (1 - C' - \alpha_Y) \} \\ &= \frac{1}{\text{Det}} \{ \alpha_r I' + \alpha_r (1 - C' - \alpha_Y) \} \end{aligned}$$

$$\frac{\partial}{\partial E} (\Delta F^b_r) = \frac{-1}{\text{Det}} \beta' (1 - C' - \alpha_Y)$$

를 얻을 수 있는데 부호는 각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표 7-4의 제10계정의 균형식에서나 계산상에서도,

$$\frac{\partial}{\partial E} (\Delta F^c_r) + \frac{\partial}{\partial E} (\Delta F^b_r) = -L_{rE} > 0$$

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양자(좌변의 제1항과 제2항)이 모두 음수가 되지는 않는다. 통상의 경우( $1 - C' < \alpha_Y$ 일 때)는 적어도 후자가 정수



임을 알 수 있다. 즉 수출의 증가에 의해 해외의 비화폐 채무플로우는 증대하는 것이다.

#### 다. 비교학 II (화폐공급플로우의 변동)

화폐공급플로우( $\Delta F^{c, nf}$ )에 대한 비교학을 생각하기 위해 (7.25)를 외생 변수에 대해 편 미분하면

$$\begin{pmatrix} 1 - C' + M' & -I' \\ C' - 1 + \alpha_Y & I' + \alpha_r - \beta' \end{pmatrix} \begin{pmatrix} Y_F \\ r_F \end{pmatrix} = \begin{pmatrix} 0 \\ 1 \end{pmatrix} \quad (7.29)$$

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Y_F \equiv \partial Y / \partial (\Delta F^{c, nf})$ ,  $r_F \equiv \partial r / \partial (\Delta F^{c, nf})$ 이다. (7.29)의 계수행렬은 (7.27)의 그것과 동일한 것에 우선 주목하자. 거기서  $Y_F$ 와  $r_F$ 를 구하면

$$Y_F = I' / (\text{Det}) > 0,$$

$$r_F = (1 - C' + M') / (\text{Det}) < 0$$

이 나온다. 즉 화폐공급플로우의 증가에 의해 총부가가치는 증대하고 이자율은 하락한다.

다음으로 기타 내생변수의 영향에 관해 생각해 보자. 순저축(S)의 영향은

$$S_F = I' (1 - D' - C') / (\text{Det}) \quad (\text{단, } S_F = \partial S / \partial (\Delta F^{c, nf}))$$

가 나오는데, 이것은 수출(E)의 변화가 S에 미치는 효과와 동일하다. 국민경상잉여(B)의 영향은 (7.18)에서,

$$B_F = M'I' / (\text{Det}) > 0 \quad (\text{단, } B_F \equiv \partial B / \partial (\Delta F^{c, nf}))$$

로 나온다. 또 (7.19)와 (7.20)에서

$$L_{r_F} = B_F = -L_{n_F} > 0$$

$$(\text{단, } L_{r_F} \equiv \partial L_r / \partial (\Delta F^{c, nf}), \quad L_{n_F} \equiv \partial L_n / \partial (\Delta F^{c, nf}))$$

로 나오는 것도 알 수 있다. 여기서 밝혀진 것은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볼 때 통상적인 국민잉여(-B)는 화폐공급플로우의 증가에 의해 감소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화폐공급플로우의 증가가 국민경제의 순대출(  $L_n$  )을 감소시키는 것도 분명하다. 이것은  $\Delta F^{c_{nf}}$ 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또는  $r$ 의 하락을 통해서 표 7-5의 계정행렬의 많은 내생적 플로우를 움직이는 일의 통합적 효과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Delta F^{c_r}$  과  $\Delta F^{b_r}$  의 영향을 구해보면,

$$\frac{\partial (\Delta F^{c_r})}{\partial (\Delta F^{c_{nf}})} = \frac{1}{\text{Det}} \{-I'M' + \beta'(1 - C' + M')\}$$

$$\frac{\partial (\Delta F^{b_r})}{\partial (\Delta F^{c_{nf}})} = \frac{-1}{\text{Det}} \beta'(1 - C' + M') < 0$$

로 나온다. 이들 2가지 편도함수의 합계는  $-L_{r_f}$  (<0)로 나오기 때문에 음수를 취한다. 양자 중 한쪽은 반드시 음수여야만 한다. 실제, 화폐공급플로우의 증가에 수반하는 해외의 채무로서의 비화폐플로우는 확실히 감소한다.

## 제Ⅲ부 국민경제계산의 확장

## 제 8 장 해외계정과 국제수지표

국민경제 전체의 모든 경제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경제순환 전과정의 체계적 기록으로 존재하는 SNA는 해당경제와 그 이외의 세계, 즉 해외 (the rest of the world)라는 2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국내 각 부문의 경제주체가 국내의 주체와 행하는 거래는 물론 해외의 경제주체와 행하는 각종 거래를 망라함에 따라 비로소 완전 정합적인 계정체계가 성립된다. 개정 SNA(1993년 SNA)에 있어서 「해외」는 체계의 국내 각 제도부문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해외계정(대외거래계정)은 자료의 작성에 관해 다른 통계시스템, 특히 국제수지통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더구나, 두 시스템은 거의 같은 시기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장은 개정 SNA의 해외계정뿐만 아니라 변경된 국제수지표와 관련된 국민경제계산체계의 주변부에 해당하는 부분도 설명한다.

### 1. 개정 SNA 해외계정

#### 가. 개념적 틀

SNA에 있어서 국민경제(the total economy)란 정확하게 일국의 경제영역 내에 있는 거주자단위의 집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국의 경제영역(economic territory)이란 해당국 정부가 통치하고 있는 지리적 경계 내에서 외국정부나 국제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영역을 제외하고 해외에 존재하는 해당국 재외공관, 군사기지와 과학관측시설 등 이른바 「재외영토」를 더하는 것으로 정한다. 또 영공, 영해만이 아닌 점유권과 채굴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대륙붕 등도 그 나라의 경제영역에 포함한다.

이 경제영역은 개인과 가계, 법인기업과 비영리단체, 정부단위 등의 각 제도단위의 거주성을 정하는 것이다. 즉, 해당국의 경제영역 내에 있어서 각 제도단위가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거래를 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제도단위는 그 영역에 「경제적 이해의 중심」을

가진다고 여긴다. 그리고 제도단위가 경제영역에서 경제적 이해의 중심을 가질 때, 그 제도단위는 해당국의 거주자단위로서 인정된다. 예를 들면,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과 해외의 군사기지에 부임해 있는 군인이 근무하고 생활하는 장소가 모국의 경제영역 내에 있는 재외영토이다. 따라서 해외근무가 어느 정도 장기간이 될지 또는 재외 영토 외에 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해도 모국에 대해 경제적 이해의 중심을 갖는 해당국의 거주자로 취급한다.

그러나 영역 내에서 각 제도단위가 어느 정도의 경제활동과 거래를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거주성의 정의만으로는 모호함이 남기 때문에 체계는 통상 1년 이상이라는 기간을 거주성에 관한 실질적인 지침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1년 규칙」에 따라서 이하의 개인은 해당국의 거주자로서 취급한다.

① 관광, 사업, 교육 등의 목적으로 (1년 미만의 기간) 해당 경제영역을 떠나는 해외여행자. 단 예외로, 해외 유학생은 1년 이상 해당국에 체재해도 경제적 이해의 중심을 갖지 않는다고 해석해서 모국의 거주자(즉, 해당국의 비거주자)로 본다. 이 점은 현행 SNA(1968년 SNA)의 변경이다.

② 1년 미만의 기간동안 해외에서 근무하는 계절노동자와 국경을 넘어서 통근하는 월경노동자

③ 해당국에 존재하는 외국공관과 외국군대의 기지 등에 채용된 현지직원

④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의 승무원

해외에 파견하는 기술원조 스태프(staff)는 체재가 1년을 넘는 경우 파견국의 거주자로 취급한다. 따라서 스태프가 파견국 정부에서 수취하는 피용자 보수에 대해서는, 파견국에서 수취국 정부에 이전지불이 행해지고 수취국 정부에서 봉급이 지불되었는가 하는 귀속계산을 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다.

준법인을 포함하는 법인기업, 대가계민간비영리단체, 정부단위는 해당 경제영역 내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는가 또는 토지, 건물 등의 생산설비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 경제적 이해의 중심을 갖는 것으로 그 나라의 거주단위로 인정한다. 해외에 있어서, 소규모 설비의 설치에 관계한 작업현장과 출장소는 작업기간이 1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모국의 거주성을 잃지 않

고 거주자인 기업에 의해 서비스의 수출로 기록한다. 그러나 대규모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계정체계 완비 등의 기준을 비추어 볼 때 상대국의 거주자단위로 간주해도 된다.

거주자이외의 제도단위는 해당경제의 비거주자라 부르지만, 체계가 완전 정합적으로 닫힌 계정 시스템이기 위해서는 거주자간의 거래만이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래도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체계에 있어서, 해당국 거주자단위의 집합으로서 국민경제를 정의하는 것에 반해, 거주자단위와 거래를 행하는 비거주자의 집합으로 해외부분을 정의하고, 대외적 거래를 기록하는 해외계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거래는 발생주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시장가격평가로 기록한다. 예를 들면 재화의 수출입에 대해서 그 재(財)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인정하는 시점에서 기록하고 대외금융자산·부채에 대해서는 실제 그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에서 기록한다.

해외계정에 있어서 모든 대외거래를 자국통화표시로 기록하기 때문에 여러 외국통화의 거래를 자국통화로 환산해야만 한다. SNA는 거래를 행한 시점의 시장환율을 환산환율로써 채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복수의 공식환율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그 제도가 없는 경우와 비교해서 어떤 종류의 거래는 유리한 한편 불리한 거래도 존재한다. 이 것은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부과한 것과 같은 경제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들을 암묵의 세나 보조금으로 계상한다.

## 나. 해외계정의 구조

국민경제와 해외의 사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 즉, 재화·서비스의 구입·판매, 소득의 수취·지불, 금융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기록하는 해외계정은 이하의 각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재화·서비스의 대외계정
- (2) 제 1차 소득 및 경상이전의 대외계정
- (3) 대외축적계정
  - (3-1) 자본계정

(3-2) 금융계정

(3-3) 기타 자산변동계정

(4) 대외 자산·부채계정

(4-1) 기초대차대조표

(4-2) 대차대조표의 변동

(4-3) 기말대차대조표

(1) 은 재화·서비스의 수출입을 기록하는 계정이다. 재화·서비스의 대외계정에 있어서 수출(X)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재화·서비스를 판매(백터 거래 포함) 또는 증여하는 것으로 사용측에 기입하고, 수입(M)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의 재화·서비스를 구입 또는 증여받는 것으로 원천측에 기록한다. 현행 SNA는 재화의 수출을 F. O. B. 가격으로, 수입을 C. I. F.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개정 SNA는 양쪽 모두 F. O. B. 가격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재화를 수입한 경우 수입재화에 관계된 수송비와 보험료 등은 서비스 수입으로 계상해야 한다.

표 8-1은 어느 정도 간략화 시킨 재화·서비스계정과 생산계정 및 재화·서비스의 대외계정이다. 재화·서비스계정의 원천으로서 국내산출의 총계(O)와 재화·서비스의 수입을 기록하고, 사용으로서 재화·서비스의 수요목적별로 중간소비(U)와 최종소비의 어느 한 쪽을 기입한다. 최종수요는 최종소비와 총자본형성(I : 국내총투자) 및 재화·서비스의 수출로 이루어지며, 최종소비는 주체별로 민간소비(C)와 정부소비(G)로 구별하고 있다. 재화·서비스의 대외계정 균형항목은 재화·서비스의 대외수지라 부르며, 표 8-1에 나타난 것과 같이  $-(X-M)$ 으로 표시한다.

(2) 의 제1차 소득 및 경상이전의 대외계정은, ① 피용자보수, ②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재투자수익을 포함한 재산소득, ③ 생산 및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 - 보조금, ④ 소득·부 등에 부과하는 경상세, ⑤ 사회보장의 부담과 급부, ⑥ 기타 경상이전의 각 항목으로 되어있다. 이 중 ①, ②, ③ 항목은 국민경제 소득의 제1차 분배계정 중 대외 거래항목에 대응하고 있고, ④, ⑤, ⑥은 소득의 제2차 분배계정 중 대외거래항목에 대응하고 있다. 이 대외계정은 소득분배의 과정에서 국민경제와 해외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요소소득과 경상이전의 수취 및 지불을 기록하는 것인데, 이 과정을 표

표 8-1 재화·서비스계정과 생산계정

(원천) 재화·서비스계정 (사용) (사용)재화·서비스의 대외계정 (원천)

산출총계 (O)	중간소비 (U) 최종소비 민간소비 (C) 정부소비 (G) 총자본형성 (I)	재화·서비스의 수출 (X)	재화·서비스의 수입 (M)
재화·서비스의 수입 (M)	재화·서비스의 수출 (X)	재화·서비스의 대외수지 -(X - M)	

(사용) 생산계정 (원천)

중간소비 (U)	산출총계(O)
국내총생산	

8-1과 표 8-2를 이용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생산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부가가치총액(O-U)은 소득분배과정의 제1단계인 소득의 발생계정에서 피용자보수, 생산과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단, 보조금을 공제), 고정자본소모, 영업잉여, 혼합소득의 어느 한쪽의 항목으로 생산자로부터 각 제도부문으로 분배된다. 예를 들면, 「생산과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는(「생산에 부과하는 기타의 세」에 포함하는 「국제거래에 부과하는 세」와 같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사이에서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면) 생산자가 정부에 대해 지불하는 것이다. 또 고정자본소모, 영업잉여, 혼합소득은 생산자가 스스로 지불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 전체의 부가가치총액인 국내총생산(GDP)은 발생소득



표 8-2 개정 SNA 해외계정과 국제수지메뉴얼 제5판

개정 SNA의 해외계정		메뉴얼 제 5 판	
(1) 재화·서비스의 대외계정 (사용) (원천)		재화수지 서비스수지	
재화의 수출 서비스의 수출	재화의 수입 서비스의 수입		
재화·서비스의 대외수지		재화·서비스수지	
(2) 제1차 소득 및 경상이전의 대외계정 (사용) (원천)		소득수지	
피용자보수 재산소득(이자, 배당, 재투자수익) 생산 및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 ( - 보조금) 소득·부 등의 경상세 사회부담 사회급부 기타 경상이전	사용측과 동항목 " " " " "		
경상대외수지		경상이전수지	
		경상수지	
(3-1) 자본계정 (자산변동)		자본수지	자 대 본 외 · 준 재 비 무 자 산 수 지 증 감 을 포 함 한
비생산 비금융자산의 순취득	(부채 및 순자산의변동) 자본이전의 수취 자본이전의 지불		
순대출(+)/순차입(-)			
(3-2) 금융계정 (자산변동)		재무계정 (순액표시) 준비자산증감포함	
<금융자산의 순소득> 화폐용 금·SDR 현금통화·예금 주식이외의 증권 대부 주식 보험기술준비금 기타 수취채권	(부채 및 순자산의변동) <부채의 순효력> 현금통화·예금 주식이외의 증권 대부 주식 보험기술준비금 기타 지불채무		
순대출(+)/순차입(-)			

(자료) IMF[1993]와 Commission of EC, et al. [1993]에서 작성.

면에서 보면,

$$\text{국내총생산} \equiv \text{비용자보수} + \text{생산 및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 - \text{보조금} \\ + \text{고정자본소모} + \text{영업잉여} (\text{혼합소득을 포함})$$

으로 한다.

이때, 비용자보수는 노동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보수로서 거주자인 가계(가계의 구성원인 개인포함)뿐만아니라 비거주자인 가계에도 지불한다. 또 발생소득을 얻은 거주자는 이자와 배당, 임대료 등의 재산소득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때 재산소득의 일부는 비거주자에게도 지불한다. 반대로, 거주자인 가계가 해외의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해외의 생산자로부터 비용자보수로 노동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도 있고 해외에서 재산소득을 수취하는 경우도 있다.

일정기간 내에 국민경제의 거주자 소득(수취소득)총액을 국민총소득(GNI)이라 하는데, 국내 각 부문에 지불하기도 하고 수취하기도 하는 발생소득은 국민경제 전체로 상쇄된다. 따라서,

$$\text{국민총소득} \equiv \text{발생소득으로서 국내총생산} + \text{해외의 비용자보수, 재산소득,} \\ \text{생산 및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 (-\text{보조금}) - \text{해외의 비용자보} \\ \text{수, 재산소득, 생산 및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 (-\text{보조금})$$

단, 재산소득에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재투자수익을 포함한다. 재투자수익이란 직접투자기업의 내부유보이익으로 재투자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투자수익은 (2) 제1차 소득 및 경상이전의 「재산소득」에 기록하는 한편 (3-2) 금융계정의 「주식 및 기타 지분」에 마련하고 있는 상대계정항목에 같은 금액 다른 기호로 계상한다.

그리고 국민총소득을 얻은 거주자 단위는 국내 각 부문간만이 아닌 비거주자와의 사이에서 소득세, 사회보장의 부담·급부, 송금과 증여, 배상 등의 여러 가지 경상이전거래를 행한다. 이 같은 경상이전의 수납과 지불을 거쳐 거주자가 소비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한 소득개념인 국민총가처분소득(GNDI)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2)의 제1차 소득 및 경상이전의 대외계정에서는 (1)의 재화·서비스의 대외수지를 받아서 국민경제와 해외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수불과 경상이전에 관한 수불을 기록한다. 따라서, 이 계정의 균

형항목은 해외가 해당경제와 관계한 사이에서 행한 경상적 거래 전반에 관한 균형이라는 의미에서 경상대외수지라 부른다.

(3)의 대외축적계정의 (3-1)자본계정에 있어서는 대사관 용지의 구입과 특허권 매입 등의 비생산 비금융 자산의 취득-처분이 자산변동으로 기록되고, 투자교부금(investment grant)과 채무면제(cancellation of debt)등의 자본이전의 수취-지분이 부채측에 기록된다. (3-2)의 금융계정은 거주자·비거주자간에 생기는 모든 금융자산거래를 기록한다. 이 계정의 자산변동측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금융자산의 순취득(취득-처분)을 기록하고, 부채의 변동 측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의 순발행(발행-변제)을 기록한다. 금융계정의 균형항목은 금융자산의 순취득에서 채무의 순발행을 공제한 것인데 플러스라면 순대출, 마이너스라면 순차입이라 하고, (3-1) 자본계정의 균형항목에 일치시키고 있다.

(3-3)의 기타 자산변동계정에 있어서는 특허권과 소프트웨어 등의 비금융 자산의 일방적인 압수와 재해 등에 의한 금융자산의 괴멸적인 손실 및 불량채권의 소멸 등에 의한 자산량의 변동을 기록하는 한편, 대외금융자산의 자산매각수익과 손실에 상당하는 보유이득과 손실을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4)의 대외자산·부채계정은 대외금융자산·부채의 잔고표와 각 자산마다의 포지션변동을 나타낸 계정이다.

어느 일정한 기간 내에, 국민경제가 해외와의 사이에서 행한 여러 가지 대외거래를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SNA 해외계정 이외에 잘 알려진 것으로는 국제수지표를 작성하는 통계시스템이 있다. 국제수지표는 IMF가 발행하는 국제수지메뉴얼에 따라 각국 정부에 의해 편집된 것인데 국민경제계산체계와 국제수지표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SNA의 해외계정을 작성하는 자료는 국제수지메뉴얼에 근거하여 기록한 국제수지표의 각 항목을 SNA용으로 재편집하는 것에 의해 작성하기 때문이다. 1993년에 SNA가 개정된 것과 동시에 IMF의 국제수지메뉴얼도 개정되었다. 메뉴얼의 개정은 다음절에서 설명하기로 하자.

## 2. 국제수지메뉴얼의 개정

### 가. 국제수지표와 국제투자 포지션표

국제수지메뉴얼의 이전 개정은 1977년에 행한 제4판(이하 메뉴얼 제4판으로 생략한다.)으로서 공표되었다. 그 후 10수년 사이에 국제수지표가 기술해야할 대외적인 거래의 기록을 행하는 경제환경은 급속히 변화되었다. 예를 들면, 서비스분야의 국제무역이 점차 확장되는 한편, 국제금융시장은 급속히 자유화되고 새로운 금융수단이 개발되었으며 여러 가지 파생상품이 도입되는 등 국제거래의 방법이 현저히 변화되었다. 모든 대외거래를 망라하여 기록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지 계정구조의 거래분류와 기록방법이 변경되어야만 하고 IMF는 메뉴얼의 개정을 통해 1993년에 『국제수지메뉴얼 제5판』(이하 메뉴얼 제5판이라 부르기로 한다.)을 발행했다.

메뉴얼 제4판과 비교해 개정의 주된 요점을 설명하자면, 우선 첫째 통계시스템의 체제 확장을 들 수 있다. 메뉴얼 제5판에서는 국제거래가 플로계정인 국제수지표뿐만 아니라 국제투자포지션표(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라고 하는 대외금융자산·부채에 관한 스톡계정을 마련하고 있다. 표 8-3과 같이 국제수지표는 대외적인 거래플로만을 기록하는 것으로, 경상계정과 자본·재무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대외금융계정·부채의 평가, 재분류 또는 기타 조정은 대외자산·부채잔고표인 국제투자 포지션표에 기록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SDR(특별인출권)의 분배·상쇄, 금의 화폐화·비화폐화는 국제수지계정의 거래플로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투자포지션표의 포지션변동요인 중의 조정항목에 기록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 메뉴얼 개정의 또 한가지 중요한 요점은 같은 1993년에 개정된 국민경제계산체계(개정 SNA)와 계정의 정합성을 한층 더 도모하는 것이다. SNA해외계정과 국제수지표 그리고 국제투자 포지션표의 계정정합성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선 SNA와 메뉴얼의 개념, 정의, 기준에 관한 통일을 이루었다. 즉, 경제영역의 정의와 거주자개념, 거래분류, 평가방법, 기록시점(계상시간), 환율환산을 위한 지침 등에 관한 극히 상세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제

표 8-3 국제수지메뉴얼 제 5판

국제수지표(Balance of Payments) :

경 상 계 정 [ 경상수지 (CAB) ]		《메뉴얼 제5판》		《국내발표형식》				
재 화 · 서비스	재 화 : 일반상품, 가공용 재화, 재화의 수리 수송수단에 의한 항만조달재화, 비화폐용 금	재 화 · 서비스수지 (X-M)	경 상 수 지	무역수지 (TB)				
	서비스 : 수송, 여행, 통신,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 · 정보의 각 서비스 등			서비스수지				
소 득	피 용 자 보 수	소득수지 (NY)		소득수지				
	투자수익 :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 투자							
경상이전	일반정부(소득세, 사회부담, 급부 등)	경상이전수지 (NCT)	경상이전 수지					
	기타 부문(노동자의 송금, 기타 이전)							
자본 · 재무계정 (자본 · 금융계정)								
자본계정	자본이전의 수취 - 지불	자본이전수지(NKT)	자본수지 (BKA = NKT-NPNN)	대포 외합 준하 비지 투않 자는 의자 증본 감의 올재 무 수 지 NKA	기 타 자본수지	자 본 수 지		
	비생산 비금융 자산의(순)취득 (NPNN)							
재무계정	직접투자 : 해외의(로부터의)직접투자(주식자본, 채투자수익 등)		투자수지		NKA		투자수지	
	증권투자 : 자산 · 부채(주식, 금융파생상품을 포함한 채권)							
	기타 투자 : 자산 · 부채(무역신용, 대부, 현금 · 예금)							
	준비투자 : 화폐용 금, SDR, IMF준비, 외국환율(통화당국 · 은행), 기타 청구권							
				준비자산증감(RT) = 외화준비증감				

국제투자포지션표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

	해외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 투자		준비자산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기초잔고								
포지션변동								
거래(량)								
가격변동								
중립적보유이득(+)/손실(-)								
실질보유이득(+)/(-)								
환율변동								
중립적보유이득(+)/손실(-)								
실질보유이득(+)/손실(-)								
기타 조정								
기말잔고								

(자료) IMF[1993] 및 Commission of EC. et al. [1993]에서 작성.

외하고는 완전히 일치했다 해도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해외 기술원조 스탭의 거주성도 제4판에서 변경되어 개정 SNA와 같게 되었다.

국제수지표도 SNA 해외계정과 같은 개념의 틀 안에서 일정기간 내에 행한 모든 대외적인 거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복식부기의 원리에 근거해서 기록하는 것에 의해 편집되고 있다. 이 대외거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거래에 한정하고 있고 더구나 현실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시점에서 기록한다는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르고 있다. 재화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이전이 행해진 때에 계상해야 하지만 실제 재화의 대부분을 통관시점에서 기록하고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채권채무관계의 발생과 함께 기록하고 있다.

국제투자포지션표를 준비함으로서 플로만이 아닌 스톡의 측면에서도 SNA의 해외계정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단, SNA 해외계정의 자본계정 소계정인 (3-3)의 기타 자산변동계정 중의 자산량 변동에 대해서 국제투자포지션표의 기타 조정항목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마찬가지로 보유이득의 재평가에 대해서는 포지션표의 가격변동과 환율변동의 항목이 대응하고 있다.

그러면, 메뉴얼 제5판에 따라서 국제수지표의 계정구조와 구성항목의 변동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메뉴얼 제4판에서 경상계정은 재화·서비스 및 수익과 무상이전의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고, 자본계정은 준비자산을 제외한 자본과 대외준비자산의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무상이전에 포함되어 있던 자본이전은 SNA의 거래분류에서 자본거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서는 SNA 해외계정과 국제수지메뉴얼의 경상계정 범위 중 자본이전의 부분만이 서로 다르게 된 것이다.

메뉴얼 제5판에서의 경상계정은 재화·서비스, 소득, 경상이전의 3 항목으로 되어있고, 제4판의 자본계정은 자본·재무계정이라 하며 자본계정과 재무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상이전은 경상이전과 자본이전으로 분류하여 자본이전은 비생산 비금융 자산의 취득, 처분의 항목과 자본계정을 구성하였다. 이것은 국제수지표와 SNA의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의 분류가 일치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다.

재화·서비스는 재화와 서비스의 항목으로 나누고 각각 세분화 한 소항목을 만들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예를 들면, 재화는 메뉴얼 제4판에 있어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서 소유권이 이전하는 동산으로 하고, 비화폐용 금을 포함한 상품으로서 항목만을 계상하고 있었는데, 제5판에 있어서는 상품을 일반상품과 비화폐용 금으로 분리하고 가공용 재화, 재화의 수리, 수송수단에 의한 항만조달재화의 3 가지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가공용 재화는 실제로 소유권의 이전이 생기지 않음에도 해외에(로부터의) 수출(수입)하고, 가공처리를 실시한 후에 재수입(재수출)하는 재화로서 가공비를 포함한 총액을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 재화의 수리는 서비스의 수출입으로 계상해야 하지만 수리비부분을 재화로서 계상하고 있다.

서비스항목은 크게 변경되어 수송, 여행, 통신서비스, 건설서비스, 보험서비스, 금융서비스 등 실제로 11항목으로 세분화 되는데 이 세분화된 항목은 SNA의 생산물분류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또, 새롭게 피용자보수와 투자수익에 따른 소득항목을 설치함으로써 국제적인 서비스거래와 소득의 거래에 명확한 구별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면, 메뉴얼 제4판에서는 노동에 대한 보수와 비금융 재산소득은 운수, 선적보험과 여행, 투자수익을 제외한 그 외의 서비스와 동일시하고 있는데 메뉴얼 제5판에 있어서는 거주자·비거주자간의 소득플로를 경상계정의 독립된 구성요소로서 확인하고 피용자보수소득 및 투자수익의 소항목으로 된 소득항목을 별개로 두어 기록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메뉴얼 제4판에서는 무상이전을 경상이전과 자본이전으로 분리하고 자본이전은 자본·채무계정 중 자본계정으로 처리하였다. 메뉴얼 제5판에 있어서 자본이전지불(수취)이란 SNA의 투자교부금과 기타 자본이전에 상당하는 것으로 수송기기와 건물 등 고정자산증여(수령)와 자본형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한 현금의 증여(수령) 및 채무면제란 것이다.

경상이전은 자본이전을 제외한 이전을 말하며 주체별로 일반정부와 기타 부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비거주자에 대해 행하는 재해원조는 경상이전 중 일반정부 항목의 지불로 계상하고, 민간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한 원조금은 기타 부문의 수취로 계상한다.

자본·재무계정은 자본계정과 재무계정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SNA의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에 대응한다. 자본계정은 자본이전과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취득·처분 항목으로 되어있고, 재무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 투자와 준비자산의 각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계정에 있어서는 대외자산·부채의 대차계약에 관한 장기·단기의 구분이 없어졌다. 또, 금융자산과 그 플로를 망라한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이는 IMF통계 시스템과 SNA와의 연계에 의해 완전한 것으로 되었다. 단, 금융자산의 분류에 관해서 국제수지표에서는 기능별로 분류하고 있으나 해외계정은 수단별로 분류하고 있다.

그 외에도 환율시장의 실세화가 기본지표로 되어 있으며 국제수지통계의 지역별분류가 추진되고 있다.

#### 나. 국내발표형식의 변경

국제수지메뉴얼의 개정과 함께 대장성 국제금융국, 일본은행 국제국 및 외환심의회를 중심으로 합동작업을 거쳐 1996년 3월부터는 일본의 국제수지통계의 발표형식도 대폭 변경되었다. (구)통계에 근거한 국제수지표가 달러표시와 엔화표시를 병기한 것에 반해 (신)통계는 메뉴얼 제5편이 권고하는 자국통화표시 원칙을 받아들여 엔화로 표시하고 있다.

(구)발표형식에 의한 국제수지 총괄표는 경상수지, 장기자본수지, 기초수지, 단기자본수지, 누락수지, 통합수지 및 금융계정이라는 7가지의 주요 수지(균형=수취-지불)로 나타나 있다. 경상수지는 재화(상품)의 수출에서 수입을 공제한 무역수지와 운송(운임, 화물보험, 항만경비, 용선료 등), 해외여행중의 소비지출, 투자수익(이자, 배당금)등의 항목별 서비스대가의 순수취(수취-지불)인 무역외 수지, 무상의 대외원조와 증여, 소득세, 연금송금 등의 반대급부를 동반하지 않는 무상이전의 순수취인 이전수지로 구성되어 있다.

장기자본수지는 대차계약 기간이 1년을 넘는 대외자산·부채의 증감을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얻은 자본의 유출입(자본수지)이고, 단기자본수지는



기간 1년 이하의 금융계정에 속하지 않는 대외자산·부채(무역신용, 선물거래)의 증감을 계상한 자본수지이다. 또, 금융계정에는 공적부문(정부, 일본은행)과 외국환은행이 보유한 유동성이 높은 대외자산·부채의 증감을 순액표시로 기록하고 있다.

경상수지에 장기자본수지를 더한 것이 기초수지이고, 기초수지에 단기자본수지와 오차 및 누락을 더한 것을 통합수지라 한다. 통합수지에 포함된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는 자율적인 대외거래로 상정하고, 금융계정은 통합수지의 불균형을 조정하는(finance)항목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계정의 증감은 통합수지의 수지와 항상 일치하며, 역으로 말하면 일치하도록 오차 및 누락을 조정항목으로 두었다.

그러나, 자국은행에서 행하는 딜링(dealing)으로 대표되는 것과 같이 금융계정에 계상하는 거래 중에도 자율적 거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수지의 조정항목으로서 금융계정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 장기채의 단기 매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기까지의 대차기간 차이에서 자본수지를 구분하는 의의도 없어졌다 해도 좋을 것이다.

이상의 이유에서 금융계정을 폐지하였으며 자본수지에 대해서는 장기·단기자본수지를 폐지하였고, 따라서, 기초수지도 폐지하였다.

일본의 새로운 국제수지통계 발표형식은 표 8-3에 병기한 것과 같이, 경상수지는 무역·서비스수지(수출-수입)와 소득수지(수취-지불), 경상이전수지(수취-지불)로 구성된다. 무역수지란 매뉴얼 제5판의 재화수지를 말한다. 지금까지 무역수지와 무역외 수지라는 표현이 널리 퍼져서인지 재화의 균형을 무역수지로 해석하고, 무역외 수지에 대해서는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의 합으로 명기하고있으며 총괄표의 참고자료로 덧붙이고있다.

자본·재무계정 쪽은 자본수지와 외화준비의 증감으로 구성되는데, 이때 자본수지는 매뉴얼 제5판 자본계정의 균형인 자본수지가 아니고 대외준비자산의 증감을 포함하지 않는 자본·재무계정의 균형(수지)을 말한다. 게다가, 자본수지는 기타 자본수지와 투자수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타 자본수지가 매뉴얼에서 나타내는 자본수지와 일치하고 있고 투자수지는 준비자산의 증감을 제외한 재무계정의 균형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

(구)발표형식과 비교해보면 일본의 국제수지통계시스템에서는 이제까지

표8-4 신규 국제수지표와 SNA의 해외계정

신 : 일본의 국제수지표 : 구			거래의 분류		개정 SNA의 해외계정		
경상수지	무역수지	무역수지	재 화	생산물	경상거래	재화·서비스의 대외계정	재화·서비스의 대외수지
	서비스수지	무역 외 수 지	서비스				
	소득수지		경상의전수지	비용자보수 재산소득	분배거래	제1차 소득 및 경상이전의 대외계정	경상대외수지
	경상이전수지	경상이전					
자본수지	기 타 자본수지	이전수지	자본이전	자본거래	자본계정	순대출(+)/순차입(-)	
			기타 축적항목				
	투자수지	금융계정	장기자본수지	자본거래	금융계정	대외부채순증 -대외자산순증	
			단기자본수지				
			오차탈루				
외화준비증감	금융계정	오차탈루					
오차탈루							

(자료) 일본은행 국제국 [1996] 및 「1993SNA(UN)」에서 작성.

파악할 수 없었던 재투자수익에 관한 보고시스템을 정비하고 계상하는 방향에서 임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sup>1)</sup> 또, 여러 가지 금융과생상품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 거래항목의 확장과 세분화가 이루어졌다.

### 3. 국제수지와 SNA균형항목

국민경제계산체계와 국제수지표, 국제투자포지션표는 각각을 편집하는 자료를 통해서 밀접하게 서로 관련 맺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설명했다. SNA에서의 해외계정을 구성하는 자료는 국제수지메뉴얼에 근거해 기록한 국제수지표와 국제투자포지션표의 각 항목을 SNA용으로 재편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도 양 시스템의 개념과 분류 및 계상 방법에 대한 조화를 도모하고 계정구조의 정합성도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영역과 거주자단위의 정의는 물론 그 외의 일반적인 계정규칙, 즉 거래플로 및 대외금융자산·부채의 스톡에 관한 범위와 평가, 기록시점, 환율에 의한 환산의 방법 등에 관한 메뉴얼과 SNA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어졌다 해도 좋다.

국제수지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지중에서 중요한 것을 SNA의 주요한 거시집계개념과 대응시켜 생각하는 것은 거시경제모델을 분석을 할 때 유익하다. 예를 들면, 대외적인 재화·서비스수지와 국내의 재화·서비스시장의 수급 차의 관계와, 경상수지와 저축·투자균형과의 관계, 또는 자본수지와 대외 순차입의 관계 등은 특히 국제거시경제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단, SNA 해외계정은 해외를 국내부문과 상대하는 1가지 제도부문으로 간주됨에 따라 「해외」 그 자신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제수지표는 어디까지나 「자국경제」의 입장에서 편집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수지표의 각 수지의 수치와 그것에 대응하는 해외계정이 균형항목의

1) 일본의 현행 국제수지표는 모든 통계시스템에 의해 편집되어 있다. 즉, 1건당 500만 엔을 넘는 송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수취, 지불의 여하에 관계없이 외환법에 따라 외환은행 또는 지정증권회사에 대해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현금 송금을 발생시키지 않는 재투자수익의 분배는 종래까지의 보고시스템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다.

수치와는 부호가 반대로 되어있음에 주의해야한다. 예를 들어, 경상수지가 흑자이면 해외계정의 경상대외수지는 같은 금액의 적자라는 것이다. 이하, SNA 해외계정에서 각 균형항목과 국제수지표상의 수지개념을 대응시켜 생각해보면 동액이부호가 나타나면 이는 같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제수지표상의 각 수지개념을 재확인해 두기로 한다.

$$\text{경상수지} \equiv \text{무역} \cdot \text{서비스수지} + \text{소득수지} + \text{경상이전수지}$$

$$(CAB) \equiv (X - M) + (NY) + (NCT)$$

$$\text{자본수지} \equiv (\text{자본이전수지} - \text{비생산 비금융 자산의 순취득})$$

$$(BKA) \equiv (NKT - NPNNA)$$

$$\text{경상수지} + \text{자본수지} \equiv \text{순대외투자}$$

$$(CAB) + (BKA) \equiv (NFI)$$

$$\text{경상수지} + \text{자본} \cdot \text{재무계정수지} \equiv 0$$

$$(CAB) + (NKA) + (RT) \equiv 0$$

다음으로 SNA의 재화·서비스계정을 살펴보자, 좌변을 원천, 우변을 사용이라 하면,

$$O + M \equiv U + C + G + I + X$$

한편, 생산계정 균형항목의 부가가치개념인 국내총생산(GDP)에 관해서는 생산총계에서 중간소비를 공제한다고 하는 정의로부터

$$GDP \equiv O - U$$

이상의 두 식을 정리해보면,

$$GDP \equiv C + G + I + X - M$$

회계적으로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식의 우변은 국내총지출(GDE)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생산과 지출면의 부가가치수준인 2면 등가가 성립한다.

국내최종수요의 합계(C+G+I)를 특히 국내병합(absorption) (A)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다.

$$A \equiv C + G + I$$

국내총생산에서 병합을 뺀 것이 SNA에서 재화·서비스의 대외수지와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GDP - A = X - M$$

그런데, 이 X-M은 국제수지 개념의 무역·서비스수지와 거의 같다. 거의 같다는 것은 엄밀히 보면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개정 SNA와 국제수지 매뉴얼 제5판과 비교해보면 간접적으로 계측된 금융중개수수료부분이 국제수지표의 경상계정의 소득에만 속하기 때문에 SNA의 재화·서비스의 대외수지와 국제수지표의 재화·서비스수지와 다르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무시하기로 하자. 물론, 각각의 경상계정의 범위에 있어서는 경상대외수지와 경상수지와는 완전히 같게 된다<sup>2)</sup> (단, 동액이부호가 된다)

현재, 해외와의 관계에서 생산 및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와 보조금의 수불이 없다고 하자. 그렇다면 일정기간 내에 거주자 주체가 가득한 총 소득액인 국민총소득(GNI)은 국내총생산에 해외에서의 피용자보수와 재산소득의 순수취를 더하는 것에 의해 얻을 수 있다. 이것은 GDP에 국제수지표의 소득수지(NY)를 더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GNI \equiv GDP + NY$$

로 나타낼 수 있다. 또, 국민총가처분소득(GNDI)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GNI에 해외에서의 경상이전의 순수취, 즉, 국제수지표상의 경상이전수지(NCT)를 추가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GNDI \equiv GNI + NCT$$

로 나타난다.

한편, 경상수지(CAB)는 앞 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무역·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3개의 수지고의 합이기 때문에,

$$CAB \equiv (X - M) + NY + NCT$$

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은 개정 SNA의 경상대외수지와 동액이부호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상의 식에서,

$$GNDI \equiv GDP + NY + NCT = A + CAB$$

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경제에 있어서 총저축(S)은

$$S \equiv GNDI - (C + G)$$

2) 개정 SNA의 제 1차 소득 및 경상이전의 대외계정의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 조정」의 항목은 국제수지표의 경상계정에는 없는 항목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그 항목의 양 계정 시스템의 경상계정만은 다르게 된다.

로 정의하기 때문에,

$$S - I = CAB$$

로 하고, 저축투자차액이 경상수지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투자에 비교해서 저축초과( $S > I$ )이면 경상수지는 반드시 흑자로 나타나고, 저축이 부족하면( $S < I$ ) 경상수지는 적자로 나타난다. 또, 거시모델 분석에 있어서 해외와의 거래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폐쇄경제를 상정하면 경상수지는 0이 되기 때문에  $S=I$  가 재화·서비스(생산물)시장의 수급균형조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민경제의 축적계정에 있어서 자본계정의 균형항목이 정(+)  
의 부호이면 대외순대출(net lending, NL), 부(-)의 부호이면 대외순차입(net borrowing, NB)이라 하는데 이 균형항목은 국제수지표상의 자본이전수지(NKT)와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수취 - 처분(NPNNA))을 사용해,

$$\text{대외순대출(+)} / \text{순차입(-)} \equiv S - I + \text{NKT} - \text{NPNNA}$$

로 쓸 수 있다.

한편, NKT와 NPNNA는 국제수지표에 있어 자본·채무계정의 자본계정을 구성하는 것에서 대외순대출(+)/순차입(-)은 국제수지표의 자본계정의 수지(BKA)에 경상수지를 더한 것에도 같게 될 것이다. 매뉴얼 제5판에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더한 것이 SNA의 대외순대출(+)/순차입(-) 즉, 해외에 대한 채권의 순증/순감의 개념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지를 특히 순대외투자(net foreign investment, NFI)라 부르고 있다. 따라서, 이하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text{순대외투자} = \text{경상수지} + \text{자본수지} = \text{대외순대출(+)} / \text{순차입(-)}$$

$$\text{NFI} = \text{CAB} + \text{BKA} = S - I + \text{NKT} - \text{NPNNA} = \text{NL(+)} / \text{NB(-)}$$

## 제 9 장 사회회계행렬

### 1. SNA와 사회회계행렬

#### 가. 사회회계행렬의 개요

국민경제 계산에서 경제순환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T자형 계정을 중심으로 사용되었지만, 그 이외에 행렬 또는 통합 경제 계정에 의한 표시형식도 시도되고 있다. 그 중에서 행렬에 의한 표시법은 United Nations 「1968」의 88행 88열부터 시작하는 행렬Table 2.1 에서 경제순환의 대표적인 예로 일람표시 하고 있고 T자형 계정과 행렬을 이용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T자형 계정 계열에서 완전접합성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행렬 표시는 가능하다. 이와 같이 T자형 계정에 의한 경제순환을 행렬로 표시한 것은 지금까지 통상 계정행렬, 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국민계정행렬이라 하였다. 계정행렬, 또는 T자형 계정은 국민경제 계산을 표시하는 선택적 방법이며 어느 방법을 채용하더라도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은 동일하다.

개정 SNA는 XX장에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ces : 통칭 SAM이라 부른다)의 호칭으로 행렬표시의 해설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계정행렬은 경제순환의 행렬표시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지만, 이 계정행렬과 사회회계행렬의 용어적 관계도 설명해 보자. 우선 사회회계행렬(SAM)의 유래에 관해서 간단히 서술해 보려고 한다.

1968년 국제연합에서 현행 SNA가 발표되었을때 개발국은 물론 각 개발도상국에서도 현행 SNA의 가이드 라인을 채택하였고 국민경제 계산의 작성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의 체계는 개발국에 비해서 충분하고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그 개요는 생산계정에서 기존의 투입산출에 근거한 상세한 활동분류, 생산물분류를 제시하고 있지만, 기타 소득, 축적계정에 의해서 몇 가지 제도부문을 통합한 연결계정의 형식을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 그 체계는 생산계정에 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다른 활동계정에 대해서는 통계자료 등의 미비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70년대초 ILO에서는 세계 고용계획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란, 스리랑카, 스와질란드 등 개발도상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회회계행렬의 작성을 시험하였다. SAM작성의 직접적 동기는 기존의 국민경제 계산체계의 관심이 경제성장에 집중되고 내용에 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다시 말해 경제성장이 사회 내부에 있는 다양한 그룹의 생활수준, 고용상태의 관점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정책 목표로써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세밀한 분류를 이용한 생산계정과 그 밖의 세밀하지 못한 분류의 계정에서 나타낸 표시형식으로 된 통계체계는 상기의 정책 목표에 대한 만족할 만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상기 계획의 사회회계행렬에서 생산계정 이외의 계정, 특히 부가가치에 관한 상세한 분류를 시도하는 것보다 각 부가가치 카테고리과 최종지출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에 노력하였다.

#### 나. 사회회계행렬의 구체적인 예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사회 여러 그룹의 고용상태, 소득 분배·재분배의 정보를 알려주는 데이터베이스의 작성이 필요하였고 그 실현이 가능토록 해 주는 것이 SAM이었다. SAM은 여러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일련의 SAM형식은 표 9-1에서 보듯 기본적 SAM으로 집약할 수 있다. 표 9-1의 행렬은 국내부문과 해외부문으로 분할되고, 국내부문에 관해서는 경상계정, 자본계정과 생산계정으로 구성된다. 행은 소득, 열은 지출을 각각 나타낸다. 통상, 경상계정, 자본계정은 제도부문별 분류를, 생산계정은 활동별 분류를 포함한다. 이 3가지 활동계정 이외에 생산물과 생산요소의 2가지 모형 계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 일련의 SAM 특징은 생산요소의 상세한 표시라 할 수 있다. 생산활동에 의해 발생한 부가가치는 해당 경제의 특징에 대한 각 생산요소로 분류한다. 생산요소의 분류 방법은 정책목표, 해당경제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여러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다<sup>1)</sup>. 표 9-1은 6개의 계정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배열 순서는 통상적인 순서 즉, 재화·서비스, 생산, 소득, 축적의 배열과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SAM에서 생산 요소를 최초의 행, 열에 배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것은 SAM에서 소득분배 면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 표에서는 경상계정, 자본계정, 생산계정, 해외계정의 순으로 계정을 나열하고 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스리랑카의 사회회계행렬(1970년)의 예를 제시해 보자. 이 행렬은 본래 87행 96열의 행렬이지만, 표 9-2는 각 부문을 통합하여 25행 25열로 축소한 형태라 할 수 있다. 행은 수입항목을, 열은 지출항목을 기재하고 있다. 이 행렬은 생산요소, 제도부문, 생산활동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에 생산요소의 행, 열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소득의 순환적 플로(활동에 의해 산출하는 소득에서 생산요소로 생산요소에서 요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으로, 부문에 의한 소득의 지출에서 활동에 대한 수요로)의 기록을 중심으로 한 체계이다. 요소는 노동과 기타 요소로 분할한다. 전자는 도시, 지방, 농촌의 3가지로, 후자는 '소유자 점유거주의 귀속집세, 민간자본, 공공자본' 이 3가지로 각각 분할한다. 제도부문은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분할한다. 경상계정은 가계, 법인, 정부의 3가지로 나뉘고 가계는 생산요소인 노동과 동일 분류로, 법인은 민간과 공공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자본계정은 통합계정이라 할 수 있다. 생산활동 계정은 차(茶), 고무, . . . , 정부서비스 등 11가지 산업으로 분할하고, 마지막으로 해외의 통합계정을 기재하고 있다. 이 표는 11개의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산업연관표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과 동시에 생산요소 및 경상계정에 상세한 분류를 덧붙이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SAM 작성의 토대가 되었다. 이 표에서, 가계의 분류를 도시, 지방, 농촌의 3가지로 나누고 있지만, 원래 표에서는 각 클래스가 6가지 소득계층별로 분류하고, 가계에 관한 세밀한 수입·지출의 패턴 파악이 가능하다.

#### 다. 사회회계행렬과 계정행렬

1) Pyatt and Round 「1977」, p. 340에 의하면, 「우리들은, 국제연합 SNA의 SSDS에서의 분리를 크게 후회하고 있고, 그 둘의 통합을 위하여 우리들은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기술한 것처럼, SAM에는, 계정의 분류항목으로써 경제적 요소는 물론 사회적 요소도 도입되고 있다

표 9 - 2 스리랑카의 사회회계행렬 (1970년)

(단위 : 100만루피)

인	수	지																								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	생산요소	노동																										
		기타																										
	2	도시	1673								434		91															
		지방		3185							203		151															
		계			711	31	30				7		6															
		민간법인				135	1266						57															
3	3	공공법인				174						237																
		정부																										
	4	통합자부계정							368	194	4	272	104		313	33	4	14	10	19	288	216	66	130	76	29	94	2234
		차							14	55	7				-55													
		고													25						8							
6	6	코코넛						54	208	27				29					239	8								
		쌀						158	760	102				105					1082	2								
	7	기타 농업						357	980	139				37					2	95	63	34	3					
		식료·음료						253	541	82				72					9	11	24	188						
		기타 산업						258	621	69				1595					97	24	9	35	69	49	554	417	172	37
		건설업						410	1074	122				154					50	10	8	44	23	95	249	206	96	42
7	상업·운수						405	920	85									11	3	7	15	1	4	9	38	55	37	
	민간서비스																											
7	7	정부서비스										1649																
		해외						207	741	144				364					75	12	10	32	53	204	370	65	70	
7	7	합계	1673	3185	711	633	4984	174	3003	6901	791	1443	411	2234	2640	864	373	577	2242	1846	1276	2790	1745	2845	1877	1649	2522	
		합계																										

(자료) Pyatt and Round [1997], pp. 352-353, Table 2 에 의함.

SAM은 표 9-2에서 예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가계부문과 생산요소의 상세한 분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배적 측면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간단한 공급·사용표를 포괄하고 있는 행렬이라 간주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SAM에서는 분배적 측면을 상세한 경제환경의 행렬표시와 그 채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개정 SNA에서 SAM은 「SNA계정의 행렬표시이고 동시에 공급·사용표와 제도부문 계정 사이의 연결을 상세하게 표시한 것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SNA와 SAM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하자면, 국제표준체계로서 SNA는 자칫 각 국의 적용에 대해 유연성을 결여한 일련의 계정으로 인식돼 왔지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유연성을 겸비한 SAM이 부가가치 카테고리를 상세하게 표시하고 가계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부가가치와 최종수요의 관련성 등을 명확히 밝혀 왔다고 할 수 있다(「1993SNA(UN)」, p. 421, par. 19.5. 참조). 개정 SNA의 중심체계는 T자형 계정과 통합경제 계정을 이용하여 각 국에 공통의 표준체계를 제시하지만, SAM은 행렬의 유연성을 이용하여 해당국·해당지역 특유의 SAM을 작성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SAM은 중심체계의 주변부분을 나타내는 위성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AM을 위성계정체계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문장 첫머리에서 서술한 계정행렬과 SAM의 용어가 다른 점에 관해 살펴보자. 전자는, 일반적인 경제순환에 관한 T자형 계정을 행렬로 표시한 것이고, 후자는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소득분배면을 강조한 경제순환의 행렬표시라고 대략 특징지을 수 있다. 다시 말해, SAM은 계정행렬의 소득분배면을 중시한 특수형이라 할 수 있다. SAM은 SNA의 표시형식중 하나이고 정책목표나 해당경제의 상황에 대응하여 유연성·보완성 등의 위성적 성질을 가진 체계인 것이다. 이와 같이 SAM은 소득분배면을 강조한 계정행렬과 관계 있지만 「SAM이 행렬형식을 갖고 상세함의 정도에 강한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SNA이다」<sup>2)</sup>라고 채택하고 있고 SAM 계정행렬의 구별을 하지 않고 SAM을 일반적인 계정행렬의 의미로 사용해 이 책을 설명하기로 한다.

---

2) 「1993SNA(UN)」, p.421, par.19.5. 참조.

## 2. 사회회계행렬의 전개

### 가. 기본적인 사회회계행렬

개정 SNA의 XX장 사회회계행렬은 예시적인 SAM을 7가지 게재하고 있다. II장의 표 2.5에서는 한 국가경제계정의 완전계열과 균형항목의 행렬 표시(21행 21열)를 예시하고 있다. 상황에 맞게 8가지 행렬표시의 수치예를 표시하고 있지만, 이것의 수치는 모두 통합경제계정(Table 2. 8)에 기재하고 있는 수치와 대응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개정 SNA에 게재하고 있는 일련의 표에 의거하면서 사회회계행렬의 전개방법과 특징에 관해 고찰하자. 표 9-3은 개정 SNA의 사회회계행렬의 장에 기재한 7가지 행렬 가운데 5가지 행렬의 계정구성을 표시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5가지 행렬은 통합경제계정에 대응하는 형태로 제시하고 있지만, 축적계정을 구성하는 기타 자본변동계정과 스톡계정은 제외하고 있다(기타 자본변동계정과 스톡계정을 고려한 행렬은 개정 SNA에서는 Table 20.7에 나타나고 있다). 5개의 행렬은 Table 20.1을 전개하는 것에 의해 순차, 상세한 행렬을 얻는다. 다음 표 9-4는 개정 SNA의 Table 20.1을 게재한 것이다. 개정 SNA는 이 표를 출발점으로 하여 사회회계행렬의 전개를 진행하지만 이 절은 표 9-4를 기초로 하여 계정의 분할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표 9-5를 도입하였다.

표 9-4는 6행 6열의 사회회계행렬이지만, 재화·서비스의 더미계정과 그 밖의 5가지 균형항목을 가진 활동계정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럼 활동계정의 분할방법부터 설명하자. 표에서 소득의 분배계정과 소득의 사용계정은 소득의 분배·사용계정을 2가지로 나눈 것이다. 생산계정은 산출 3,737에서 중간소비 1,883, 고정자본소모 222를 뺀 것으로 국내순생산 1,632를 얻을 수 있다. 이 산출 3,737은 생산물에 대한 세(-보조금) 133을 포함하고 있다. 소득의 분배계정은 국내순생산 1,632에 해외에서의 피용자 보수, 재산소득, 경상세, 경상이전의 수불(수취 79, 지불 79) 등을 가감하는 것에 의해 순가처분소득 1,632를 구할 수 있다. 소득의 사용계정은 순가처분소득

표 9-3 개정 SNA에 대한 사회회계행렬의 전개

	Table 20.1 (6행6열) 축약SNA행렬의 연결판	Table 20.2 (7행7열) 소계정을포함한 연결SNA행렬	Table20.3 (8행8열) 더미계정을포함 한 연결SNA행렬	Table 20.4 (11행11열) SAM의도식적 제시	Table 20.5 (37행37열) 보다상세한SAM 의 열
1	재화·서비스계정	재화·서비스계정	재화·서비스계정	재화·서비스계정(생산물)	재화·서비스계정(3)
2	생산계정	생산계정	생산계정	생산계정(산업)	생산계정(3)
3	소득의분배계정	소득의제1차분배계정	소득의제1차분배계정	소득의발생계정(부가가치카테고리)	소득의발생계정(7)
4				제1차소득의분배계정(제도부문)	제1차소득의분배계정(4)
5		소득의제2차소득분배	소득의제2차분배계정(잡경상이전을포함)	소득의제2차분배계정(제도부문)	소득의제2차분배계정(4)
6	소득의사용계정	소득의사용계정	소득의사용계정	소득의사용계정(제도부문)	(조정)가처분소득의사용계정(4)
7	자본계정	자본계정	자본계정	자본계정(제도부문)	자본계정(4)
8				총고정자본형성계정(산업)	총고정자본형성계정(3)
9				금융계정(금융자산)	금융계정(3)
10	해외경상·	해외경상·	해외경상·	해외경상계정	해외경상계정
11	자본계정	자본계정	자본계정	해외자본계정	해외자본계정

표 9-4 플로우에 관한 사회회계행렬(I)

		1	2	3	4	5	6
재화·서비스계정	1		1883		1399	414	540
생산계정	2	3737					
소득의분배· 사용계정	소득의분배계정	3	1632	1488			79
	소득의사용계정	4		1632	11		0
자본계정	5		222		233	61	-3
해외계정	6	499		79	0	38	

(자료) Commission of EC, et al [1993], p.462, Table20.1을 근거로 작성

1,632에 근거하여 최종소비지출 1,399, 연금기금에 관한 가계순지분의 변동에 따른 해외에서의 조정(수취 0, 지불 0)에 의해 순저축 233을 유도한다. 자본계정은 총자본형성 414, 해외에 의한 자본이전과 비생산자본의 취득(-처분) -3 등의 거래를 기록하고, 균형항목은 한 국가경제의 순대출/순차입 38이다. 해외계정은 경상계정 및 자본계정의 통합계정이라 할 수 있지만 행은 수입 499, 해외의 피용자보수, 재산소득, 경상세, 경상이전의 지불 79 등을, 열은 수출 540, 해외의 피용자보수, 재산소득, 경상세, 경상이전의 수취 79 등을 기록하였지만 균형항목은 자본계정과 동일하게 한 국가경제의 순대출/순차입 38이다.

#### 나. 소득의 제 1차 분배계정과 제 2차 분배계정의 분할

앞선 표 9-3에서 Table 20.1과 Table 20.2의 차이는 소득의 분배계정이 소득의 제1차 분배계정과 소득의 제2차 분배계정으로 나누어 있다는 것이다. 이 분할 방법을 그림 9-1의 T자형 계정을 이용해 설명하자. 그림에서 소득의 분배계정은 원천측에 생산계정의 균형항목인 국내순생산, 국내 각 부문의 재산소득, 소득, 부 등에 부과하는 경상세와 경상이전, 해외의 피용자보수, 재산소득, 경상세, 경상이전이, 사용측은 국내 각 부문의 재산소득, 소득, 부 등에 부과하는 경상세와 경상이전지불, 해외의 피용자보수, 재산소득, 경상세, 경상이전지불과 균형항목의 순가처분소득을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해 표 9-3에 있는 Table 20.1에서 소득의 분배계정은 소득의 수불에 관해 재산소득과 경상이전의 구별없이 일괄해서 계상하고 있지만, Table 20.2에서는 재산소득과 경상이전을 분리하여 기록하는 것을 시험하고 있다. 소득의 제1차 분배계정에서 원천측은 국내순생산, 재산소득과 해외의 피용자보수의 수취, 사용측은 재산소득과 해외의 피용자소득의 지불과 균형항목의 국민순소득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순소득은 소득의 제2차 분배계정에서 얻은 새로운 집계치 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분배계정은 제1차 분배소득계정에서 얻은 국민순소득을 기초로 하여 경상이전의 수불 조작을 시행하고, 균형항목은 소득의 분배계정과 동일한 순가처분소득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활동계정을 분할하는 것에 의해 사회회계행렬은 보

다 상세한 경제활동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개정 SNA의 말을 빌리면 「1가지 계정에 표시하고 있는 거래의 모든 카테고리를 여러 가지 소계정으로 분배하는 것에 의해」 계정의 분할을 실행한다 (「1993SNA(UN)」, p. 465, par. 20. 14.). 다시 말해, 거래의 모든 카테고리는 경상이전, 재산소득 등을 의미하지만 이것의 거래항목이 분배계정에서 동일계정으로 분배할 수 있고, 이것을 별개의 소계정으로 할당하는 것에 의해 새로운 2가지 계정이 생겨난다. 여기에서, 경상이전과 재산소득을 분할하는 것으로 2가지 계정을 유도한 결과, 국민순소득과 순가처분소득이 되는 균형항목을 얻을 수 있다. 여러 가지 거래항목에 주목함으로써 계정의 분할이 가능하지만, 의미 있는 균형항목을 도출할 수 있는지가 계정분할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 다. 잡(雜)경상이전 계정의 도입

표 9-3에서 Table 20.2 와 Table 20.3의 다른 점은 소득의 제2차 분배계정에 있어 잡경상이전의 더미계정을 삽입하고 있는 것이다. 표 9-5의 소득의 제2차 분배계정에서는 이미 잡경상이전의 더미계정을 삽입한 형식을 소개하고 있다. 소득의 제2차 분배계정에 기재한 거래항목은 그림 9-1에 나타난 것처럼 주로 경상이전의 수불로 구성되어 있지만 잡경상이전 계정이 설정되기 전에 국내의 경상이전 항목은 모두 표 9-5의 (6, 6)성분에 기록되었다. 예를 들어 제2차 분배계정에 의해 4가지 제도부문 분할을 실행하면, 표의 (6, 6)은 4행 4열의 소행렬로 되고 경상이전에 관해서 누구에서 누구에게 라는 거래에 관한 기록이 실행된다. 이 부문분할을 실행한 계정에 의해, 각 경상이전의 누구에서 누구에게 라는 정보가 입수 가능하면 문제없지만 잡경상이전에 관해 상기의 정보가 입수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경우 「누구에서 누구에게」가 아닌 표 9-5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누가, 무엇을」을 기록하는 더미계정(이런 경우 잡경상이전계정)을 도입한다.

잡경상이전 이외의 경상이전에 관해서는 각 제도부문에서 수불을 명시하고 있지만, 잡경상이전에 관해서는 제도부문별 수불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잡경상이전 계정에서 행은 각 제도부문별 잡경



### 도 9-1 소득의 분배계정의 분할

소득의 분배계정

소득의제1차 분배계정

재산소득, 경상이전지불 해외의 피용자보수, 재산소득, 경상이전 지불 순가처분소득	국내순생산 재산소득, 경상이전수취 해외에 피용자보수 재산소득, 경상이전 수취	재산소득지불 해외의 피용자보수 재산소득지불 국민순소득	국내순생산 재산소득수취 해외의 피용자보수 재산소득수취
--	--	--	--

소득의제2차분배계정

경상이전지불 해외의 경상이전 지불 순가처분소득	국민순소득 경상이전수취 해외의 경상이전 수취
------------------------------------	-----------------------------------

**표 9-5 플로에 관한 사회회계행렬 (II)**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재화·서비스계정		1	1883						376	38	540		
생 산 계 정		2	3604										
소득 의 분배 · 사용 계정	소득의발생계정	3	1499	760								6	
	제1차소득의분배계정	4	133	1503	353							63	
	소득의제2차분배계정	5					54					2	
	잡경상이전 제도부문	6				1661	55	1042				8	
소득의사용계정	7						1632	11			0		
자 본 계 정	총고정자본형 성	8									376		
	금융자산	9									641	50	
	제도부문	10	222					233		603	61	1	
해 외 경 상 계 정		11	499		2	38	1	38	0				
해 외 자 본 계 정		12								88		-41	

(자료) Commission of EC, et al [1993], p470, Table 20.4을 근거로 작성

상이전의 지불을, 열은 수취를 기록한다. 이 계정에서 각 제도부문의 잡경상이전의 수취와 지불의 합계는 정의상 같기 때문에 계정은 균형적이라 할 수 있다. 표 9-5의 소득의 제2차 분배계정의 형식에서 잡경상이전만이 특정한 형태를 갖고 그 외의 이전을 분류하지 않고 표시하고 있지만, 이것의 이전에 관해서 잡경상이전과 같을 수 있도록 거래항목별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 (6, 6)은 0으로 나타나고 잡경상이전과 병행해서 예를 들면, 경상세, 사회급부 등의 거래항목계정이 늘어설 수 있다. (표 9-5 제 2차 분배계정에서 4개의 부문분할을 예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6, 6)에는 4부문간 거래의 합계 1,942를 기재하고 있다).

#### 라. 소득의 발생계정과 제1차 소득의 분배계정의 분할

다시 한번 표 9-3을 참조해 보자. Table 20.3과 Table 20.4의 차이는 소득의 제1차 분배계정이 소득의 발생계정과 제1차 소득의 분배계정으로 분할하고 있는 점과 고정자본 형성계정과 금융계정을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의 발생 계정에서는 원천측에 국내순생산 1,499, 해외의 피용자 보수 수취 6을, 사용측에 해외의 피용자 보수 지불 2와 균형항목의 순발생소득 1,503을 기록하고 있다. 부가가치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의 발생계정은 생산소득별인 산업별 분류에서 제도부문별 분류로 변환을 표시하고 있다. 표 9-5, 제 1차 소득의 분배계정은 원천측에 생산물에 대한 세(-보조금) 133, 기초가격 표시의 순발생소득 1,503, 재산소득의 수취 353, 해외의 재산소득 수취 63이, 사용측에 재산소득의 지불 353, 해외의 재산소득지불 38, 균형항목인 순국민소득 1,661을 기재하고 있다. 이 계정은 발생소득의 제도부문별 분류를 수취소득의 제도부문별 분류로 변환하는 계정이라 할 수 있다. 분배계정은 제도부문별로 분류한 발생소득이 그 귀속부문에 어떻게 분배하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두번째 차이점은 고정자본형성 계정과 금융계정의 도입이다. 표 9-4, 5행 5열에 자본계정을 표시하고 있고, (1, 5)에 총자본형성 414를 기재하고 있다. 이 성분은 재화·서비스계정, 자본계정이 각각 생산물, 제도부문으로 분류된다고 하면 「생산물×제도부문」의 소행렬을 표시한다. 표 9-5에서

총고정자본형성 계정을, 8행 8열로 도입하는 것에 의해 (1, 10)에 기록하였던 총고정자본형성 376이 (1, 8)과, (8, 10)에 기재하고 (1, 10)에는 재고와 귀중품의 순증(純增)만이 남는다. 이 두 가지 성분 (1, 8), (8, 10)은 벡터 표시된다 : (1, 8) : 「생산물×총고정자본형성」 벡터 ; (8, 10) : 「총고정자본형성×제도부문」 벡터. 즉, 총고정자본형성 계정을 설정하는 것으로, 표 9-4에 표시한 총자본형성에 관한 「생산물×제도부문」의 소행렬은 「생산물×총고정자본형성」과 「순고정자본형성×제도부문」의 2가지 벡터로 분해된다. 여기서, 총고정자본형성에 관해 산업별로 분류하면 총고정자본형성에 관한 「생산물×산업」과 「산업×제도부문」의 소행렬을 얻을 수 있다. 금융자산 계정도 총고정자본형성 계정과 같은 더미계정이고 이 계정의 삽입에 의해 제도부문별 금융자산 및 부채의 증감이 명확해진다.

잠경상이전계정과 총고정자본형성 계정은 쌍방 모두 더미계정이지만, 그 차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자. 예를 들어, 잠경상이전에서 「부문×부문」의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그림 9-2와 같이 잠경상이전 계정을 설정해서 「잠경상이전×부문」과 「부문×잠경상이전」의 2개의 벡터를 작성하여 「누가, 누구와」를 「누가, 무엇을」로 정보의 변환이 가능하다. 이 더미계정은 「누가, 누구와」의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로 대체한 스크린계정이라 할 수 있다. 총고정자본형성계정의 경우 그 삽입으로 생기는 자본형성에 관한 「생산물×제도부문」의 소행렬이 「생산물×총고정자본형성」과 「총고정자본형성×제도부문」의 2가지 벡터로 분해되지만, 반드시 자본형성에 관한 「생산물×제도부문」의 소행렬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우회로로서 2가지 벡터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도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총자본형성을 총고정자본형성과 그것 이외의 총자본형성, 즉 재고순증·귀중품의 취득으로 분류하려는 목적이 있다. 총고정자본형성에 산업별 분류를 도입하는 것으로, 상기 총고정자본형성의 2벡터는 「생산물×산업」과 「산업×제도부문」의 2가지 소행렬로 전환된다. 전자의 소행렬에서 총고정자본형성에 관한 산업별 배치가 명확해지고, 후자는 총고정자본형성의 산업별 배치로부터 제도부문별 배치로 전환한다.

표 9-3에서 Table 20.5는 Table 20.4계정의 분류를 실시해서 얻은 사회

회계행렬이다. 재화·서비스 계정은 복수의 생산물로 분류한다. 생산물의 분류기준으로써 주요생산물 분류(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를 채용하고 있다. 생산계정, 고정자본형성계정은 산업별로 분류한다.

### 그림 9-2 총 고정 자본형성과 잠경상 이전의 더미계정

총 자본형성에 관한 [생산물×제도부문] 소행렬⇒

[생산물×총고정자본형성] : [생산물×산업]

[총고정자본형성×제도부문] : [산업×제도부문]

잠경상이전에 관한 [제도부문×제도부문] 소행렬……잠경상이전

[제도부문×제도부문]⇒ [잠경상이전×제도부문]

[제도부문×잠경상이전]

개정SNA는 산업의 분류기준으로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를 제시한다. 소득의 발생계정은 부가가치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고있다. 제1차 소득분배계정, 소득의 제2차 분배계정, 소득의 사용계정, 자본계정은 제도부문별 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해외계정은 제도부문별 분류의 한 부분인 해외부문을 빼내어 별개로 표시한 것이다. 금융계정은 금융자산의 종류별 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Table 20.5에서 도입한 분류기준인 생산물, 산업, 부가가치 카테고리, 제도부문, 금융자산을 단위(actor)로 한다.

#### 마. 전개한 사회회계행렬

표 9-5는 지금까지 서술해 온 Table 20.1에서 Table 20.5까지의 수행을 기초로 표 9-4를 전개하여 작성한 12행 12열의 사회회계행렬이고, 기본적으로 Table 20. 4. 에 대응하는 행렬이라 할 수 있다<sup>3)</sup>. 2~10행, 열은 국내

3) 표 9-5에서는 개정 SNA의 용어를 사용한 자본계정을 이용했지만, 표에서는 자본계정 중에 더미계정으로서의 금융자산계정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축적계정 또

표 9-6 통합경제계정

사 용 (자산의변동)				원 천 (부채·순자산의변동)					
계정	재화·서비스	해외	국민경제	거래항목 및 균형항목	국민경제	해외	재화·서비스	계정	
생산계정	3604	540	1883	산 출	3604	499	1883	생산계정	
	499		222	중간소비 고정자본 재화·서비스의수입 재화·서비스의수출					540
소득의 발생계정	133	6	762	순부가가치 비용자보수	1449	2		소득의 발생계정	
			1503	순발생소득	766				
제1차 소득의 분배계정		63	391	재산소득 생산물세	1503		38		제1차 소득의 분배계정
			1661	순국민소득	416				
소득의 제2차 분배계정		10	1145	경상이전	133				소득의 제2차 분배계정
			1632	순가처분소득	1661		39		
소득의 사용계정		0	1399	최종소비지출 연금기금	1106			1399	소득의 사용계정
	-41	11	순저축/경상대외수지	1632					
축적계정			376	총고정자본형성	233	-41	376	축적계정	
			38	재고순증 고정자본소모	222		38		
	1	65	자본이전	62	4				
	50	641	금융자산	603	88				

(자료) Commission of EC, et al [1993], p470, Table 20.4을 근거로 작성

부문의 계정을, 11, 12행, 열은 해외부문의 계정을 표시하고 있다. 국내부문의 계정은 생산, 소득의 분배·사용, 자본의 3계정으로, 해외부문은 경상, 자본의 계정으로 각각 분할하고 있다. 소득의 분배·사용계정은 다시 소득의 발생, 제1차 소득의 분배, 소득의 제2차 분배, 소득의 사용의 4가지 계정으로 분류한다. 소득의 제2차 분배계정에는 잠경상이전계정을 설정하고 있다. 자본계정은 총 고정자본 형성과 금융자산의 더미계정을 포함하고 있다. 재화·서비스 계정을 제외한 그 밖의 계정은 균형 항목을 가진 계정이라 할 수 있다.

생산계정에서 산출은 생산물에 대한 세(-보조금)을 뺀 기초가격 표시의 산출 3,604로 기재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간소비 1,883, 고정자본소모 222를 제하면 기초가격 표시의 순부가가치 1,449를 얻을 수 있다. 부가가치 카테고리 특히, 산업별 분류에서의 소득의 발생계정은 제도 부문별 분류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제1차 소득의 분배계정은 재산소득을 포함하고 제도부문별 발생 소득을 제도부문별 수취·소득으로 변환하는 계정이다.<sup>4)</sup> 소득의 제2차 분배계정은 소득, 부 등에 부과하는 경상세, 경상이전수불의 조작을 실행하여 순 가처분소득 1,632를 도출한다. 이 계정은 잠경상이전의 더미계정을 포함하고 있다. 소득의 사용계정은 최종소비 1,399등의 처리에의해 233의 저축을 얻을 수 있다. 자본계정의 행은 저축 233, 부채의 순증 603, 해외의 자본이전수취 1이, 열은 재고증감 38, 총 고정자본 형성 376, 대출 641, 해외의 자본이전지불 4를 기록하였다. 해외 경상계정의 행은 수입 499 등의 거래를, 열은 수출 540등의 거래를 기록하고 균형 항목은 경상 대외수지 -41이다. 해외 자본계정의 행은 해외의 부채 순증 88, 자본이전수취 4를, 열은 해외의 금융자산의 순증 50, 자본이전 지불 1을 기록하였다. 또 표 9-6은 표 9-5에 대응하는 형태로 작성한 통합경제계정으로 표시한다. 표에서 제도부문은 국내부문과 해외부문의 2부문으로 구성되어있다.

는 자본·금융계정이라는 명칭이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4) 개정 SNA Table 20.5의 소득의 발생 계정의 기능은 발생 부가가치 카테고리의 산업별 분류에서 제도부문별 분류를 표시한 것이지만 반드시 그와 같은 형식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 제도부문 분류로 되어 있고 제도 부문별 소득 발생의 표시는 생략되어 있다. 「1993SNA(UN)」, pp. 472-473, Table 20.5 참조.

## 바. 사회회계 행렬의 특성

사회회계 행렬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개정 SNA의 중심체계(Central framework)는 현행 SNA가 T자형 계정과 계정행렬에 의해 표시된 것과 달리, 거의 통합경제계정과 T자형 계정으로 표시되고 있다<sup>5)</sup>. 개정 SNA에서 전체계의 행렬 표시는 II장 Table 2.5에서 21행 21열로 한 국가경제의 계정과 균형항목을 완전계열의 행렬표시(축약형식)로 부여하고, 또 상술한 것과 같이 XX장에 사회회계행렬의 예를 작성하였다. 사회회계 행렬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경합적 표시형태인 통합경제계정, T자형 계정과 대비하면서 고찰하자.

행렬표시의 최대 특징은 표시형식의 유연성에 있다. 바꾸어 말해 행렬에 의해서 다중 단위의 사용과 다 부문 분할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중단위의 사용은 각 계정에 따른 생산물, 제도부문, 산업, 본원적 투입요소, 금융적 청구권 등의 여러 종류의 단위 사용을 의미한다. 이 단위 이외에 여러가지 단위를 설정에 도입할 수 있다. 부가가치에 관해서는 지역, 남·여, 연령 등 각각의 사회적 요소를 단위로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생산물에 관해서는 현행 SNA의 Table 2.1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목적별 분류의 더미계정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에서 설명한 행렬표시의 유연성의 결과로 행렬은 「누가, 누구와,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등 여러 표시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에 비해 통합경제계정은 기본적으로 「누가, 무엇을」의 표시를 변화시킨 방식이다. 이 유연성을 이용하여 사회회계행렬은 중심체계의 표시뿐만 아니라 위성 계정과 나열된 주변부분의 표시 방법으로도 이용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회계행렬은 원칙적으로 행과 열의 수가 같은 정방행렬로 표시되기 때문에 선형대수를 응용한 모델분석에 용이하다. 이 성질을 이용한 산업연관모델을 지금까지 개발하여 왔지만, 최근 사회회계행렬을 기초로 한 세율의 변경, 환율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응용일반균형모델(computable applied general equilibrium model, 통상 CGE 모델이라 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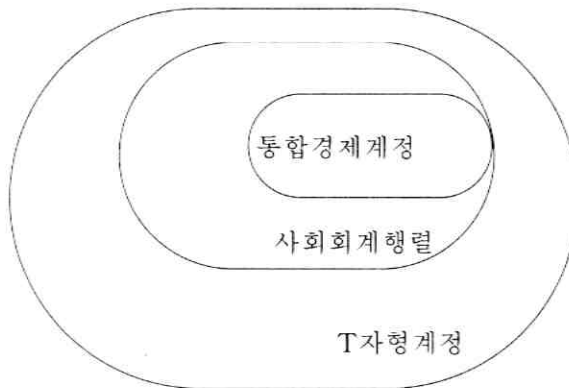
5) 개정 SNA의 중추체계는 통합경제계정, 공급 사용표, 금융거래·스톡의 3차원 분석, 기능분석, 인구 및 고용표로 구성된다. 「1993SNA(UN)」, pp.26-27참조.

함)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다.

T자형 계정이 행렬로 표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완전접합체계를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T자형 계정을 이용해서 표시하는 경우에는 계정의 우측과 좌측에 전부 2회 기록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행렬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1회의 기록으로 간결하게 할 수 있다. 행렬표시는 각 장부에 기록한 숫자로 거래 항목의 내용을 명확히 한다는 이점이 있다. 또 행렬표시는 행과 열을 분할하고 삽입하는 것에 의해 대량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고, 다수의 행과 열을 가진 행렬은 비교적 작은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같은 양의 정보를 T자형 계정에서 표시하려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번잡한 일이 된다.

그러나 행렬표시가 반드시 장점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 통합경제계정은 거래자 계정으로 제도부문을 설정하고 「누가, 무엇을」의 관계를 기록하는 전용의 체계라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 무엇을」만을 기록하는 체계로서는 확실히 통합경제계정이 행렬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개정 SNA에서 표시하고 있는 통합경제계정 Table 2.8과 동일 정보를 제공하는 행렬표시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상당히 큰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행렬은 주대각선의 인근에 수치를 집중시키고 있고, 그곳 이외의 곳은 제로(0)이다. 따라서 중심체계를 행렬로 표시 할 경우, 일정부분의 집계화(agggregation)가 필요하다.

그림 9-3 표시형식의 관계





마지막으로 T자형계정, 통합경제계정, 사회회계행렬의 3가지 관계에 관해 정리한 것이 그림 9-3이다. 그림은 3가지 표시형식의 포괄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통합경제계정에서 표시 가능하다면 사회회계행렬에서 표시가 가능하고 사회회계행렬에서 표시가 가능하다면 T자형 계정에서 표시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 3. 스톡과 플로의 통합행렬

#### 가. 여러 가지 스톡과 플로의 통합행렬

이 절에서는 스톡과 플로의 통합행렬에 대해 알아보자. 이미 제2장에서 스톡과 플로의 통합행렬은 제시된 바 있으나, 통합행렬의 형식은 여러가지 형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현행 SNA, 개정 SNA 중에서 예시하고 있는 예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자. 일련의 표 9-7~ 표 9-10은 대차대조표간의 변동계정(또는 축적계정)과 스톡의 통합행렬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또, 표 9-7 ~ 표9-12의 기호는 다음과 같다.

기호표

- $\Delta F$  : 금융자산의 순증,
- $\Delta L$  : 부채의 순증,
- $F_0$  : 기초 금융자산 스톡,
- $F_1$  : 기말 금융자산 스톡,
- $L_0$  : 기초 부채 스톡,
- $L_1$  : 기말 부채 스톡,
- $R_0$  : 기초 비 금융자산 스톡,
- $R_1$  : 기말 비 금융자산 스톡,
- $\Delta R$  : 비 금융자산의 순증,
- $N_0$  : 기초 순자산,
- $N_1$  : 기말 순자산,

표 9-7 스투과 플로의 통합행렬(I)

		1	2	3	4
금융자산·	1				$F_1 - L_1$
부채비금융자산	2				$R_1$
변동계정	3	$\Delta F - \Delta L$	$\Delta R$		
대차대조표	4	$F_0 - L_0$	$R_0$	$\Delta N$	

표 9-8 스투과 플로의 통합행렬(II)

		1	2	3	4
축적계정	1			$\Delta R + \Delta F$	
기초대차대조표	2			$R_0 + F_0$	
기말대차대조표	3	$\Delta L$	$L_0$		$N_1$
순자산	4	$\Delta L$	$N_0$		

표 9-9 스투과 플로의 통합행렬(III)

		1	2	3	4	5	6	7
금융자산·부채	1							$F_0$
비금융자산	2							$R_0$
금융자산·부채	3							$\Delta F$
비금융자산	4							$\Delta R$
금융자산·부채	5							$F_1$
비금융자산	6							$R_1$
제도부문	7	$L_0$	$N_0$	$\Delta L$	$\Delta N$	$L_1$	$N_1$	

$\Delta N$  : 순자산의 순증,

P : 중간소비,

C : 최종소비,

I : 총자본 형성,

O : 산출,

Y : 부가가치,

S : 저축,

$\Delta K$  : 자본이전 순수취

표 9-7은 개정 SNA Table 20.7(21행×21열)의 스톡과 플로우에 관한 통합 부문을 요약해서 쓴 것이다<sup>6)</sup>. 표의 1,2행, 열은 금융자산, 비금융자산을 표시하고 있다. 3행, 열은 대차대조표간의 변동계정을, 4행, 열은 대차대조표를 표시한 것이다. 각 계정을 풀이해서 써 보면, 다음과 같다.

$$\text{금융자산·부채계정} : (\Delta F - \Delta L) + (F_0 - L_0) = F_1 - L_1$$

$$\text{비금융 자산계정} : \Delta R + R_0 = R_1$$

$$\text{변동계정} : \Delta N = (\Delta F - \Delta L) + \Delta R$$

$$\text{대차대조표} : (F_1 - L_1) + R_1 = (F_0 - L_0) + R_0 + \Delta N.$$

금융자산·부채계정의 기말 금융자산과 부채 차액의 잔고는 기초의 그것에 기중의 금융자산증분과 부채증분의 차액을 가산한 것과 같고, 또 비금융자산계정의 기말 비금융자산잔고는 기초의 비금융자산잔고에, 기중의 비금융자산증분을 가산하여 얻은 것임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즉, 이 두 계정의 기말자산은, 기초의 자산과 기중의 자산증분의 합에서 생기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통상의 더미계정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변동계정은 기간중의 금융자산순증과 부채순액의 차액과 비 금융자산의 순증의 합계는 순자산의 순증으로 나타내고 있다. 4번째 계정은 대차대조표계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기말의 순자산은 기초순자산과 기중의 순자산의 합계로 나타난 것을 표시하기 때문에 순자산계정이 어울릴지도 모른다<sup>7)</sup> Table 20.7은, 표 9-7에 대해서 스톡과 플로우의 통합행렬을

6) 「1993SNA(UN)」, pp. 484-485, Table 20.5. 참조

표 9-10 스투크와 플로의 통합행렬(IV)

		1	2	3	4	5
금융자산·부채	1			$F_0$	$\Delta F$	$F_1$
비금융자산	2			$R_0$	$\Delta R$	$R_1$
기초대차대조표	3	$L_0$	$N_0$			
축적계정	4	$\Delta L$	$\Delta N$			
기말대차대조표	5	$L_1$	$N_1$			

표 9-11 스투크·플로 행렬 일람

		표 9-7	표 9-8	표 9-9	표 9-10
금융자산·부채계정	$L = F$			○	○
비금융자산, 순자산계정	$N = R$			○	○
금융자산·부채계정	$F_1 - L_1 = (F_0 - L_0) + (\Delta F - \Delta L)$	○			
비금융자산계정	$R_1 = R_0 + \Delta R$	○			
순자산계정	$N_1 = N_0 + \Delta N$	○	○		
기초대차대조표	$R_0 + F_0 = L_0 + N_0$		○	(○)	○
축적계정	$\Delta R + \Delta F = \Delta L + \Delta N$	○	○	(○)	○
기말대차대조표	$R_1 + F_1 = L_1 + N_1$		○	(○)	○

표 9-12 스투크와 플로의 통합계정행렬

		1	2	3	4	5	6	7	8	9
재화·서비스계정	1		P	C				I		
생산계정	2	O								
소득의분배·사용계정	3		Y							
자본이전	4									
비금융자산·순자산	5								$R_0$	$R_1$
금융자산·부채	6							$\Delta F$	$F_0$	$F_1$
축적계정	7			S	$\Delta K$		$\Delta L$			
기초대차대조표	8					$N_0$	$L_0$			
기말대차대조표	9					$N_1$	$L_1$			

전개하고 있다.

표 9-8은 개정 SNA, Table 2.5(21행×21열)의 스톡과 플로에 관한 통합 부분을 요약해서 쓴 것이다<sup>8)</sup>. 표에서는, 1행, 열은 축적계정을, 2, 3행, 열은 기초와 기말의 대차대조표를 각각 표시하고 있다. 4행, 열은 순자산을 기록해야 한다. 각 계정을 쓰면,

$$\text{축적계정} \quad : \quad \Delta L + \Delta N = \Delta R + \Delta F$$

$$\text{기초대차대조표} \quad : \quad L_0 + N_0 = R_0 + F_0$$

$$\text{기말대차대조표} \quad : \quad (\Delta R + \Delta F) + (R_0 + F_0) = \Delta L + L_0 + N_1$$

$$\text{순자산} \quad : \quad N_1 = \Delta N + N_0$$

3번째의 식은,  $(F_0 + \Delta F) + (R_0 + \Delta R) = (L_0 + \Delta L) + N_1$  으로 바꿀 수 있으며 기말대차대조표를 표시한다.

표 9-9는 현행 SNA의 스톡과 플로의 통합행렬을 저축계정과 스톡에 관해 간략하게 표시한 것이다. 1·2, 3·4, 5·6 행, 열은 기초자산을 각각 표시한 것이다. 7행, 열은 제도부문을 표시했지만, 이것은 기초대차대조표·저축계정·기말대차대조표의 3가지 계정을 합하여 표시한 계정이다. 제도부문은 국민경제와 해외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각 제도부문의 비금융자산의 합계가 순자산이 된다. 그 외에 일련의 표에 둔 대차대조표와 저축계정도 같은 제도부문이다. 이 제도부문계정을 나타내면,

$$(F_0 + R_0) + (\Delta F + \Delta R) + (F_1 + R_1) = (L_0 + N_0) + (\Delta L + \Delta N) + (L_1 + N_1)$$

이 식의 등호는 성립하지만 식 자체는 그다지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표 9-10은 표 9-9의 변형 판이다. 1, 2행, 열에 금융자산·부채, 비금융자산이 각각 표시되어 있다. 표 9-9에서 기초·기말대차대조표, 축적계정의 거래항목은 금융·비금융자산과 공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관해서 표시하고 있다. 기초, 기말대차대조표는 3, 5행, 열에, 저축계정은 4행, 열에 표시했다. 표 9-9에서 기초대차대조표, 저축계정, 기말대차대조표를 일괄해

7) 관계식으로는 이 4개의 형식 외에, 기말대차대조표  $(F_1 - L_1) + R_1 = N_1$ , 기초 대차대조표  $(F_1 - L_1) + R_1 = N_1$ 가 생각되어 질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상기 4식에 근거한 스톡·플로 행렬이 작성된다.

8) 「1993SNA(UN)」, 권말, Table 2.5. 참조

서 표시하고 있지만 표 9-10은 3개의 계정이 별개로 배치되어 있다. 각 행, 열을 쓰면,

$$\text{금융자산·부채계정} : L_0 + \Delta L + L_1 = F_0 + \Delta F + F_1$$

$$\text{비금융자산계정} : N_0 + \Delta N + N_1 = R_0 + \Delta R + R_1$$

$$\text{기초대차대조표} : F_0 + R_0 = L_0 + N_0$$

$$\text{축적계정} : \Delta F + \Delta R = \Delta L + \Delta N$$

$$\text{기말대차대조표} : F_1 + R_1 = L_1 + N_1$$

기초대차대조표, 축적계정, 기말대차대조표 각 계정의 균형 항목은  $N_0$ ,  $\Delta N$ ,  $N_1$  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것의 균형항목은 플로계정으로 표시되어졌던 것과 같이, 다음의 계정을 대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4가지 표시형식을 정리해서 표시한 것이 표 9-11이다. 표 9-7·표 9-8과 표 9-9·표 9-10의 기초, 기말대차대조표, 저축계정은 공통이지만, 금융자산·부채계정 등의 다른 형식으로 하고 있다. 전자가 기초와 기말의 각 자산의 관계를 표시하고 있는 것에 반해, 후자는 각 자산의 더미계정의 형식을 채용하였다.

#### 나. 소득·플로통합행렬

표 9-7~표 9-10까지 도합 4종류의 소득과 플로를 통합한 사회회계행렬을 소개했지만, 표 9-10을 근거로 사회회계행렬을 구성한 것이 표 9-12이다. 표 9-12는 생산계정, 소득의 분배·사용계정, 축적계정의 3가지 활동계정과 기초, 기말의 대차대조표를 갖는 사회회계행렬이다. 재화·서비스계정을 빼면 축적계정에 자본이전, 비금융자산·순자산, 금융자산·부채의 3가지 거래계정을 설정하였다. 비금융자산·순자산, 금융자산·부채는 축적계정, 기초, 기말대차대조표의 3가지 계정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래항목이다. 저축계정은 행에 S,  $\Delta K$ ,  $\Delta L$  을, 열에 I,  $\Delta F$  을 각각 기록한다. 이 경우 S, I는 비금융자산·순자산계정에 기록되지 않고, 그대로 축적계정에 기록된다. 그 결과, 비금융자산·순자산계정에서 S와 I는 기

장되지 않는다. 스톡과 플로의 결합부분의 5~9번째의 각 계정을 쓰면,

$$\text{비금융자산계정} : N_0 + N_1 = R_0 + R_1$$

$$\text{금융자산계정} : \Delta L + L_0 + L_1 = \Delta F + F_0 + F_1$$

$$\text{축적계정} : I + \Delta F = S + \Delta K + \Delta L$$

$$\text{기초대차대조표} : R_0 + F_0 = N_0 + L_0$$

$$\text{기말대차대조표} : R_1 + F_1 = N_1 + L_1$$

## 제 10 장 위성 계정

현행 SNA(1968년 SNA)와 개정 SNA(1993년 SNA)의 중심 체계는 플로계정으로서의 국민소득계정과 스톡계정으로서의 국민대차대조표를 형성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SNA의 Table 2.1과 개정 SNA의 Table 2.8에 나타나 있는 체계가 바로 그 것이다. 이 체계와 정합적으로 형성한 투입산출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도 중심체계에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완전 접합적인 체계에서 경제주체(경제 단위)는 하나의 명칭으로 하나의 부문에 속한다. 또한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명칭 밖에 가질 수 없다. 이것이 경제주체(부문)의 상호관계와 거래기입치의 상호관계의 정합성(무모순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특정분야의 활동만을 들어 전체상을 명확히 하려 할 때에는 방해가 될 수 있다. 즉 경제의 거래 가운데에는 2 가지 이상의 성격을 가진 것이 있으며, 그것을 실행하는 주체가 2 가지 이상의 부문에 걸쳐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특정분야를 들어 관련하는 활동의 전모를 명확히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중심체계의 상이한 부문에서 경제 단위를 유출하고 중심체계에서 전혀 다른 명칭이 붙은 거래를 모아 집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s)이다. 위성 계정의 의미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하나의 국민경제 계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제 1 절에서 우선 그 절차를 정식화하려고 한다. 그 후에 위성 계정에 관해 설명하자.

### 1. 국민경제계산시스템의 구축과정

국민경제계산의 목적은 경제단위(경제주체)가 경제사회의 일정한 공간적 영역에 있어서 일정 기간 내에 다른 단위를 상대로 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활동 가운데, 대가를 필요로 하는 것, 대가는 지불하지 않지만 대가를 귀속시킬 수 있는 것, 대가를 요하지 않는 일방적인 인수로서 가격과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을 관측하고 가격을 측정, 집계, 표시하는 동시에 그것의 활동 원천 내지 결과인 자산·부채라는 축적량도 합해서 해당경제사회의 양상을 밝히는 것이다. 전자의 활동을 나타내는 수치는 플로(량)이고, 후자의 축적량을 나타내는 수치를 스톡(량)이라 한다.

국민경제계산이 취급하는 상기의 활동을 경제활동이라 한다. 이것을 국민경제계산에서 거래라고 하는데, 거래가 그 이외의 일반적 활동과 다른 점은 가치와 가격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활동(거래)을 수행함에 따라 관련된 경제단위의 자산구성(채권·채무구조)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국민경제계산은 전체적인 경제활동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를 거래(플로)와 자산(스톡)으로 표시하는 방식의 체계이다. 경제단위인 개별 기업에 있어서는 회계적 방법(부기)이 있어 계정에 매일 매일의 활동성과를 기입하는데 국민경제계산은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당사자의 모든 활동을 동시에 표시한다. 그 방식의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a) 기술(記述)대상으로 할 경제단위(경제주체)를 규정, 선출, 분류하고 부문을 편성한다. <경제단위 또는 경제주체의 정의와 분류(동질적 생산단위, 사업처, 제도단위). 부문의 정의와 편성(산업, 제도부문).>

b) a)에서 선출한 경제단위가 행하는 행위 또는 활동 중, 기술대상으로 할 것을 규정, 분류한다. <거래(생산, 소비, 이전, 자본형성, 중간소비, 최종소비 등)의 정의. 생산경계의 결정. 거래 이외의 활동 배제>

c) 행위, 활동의 대상물을 규정, 분류한다. <재화·서비스의 정의와 분류(상품분류, 중간생산물·최종생산물, 등). 자산의 분류>

d) 경제단위, 거래, 거래 대상을 인식하는 공간적·시간적 범위를 결정한다. <공간적 범위(경제영역 「국내 영역」, 지역, 현, 시, 등). 시간적 범위(단위기간 「년, 분기」, 스톡의 기록에 있어서 기초·기말·기중, 등).>

e) 경제단위, 부문, 거래(활동), 스톡(자산·부채)의 인식규칙과 표시형식을 결정한다. <거주자의 정의(1년 규칙). 발생주의·실현주의. 거래 금액의 평가법(기초가격 평가, 생산자가격 평가, 구입자가격 평가). 명목·실질, T계정형식·행렬형식·플로도·방정식.>

이러한 절차는 반드시 순서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연관해서 동시적

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반대 순서로 진행되는 것도 있다. 절차 가운데 무엇 하나라도 다르다면 엄밀히 말해 서로 다른 국민경제계산 시스템이 생긴다. 위성계정의 경우는 절차 d)는 중심체계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절차 즉 a) (경제단위의 선정과 분류), b) (활동의 규정과 분류), c) (대상물의 규정, 명명, 분류), e) (완전 접합적이라고 할 수 없는 표시형식)은 중심체계와 다른 것이 된다.

## 2. 위성계정의 의미

현행 SNA의 Table 2.1과 개정 SNA의 Table 2.8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전통적 국민경제계산의 체계는 국민경제 활동의 전체를 정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계정 기입치가 계정내 및 계정 상호간에 모순 없이 관련되어 있고, 복식원리에 따른 완전 접합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경제 전체를 하나로 끌어내 경제순환에 의한 경제 각 부문의 연결을 일목요연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특정분야를 들어 그것에 관련되는 활동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상세히 파악하려고 할 경우에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실의 경제활동에서 하나의 주체가 복수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하나의 활동이 이중 삼중의 성격과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활동은 교육활동과 의료활동의 두 가지 측면을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의 편집과 출판은 교육과 관련된 활동이지만 정보·문화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소득 계정과 산업연관표와 같은 국민경제계산의 중심체계에서는 의과대학의 활동은 정부서비스 생산자(일반정부)와 비영리 서비스 생산자(비영리 단체)의 활동에 포함되고, 의료활동으로는 표시되지 않는다.

또 기업 내부활동 중에서 그 기업의 본래 활동의 일부가 되어 활동 금액이 내부 비용화 된 것과, 기업 내에서 생산하지만 자가 소비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비용으로 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다. 전자의 예로 기업 내에서 실행하는 폐기물·배출물 처리, 폐수·폐가스의 정화, 설비의 보수작업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 기업내 교육, 기업 자체의 비용으로 행하는 정

보수집·시장조사, 자사용 소프트웨어(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기업내의 연구개발, 기업내 운송, 자가발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활동중 하나를 들어, 경제에 관한 생산과 이용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상세히 나타내려 한다면, 국민경제 계산의 중심체계의 모든 계정표시 형식에서 불완전하다. 그 활동이 전혀 다른 명칭의 활동에 들어 있든지, 복수의 부문 활동으로 나누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인 분야에 관해, 중심체계에서 표시하고 있지 않고, 불완전하게 표시한 자료, 또는 다른 명목으로 표시하고 있는 자료를 표시하고, 수월하게 이용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 위성계정이다. 계정의 대상 분야로 의료·보건, 교육, 환경, 연구개발, 운송 등이 있다. 이 분야에 관해 위성계정은 생산, 비용, 자금의 공급(조달), 수익자에 관한 정보를 일정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 3. 프랑스형 위성계정

위성계정은 본래 프랑스에서 고안된 것으로, 1970년대부터 여러가지 형태의 위성계정의 추계가 행해져 왔다.

위성계정의 데이터에는 금액자료와 비금액(물량)자료가 있다. 이 데이터들을 근거로 위성계정은 다음과 같은 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한다.

- 1) 해당분야 활동의 주체, 즉 생산자는 누구인가? 생산비는 어느 정도인가?
- 2) 생산비를 조달하는 자금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 3) 활동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편익의 향수자(수익자)는 누구인가?

위성계정은 대상으로 하는 분야의 활동과 생산물의 거래량(생산량)과, 활동과 생산물에 의한 불가결의 재화·서비스 양을 포함한다. 전자는 대표적인 활동, 후자는 관련재·서비스라 한다. 교육위성 계정에서 살펴보면 학교에서의 교육서비스 제공과 학교의 건설 등 교육분야의 자본축적이 대표적인 활동이고, 교과서·실험기재와 스쿨버스의 서비스가 관련재·서비스라 할 수 있다.

표 10 - 1 자금 조달표

		조 달 자 금 의 흐 름					
		대표적 활 동	관련재· 서비스	수익자에서 화폐적이전 (직접이전)	국 내 합 계	해 외 (비거주자)	국 민 합 계
최 종 적 자 금 공 급 부 문	가 계 기 업 일반정부 민간비영리단체						
	해외(비거주자)						
	합 계	(a+a')	(b)	(c)	(국내지출)		(국민지출)

(자료) INSEE 「1987」, pp. 50-51, Tableau II-06을 근거로 작성

위성계정을 구성하는 계정과 표를 살펴보자. 위성계정의 대상분야 활동을 자금조달, 생산 및 생산비의 지불, 자본축적, 수익자에의 활동성과의 분배측면에서 살펴보면 표 10-1 ~ 표 10-5와 같은 표와 계정으로 이 분야의 활동을 나타낼 수 있다.

표 10-1 「자금조달표」는 대상 활동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부문과 자금의 행방(처분형태)을 나타내고 있다. 자금공급 부문은 생산하는 재와 서비스의 구입자 내지 자산축적을 위한 자금의 제공자이고, 자금의 행방은 구입, 지출, 이전, 자금유통의 대상인 해당분야의 대표적 활동 내지 활동에 불가결의 재(관련재·서비스) 또는 이전지라 할 수 있다. 왼쪽에서 3열까지 국내영역의 지불(구입)을 나타내기 때문에 합계(제4열)는 국내 개념이다. 이것에 해외의 구입(제5열)을 가산하면 국민 개념의 지출이 된다.

표 10-2 와 표 10-3 은 생산계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것은 중심체계의 생산계정과 같이 대상분야의 활동에 의한 생산물(재 또는 서비스)의 산출과 비용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분야에 필요한 자산축적과 그 축적을 위한 자금조달 및 그 분야의 생산 및 활동에 관해서도 표시하고 있다. 이 활동은 생산계정 2 에 잘 나타나 있다.

표 10-2 생산계정1 (경상거래)

사 용	원 천
기능목적의 지출 비용자보수 중간소비 조 세 수익자에서 이전(d) 기타 경상지출 총 저축[조 저축]	기능목적의 원천 재화·서비스의 판매(e) 영리보조금(e') 기능목적의 이전(비영리 서비스 및 부수 활동)(e'') 재분배를 위한 이전 기타 원천
사 용 합 계	원 천 합 계(a)

(자료) INSEE [1987], PP.50-51, Tableau II-60을 근거로 작성.

표 10-3 생산계정 2 (자본·금융거래)

사 용	원 천		
총 투 자 수익자에서 자금이전(d')	총 저 축		
채권 순증(금융 자산 순증)	<table style="border: none;"> <tr> <td style="border: none;">                     국내자본이전                      투자를 위한 자본 이전                      재분배를 위한 자본 이전                      채무 순증(부채 순증)                 </td> <td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middle;">                     ] a'                 </td> </tr> </table>	국내자본이전 투자를 위한 자본 이전 재분배를 위한 자본 이전 채무 순증(부채 순증)	] a'
국내자본이전 투자를 위한 자본 이전 재분배를 위한 자본 이전 채무 순증(부채 순증)	] a'		
자 산 저 축 합 계	축 적 원 천 달 성 합 계		

(자료) INSEE [1987], PP.50-51, Tableau II-60을 근거로 작성

우선 생산계정 1을 살펴보자. 대변은 분야의 생산물인 재화 또는 서비스 (이것을 대표적 생산물 또는 대표적 재·서비스라 한다)의 판매, 보조금, 이전 등에 의한 수익을 말한다. 차변은 활동을 위한 비용의 지출(비용자보수, 중간소비, 조세), 이전, 기타 비용, 지출 보유분의 저축을 포함한다.

생산계정 2는 대상분야에 의해서 실현되는 자산축적을 차변에, 그 자산축적을 위한 원천의 조달을 대변에 표시한다. 원천의 하나는 (총)저축에서, 생산계정 1부터 계승한다. 그 외의 원천은 자본이전과 부채 순증이다. 이

원천을 이용해서 자본형성(총 투자), 금융자산의 축적, 자본이전을 수행한다. 이것을 차변에 표시한다.

표 10-1의 제1열에 대표적 활동의 금액을 표시하고 있고, 합계란에 a+a' 라 쓰고 있다. 그것에 대응하는 거래항목을 생산계정에서 찾아 알 수 있도록, 대표적 활동은 대표적 생산물의 생산액(판매 또는 처분의 표시)만이 아닌 분야의 활동을 위한 자산축적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산축적의 원천의 하나인 저축은 금액만을 문제삼으려 한다면 이미 생산계정 1에서 a의 안에 포함되기 위해 a' 에서 제외하고 있다.

표 10-4 수익자 특정표(수익자 계정)는 대표적재·서비스, 관련재·서비스와 화폐에 의한 이전의 비용(또는 수취)을 특정 가능한 수익자와 집합적

표 10-4 수익자 특정표

	대 표 적 재 · 서비스	관 련 재 · 서비스	화폐적이전	'국내'합계
특정가능수익자 집합적수익자				
합 계	$e + e' + e''$	b	$c + d + d'$	

(자료) INSEE [1987], PP.50-51, Tableau II-60을 근거로 작성

표 10-5 국민지출 조달자금의 이전

		당 초 자 금 공 급 자				최 종 자금공급 합 계
		가 계	기 업	일반정부	민 간 비영리단체	
최 종 자 금 공급자	가 계 기 업 일반정부 민간비영리단체					
당초자금공급합계						

(자료) INSEE [1987], PP.50-51, Tableau II-60을 근거로 작성.

수익자로 나누어 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서비스와 같은 비영리 서비스를 살펴보면, 수업료의 지불은 특정가능 수익자이고, 그 이외의 비영리 단체와 정부에 의한 자가소비는 집합적 수익자의 행에 기입하고 있다.

표 10-5 국민지출 조달자금의 이전은 당초 자금공급자부터 최종 자금공급자로의 자금이동을 나타내고 있다. 가계의 행을 옆으로 보면 가계, 기업, 일반정부, 비영리단체에서 가계로의 자금이동(또는 이행)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4. 개정 SNA의 위성계정

개정 SNA에서 XXI 장이 위성계정을 다루고 있다. 표 10-6 은 해당 위성계정의 활동분야에 의한 국민지출을 항목별로 표시하고 있다. 국민지출은 크게 분류하여 해당 분야의 생산물인 특정재·서비스의 판매(또는 사용)와 해당 분야에 의한 자본형성으로 이루어진다.

표 10-6의 번호 1 과 2 의 항목이 특정재·서비스의 판매(사용)이다. 그리고 특정재·서비스의 생산을 처분면에서 표시하고 있다. 특정재·서비스(specific goods and services)라는 것은 대표적 재·서비스 [특징적 재·서비스] 와 관련 재·서비스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의 분야에 의한 비특정재·서비스에 의한 고정자본형성을 계상하고 있다(항목 3). (뒤에 나오는 표 10-8 「생산/소득의 발생계정」의 차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특정 재·서비스의 산출가격에는 경상적 비용성분과 상환의 자본 비용밖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야의 활동 크기를 표시해도 경상적 활동밖에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자본형성을 추가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비특정 재·서비스의 재고증가는 여기에서 계상하지 않았다.

항목4(경상이전)와 항목5(자본이전)는 사회적 보호라든지 개발원조라고 하는 분야의 위성계정에서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항목1과 2의 특정 재·서비스의 사용에는 해당활동의 운용비·활동비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에 의해 원조되는 물자·자재·자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것의 재와 돈은 이전에 포함하고 있다.

표 10 - 6 사용 / 국민지출의 성분항목

사용 / 국민지출의 성분 항목	합 계
1 특정재·서비스의 소비 (Consumption of specific goods and services)	
1. 1 실제 최종 소비	
1. 1. 1 시장 생산물	
1. 1. 2 비시장생산물	
1. 1. 2. 1 개별적	
1. 1. 2. 2. 집합적	
1. 2 중간소비	
1. 2. 1 실제 중간소비	
1. 2. 2 내부적 중간소비	
2 특정재·서비스에 의한 자본형성 (Capital formation in specific goods and services)	
3 비특정 생산물에 의한 대표적 활동의 고정자본형성* (Fixed capital formation in non-specific products)	
4 특정경상이전 (항목 1에 대응하지 않는 것)	
5 특정자본이전 (항목 2, 3에 대응하지 않는 것)	
거주자 단위의 사용 합계	
6 (공제) 거주자 단위의 경상적 사용 가운데 해외의 자금공급분	
7 (공제) 거주자 단위의 자본적 사용 가운데 해외의 자금공급분	
국        민        지        출	

(주) \* 및 비생산·비금융 자산의 순취득 (취득 - 처분)

(자료) Commission of EC, et al. [1993], p.496, Table 21.1.

항목 6 과 항목 7 은 전 항목까지의 거주자의 지출 가운데, 원천을 해외에서 공급하는 것을 공제하고, 국민개념의 지출로 설정하였다.

표 10-7은 각각의 위성 계정에 의한 국민지출이 어떤 지출 항목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표시한다고 할 수 있다.

해당분야(그 위성 계정의 대상분야)의 대표적 활동이 주요한 활동이 된 생산단위와 분야의 대표적 활동이 그 단위의 부차적 활동 또는 보조적·부



표 10 - 7 위성계정 제분야의 국민지출의 범위

분	야	문화	교육	보건	사회적보호	여행	환경보호	연구개발 (R&D)	개발원조	운송	데이터처리	주택
사용 / 국민지출의 성분항목												
1	1 특정재·서비스의 소비 1.1 실제 최종 소비 1.1.1 시장 생산물 1.1.2 비시장 생산물 1.1.2.1 개별적 1.1.2.2. 집합적 1.2 중간소비 1.2.1 실제 중간소비 1.2.2 내부적 중간소비 2 특정재·서비스에 의한 자본형성 3 비 특정 생산물에 의한 대표적 활동의 고정자본 형성 4 특정경상이전 (항목 1에 대응하지 않는 것) 5 특정자본이전 (항목 2, 3에 대응하지 않는 것)											
	거주자 단위의 사용 합계											
6 (공제)	거주자 단위의 경상적 사용 가운데 해외의 자금공급분											
7 (공제)	거주자 단위의 자본적 사용 가운데 해외의 자금공급분											
	국 민 지 출											

(자료) Commission of EC, al. 「1993」, p.498, Table 21. 2.

수적 활동에 지나지 않는 생산단위를 모아 대표적 생산자 부문을 편성할 수 있다. 그 부문에 관해서 표 10-8 ~ 표 10-10 과 같은 표준계정체계를 정의한다.

생산/소득의 발생계정은 분야의 활동에 의한 대표적 재·서비스와 관련 재·서비스의 산출과 그것에 의해 생성된 부문의 영업 잉여와 혼합소득을 유도하는 계정이다. 대상이 비영리활동일 때에는 영업잉여와 혼합소득은 0으로 한다. 이런 경우(그 외의 경상계정대변) 소득은 기금 등의 자산운용에 의한 재산소득, 사회부담 또는 그 외의 경상이전(또는 그 양변)에 의해 취득된다.

그 외의 경상계정(표 10-9)은 앞에서 서술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부문의 소득과 그 처분을 나타낸다. 차변의 소비로서 집합적 소비만을 예로 들었지만, 부문의 소비로서 집합적 비용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고 있다. 개별적 소비는 집합적 소비와 합쳐서 표 10-6 에 표시하고 있다. 균형항목의 저축은 다음 축적계정으로 계승한다.

표 10-8 생산 / 소득의 발생계정

중간소비 · 대표적 활동 · 기타 활동 피용자보수 · 대표적 활동 · 기타 활동 생산·수입품 세 보조금 (공제) 고정자본소모 영업잉여 (순액) · 대표적 활동 · 기타 활동 혼합소득 (순액) · 대표적 활동 · 기타 활동	산 출 · 대표적 산출물 · 기타 산출물
---	------------------------------

(자료) Commission of EC, et al. [1993], p.506.

표 10-9 기타 경상계정

재산소득 소득·부 등의 경상세  사회부담/사회급부 기타 경상이전 집합적 소비 저축(순액)	영업 잉여 복합소득 재산소득 사회부담/사회급부 기타 경상이전
---	---

(자료) Commission of EC, et al. [1993], p.506.

표 10-10 축적계정

총 고정자본 형성 · 대표적 활동 · 기타 활동 고정자본소모 (공제) 재고품증감 귀중재의 취득 마이너스처분 비금융 비생산 자산의 취득 마이너스 처분 금융자산의 순취득  기타 축적항목	저축 (순액) 자본이전 수취 자본이전 지불 (공제)  부채의 순생기 · 대표적 활동의 자금조달 · 기타 기타 축적항목 기타 순자산 변동
---	---

(자료) Commission of EC, et al. 「1993」, p.506.

축적계정(표 10-10)은 잘 알고있는 형식이다. 대변은 축적원천의 조달로, 차변은 원천의 이용으로 한다. 차변의 고정자본형성은 표 10-6의 항목 3에 대응하고 있다. 표 10-6에서 고정자산의 축적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금융자산이 실물자산(비금융자산)이라는 자산의 양 형태의 축적을 커버하는 통상적인 축적계정인 것이다.

## 제 11 장 GDP의 국제비교

### 1. GDP의 국제비교와 구매력 평가

UN에 의한 국민경제계산체계(SNA)의 개발은 1953년 SNA, 현행 SNA(1968년 SNA), 개정 SNA(1993년 SNA)의 단계를 거쳐 왔다. 어떠한 체계라도 여러 국가가 비교 가능한 국민경제계산 자료를 국제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 SNA개발 목적의 하나이다.

1953년 SNA에서 현행 SNA까지의 발전에 관해, 국민경제계산에서 정의한 거시경제 지표의 국제비교라는 관점을 통한 평가는 1968년 UN 통계국이 편성한 국제비교 프로젝트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mparison Project, ICP)의 제1기 리포트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국제비교에서 각 국의 지표 추계에 의해 「비교가 가능한 방법상의 원칙을 채용할 것」과 「여러 국가의 추계치를 표준적인 방법상의 수속을 따라 전환 가능한 것」이 전제이고, 그것을 만족하는 「두드러지는 성과를 달성하였다」<sup>1)</sup>. 실제로 국제비교 프로젝트는 현행 SNA를 각 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기 위해 표준으로 한 것이다.

위의 전제가 국민경제계산 자료의 추계에 의해 만족하더라도, 각 국의 거시경제지표의 집계량은 자국통화 단위에 의해 금액을 표시하기 때문에, 국제비교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집계량에 비교 가능한 평가를 하는 것이 제2의 전제이다. 이것에 관해서 『UN 통계연감』과 총무청 통계국편 『세계의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국의 통화 단위로 표시한 금액이 환율에 의해 미국 달러를 표시 단위로써 환산하는 경우가 있다. 널리 알려졌듯이, 선진국의 환율은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73년까지 브레튼·우즈체계의 공정 환율제를 근거로, 그 이후는 변동상장제를 근거로 형성하고 있다. 공정환율에 의한 환산에 대해, 위의 제1기 리포트는 「... 환시세가 각 국가 통화간의 상대적인 구매력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비교에 오차를 도입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게다가 각 국가 통화의 대 달러 환시세도

1) Kravis, et al. [1975], p.ix.

입으로 인해, 해당국가의 GDP 환산치의 증가를 문제시해 왔다.<sup>2)</sup> 또, 변동 환율제 하의 환율에 의한 환산에 관해 같은 프로젝트의 제Ⅲ기 리포트는 환율의 년 차간의 「대폭적인 변동이 관계하는 각국의 실질적 국민생산물의 상대적인 변화와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 …(중략)… 때에 따라 어긋난 척도를 부여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sup>3)</sup>. 여기에서, 환율환산에 의한 오차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구매력」 그리고 구매력 평가의 개념을 확인해보자.

구매력의 개념은 통화 1단위에 의해 구입 가능한 재와 서비스의 양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물가수준의 역수이다. 구매력 평가는 이국의 통화가 같은 구매력을 가진 환시세에서, 엔과 달러의 경우에 1달러의 구매력을 1엔의 구매력으로 얻을 수 있고, 1 달러와 같은 구매력을 가진 엔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구매력이 물가수준의 역수이기 때문에 형식상 일본의 물가수준을 미국의 물가수준으로 나눈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구입하는 재와 서비스의 바스켓에 관련된 일본의 금액을 미국의 그것으로 나눈 것에 의해 구체적으로 계산한다 4).

구매력 평가를 이국 통화간의 교환 비율로 인정하면, 그것에 의해 환산하여 이국의 통화 단위에서 표시한 금액은 환산전의 금액으로 구입·매입하고 그것과 같은 양의 재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입하는 재가 햄버거라고 하자. 그 가격이 동경과 로스앤젤레스에서 표 11-1에 표시한 것과 같다면 구매력 평가는 210엔 ÷ 0.6 달러 = 323(엔/달러)이다. 다음으로 동시점에서 동경도민의 햄버거 소비지출의 총계가 임시로 4200만 엔 이라고 한다면, 구매력 평가에서 13만 달러로 환산한다. 어느 금액으로도 각 지점의 가격으로 같은 양의 햄버거(이 경우는 20만개)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1 평성6년1월의 로스앤젤레스와 동경의 햄버거 1개 가격<sup>5)</sup>

2) Kravis, et al [1975], p.1.

3) Kravis, et al [1982], p.4.

4) 1달러에 대한 엔의 구매력 평가 = 1달러의 구매력 / 1엔의 구매력  
 = 미국의 물가수준의 역수 / 일본의 물가수준의 역수  
 = 일본의 물가수준 / 미국의 물가수준  
 = 바스켓의 일본에서의 가격 / 바스켓의 미국에서의 가격

5) 白川[1994], 45페이지

로스 앤 젤레스	동 경
0.65달러	210엔

실제로 구매력 평가를 계산하기 위해 설정한 재와 서비스의 바스켓은 여러 가지로 구성한다. 그 구성과 환산하는 가격에 의한 재와 서비스의 구성이 동일하다면 환산하는 금액은 햄버거의 예와 같이, 환산전과 같은 양의 재와 서비스를 구입하고 매입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GDP를 파쇄형으로 디플레이트한, 이른바 불변가격으로 표시한 시계열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매력 평가에서 환산한 GDP도 시계열비교의 경우와 같은 실질치라 한다.

이상을 염두에 두고, 국제비교 프로젝트의 제Ⅲ기 리포트의 다음 기술을 살펴보면 환율 환산에 의한 오차의 의미도 보다 명료해 질 것이다. 이것은 환율의 평가가 저소득국의 통화의 구매력이 고소득국에 비해 과소평가 되었을 때, 환 시세에서 환산한 저소득국의 상대적인 실질소득은 작게 표시한다는 것이다 6).

이와 같은 환율 환산에 의한 GDP의 국제비교의 오차를 인식하고, 대체적인 환산율인 구매력 평가를 이용하여 비교하기 위해서 국제비교 프로젝트를 개시하였다. 그것은 표 11-2에서 기재하고 있는 것처럼, 1993년을 대상연차로 하는 제Ⅵ기 사업까지 계속하고 있다 7). 게다가, 명칭이 1989년

6) Kravis, et al. 「1982」, p.3.

7) 국제비교 프로젝트·프로그램의 대상연차는, 제Ⅱ기 사업을 제외한 제Ⅴ기 사업까지, 1970년에서 5년간 설정되어 왔다. 제Ⅵ기 사업도 종래와 마찬가지로 1990년에 관한 비교가 이루어 질 예정이었다(United Nations 「1987b」, p.922). 같은 해에 관한 비교는 OECD, EC 및 동구 각국에서 실시되었지만, 발전도상국에 관해서는 자금원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작업의 실시가 늦어졌다. 이것이 1990년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적인 비교를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United Nations 「1992a」, p.928). 그후 개정되어 1993년이 대상연차가 되었다(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1992」, p.5).

더욱이, 개정 SNA에서 자본형성의 개념이 비물질적인 생산물을 포함하여 확장되는 것이 국제비교 프로그램의 비교내용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어 왔다. 이것에 비추어 볼 때 국제연합 사무국의 국제비교 프로그램이 개정 SNA에 충실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단, 제Ⅵ기 사업에서는 이미 작업이 전개되고

의 UN통계위원회에서 국제비교 프로그램(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me, ICP)으로 개칭하였다.

국제비교 프로그램의 구매력평가 환산법 채용은 지금까지 서술한 원리적 이유가 아닌 사용하는 자료의 제약성과 통계적인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GDP를 환산하기 위한 구매력평가는 바스켓의 재화·서비스 구성이 GDP와 같아야만 한다. 그러나 GDP에 포함하는 모든 품목 내지 상표로 가격과 수량의 통계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프로젝트 제 I 기 리포트가 「국제비교에서 공통된 하나의 특징으로 어떠한 접근법으로 접근할 것인가와 작업의 기초는 대표적인 재화의 샘플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재한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sup>8)</sup>. 실제 제 I 기 리포트는 대표적 품목의 가격을 표준관찰치로 간주하여 구매력평가를 추정하는 형태였다<sup>9)</sup>. 각국의 대표적 품목의 수량과 동 품목에 대한 타국의 수량의 비율을 지출액 웨이트로 총합해서 직접적으로 GDP의 실질치 지수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구매력평가 환산법을 채용하는 이유는 대표적 품목에 관한 수량보다도 가격의 입수가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격비의 분산이 수량비 보다 작기 때문에 추정치의 표본분산을 작게 한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 2. 국제비교 프로그램의 구매력 계산방법

구매력평가는 살펴본 바와 같이, 물가지수의 형식에서 계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국제비교 프로젝트는 GDP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구매력평가의 재화·서비스의 바스켓은 3면 등가의 원칙으로 GDP와 가격이 일치하는 국내총지출의 대상인 최종생산물이라 할 수 있다<sup>11)</sup>. 이 가격의

---

있었으므로, 개정 SNA에 근거하지 않고 현행 SNA의 채용이 지속되고 있다 (ibid., p.11).

8) Kravis, et al. 「1975」, p.20.

9) Kravis, et al. 「1975」, p.49, p.77. 같은 책 p.78에, GDP 실질치 지수추정치의 신뢰구간추정치를 「Table 5.8」이 표시하고 있다.

10) Kravis, et al. 「1975」, p. 19.

11)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만약, GDP에 대한 구매력평가를 계산한다면 그것이 부가가치 개념이기 때문에 더블 디플레이션이 되고, 산업별 산

자료는 프로젝트에 참가해 비교한 각국의 통계기관의 협력에서 얻을 수 있다. 국제비교 프로젝트는 UN의 단독사업이 아니라, 국제적인 통계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11-2 국제비교 프로젝트·프로그램의 구매력 평가계산 방법의 변천

제 I 기 10개국 대상 1967, 70년 대상	· GDP의 구매력 평가 다수 국을 비교한 모든 나라의 구매력 평가가, GK법에 의해 일관되게 계산된다. · 세목 카테고리의 구매력 평가 다수 국을 비교한 모든 국가의 구매력 평가가, CPD법에 의해 일관되게 계산된다.	
제 II 기 16개국 대상 1970, 73 대상	· GDP의 구매력 평가 다수 국을 비교한 모든 국가의 구매력 평가가, GK법에 의해 일관되게 계산된다. · 세목 카테고리의 구매력 평가 다수 국을 비교한 모든 국가의 구매력 평가가, CPD법에 의해 일관되게 계산된다.	CPD 법에 적용한 지역 범위를 변경하였다.
제 III 기 34개국 대상 1975년 대상	· GDP의 구매력 평가 다수 국을 비교한 모든 국가의 구매력 평가가, GK법에 의해 일관되게 계산된다. · 세목 카테고리의 구매력 평가 하기에서 계산한 가격을 보충자료로, 다 수국을 비교한 모든 국가의 구매력 평가가, CPD법에 의해 일관되게 계산된다. · 세목 카테고리의 구매력 평가 계산에 필요한 품목 가격의 추계 지역적 근접제국의 그룹에 CPD법에 적용 근접하는 나라, 상대가격구조의 가까운 나라의 자료만으로, 가격을 정할 수 없었던 품목의 가격을 추계. 2 단계CPD법	

Universal  
 comparison  
 ↓(다음으로)

↓ (전향부터)  
 regionalization

출과 투입을 구성하는 품목별 가격 자료가 필요하게 된다. 「그것에 따른 많은 문제가, 비교적 발전해 온 국가들의 통계부처가 생산으로의 접근을 막는 계기가 되었다」 (Kravis, et al. 「1975」, p.19)



제 IV기 60개국, 1980년 대상	지역별에, GDP와 단위적 항목 (세목 카테고리에서 명칭변경)의 구매력 평가를 계산, 지역별의 비교 결과를 변경하지 않도록 연결해, 지역적 규모를 비교하도록 하자	GDP의 구매력 평가에 GK법, 단위적 항목의 구매력 평가에 EKS법을 채용했던 지역	GDP의 구매력 평가에 GK법, 단위적 항목의 구매력 평가에 2개국간 지수를 채용했던 지역	CPD법의 대체법으로 EKS법의 채용
	EEC제국 미국제국	오스트리아·동구제국	ICP 제IV기 국제연합 자료에, 방법이 명기되지 않은 지역 OECD제국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제국 ESCAP제국	
제 V기 64개국, 1985년 대상	지역별의, GDP와 단위적 항목의 구매력 평가를 계산. 지역별의 비교 결과를 변경하지 않도록 연결하고, 세계적 규모에서의 비교를 하도록 하자	GDP의 구매력 평가에 GK법, 단위적 항목의 구매력 평가에 EKS법을 채용했던 지역	GDP의 구매력 평가에 GK법, 단위적 항목의 구매력 평가에 CPD법을 채용했던 지역	
	아프리카 제국 카리브해 제국 EEC 제국 OECD 제국	ESCAP제국 GDP의 구매력에 피셔식, 단위적 항목의 구매력 평가에 2개국간 지수를 채용했던 지역 오스트리아·동구제국		
제VI기 1993년 대상	OECD가맹 24개국에 관한 리포트가 공표 되어있다.			

(자료) Kravis et al. [1975], Kravis, et al [1978], Kravis, et al. [1982], United Nations [1986], United Nations [19994]에서 작성

그러면 국제비교 프로젝트의 구매력평가의 계산방법의 내용을 살펴보자. 표 11-2는 같은 프로젝트의 각기 사업에서 채용한 구매력평가 계산식의 명칭을 나타낸 것이다.

표 11-2는 국제비교 프로젝트에서 채용한 구매력평가 계산방법의 특징으로써 다음 사항들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계산식이 전통적인 라스파이레

스·파쇄·피서 식을 이용하지 않고 GK법, CPD법 그리고 EKS법이라는 특수한 산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국제비교 프로젝트는 다수 국가에 대한 지수의 기준국과 비교국의 개별적인 비교이기 때문이다. 비교하는 모든 국가들이 하나의 의미로 동시에 비교하는 다수국간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은 지수계산에 대한 조건으로 구체화한다. 그리고 이런 조건을 GK법, CPD법 그리고 EKS법이 만족시키고 있다. 그것에 반해 전통적계산식으로 이러한 것을 하기에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둘째 GDP에 대한 구매력평가는 GK법으로 계산하고 그것을 위한 자료로서 국내총지출의 세분항목인 「세목 카테고리」, 내지 「단위적 항목」에 대한 구매력평가가 CPD법과 EKS로 계산하는 2단계 방식으로 하고 있다.

세째 국제비교 프로젝트라 호칭하던 초기에, 지역적·사회구조적으로 다른 참가국에 대한 구매력평가를 일괄적으로 계산하여 왔지만<sup>12)</sup>, 제Ⅳ기 사업부터 지역적으로 근접한 국가 그룹, 선진국 그룹 등으로 개별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통합하는 방식<sup>13)</sup>으로 변경하였다. 세목 카테고리의 명칭은 단위적 항목으로 개칭하고 그것에 관한 구매력평가의 계산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던 CPD법이 EKS법으로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1의 특징부터 설명하자. GK법의 명칭은 창시자 Geary와 그 아이디어를 수학적으로 풀이한 Khamis 두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Geary가 고안한 계산식은 (11.1), (11.2)식에 나타난다<sup>14)</sup>

$$C_i = \sum_a E_a p_{ia} q_{ia} / \sum_a q_{ia}, \quad i = 1, \dots, m \quad (11.1)$$

$$E_a = \sum_i C_i q_{ia} / \sum_i p_{ia} q_{ia}, \quad a = 1, \dots, n \quad (11.2)$$

우선, (11.1)식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비교한  $a = 1, \dots, n$  개의 국가들에 관한 구매력 평가  $E_a$ <sup>15)</sup>을 알고 있다면, 그것에 의해 바스켓을 구성하는 각각의 제i종류의 재화·서비스의 가격  $p_{ia}$ 을 공통의 통화단위로 표시할

12) 제Ⅲ기 리포트에서는 Universal comparison이라 한다.

13) 제Ⅲ기 리포트에서는 regionalization 이라 한다.

14) Geary 「1958」, p.97.

15) Geary의 논문에서 농업산출고·공업원료·소비자 구입으로 각각의 다른 종류의 재화·서비스 플로우에 관해 「환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Geary[1958],p.97).

수 있다.(분자의  $E_a P_{ia}$ 부분). 이것을 제i재·서비스의 각국의 수량  $q_{ia}$ 으로 가중평균 한다면, 이 재화·서비스의 「국제가격」  $C_i$ 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11.2)식의 의미는 우선  $i = 1, \dots, m$  종류의 재화·서비스에 대한 국제가격  $C_i$ 를 알고 있다면 이것으로 a국의 바스켓을 구성하는 재화·서비스를 평가한 총액(식의 분자)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액과 a국의 가격을 평가한 바스켓 금액(식의 분모)의 비율을 가지고 국제가격 표시단위의 a국 통화에 대한 구매력평가  $E_a$ 로 계산한다. (11.1)식에서  $C_i$ 의 계산에  $E_a$ 가 (11.2)식에서  $E_a$ 의 계산에  $C_i$ 을 상호 전제하고 있다. 이것은 m개의  $C_i$ 와 n개의  $E_a$ 을 미지수로 하는 방정식체계이다.

이 체계대로라면, 각국 통화의 구매력평가인  $E_a$ 는 정할 수 없다<sup>16)</sup>. 이것에 대해 국제비교 프로젝트에서 이하 서술한 수학적 조작을 사용하고 있다. (11.1), (11.2)식의 기호는 각각,  $C_i \rightarrow \pi_i, a \rightarrow j, E_a \rightarrow PPP_j$ 으로 수정하였다.  $PPP_j$ 가  $E_a$ 의 역수형식으로 변경한 것 이외는 단지 기호의 위치가 바뀐 것에 지나지 않는다.

$$\pi_i = \sum_j (p_{ij} / PPP_j) q_{ij} / \sum_j q_{ij}, \quad i = 1, \dots, m \quad (11.1')$$

$$PPP_j = \sum_i p_{ij} q_{ij} / \sum_i \pi_i q_{ij}, \quad j = 1, \dots, n \quad (11.2')$$

(11.2')식 중에서, 제n국의 구매력평가에 관한 식을 생략하고 미지수의 하나인 제n국의 구매력평가  $PPP_n$ 에 1의 값을 준다. 이렇게 고친 방정식 체계에서 제n국 통화 이외의 구매력평가와 국제가격의 조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구매력평가를 1로 하는 제n국은 미국이다. 그리고 바스켓은 국내총지출의 대상품목으로 한다. 이 조작에 의해 국제가격  $\pi_i$ 의 표시단위는 미국의 국내총지출에 관한 달러와 같은 구매력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GDP가  $PPP_n = 1$ 로 환산되어도 수치상의 변화는 없다. 이것으로 GK법의 구매력평가에서 환산한 미국의 GDP는 달러를 표시단위로 한다. 그리고, 환산액은 미국의 국내가격이 아닌 국제가격  $\pi_i$ 으로 평가한다. 이런 차

16) 이것에 관한 수학적 설명은, 氷山・森田 「1981」, 48~50 페이지를 참조 할 것.

이를 명시하기 위해 ICP의 구매력평가 환산액의 표시단위는 「국제적 달러」로 표시한다. 그리고 기타 국가들의 GDP 환산액도 국제적 달러로 표시한다.

GK법의 구매력평가에서 환산한 실질치의 비교는 이하의 성질을 가진다.

① 국제가격을 표시하는 통화단위를 부여하는 미국 이외의 국가를 선택 하여도, 지수로 나타나는 각국간의 상대적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이 성질을 기준국 불변성이라 하고, 지수산식 테스트의 시점전환 테스트 사고 방식을 다수국간 비교에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든 국가에 관해 공통하는  $i = 1, \dots, m$  품목의 수량을  $\pi_i$ 로 불변가격 평가하는 것에서 다음 3가지 성질을 갖는다.

② A국과 B국에 대해 직접 계산한 실질치 지수는,  $\sum \pi_i q_{iB} / \sum \pi_i q_{iA}$  이다. C국을 중계로 간접적으로 실질치 지수를 산출하면  $(\sum \pi_i / \sum \pi_i q_{iC}) / (\sum \pi_i / \sum \pi_i q_{iC})$ 이지만,  $\sum \pi_i q_{iC}$ 로 약분하면  $\sum \pi_i q_{iB} / \sum \pi_i q_{iA}$ 에 귀착한다. 이 성질을 추이성이라 하고 지수산식 테스트의 순환 테스트 사고 방식을 다수국간의 비교에 적용한 것이다. 추이성을 조건으로 하는 것에는 임의의 2개 국가에 대해 직접 계산한 지수와 제 3국을 중계해 간접적으로 산출한 지수가 같다는 다수국 간의 동시적 비교를 달성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성질은 전통적 산식에 의하면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 각각의 구매력평가 산식의 품목과 웨이트가 각국의 경제적 상태를 반영하지 않고 그것이 실질치 지수에도 영향을 준다. 이것이 추이성의 성립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③ 가법적 정합성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것은 국내총지출의 임의 분할에 의해 구성항목의 실질치가 그것에 포함되는 상품의 실질치 합계로 얻는다는 것이다. 이 성질은 불변가격 평가법 일반으로 성립하고 라스파이레스, 파쉐 식에서도 성립한다.

④ 국제가격  $\pi_i$ 에서 공통으로 평가한 실질치의 지수는 품목간의 상대가격 구조가 국가간에 다른 경우 특정국의 가격에서 평가된 실질치의 비교를 행하는 것보다 더 타당성이 있다 17).

상기의 ①②③의 성질은 국제비교 프로젝트 제 I 기 사업의 리포트 중에

17) Kravis, et al. 「1975」, p.241.

서 「비교결과를 이용하기 전에 지수문제를 상세히 고찰하지 않는 학자와 실무자가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비교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며 실질치 지수를 만족해야 하는 것이 조건이라 하고 있다<sup>18)</sup>. GK법은 이 조건을 충족하고 채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19)</sup>.

그런데, (11-1'), (11-2')식은 국제비교 프로젝트에서 2가지를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국제비교 프로젝트의 특징인 2단계 구매력평가 계산법과 관련이 있다. 우선 바스켓에 포함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p_{ij}$ 과 수량  $q_{ij}$ 이 (11.1'), (11.2')식에 표시한 것과 같이 세목 카테고리에 관한 구매력평가  $p_{ij}$ 과 달러액으로 표시 환산한 같은 카테고리의 실질치  $Q_{ij}$ 으로 대체하고 있다(표 11-3). 이것과 함께  $\pi_i$ 와  $PPP_j$ 는  $\pi_i$ 와  $PPP$ 로 표기한다.

$$\pi_i = \sum_j (P_{ij}/PPP_j) Q_{ij} / \sum_j Q_{ij} \quad (11.1 \sim)$$

$$PPP_j = \sum_i P_{ij} Q_{ij} / \sum_i \pi_i Q_{ij} \quad (11.2 \sim)$$

표 11-3 국제 비교프로젝트 제 I 기 사업에 채용한 GK법 대표 데이터<sup>20)</sup>

Geary의 식을 이 용한 자료		국제비교 프로젝트에서 채용한 GK법에 관한 대용 자료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p_{ij}$	→	세목 카테고리 고유의 구매력 평가 $P_{ij} = P_{ij} / P_{ius}$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q_{ij}$	→	구매력 평가의 환산으로 구한 카테고리의 실질치 $Q_{ij} = (p_{ij} q_{ij}) / P_{ij} = (p_{ij} q_{ij}) / (p_{ij} / P_{ius})$

여기에서 세목 카테고리는 국내총지출의 세분 항목이고, 이 이상 세분한 국내총지출액 자료는 얻을 수 없다. 동시에 그것에 속한 품목의 두 국가간 가격 비율 차가 커지지 않도록 설정하고 있다. 국제 비교 프로젝트 제 1기에서 사용한 세목 카테고리는 표 11-4에 나타난다. 국내총지출액의 세목

18) Kravis, et al. 「1975」, p.55.

19) Kravis, et al. 「1975」, p. 70.

20) Kravis, et al. 「1975」, p.69에서 작성.

카테고리의 분할은 현행 SNA에서 규정한 분류로 기초하고 있지만 국민 소비수준의 비교를 가능하도록 수정하고 있다. 최종소비지출은 현행 SNA에서 여전히 지출을 행하는 제도부문 즉 가계와 정부로 나누고 있다. 그것에 비해 국제비교 프로젝트는 최종소비지출의 대상인 생산물이 소비 목적별로 분류해 비교되도록 가계가 개별적으로 공급받는 주택·보건·교육·레크레이션에 대한 정부 지분이 가계부문의 최종소비지출에 첨가된다. 이 지출액은 「소비」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것에 반해, 현행 SNA가 규정하는 정부최종소비지출에서 「소비」로의 이전 액을 제외한 잔액은 국민이 집단으로 소비하는 정부서비스 지출액이고, 그것은 「정부」라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1)

세목 카테고리의 구매력 평가와 실질치는 「세목 카테고리가 각각의 국가에 대해, 가격, 수량 그리고 지출액을 가진 단일 품목으로 취급」 22)하고 표 11-3과 같이 각각의 재화·서비스에 관한 가격과 수량을 나타내는 기호  $p_{ij}$ 와  $q_{ij}$ 의 유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 계산식은 Geary가 고안한 본래의 계산식  $\pi_i = \pi_i / P_{iUS}$ ,  $PPP_j = PPP_j$ 과 관계가 있다. 대용자료를 이용한 GK법으로 계산한 구매력 평가는 Geary가 고안한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23)

이 대용자료 계산의 의미를 살펴보자. (11.2")식 가운데  $p_{ij}$ 와  $Q_{ij}$ 를 표 11-3의 정의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frac{\sum_i (P_{ij} / P_{iUS}) [E_{ij} / (P_{ij} / P_{iUS})]}{\sum_i (\pi_i / P_{iUS}) [E_{ij} / (P_{ij} / P_{iUS})]}$$

$p_{ij} / p_{iUS}$ 는 제 i세목 카테고리에 포함된 재화·서비스의 바스켓에 관한 제 j국 통화의 미국달러에 대한 구매력 평가이다.  $\pi_i / p_{iUS}$ 는 같은 세목 카테고리에 관한 국제적 달러의 미국에 대한 구매력 평가라고 할 수 있다.

21) 국제비교 프로젝트에서 「소비」와 「정부」 개념은 개정 SNA의 국내용 개념인 「가계의 현실 최종 소비」 및 「일반정부의 현실 최종소비」라는 개념으로 규정되어 현행 SNA에 대한 개정사항이 되었다.

22) Kravis, et al. [1975], p.229.

23) Kravis et al. [1975], p.69.

표 11-4 제 I 기 리포트의 세목카테고리

0 주민의 총소비	02. 122 여성용 의류품
01. 101 쌀	02. 123 소년 또는 소녀용 의류품
01. 102 밀, 기타 곡물	02. 131 남성 또는 소년용 내의
01. 103 빵과 롤케익	02. 132 여성 또는 소녀용 내의
01. 104 비스킷, 케익류	02. 150 기타 의류품
01. 105 곡류조리품	02. 160 의류품의 대여, 수리
01. 106 마카로니, 스파게티, 관련 식품	02. 211 남성용 의복
01. 111 소고기	02. 212 여성용 의복
01. 112 양고기	02. 213 어린이용 의복
01. 113 돼지고기	02. 220 의복의 수리
01. 114 오리, 닭	03. 110 총 집계
01. 115 기타육류	03. 120 거실의 수리,
01. 116 냉동육, 절입육	03. 210 전기
01. 121 생선과 냉동생선	03. 220 가스
01. 122 생선 캔	03. 230 액체 연료
01. 131 우유	03. 240 기타 전기료, 물
01. 132 유제품	04. 110 가구 또는 비품
01. 133 달걀, 알 제품	04. 120 카펫트
01. 141 버터	04. 200 가구용의 직물
01. 142 라드, 식용유지	04. 310 냉장고등
01. 143 식물성기름 식용 지방	04. 320 식기등 세척용기구
01. 151 열대산 또는 아열대산 과일	04. 330 조리용기구
01. 152 기타 과일	04. 340 가열용기구
01. 153 야채	04. 350 청소용구
01. 161 비 신선 과일	04. 360 기타 가정용구
01. 162 비 신선 야채	04. 400 가정용구
01. 170 감자, 카사바 및 기타 줄기식물	04. 510 가정용 비 내구제
01. 191 커피	04. 520 가사 서비스
01. 192 차	04. 530 대가계 서비스
01. 193 코코아	04. 600 가정가구의 수리
01. 180 설탕	05. 110 약품 또는 의료용 조합제
01. 201 잼, 시럽, 벌꿀	05. 120 의료용품
01. 202 초코릿, 아이스 크림	05. 200 의료용구
01. 203 식염, 향산료, 소스	05. 310 의사의 서비스
01. 310 무 알콜 음료수	05. 320 치과와의 서비스
01. 321 양주	05. 330 간호원과 기타 직원 서비스
01. 322 와인,	05. 400 병원 등의 경상적 지출
01. 323 맥주	06. 110 자가용 승용차
01. 410 앞담배	06. 120 기타 자가용 수송 기계
01. 420 기타 담배	06. 210 타이어, 튜브, 자동차용 악세서리
02. 110 의료품용 옷감	06. 220 자가용차 수리비
02. 121 남성용 의료품	06. 230 휘발유, 윤활유

표 11-4 계속

06. 240 주차요금, 통행 요금 등	11. 700 농업용 건물
06. 310 근거리 수송	11. 800 기타 건물
06. 321 장거리 철도 수송	12. 100 도로, 고속도로
06. 322 장거리 버스 수송	12. 200 수송용 라인과 공익사업용 라인
06. 323 항공 수송	12. 300 기타 건설
06. 330 기타 수송	13. 000 토지의 개량
06. 410 우편	14. 110 증기기관차
06. 420 전화 또는 전보	14. 120 기타
07. 110 라디오, 텔레비전, 레코드플레이어 등	14. 200 영업용 승용차
07. 120 대형의 레크레이션용 내구재	14. 300 트럭, 버스, 트레일러
07. 130 기타 레크레이션용 기구	14. 400 항공기
07. 210 공동적 오락기계의 지출	14. 500 항선, 보트
07. 220 기타 레크레이션 또는 문화적 활동	14. 600 기타 수송 기기
07. 310 서적, 신문, 잡지	15. 100 엔진 또는 원동기
07. 320 문방구	15. 210 트랙터
07. 411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교사	15. 220 기타 농업용 기계
07. 412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교수	15. 300 기타 기계
07. 420 교육용 시설	15. 400 금속가공용 기계
07. 431 교육용 준비	15. 500 건설, 광업용 기계
07. 432 기타 교육 관련 지출	15. 600 특수한 산업용 기계
08. 100 이발소, 미용실	15. 700 일반적 산업용 기계
08. 210 욕실용품	15. 800 서비스산업용 기계
08. 220 기타 소품	16. 100 전기전도장치
08. 310 레스토랑, 찻집	16. 200 통신용 기구
08. 320 호텔 등	16. 300 기타 전기용품
08. 400 기타 서비스	16. 400 정밀기계
1 총 투자	17. 100 가구 또는 생활용품
10. 100 1세대 또는 2세대용 거주용 건물	17. 200 기타 내구재
10. 200 다수 세대용 거주용 건물	18. 000 재고의 증가
11. 100 호텔 등의 건설	19. 000 수출 마이너스 수입
11. 200 산업용 건물	2 공동적 최종 소비 지출
11. 300 상업용 건물	20. 100 노동직 비숙련 피용자의 소득
11. 400 오피스용 건물	20. 210 노동직, 숙련 피용자의 소득
11. 500 교육용 건물	20. 220 사무직 피용자의 소득
11. 600 병원 건물	20. 300 전문직 피용자의 소득
	20. 100 정부의 상품 구입 지출액

(자료) Kravis, et al. [1975], pp. 37-44를 참조



단  $E_{ij}$ 는 같은 세목 카테고리에 관한 제 j의 지출액  $p_{ij} q_{ij}$ 이다.

위 식에서 분자는  $\sum_i E_{ij}$ 이고, 국내총지출로 한다. GDP의 환산을 위해 구매가격 평가 계산에 원리적으로 필요한 재화·서비스의 바스켓 금액이라 할 수 있다. 분모는  $\pi_i / p_{iUS}$ 을 밑의 식과 같이 이동하면 연쇄지수와 유사 추를 다음과 같이 해석 할 수 있다.

$$\sum_i E_{ij} / \left( (p_{ij} / p_{iUS}) / (\pi_i p_{iUS})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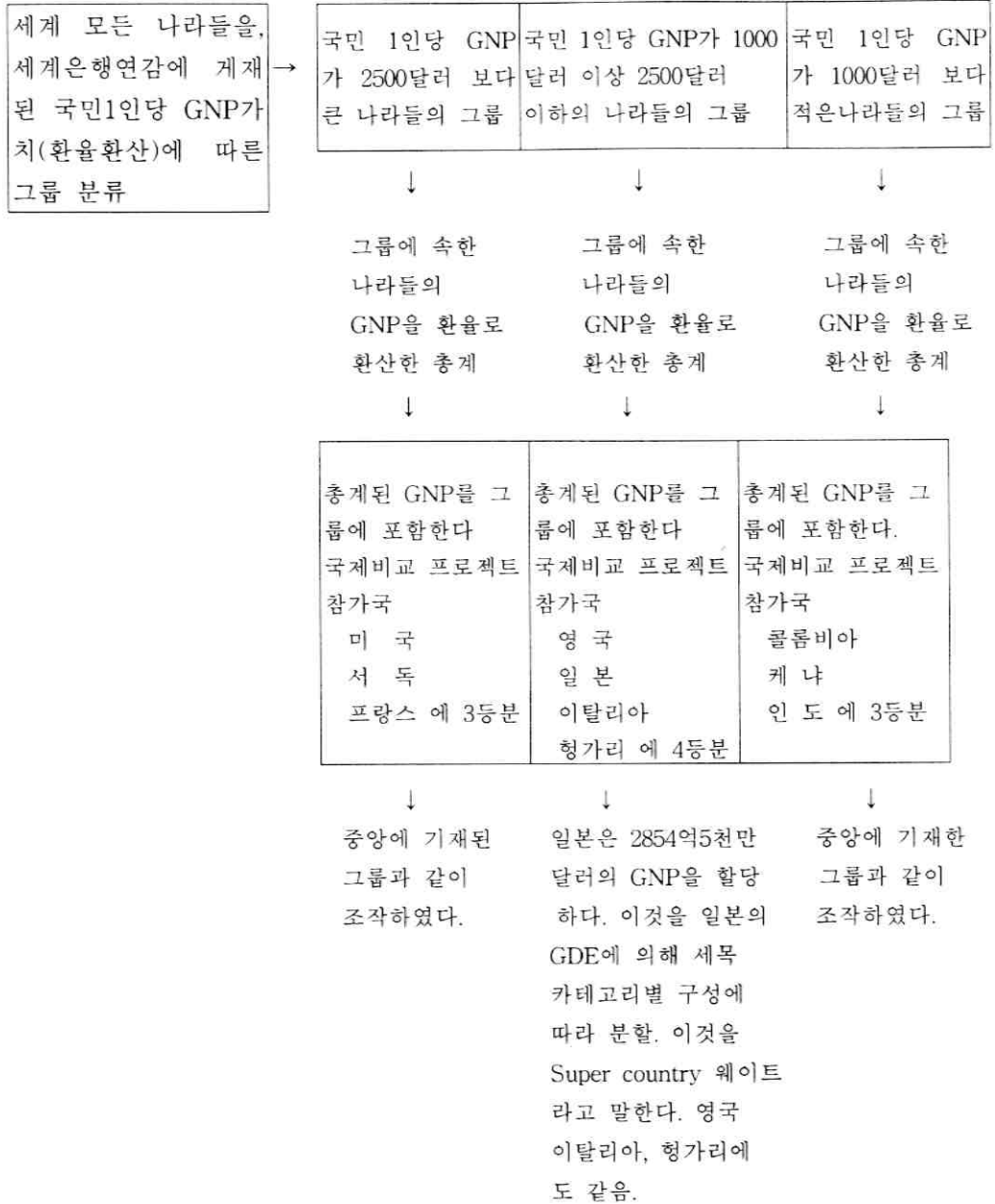
이 식에서  $(p_{ij} / p_{iUS}) / (\pi_i p_{iUS})$ 는 미국을 중계국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산출하였다. 제 i세목 카테고리에 관한 제 j국 통화의 국제적 달러에 대한 구매력 평가라 할 수 있다. 이것에 지출액  $E_{ij}$ 을 나눈 것은 같은 양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국제적 달러표시액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것을 국내총지출을 구성하는 모든 카테고리로 총합하고, 제 i국의 국내총지출인  $\sum_i E_{ij}$ 의 비율을 가지고 국내총지출을 바스켓하는 제 j국 통화의 국제적 달러에 대한 구매력 평가를 계산한다.

대용자료 제1절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p_{ij}$ 와  $Q_{ij}$ 의 형식은 구매력 평가를 대표품목의 가격에 기초해 추계하고 불변가격 평가액인 실질치에 접근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국제비교 프로젝트는 기초자료 입수의 제약성이라는 조건 때문에 Geary에서 고안된 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① 대표적 품목의 수량을 얻을 수 없을 때, ② 각 국의 대표적 품목에 관해 타국에서 대응하는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②는 언뜻 보아 GK법의 지수산식 구성의 기호 i에서 나타나는 품목의 수를 증가시켜 대응하려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총지출의 세분에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대응한 만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②의 문제는 세목 카테고리에 관한 구매력 평가의 계산법 중에 처리한다.

이상의 점으로 보아, 국제비교 프로젝트가 구매력 평가 계산의 기초적 자료로써 세목 카테고리의 구매력 평가를 이용한다고 하는 2단계 계산방식을 채용한 이유가 있다<sup>24)</sup>. 위의 내용으로 GK법으로 계산한 GDP의 구매력

24) 단, 예외로서 의료보건 서비스 부문과 교육 서비스 부문에서는, 수량지수가 처음에 추계된다. 이것으로 지출액의 비율을 나누고 구매력 평가가 간접적으로

### 도 11-1 Super country법에 의한 웨이트 설명



산출된다. (Kravis, et al. [1975], p.19.)

평가와 세목 카테고리 구매력 평가와 같은 구매력 평가라 할지라도 다른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에 관한 프로젝트의 제 I 기 리포트는 「...이 표(세목 카테고리에 관한 계산결과, 필자주)는 가령 작업경과를 기록하는 의미를 같은 자료로 생각한다」<sup>25)</sup>라고 주의하고 있다.

국제비교 프로젝트의 (11.1'), (11.2')식에서 제2의 변경 점은 국제가격 계산을 위한 지출액 웨이트에 관한 것이다. (11.1''), (11.2'')식에서 웨이트하는 세목 카테고리의 지출액  $Q_{ij}$ 는 국제비교 프로젝트의 비 참가국의 상대 가격을 대표한다. 동시에 참가국의 지출액 구성이 비참가국의 지출액을 대표하고 있다면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평균 가격 구성을 반영한」<sup>26)</sup> 국제가격을 계산한다. 그러나 국제비교 프로젝트 제 I 기 사업에서 10개국의 지출액 구성은 세계 모든 국가에 미치는 경우와 비교해서 선진국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sup>27)</sup>. 이런 조건을 근거로 (11.1''), (11.2'')식을 이용하면 발전도상국의 상대 가격 구조는 세계 모든 국가를 고려한 경우보다도 작은 웨이트 일 것이다. 이것이 문제되어 그림 11-1에 나타나는 Super Country법이라는 웨이트 붙은 방법을 사용한다.

Super Country법에 의한 웨이트 첨부 의미는 다음과 같이 말 할 수 있다. 국제비교 프로젝트 참가국의 상대가격구조와 지출액 구성은 그림 11-1 상부에 표시한 같은 그룹이 분류한 프로젝트 비 참가국의 것을 대표한 것으로 간주하여 비 참가국의 지출액을 프로젝트 참가국에 가산한다. 그래서 비 참가국의 상대가격 구조를 반영한 국제가격의 접근을 논의 할 수 있다.

Super Country법에서 웨이트 첨부를 적용한 GK법으로 계산한 구매력 평가에서 바스켓 내의 세목 카테고리별 지출액의 상대적 구성이 조작 내용으로 참가국 일국의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구매력 평가와 비율 식이므로, 분자와 분모에 있는 바스켓 가격의 절대적 크기 변화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리하여 Super Country법의 웨이트에 기초한 구매력 평가가 국제비교 프로젝트 참가국 일국의 GDP 환산에도 이용한다. 환산결과는 Super Country법에서 계산한 국제적 가격의 평가액으로 한다.

25) Kravis, et al [1975], p.228.

26) Kravis, et al.[1975], p. 71.

27) Kravis, et al. [1975], p.71.

### 3. 구매력 평가 계산을 위한 기초적 자료의 추계

제2절에서 국제비교 프로젝트의 구매력 평가 계산법의 특징으로 지적한 항목 가운데 GK법의 내용과 그것을 채용한 근거, 그리고 구매력 평가가 2 단계를 거쳐 계산하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 세목 카테고리의 구매력 평가의 계산 방법 중 CPD법의 내용을 설명해 보자.

CPD법은 Country-Product-Dummy method의 약자이다. 명칭은 국가와 품목에 관계 있는 더미 변수를 이용한 회귀식의 구매력 평가를 추정하는 것에서 유래하였다. CPD법의 내용을 각국간 대응하는 지수 품목의 지출액이 없고 수량 웨이트와 가격을 얻을 수 없는 조건에 연관하여 살펴보자.

우선, 지출액이 없는 수량 웨이트에 관해서는 세목 카테고리의 성질로 그것에 포함하는 품목의 지출액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sup>28)</sup>

다음으로 각 국가간 대응하는 지수 품목의 가격을 얻을 수 없다는 조건 하에 품목별 가격비율을 평균하여 구매력 평가를 추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표 11-5 세목 카테고리에 대한 4개국의 대표적 품목 가격 리스트

	A국	B국	C국	D국
제 1품목	$P_{1A}$	$P_{1B}$	$P_{1C}$	$P_{1D}$
제 2품목	-	$P_{2B}$	$P_{2C}$	$P_{2D}$
제 3품목	-	-	$P_{3C}$	$P_{3D}$
제 4품목	$P_{4A}$	$P_{4B}$	$P_{4C}$	-

28) 실제로는 국내에서 가격을 얻은 품목개수의 역수로 정의된 웨이트가 각국의 가격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구매력평가의 추계에 대해, 가격을 많이 얻은 국가의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함이다. 이 방법은, Frequency-Weighted-CPD법이라고 한다. 이 책에서는 CPD법을 고찰대상으로 하고 그 기본적인 성질을 고찰하도록 하자.

어느 카테고리에 관한 구매력 평가를 추계하기 위해 A국에서 B국의 대표적 품목의 가격을 표 11-5와 같이 얻을 수 있다고 상상해 보자. 국제비교 프로젝트에서 2 국가간 비교도 실시하고, 이 경우 카테고리의 구매력 평가는 2국가간에 공통된 품목의 가격비의 단순 평균으로 계산한다. 그 때, D국의 A국에 대한 구매력 평가는, 공통품목인 제 1품목의 가격비,

$$p_{1D} / p_{1A} \quad (11.3)$$

로 직접 계산한다. 그것에 비해, D국과 A국의 기준국 C국에 대한 구매력 평가를 C국에서 중계하여 간접적으로 D국의 A국에 대한 구매력 평가가

$$\{ (p_{1D} / p_{1C}) \times (p_{2D} / p_{2C}) \times (p_{3D} / p_{3C}) \}^{1/3} / \{ (p_{1A} / p_{1C}) \times (p_{4A} / p_{4C}) \}^{1/2} \quad (11.4)$$

로 계산한다. 마찬가지로 기준국 B국에서 중계한 경우는,

$$\{ (p_{1D} / p_{1B}) \times (p_{2D} / p_{2B}) \}^{1/2} / \{ (p_{1A} / p_{1B}) \times (p_{4A} / p_{4B}) \}^{1/2} \quad (11.5)$$

로 계산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11.3)식과 (11.4)식 또는 (11.5)식은 같은 값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추이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더욱이 기준국의 차이에 의해 (11.4)식과 (11.5)식도 같은 값이 아니다. 이것은 기준국 불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11.3)식에서 구매력 평가는 제 1품목의 가격비만 계산하고, (11.4)식에서 또는 (11.5)식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 CPD법이다. 이 기초적인 사고를 Summers의 논문<sup>29)</sup>을 통해 살펴보자.

CPD법의 출발점은 세목 카테고리에 속한 임의의 제  $\alpha$ 품목의 j국과 k국의 가격 비율은 다음과 같은 확률모델에서 발생한다고 상상할 수 있다.

$$p_{\alpha j} / p_{\alpha k} = (p_j / p_k) \times w_{\alpha}^{jk}$$

좌변은 j국과 k국의 제  $\alpha$ 품목의 가격비, 우변의  $p_j / p_k$ 는 세목 카테고리에 관한 구매력 평가, 그리고  $w_{\alpha}^{jk}$ 는 평균 0, 분산  $\sigma$ 으로 대수 정규분포 하는 확률변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제  $\alpha$ 품목의 가격비는 세목 카테고리에 관

29) Summers [1973], pp. 1-16

한 구매력 평가를 평균으로 하고 대수 정규분포 하는 확률변수라 할 수 있다.

이 모델에 대해서 패러미터인 구매력 평가  $p_i/p_k$ 는 임의의  $i$ 국에 관한  $(p_j/p_i)/(p_k/p_i)$ 과 같은 값이다. 또 가격비율은 당연 추이성을 만족시킨다. 이상의 조건을 (11.6)식에 적용하면 교란항  $w_a^{ik}$ 도  $w_a^{ik} = w_a^{ji}/w_a^{ki}$ 라는 추이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건과 성질을 이용한 다수국 간에 비교하는 여러 국가의 각각의 편성에 의한 공통품목의 가격비율을 모든 편성을 거쳐 정리한 변수치 집합에 관한 동시 밀도 함수를 정할 수 있다. 그 패러미터로서 구매력 평가  $p_j/p_k$ 이 최우법에 의해 추정한다.

이 방법의 특징 중 하나는 여러 국가의 각각의 편성에 공통의 가격으로 얻을 수 있는 품목이 표 11-5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다르다 하더라도 (11.6)식의  $p_j/p_k$ 에 대한 추이성이 조건 불음으로써 추계성을 만족하는 구매력 평가로 계산한다.

패러미터인 구매력 평가의 최우추정치는 계산절차를 거쳐 더미변수로서 구성하는 대수선형의 중회귀식<sup>30)</sup>에 의해 추정한다. 단, (11.6)식 모델에서 다른 국가의 편성에 관한 교란항  $w_a^{ik}$ 이 상호 독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의 최소자승법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11.6)식의 확률 모델은

30) (11.6)식의 모델의 패러미터인 구매력 평가의 최우추정치는 좌변에 적힌 가격 비율의 비교국과 기준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X_{ia}$ 로 구성된 이하의 대수선형의 중회귀식에 추정된다.

$$\log(p_{a2}/p_{a3}) = \{\log(p_1/p_1)\} X_{1a} + \{\log(P_2/P_1)\} X_{2a} + \{\log(p_3/p_1)\} X_{3a} + \dots + \{\log(p_m/p_1)\} X_{ma} + \mu_a^{23}$$

위 식은 비교국인  $j$ 국을 제2국, 기준국  $k$ 국을 제3국으로 그 국가들의 제  $a$  품목의 가격비를 피 설명변수로 하는 경우에 관해 예시하고 있다. 그것에 맞추어 우변에서는 제 2국에 관계 있는 것을 표시하는 더미변수  $X_{2a}=1$ , 제3국에 관계있는 것을 표시하는 더미변수

$X_{3a}=-1$ 의 치가 가해진다. 이 이외의 국가 등에 관한 그 밖의 국가에 관계있는 것을 표시하는 더미변수는  $X_{1a}, \dots, X_{ia}, \dots, X_{ma}=0(i \neq 2,3)$ 이 된다.

(11.7)식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변경한다.

$$p_{\alpha i} = p_i^* \times w_{\alpha}^i ; f(w_{\alpha}^1, \dots, w_{\alpha}^m) \text{ lognormal } [0, \sigma^2 I] \quad (11.7)$$

$p_{\alpha i}$ 은  $i$ 국가의 제  $\alpha$ 품목의 가격,  $p_i^*$ 는  $i$ 국가의 자세한 항목 카테고리  
 물가수준,  $w_{\alpha}^i$ 는 평균 0, 분산  $\sigma$ 에서 대수정규 분포하는 확률변수이다. 이  
 모델에서,  $i$ 국 통화의  $j$ 국 통화에 대한 구매력 평가는 각각의 물가수준  
 $p_i^*$ 와  $p_j^*$ 와의 비율로 정의한다. 교란항  $w_{\alpha}^i$ 는 피 설명변수를 가격비에서  
 가격으로 변경한 것에 의해 독립한다. 이 모델의 패러미터의 추정은 (11.8)  
 식에 나타나는 더미변수에서 구성된 대수선형의 회귀식에 의한다.

$$\begin{aligned} \log p_{\alpha i} = & \beta_2 X_{2\alpha} + \dots + \beta_i X_{i\alpha} + \dots + \beta_m X_{m\alpha} \\ & + \gamma_1 Y_{1i} + \gamma_2 Y_{2i} + \dots + \gamma_A Y_{Ai} + v_{\alpha i} \end{aligned} \quad (11.8)$$

좌변은 세세한 항목 카테고리에 속하는  $\alpha$ =제 1, ..., A 품목의  $i$ =제 1국에서 제  
 $m$ 국까지 얻은 가격의 자연 대수이다. 우변의 계수  $\beta_2, \dots, \beta_m$ 은 제 2, ...,  
 $m$ 국 통화의 제1국 통화에 대한 구매력 평가의 자연대수  
 $\log p_2, \dots, \log p_m$ 이고,  $\gamma_1, \dots, \gamma_A$ 는 카테고리에 포함하는 각 품목의 국  
 제적인 평균가격의 자연대수이다. 더미변수  $X_{i\alpha}$ 는 첨부자  $i$ 의 값이 좌변  
 가격의 국가를 나타내는 첨부자  $i$ 의 값과 일치하는 1이 되고, 기타 모두 0  
 으로 한다.<sup>31)</sup>

이 회귀식에 최소자승법을 적용해서, 세세한 항목 카테고리에 관해 제1  
 국 통화에 대한 제2, ..., m국의 구매력 평가의 자연대수를 일관적으로 계산  
 한다. 이 경우도 구매력 평가의 추이성, 그리고 기준국 불변성을 충족한  
 다.<sup>32)</sup>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식에서 패러미터를 추정하는 절차에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패러미터  $\beta_2$ 를 단회귀로 추정한다면, 제1국  
 과 제2국의 가격만을 추정에 이용한다. 그러나, 더미변수를 도입하면, 기타

31) 예를 들어 제3국의  $\alpha$ =제1품목의 가격  $p_{13}$ 에 관해서는

$$\begin{aligned} \log p_{13} = & \beta_2 0 + \beta_3 1 + \dots + \beta_{i-1} 0 + \beta_i 0 + \dots + \beta_m 0 \\ & + \gamma_1 1 + \gamma_2 0 + \dots + \gamma_{\alpha-1} 0 + \gamma_{\alpha} 0 + \gamma_{\alpha+1} 0 + \dots + \gamma_A 0 + v_{13} \end{aligned}$$

된다.

32) Kravis, et al.[1975], p.58.

다른 국가들의 가격 자료도 이용할 수 있다. 그 형태는 제 1국과 제 2국의 공통된 품목의 가격에서 직접 계산하는 구매력 평가에 가산해, 제 1국 및 제 2국 통화 외 국가들의 통화에 대한 구매력 평가를 그 외 국가들에 중계하고 간접적으로 얻은 구매력 평가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sup>33)</sup> 표 11-5에 입각해 말하자면, 두 국가에 공통하는 품목의 가격이 C국과 A국, C국과 B국, C국과 D국의 형태에 관해서는 비교적 많이 얻을 수 있지만, A국과 D국 사이는 1개 밖에 얻을 수 없다고 할 때, A국과 D국의 구매력 평가를 계산함에도, C국 그리고 B국을 중계하여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구매력 평가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비교 프로젝트의 제 I 기 사업에서 소비재에 관한 종목은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사용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sup>34)</sup>. 또 각 참가국에 있어서 가격을 모을 때, 전문적인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이용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으로 이용한다는 실무상 필요가 있었다.<sup>35)</sup> 위와 같은 가격의 수집방식 아래, 미국은 표 11-6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이 다른 국가들에 대하여 품질이 적합한 종목의 가격과 수량의 자료가 광범위하게 미치어 쉽게 입수가 가능 했다.<sup>36)</sup> 한편, 기타 참가국에서 얻을 수 있는 가격은 미국만큼 많지 않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품목과 종목이 기타 나라들 사이에서 대표적임과 동시에 공통인 품목까지 포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포함하고 있다 해도 그 품목에 대한 국제비교 프로젝트전용의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얻는 자료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sup>37)</sup> 실제, 표 11-6에 나타내도록 프로젝트의 제1기 사업에서 생선야채의 범주에 속하는 각종야채의 가격은 미국에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데 기타 나라들은 약 반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CPD법을 이용하는

33) 송천 [1992], 88~90페이지

34) Kravis, et al. [1978], p.32.

35) Kravis, et al. [1975], p.31.

36) Kravis, et al. [1975], p.51.

37) 예를들면, 유럽제국과 케냐의 어느쪽에 대해서도 ,플로트 천제품의 속옷과 무명 천제품의 속옷은 대표적으로 공통된 품목이다. 그러나 유럽제국에서는 플로트 천 속옷의 가격을 얻을 수 있게 두고, 케냐에서는 무명천 제품 속옷을 얻을 수 없어, 이것들의 가격만을 이용 할 수 있었다. Kravis, et al [1975], p.31.



표 11-6 제 1 기 사업에 따른 생산 야채항목에 대한 구매력 평가를 추계하기 위해 채용한 야채 품목과 1Kg당 가격

품목	나라		콜롬비아 페소	프랑스 프랑	서독일 마르크	헝가리 포린트	인도 루피	이탈리아 리라	일본 엔	캐나다 실링	영국 파운드	미국 달러
	통화단위											
1 조선 영경귀			-	2.75	3.26	-	-	646	-	-	-	2.22
2 비트			3.90	-	-	-	-	-	-	-	0.07	0.42
3 상추			-	2.35	1.69	-	-	485	-	-	-	1.89
4 양배추			1.41	0.98	0.55	2.9	0.91	157	75.4	0.47	0.08	0.32
5 꽃양배추			5.33	1.90	1.13	-	1.27	195	156.6	2.58	0.17	0.63
6 당근			2.10	0.93	0.86	3.2	0.75	172	115.1	2.58	0.07	0.39
7 셀러리, pascal			4.49	-	-	-	-	-	-	-	-	0.44
8 오이			-	-	-	4.7	0.87	-	173.3	-	-	0.61
9 가지			-	-	-	-	0.72	-	-	-	-	0.59
10 국화			-	1.82	0.98	-	-	212	-	-	-	-
11 피망			17.40	2.62	2.32	8.7	-	186	195.4	-	-	1.16
12 Kunde Greens			-	-	-	-	0.56	-	-	0.79	-	0.67
13 양상치			4.82	3.23	2.27	9.3	-	239	218.1	0.62	-	0.53
14 버섯			-	7.90	5.60	-	-	790	-	-	0.54	1.95
15 노란색 양파			5.59	1.18	0.86	4.8	0.67	0.27	98.6	0.77	0.13	0.35
16 무			-	-	-	-	0.55	-	-	-	-	0.88
17 적상치			-	1.27	0.56	-	-	-	-	-	-	0.12
18 시금치			4.71	-	-	-	-	-	133.8	-	-	1.24
19 토마토			5.79	2.55	1.85	6.7	1.21	226	160.9	1.19	0.31	0.92
20 단호박			2.29	-	-	1.5	-	-	-	-	-	0.66

(주) - 은 가격을 표시할 수 없음을 가리킴  
(자료) Kravis, et al. [1975], p.59, Table 1.

것 보다 구매력 평가가 표 11-5의 케이스에서 본 것과 같이 중계국을 개입시켜 간접적으로 도출한 구매력 평가 정보도 이용하여 추계한다.

이러한 CPD법의 특징은 공통 품목의 가격이 비교적 소수 밖에 얻을 수 없는 쌍으로 구매력 평가의 추계에 유용할 수 있다. 공통품목의 가격을 비교적 많이 얻을수 있는 자료로 CPD법에 의해 구매력 평가를 계산할 수 있고, 이에는 공통 품목의 가격 이외에 각 중계국에 대한 공통 품질의 가격을 포함한다.

#### 4 국제 비교 프로그램의 전개에 대하여

이상으로, 국제비교 프로젝트 제 I · II기 사업의 구매력 평가 계산방법과 성질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법적 짜임새는 표 11-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지금까지 변경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비교 참가국이 16개국에서 34개국으로 증가한 제III기사업의 CPD법 적용범위 한정을 살펴보자. CPD법은 이미 하나의 이용형태로서 (11.8)식에 표시한 회귀식에 의해 한 국가에서 얻을 수 없었던 품목 가격을 추계하는 것이 있다. 이 이용형태에 한해 지역적으로 근접하는 각 국가 그룹의 품목 가격만으로 회귀식을 추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상대 가격구조를 비교적 다르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속한 국가들의 가격을 살펴 추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로, 국제 비교 프로젝트 · 프로그램에서 방법상의 변경 요인으로서, 구매력 평가 추계방법의 성질과 사업의 운영체제의 진전과의 관계가 의문시 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구매력 평가 추계 방법의 변천을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 분야의 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 参考文献

- 合崎堅二編著 [1986], 『経済会計——その軌跡と展望——』中央経済社.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World Bank [1993],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Brussels/Luxembourg, New York, Paris, Washington, D. C. (経済企画庁経済研究所国民所得部編『1993年改訂国民経済計算の体系』(上巻・下巻・索引) 社団法人経済企画協会, 1996).
- 藤岡文七・渡辺源次郎 [1994], 『国民経済計算』大蔵省印刷局.
- Galbis, V., ed. [1991], *The IMF's Statistical System in Context of Revision of the United Nations'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IMF, Washington D. C.
- Geary, R. C. [1958], "A Note on the Comparison of Exchange Rate and Purchasing Power between Countrie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vol. 121, part 1.
- Harrison, A. [1990], "Major Changes Proposed for the Next SNA: An Overview",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36, No. 4.
- 林 英機 [1993], 「改訂 SNA における生産勘定および価格と数量の測定」, 経済企画庁経済研究所国民所得部編『季刊国民経済計算』No. 98.
- Hicks, J. R. [1971], *The Social Framework: An Introduction to Economics*, 4th ed.,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酒井正三郎訳『第四版 経済の社会的構造』同文館, 1972).
- Hill, T. P. [1977], "On Goods and Services,"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23, No. 4.
- INSEE [1987], *Système élargi de comptabilité nationale—Base 1980*, Collections de l'INSEE, Série C, N° 140-141, INSEE (Institut National de Statistique et des Etudes Economiques), Paris.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77], *Balance of Payments Manual*, 4th ed., Washington D. C. .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3], *Balance of Payments Manual*, 5th ed., Washington D. C. .
- 石渡 茂 [1993], 「改訂 SNA における資本勘定, 貸借対照表等の変更点と問題点につ

参考文献

- いて」、経済企画庁経済研究所国民所得部編『季刊国民経済計算』No. 99.
- 桂 昭政 [1992], 『国民経済計算と経済厚生』桃山学院大学総合研究所.
- 河野正男 [1990], 「サテライト勘定と社会責任会計」, 横浜国立大学経営学会『横浜経営研究』第Ⅹ巻, 第4号.
- 経済企画庁編 [1996], 『国民経済計算年報(平成8年版)』大蔵省印刷局.
- 経済企画庁経済研究所編 [1978], 『新しい国民経済計算の展開——国民経済計算調査会議報告——』大蔵省印刷局.
- 経済企画庁経済研究所国民所得部編 [1978], 『新国民経済計算の見方・使い方——新SNAの特徴——』大蔵省印刷局.
- 経済企画庁経済研究所国民所得部編 [1979], 『新SNA入門』東洋経済新報社.
- Kendrick, J. W., ed. [1996], *The New System of National Accounts*, Kluwer Academic Publishers, Boston/Dordrecht/London.
- Keuning, S. J. and W. A. de Ruijter [1988], "Guidelines for the Construction of A Social Accounting Matrix",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34, No. 1.
- Kravis, I. B., Z. Kenessey, A. Heston, and R. Summers [1975], *A System of International Comparison of Gross Product and Purchasing Power*,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Kravis, I. B., A. Heston, and R. Summers [1978],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Real Product and Purchasing Power*,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Kravis, I. B., A. Heston, and R. Summers [1982], *World Product and Income,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Real Gross Product*,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倉林義正 [1989], 『SNAの成立と発展』岩波書店.
- 倉林義正・作間逸雄 [1980], 『国民経済計算』東洋経済新報社.
- Kurabayashi, Y. and I. Sakuma [1990], *Studies in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Real Product and Prices*, Kinokuniya Bookstore Co. Ltd..
- Lemaire, M. [1987], "Satellite Accounts: A Relevant Framework for Analysis in Social Fields",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33, No. 3.
- 松川太一郎 [1992], 「マクロ経済指標にたいする購買力平価の方法論」, 鹿児島大学法文学部『経済学論集』第37号.
- 松浦 宏 [1993], 「改訂SNAと現行SNAにおける資本, 金融および海外勘定に関する変更点と問題点」, 経済企画庁経済研究所国民所得部編『季刊国民経済計算』No. 98.
- 光藤 昇 [1993], 「改訂SNAとSAM (Social Accounting Matrix) について」, 『松山大学論集』第5巻第5号.

参考文献

- 宮沢健一 [1980], 『日本の経済循環 (第4版)』春秋社.
- 永山貞則・森田誠 [1981], 「ICP と国際比較の方法(3)」, 日本統計協会『統計』1981年9月号.
- 日本銀行国際局 [1996], 「資料 国際収支統計の改訂について」, 日本銀行『国際収支統計月報』第354号.
- 西嶋周二・藤岡文七 [1986], 『国民経済計算の知識』日本経済新聞社.
- 能勢信子編著 [1990], 『経済会計の発展——会計思考の新展開——』同文館.
- 大住荘二郎 [1996-97], 「SNA で読む日本経済 (連載1~11)」, 日本評論社編『経済セミナー』Nos. 497-507.
- Pyatt, G. [1991], "SAMs, the SNA and National Accounting Capabilities",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37, No. 2.
- Pyatt, G. and J. I. Round [1977], "Social Accounting Matrices for Development Planning",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23, No. 4.
- Ruggles, R. [1982],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Review of Major Issues and Proposals for Future Work and Short-term Changes", ESA/STAT/AC, 15./2, 15 April (遠藤昌雄訳「新SNA体系の新しい動き(I)——OECD国民経済計算専門家会議資料——」, 経済企画庁経済研究所国民所得部編『季刊国民経済計算』No. 62, 1984).
- 斎藤光雄 [1991], 『国民経済計算』創文社.
- 作間逸雄 [1994], 「改訂SNAのフレキシビリティ——サテライト勘定を中心に——」, 経済企画庁経済研究所国民所得部編『季刊国民経済計算』No. 100.
- 作間逸雄 [1996], 「国民経済計算における1993年SNAの意義」, 専修大学社会科学研究所『社会科学年報』第30号.
- 白川一郎 [1994], 『内外価格差』中央公論社.
- 白川一郎・井野靖久 [1994], 『SNA統計 見方・使い方』東洋経済新報社.
- 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79], *European System of Integrated Economic Accounts ESA*, 2nd ed., Publication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Stone, R. [1966], "The Social Accounts from a Consumer's Point of View: An Outline and Discussion of the Revised United Nations System of National Accounts",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12, No. 1.
- Stone, R. [1970], *Mathematical Models of the Economy and Other Essays*, Chapman & Hall, London.
- Stone, R. and G. Stone [1966], *National Income and Expenditure*, 8th ed., Bowes & Bowes (城戸喜子訳『国民所得と国民支出』春秋社, 1968).

参考文献

- Stuvel, G. [1965], *Systems of Social Accounts*, Oxford University Press (能勢信子訳『社会会計の構造』同文館, 1967).
- Stuvel, G. [1986], *National Accounts Analysis*, Macmillan (能勢信子訳『国民経済計算』同文館, 1987).
- Stuvel, G. [1989] *The Index Number Problem and Its Solution*, Macmillan, 1989 (能勢信子・小西康生訳『経済指数の理論——指数問題とその解——』同文館, 1991).
- Summers, R. [1973], "International Comparisons with Incomplete Data",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19, No. 1.
- 鈴木多加史 [1983], 『新 SNA からみた日本経済』東洋経済新報社.
- 鈴木多加史 [1989], 『日本の国民経済計算』中央経済社.
- 鈴木多加史 [1993], 「改訂 SNA と現行 SNA における分配所得勘定に関する変更点と問題点」, 経済企画庁経済研究所国民所得部編『季刊国民経済計算』No. 98.
- 高木新太郎 [1994], 「改訂 SNA の投入産出表について」, 経済企画庁経済研究所国民所得部編『季刊国民経済計算』No. 101.
- 武野秀樹 [1983], 『国民経済計算』有斐閣.
- 武野秀樹 [1995], 『国民経済計算と国民所得』九州大学出版会.
- 武野秀樹・山下正毅編著 [1993], 『国民経済計算の展開』同文館.
- 玉木興乗 [1995], 『経済の循環——経済学入門——』多賀出版.
- 田中和子 [1994a], 「IMF の新しい国際収支マニュアル」, 『国際金融』3月号, 外国為替貿易研究会.
- 田中和子 [1994b], 「我が国国際収支の抜本的改訂について」, 大蔵省『財政金融統計月報』第 508 号.
- Teillet, P. [1988] "A Concept of Satellite Account in the Revised SNA",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34, No. 4.
- 東京銀行調査部 [1994], 『国際収支の経済学』有斐閣.
- United Nations [1968],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tudies in Methods, Series F, No. 2, Rev. 3, United Nations (経済企画庁経済研究所国民所得部訳『新国民経済計算の体系——国際連合の新しい国際基準——』経済企画庁, 1974).
- United Nations [1975], *Towards A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Studies in Methods, Series F, No. 18,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1986], *World Comparisons of Purchasing Power and Real Product for 1980, Phase IV of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Project Part I*,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1987a], *World Comparisons of Purchasing Power and Real Product for 1980, Phase IV of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Project Part II*, United Nations.

参考文献

- United Nations [1987b],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87*, Vol. 41,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1990],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s of All Economic Activities*, Series M, No. 4, Rev. 3,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1991], *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Statistical Papers, Series M, No. 77,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1992a],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92*, Vol. 46,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1992b], *Handbook of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me*,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1994], *World Comparisons of Real Gross Domestic Product and Purchasing Power, 1985, Phase V of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me*,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Secretariat [1990], *Revised Systems of National Accounts: Draft Chapters and Annexes*, Provisional, ST/ESA/STAT/SER. F/2/Rev. 4.
- United Nations Secretariat [1992], *Revised Systems of National Accounts (Chapters I-XXI, Annexes)*, Provisional, ST/ESA/STAT/SER. F/2/Rev. 4.
-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1992], *Report on Development in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me (ICP) and Other Related International Comparison Issues*, E/CN.3/1993/11, United Nations.
- 鶴野公郎 [1994a], 「SNA とサテライト勘定のリンケージをめぐって」, 経済企画庁経済研究所国民所得部編『季刊国民経済計算』No. 101.
- 鶴野公郎 [1994b], 「「グリーン GNP」の可能性」, 『産業と環境』2月号, 通産資料調査会.
- 山下正毅 [1987], 「フランスの国民経済計算体系 SECN について」, 経済企画庁経済研究所国民所得部編『季刊国民経済計算』No. 75.
- 山下正毅 [1990], 「サテライト勘定の概念について」, 経済企画庁経済研究所国民所得部編『季刊国民経済計算』No. 87.
- 柳 良平 [1992], 「国際収支統計をめぐる IMF の議論」, 大蔵省『財政金融統計月報』第 484 号.